

국역 『清季中日韓關係史料』 2

동북아역사 자료총서 41



역자 서문

이 책에서 국역하여 소개하는 자료는 원래 『清季中日韓關係史料』라는 제목으로 편찬된 사료집의 일부다. 이 분야의 전문 연구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듯이, 이 사료집은 타이완[臺灣]의 중앙연구원근대사연구소(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당안관(檔案館)에서 소장하고 있는 청말(淸末)의 외교 관계 문서(중국에서는 이러한 기록 문서를 檔案이라고 부른다) 가운데 한·중·일 세 나라 사이의 외교 관계에 관련된 사료를 주제별로 골라서 출판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1864~1912년까지 청말의 외교를 담당한 부서인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과 외무부(外務部, 1901년 이후) 및 중화민국시기의 외교부(外交部, 1912년 이후) 문서 가운데, 특히 조선과 관련된 것을 중점적으로 선별하여 편찬한 것으로, 총 11권 7,300여 쪽(4,300건, 색인 1권 포함)의 방대한 분량이다.

따라서 청 말 또는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중국과 한국 사이에 주고받은 외교 관계 문서(이것은 따로 朝鮮檔으로 분류되어 있다)가 대부분 모두 여기에 수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한중관계나 동아시아사의 연구에서 이 사료집이 가지는 위치는 그야말로 독보적이다. 이러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료집의 출판이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져오고 있지만, 보충하는 자료일 뿐 이 사료집을 대신할 만한 정도의 비중을 갖춘 것은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미 출간 40년이 되지만, 이 사료집은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서의 위치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료집의 전체적인 내용은 주로 [총리각국사무아문 당안]에 포함된 자료를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 주제로 분류한 것이다.

- (1) 朝·淸 通商 및 외교 교섭
- (2) 朝·淸 국경교섭
- (3) 청일전쟁 이전 조선과 각국의 외교 교섭
- (4)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 (5) 청일전쟁
- (6) 淸·日 통상 및 외교교섭
- (7) 러일전쟁과 청의 입장
- (8) 일본의 중국 동북지역 침략

이 주제의 목록을 일별하면 알 수 있듯이, 여기에는 근대 동아시아 정세변화와 관련된 모든 중요 사안들이 망라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료집은 1972년 처음 출간되자마자, 곧 근대 한국과 중국·일본 등 동아시아(또는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사 연구에 있어 필수적인 기초 자료가 되었다. 특히 중앙연구원근대사연구소 당안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총리각국사무아문당안』 가운데 「조선당(朝鮮檔)」 부분은 거의 모두 여기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료집의 출판은 근대 한국을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관계 연구의 진전과 활성화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오늘날에는 인터넷 상으로도 이 「조선당」은 모두 공개되어 있다). 또한 이 사료집은 목차가 일자별로 분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제별로도 분류되어 있어, 그간 편집된 편년체 위주의 자료집에 비하여 검색이 용이하므로 연구자에게 더욱 유용한 자료로서의 기능과 장점을 갖추고 있다. 또한 근대 시기를 다루고 있는 다른 외교문서 관련 자료집과 비교해 볼 때, 해당 사료의 약 86%(3,600건)가 새롭게 공개된 내용이라는 점도 그 중요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료집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국역 『淸季中日韓關係史料』』의 출간은 특히 다음 두 분야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되리라 예상된다.

첫째, 근대(동아시아) 외교사 분야다. 조선은 1899년 한청조약(韓淸條約)이 체결되기까지 청과 불평등한 조공책봉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서구 세력의 진출과 더불어 ‘만국공법(萬國公法)’이 주지하는 조약체제로의 전환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청 자신도 여기에 편입되었다), 청은 기존의 불간섭 원칙을 버리고, 적극적인 간섭주의를 채택하면서, 기존 조공 체제 내의 속국(屬國)이었던 조선을 근대적 외교 관계 속의 속방(屬邦)으로 편입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은 특히 외교 부분에서 두드러졌다. 1876년 일본과의 개항을 시작으로 조선에서

체결한 구미 각국과의 조약은 대부분이 청의 중용 혹은 중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때문에 조선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청과의 협의하에 외교권을 행사했고, 대부분의 외교 활동도 청에게 보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조선의 외교 활동 및 이에 대한 청의 대응, 청의 요구와 그에 대한 조선의 대응에 대해 이 사료집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1880년대 이후가 되면, 청은 외교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직접 청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내정에까지 개입하는 적극적인 간섭주의로 나섰으므로, 이 사료집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마찬가지로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에서 최근 공개한 「주한사관당안(駐韓使館檔案)」도 이 사료집을 보완하는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는 점도 알려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사료집은 근대 조선·청의 변경 및 국경 문제와 관련해서 활용할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근대시기는 주권이라는 개념과 함께 근대적 영토 관념이 형성된 시기다. 조선의 영토는 북으로 청의 봉금(封禁) 지역과 맞닿아 있었다. 봉금 지역에 대한 청의 관리는 아편전쟁 이후 급격히 무너져갔고, 이에 중국 본토의 한족(漢族)뿐만 아니라, 조선인까지 봉금 지역으로의 이주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활발한 이주현상으로 인해 나타난 전통적 무주공간(無住空間)의 해체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점은 조·청 양국의 최초 경계 설정 과정, 국경 관념의 형성, 그리고 국경 조사 및 회담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도 이 분야에 관해 이미 상당한 분량의 자료집과 연구서를 출간하였지만, 이 사료집 역시 이와 관련된 수많은 문서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연구 분야의 진전과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사료집이 가지고 있는 질적·양적인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지금까지 몇 가지 난점들이 존재해 왔다. 우선은 방대한 양이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외교 문서는 매우 미묘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히 읽어 낼 수 있는 독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문법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한문, 그것도 조선의 한문과는 차이가 있는 19세기 청대(淸代)의 한문을 미묘한 뉘앙스까지 파악하면서 분명하게 독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이 책이 그것을 모두 완벽하게 처리하였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관련 연구자들에게는 자료의 활용도와 접근성을 훨씬 더 높여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대 공문서와 외교문서의 형식(程式)이라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이 사료집에 포함된 자료의 대부분은 청대 공문서와 외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고받은 것들이다.

청대 공문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이전에 수신한 문서를 새로운 문서의 본문 속에 거의 그대로, 또는 줄여서 인용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한다는 점이다. 문서의 주제가 간단한 경우라도 주고받은 정부 기관이 몇 군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만약 해당 문서가 여러 기관을 거치면서 오르내리거나 회람될 경우, 문서 안에서 인용하는 화자(話者)의 수는 급속도로 늘어나게 된다. 각각의 화자들은 사건의 보고 및 처리 주체를 가리키며, 사건의 처리시점도 아울러 여기에 반영된다. 따라서 상하 관계 또는 대등한 관계를 반영하는 화자의 구분은 문서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당시 문서를 주고받은 당사자들에게는 자명한 사실이었겠지만, 오늘날 한국의 독자에게 낯설은 청대 관료 체계의 다양한 직급에 걸쳐 존재하는 화자의 위치와 상하 관계, 직무와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청대사나 외교사를 연구하는 전문 연구자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이 사료집에 수록된 대부분의 문서는 화자를 구분하지 않고 작성되어 있었다. 독자의 편의를 위해 출판 이전에 원 문서 구두점을 찍는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누가 화자이고, 그의 발언이나 문서 인용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알려주는 부호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서술한 어려움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화자의 정확한 위상을 구분함으로써 본문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대 공문서의 작성 방식과 관련 용어들에 대한 숙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책은 독해의 편의를 위해 형식이 복잡한 문건에 대해 먼저 구조 분석을 하여, 가장 중요한 난제인 화자의 구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단락을 구분하여 보여주는 번역을 실시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사료 본문의 내용에 대해 보다 훨씬 용이한 접근과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가능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석을 추가하고자 하였지만, 제한된 시간과 인력으로 충분한 정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참고로 『청계중일한관계사료』의 분량을 소개하자면, 전체 및 시기별 자료 분량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기간	분량(쪽)	글자 수
고종 시기	1864. 8~1897. 8(33년)	5,042	2,541,000
대한제국 시기	1897. 8~1910. 8(13년)	2,094	1,055,000
총독부 시기	1910. 8~1912. 3(2년)	121	60,900
합 계	1864~1912(48년)	7,257	3,656,900

이것은 한 쪽에 최대로 기입된 한문 글자 수를 20자(열)×18(행)×2(면)=720자로 파악하고 한 쪽 당 평균 여백을 30%로 잡아 720자-216자(여백)=504자 정도를 한 쪽 평균 글자 수로 추정하는 것이다. 국역할 경우 한자 대 한글의 글자 수 분량 비율은 대략 1 : 3 정도가 되므로 국역본의 경우 원본 사료집보다 크게 분량이 늘어난다.

그리고 위의 표에 정리된 바와 같이 『청계중일한관계사료』에서 다루는 시기는 1864년 8월부터 1912년까지로 약 48년에 이른다. 문서의 전체 분량은 7,257쪽(원 사료집)이며, 한자(漢字)는 약 365만 자다. 이 분량은 200자 원고지로 약 18,250매에 해당하며, 한글로 번역했을 때 약 54,750매 정도의 분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료를 번역하고 연구할 수 있는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거대한 분량을 짧은 시간 내에 번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책은 단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번역을 시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국역 『清季中日韓關係史料』 2』는 그러한 장기 번역 작업의 두 번째(2년차) 성과다.

따라서 이상의 요건들을 감안하여, 본 연구진은 제2차 연도 번역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청계중일한관계사료』의 첫 번째 주제 항목인 ‘중국과 조선의 변경 방어와 경계문제(中韓邊防界務)’는 총 여섯 가지의 소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해인 2011년에는 먼저 그중 두 항목의 번역을 목표로 하였으므로, 올해에는 그 뒤의 네 항목의 번역을 목표로 삼았다. 아래 목차에서 나타나듯이, 그 네 항목은 ‘감계(勘界)’와 ‘조선 백성의 월경 개간(韓民越墾)’, ‘일본인이 동북 지방을 여행하기 위한 통행증을 신청한 문제(日人請照遊歷東北)’ 및 ‘도문강 항행과 나루터 설치(圖們江航行及設渡)’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세부 목차는 다음과 같다.

I. 중국과 조선의 변경 방어와 경계문제(中韓邊防界務)

[1. 제1권]

[2. 제1권]

3. 감계(勘界)

1) 감계에 관한 논의(商議勘界)

2) 변경 답사(履勘邊界)

4. 조선 백성의 월경 개간(韓民越墾)

1) 조선 백성의 월경 개간과 쇄환(韓民越墾與刷還)

2) 간민 호적 편입과 개간지 측량(墾民編籍與丈量墾地)

3) 관청을 두어 다스리는 문제(設官撫治)

5. 일본인이 동북 지방을 여행하기 위한 통행증을 신청한 문제(日人請照遊歷東北)

6. 도문강 항행과 나루터 설치(圖們江航行及設渡)

이 책의 발간은 근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및 근대 한국의 역사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 의도된 것이다. 단순한 한문 텍스트의 제공이 아니라 한글 번역 작업까지 수반된 것이므로, 이 책이 관련 분야 연구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이 작업을 맡은 연구진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이 연구 작업은 필자와 서울대학교·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와 대학원생에 의한 공동작업의 소산이다. 짧은 시간과 힘든 수작업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여기에 참가해 준 이원준, 하주형, 조병식, 김창수 군에게 우선 감사를 드린다. 물론 이러한 장기적 작업의 번역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출판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업을 맡아주신 동북아역사재단의 이사장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3년 11월 20일
연구책임자 김형중

일러두기

1. 이 책은 『中國近代史資料彙編 清季中日韓關係史料』(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1972)의 첫 번째 주제 항목인 ‘中韓邊防界務’의 여섯 개 소항목 중에서, ‘勘界’, ‘韓民越墾’, ‘日人請照遊歷東北’, ‘圖們江航行及設渡’로 분류된 문서들에 대한 표점과 번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건은 문서정보와 원문, 번역문의 순서에 입각하여 정리 및 번역되었다.
2. 각 문건의 문서번호는 ‘가·나·다·라(마, 바)’의 양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가’·‘나’·‘다’의 숫자는 原書의 주제 분류에 입각한 번호체계를 표현한 것이며, ‘라’는 각 분류체계 내에서의 문서의 수록 순서를 나타낸다. 괄호 안의 ‘마’는 原書에서 각 문건에 부여한 번호이며, ‘바’는 해당 문서가 수록된 쪽수를 가리킨다.
3. 각 문건의 문서정보에는 문서번호 다음으로 ‘사안’과 ‘첨부문서’, ‘날짜’, ‘발신’, ‘수신’ 등에 관한 정보가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다. ‘사안’은 原書의 ‘清季中日韓關係史料分類目錄’에서 정리한 ‘事項’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해당 문건의 핵심 요지를 정리하고 있다. ‘첨부문서’는 原書에 수록된 문건 안에 附件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事項’을 정리하였다. ‘날짜’는 해당 문건의 발신일/수신일(문서에 따라 다름)을 의미하며, 음력 날짜와 양력 날짜를 함께 표기하였다. ‘발신’과 ‘수신’은 각각 해당 문건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의미한다.
4. 본서의 표점과 번역은 문서 안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누구의 진술인지 밝히는 것에 유의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국역 『同文彙考』 疆界 史料』(배우성·구범진 역, 동북아역사재단, 2008)의 편집 양식을 활용하였다.
5. 원문 및 번역문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쉼표, 마침표, 따옴표 등 기본적인 부호만을 사용하여 표점을 하였다. 원문의 분명한 오류로 보이는 글자에 대해서는, ‘實據(→據實)’의 경우처럼 원문의 글자는 그대로 두고, 괄호 안에 화살표와 함께 바른 글자를 밝혀 두었다.
6. 번역문에서는 문장의 의미가 원활하게 통하도록 하기 위하여, 괄호를 사용하여 접속사나 단어 등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부 명사들에 대해서는 괄호 안에 간단한 설명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유사한 맥락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원문에서 ‘本部’·‘本衙門’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을, 번역문에서는 경우에 따라 ‘禮部’·‘總理衙門’ 등으로 풀어서 번역하였다.

차 례

감계(勘界) 19

• 감계에 관한 논의(商議勘界) 21

(1) 문서번호 : 1-3-1-01 (660, 1085a) 21

(2) 문서번호 : 1-3-1-02 (663, 1091a-1093a) 23

(3) 문서번호 : 1-3-1-03 (664, 1093b) 31

(4) 문서번호 : 1-3-1-04 (665, 1094a) 32

(5) 문서번호 : 1-3-1-05 (685, 1118a-1119a) 34

(6) 문서번호 : 1-3-1-06 (686, 1119b) 38

(7) 문서번호 : 1-3-1-07 (691, 1122b-1123b) 39

(8) 문서번호 : 1-3-1-08 (699, 1129a) 43

(9) 문서번호 : 1-3-1-09 (792, 1257b-1258a) 45

(10) 문서번호 : 1-3-1-10 (825, 1336b-1337a) 48

(11) 문서번호 : 1-3-1-11 (916, 1524a) 51

(12) 문서번호 : 1-3-1-12 (1030, 1889b-1890a) 52

(13) 문서번호 : 1-3-1-13 (1037, 1898a-1899a)	54
(14) 문서번호 : 1-3-1-14 (1039, 1902b)	57
(15) 문서번호 : 1-3-1-15 (1040, 1903a-1910a)	59
(16) 문서번호 : 1-3-1-16 (1041, 1910b-1915a)	72
(17) 문서번호 : 1-3-1-17 (1042, 1915b-1918a)	83
(18) 문서번호 : 1-3-1-18 (1048, 1921b-1926a)	91
(19) 문서번호 : 1-3-1-19 (1050, 1930b-1932a)	103
(20) 문서번호 : 1-3-1-20 (1052, 1933b)	109
(21) 문서번호 : 1-3-1-21 (1053, 1934a)	110
(22) 문서번호 : 1-3-1-22 (1054, 1934b)	111
(23) 문서번호 : 1-3-1-23 (1055, 1935a)	113
(24) 문서번호 : 1-3-1-24 (1058, 1936b)	115
(25) 문서번호 : 1-3-1-25 (1060, 1938a-1939b)	117
(26) 문서번호 : 1-3-1-26 (1065, 1946a-1946b)	122
(27) 문서번호 : 1-3-1-27 (1066, 1947a-1947b)	125

(28) 문서번호 : 1-3-1-28 (1085, 1961a-1962a)	129
(29) 문서번호 : 1-3-1-29 (1108, 2010b)	133
(30) 문서번호 : 1-3-1-30 (1111, 2018b)	134
(31) 문서번호 : 1-3-1-31 (1112, 2019a-2024b)	135
(32) 문서번호 : 1-3-1-32 (1122, 2041b)	147
(33) 문서번호 : 1-3-1-33 (1123, 2042a)	149
(34) 문서번호 : 1-3-1-34 (1134, 2091b-2095b)	150
(35) 문서번호 : 1-3-1-35 (1135, 2096a)	162
(36) 문서번호 : 1-3-1-36 (1136, 2096b)	163
(37) 문서번호 : 1-3-1-37 (1224, 2265b)	165
● 변경 답사(履勘邊界)	167
(38) 문서번호 : 1-3-2-01 (1185, 2176b)	167
(39) 문서번호 : 1-3-2-02 (1198, 2186b)	169
(40) 문서번호 : 1-3-2-03 (1201, 2190a)	171

(41) 문서번호 : 1-3-2-04 (1211, 2245b-2246a)	173
(42) 문서번호 : 1-3-2-05 (1228, 2268b)	175
(43) 문서번호 : 1-3-2-06 (1293, 2383b)	177
(44) 문서번호 : 1-3-2-07 (1296, 2387b-2392a)	179
(45) 문서번호 : 1-3-2-08 (1297, 2410a)	231
(46) 문서번호 : 1-3-2-09 (1403, 2554b-2555a)	233

조선 백성의 월경 개간(韓民越墾)	235
--------------------------	-----

- 조선 백성의 월경 개간과 쇄환(韓民越墾與刷還) 237

(47) 문서번호 : 1-4-1-01 (587, 972a-974b)	237
(48) 문서번호 : 1-4-1-02 (679, 1106b-1107a)	244
(49) 문서번호 : 1-4-1-03 (981, 1765a-1768a)	246
(50) 문서번호 : 1-4-1-04 (1020, 1879a-1882b)	252
(51) 문서번호 : 1-4-1-05 (1024, 1884b-1885a)	261

(52) 문서번호 : 1-4-1-06 (1093, 1970a) 263

(53) 문서번호 : 1-4-1-07 (1129, 2069a) 265

• 간민 호적 편입과 개간지 측량(墾民編籍與丈量墾地)
..... 266

(54) 문서번호 : 1-4-2-01 (1356, 2491b-2492b) 266

(55) 문서번호 : 1-4-2-02 (1487, 2707a) 271

(56) 문서번호 : 1-4-2-03 (1520, 2756b) 272

(57) 문서번호 : 1-4-2-04 (1542, 2789a-b) 274

(58) 문서번호 : 1-4-2-05 (1543, 2790a-b) 276

(59) 문서번호 : 1-4-2-06 (1544, 2791a-2792b) 280

(60) 문서번호 : 1-4-2-07 (1550, 2807b) 285

(61) 문서번호 : 1-4-2-08 (1554, 2812a-b) 287

(62) 문서번호 : 1-4-2-09 (1557, 2816a-2818a) 290

(63) 문서번호 : 1-4-2-10 (1808, 3175b-3176b) 298

(64) 문서번호 : 1-4-2-11 (1810, 3178b-3180b)	301
(65) 문서번호 : 1-4-2-12 (1811, 3181a)	307
(66) 문서번호 : 1-4-2-13 (1815, 3184a-3185a)	309
(67) 문서번호 : 1-4-2-14 (1817, 3186b-3187a)	313
(68) 문서번호 : 1-4-2-15 (1881, 3300b)	316
(69) 문서번호 : 1-4-2-16 (1892, 3310b)	318
(70) 문서번호 : 1-4-2-17 (2544, 4011b-4025a)	320
(71) 문서번호 : 1-4-2-18 (2558, 4035a-4037b)	344
(72) 문서번호 : 1-4-2-19 (2581, 4071b)	346
(73) 문서번호 : 1-4-2-20 (2601, 4120a-b)	348
(74) 문서번호 : 1-4-2-21 (2620, 4143b)	351
(75) 문서번호 : 1-4-2-22 (2621, 4144a)	352
(76) 문서번호 : 1-4-2-23 (3009, 4493b-4500b)	353
(77) 문서번호 : 1-4-2-24 (3041, 4533a-4534b)	366
(78) 문서번호 : 1-4-2-25 (3054, 4541b)	371

(79) 문서번호 : 1-4-2-26 (3126, 4683b) 372

• 관청을 두어 다스리는 문제(設官撫治) 374

(80) 문서번호 : 1-4-3-01 (1878, 3295a-3299a) 374

(81) 문서번호 : 1-4-3-02 (1879, 3299b) 384

(82) 문서번호 : 1-4-3-03 (3150, 4703b) 386

(83) 문서번호 : 1-4-3-04 (3159, 4713a-4714a) 387

(84) 문서번호 : 1-4-3-05 (3192, 4750b-4751a) 391

일본인이 동북 지방을 여행하기 위한 통행증을
신청한 문제(日人請照遊歷東北) 393

(85) 문서번호 : 1-5-0-01 (1292, 2383a) 395

(86) 문서번호 : 1-5-0-02 (1295, 2386b-2387a) 397

(87) 문서번호 : 1-5-0-03 (1298, 2410b-2411a) 400

(88) 문서번호 : 1-5-0-04 (1300, 2413a-b)	403
(89) 문서번호 : 1-5-0-05 (1301, 2414a)	404
(90) 문서번호 : 1-5-0-06 (1302, 2414b)	405
(91) 문서번호 : 1-5-0-07 (1303, 2415a)	406
(92) 문서번호 : 1-5-0-08 (1305, 2418b-2419a)	408
(93) 문서번호 : 1-5-0-09 (1307, 2420a-b)	411
(94) 문서번호 : 1-5-0-10 (1372, 2516b-2517a)	413

도문강 항행과 나루터 설치

(圖們江航行及設渡)	415
------------------	-----

(95) 문서번호 : 1-6-0-01 (1432, 2596a)	417
(96) 문서번호 : 1-6-0-02 (1433, 2596b)	418
(97) 문서번호 : 1-6-0-03 (1467, 2667a-b)	419
(98) 문서번호 : 1-6-0-04 (1470, 2672a-2674b)	421

(99) 문서번호 : 1-6-0-05 (1473, 2676b-2777a) 429

부록이 (100) 문서번호 : 1-6-0-06 (1486, 2706a-b) 431



중국과 조선의 변경 방어와 경계문제(中韓邊防界務)

감계(勘界)



감계에 관한 논의(商議勘界)

(1) 문서번호 : 1-3-1-01 (660, 1085a)

사안 : 朝鮮國王이 관원을 파견하여 함께 邊界를 勘界하자고 요청한 咨文에 관한 奏摺 및 朝鮮國왕의 咨文 2건을 抄錄하여 보냅니다(鈔送朝鮮國王咨請派員會勘邊界事宜摺及 朝鮮國王咨文二件).

날짜 : 光緒八年十二月初九日(1883년 1월 17일)

발신 : 署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十二月初九日, 署北洋大臣李鴻章文稱.

竊照本署大臣於光緒八年十二月初八日, 在天津行館由驛具奏朝鮮國王咨請派員會勘邊界事宜恭摺具陳請旨飭遵緣由一摺, 又附奏接准朝鮮國王咨文二件照抄恭呈御覽一片, 相應抄錄咨送. 爲此合咨貴衙門, 謹請查照施行.

첨부 : 원 상주문[原奏], 부록 상주문[附片], 첨부자료[清單][詳見初十日軍機處交出

抄摺]

12월 9일 署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本署大臣은 光緒 8年 12月 8日에 天津行館에서 驛路를 거쳐 朝鮮國왕이 咨文을 보내 關員을 覈見하여 함께 邊界를 勘界하자고 요청한 것에 대해 咨文 諭旨를 요청하여 지시를 내려주시면 그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奏摺 1건, 또한 朝鮮國왕으로부터 받은 咨文 2건을 抄錄하여 咨文 皇上前에서 살펴 주시도록 첨부한다는 내용의 附片 1건을 上奏하였습니다. 應當 이 내용을 抄錄하여 (總理衙門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咨文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貴 文으로 咨文을 보내오니, 咨文 살펴보고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原奏, 附片, 清單[12월 10일에 軍機處에서 抄錄해 내보낸 奏摺에 상세하게 보인다]



(2) 문서번호 : 1-3-1-02 (663, 1091a-1093a)

사안 : 조선국왕이 관원을 파견하여 함께 공동감계를 하자고 요청하였는데, 盛京將軍 등에
게 관원에게 맡겨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해주시기 바랍니다(奏朝鮮國王咨請派員
會勘邊界請飭盛京將軍等委員妥辦).

첨부문서 : 1. 「조선국왕이 보낸 咨文(朝鮮國王來咨)」 : 중국 관원을 파견하여 조선의 魚允
中和 함께 기간을 정하여 변계의 무역 사무를 공동으로 감계하는 것을 자문으
로 요청하는 바입니다(咨請派員與魚允中定期會勘邊界貿易事).

날짜 : 光緒八年十二月初十日(1883년 1월 18일)

발신 : 軍機處

수신 : 總理衙門

十二月初十日, 軍機處交出李鴻章抄摺稱. SIAN HISTORY FOUNDATION

爲 朝鮮國王咨請派員會勘邊界事宜, 恭摺具陳請旨飭遵 事.

竊臣前欽遵諭旨, 督同津海關道周馥等, 與朝鮮陪臣魚允中等會議朝鮮水陸通商章程
內第五條聲明,

鴨綠江對岸柵門與義州二處, 又圖們江對岸琿春與會寧二處, 聽邊民隨時往來交易,
仍於開市處設立關卡,¹⁾ 稽查匪類, 征收稅課. 從前館宇·餽廩·芻糧·迎送等費, 悉予
罷除. 至邊民錢財罪犯等案, 由地方官按照定律辦理, 一切詳細章程, 應俟北洋大臣
與朝鮮國王派員至該處踏勘會商稟請奏定.

等因.

經臣奏交總理各國事務衙門, 會商禮部議復具奏, 奉旨.

依議。

欽此。轉行知照在案。

旋據魚允中面稟。

擬告於本邦，明春往鴨綠圖們二江一帶查看情形，同該地方官勘商酌行，再到津稟定。

等語。

即經臣分咨盛京·吉林將軍·奉天府府尹，暨太僕寺卿吳大澂等，各先行就近派員，會同朝鮮官體察情形，勘商妥議，再訂詳細章程。原因邊民互市，雖經奏准變通，而歷來法制禁令有須互相參酌之處，非其本省派員勘商，恐難操縱合宜。昨奉十一月十四日寄諭，

崇綺·松林奏，朝鮮貿易宜嚴定限制。嗣後有關奉省事宜，與該國王如何會商，應咨照將軍·府尹，公同斟酌，再行定議。飭即妥議會奏。

等因。欽此。

正與臣處所籌辦法大略相同。其摺片內條陳各節，業經臣欽遵分別妥議，准駁咨請總理衙門，禮部會核覆奏矣。現據朝鮮國王咨稱。

擬派副護軍魚允中，於明年二月初旬，前往義州，四月下旬，轉往會寧·慶源等處，踏勘商定。望煩飭派官員，屆期會勘，以便酌行。

等語。

謹照抄該國王來咨一件，恭呈御覽。竊維奉·吉地方交涉情形，及列朝法制禁令，隔省人員，人地生疏，恐其未能洞悉。此次與朝鮮定章，變通互市，實為體恤屬藩，禁革積弊起見。而嚴杜侵越，豫防後患之處，亦當熟悉深籌。自應該將軍·府尹大臣等揀派廉正明練大員，屆期會同朝鮮陪臣魚允中，踏勘妥商，各就地方情形，擬議詳細章程，稟由該將軍·府尹大臣，公同斟酌，咨商臣處，詳慎復核定議，再行具奏請旨遵辦。合無仰懇飭下盛京·吉林將軍，奉天府尹，督辦甯古塔等處事宜太僕寺卿吳大澂，查照妥辦。除由臣分咨知照，並咨復朝鮮國王外，理合繕摺由驛具陳，伏乞皇太后皇上聖鑒訓示。謹奏。

光緒八年十二月初十日，軍機大臣奉旨。

該衙門知道。片一件，單二件，併發。

欽此。

照錄清單

照抄朝鮮國王來咨一件，恭呈御覽。

朝鮮國王 爲 咨會 事。

照得敝邦義州·會寧·慶源等處，與上國邊界人民互市，向來統由官員主持，諸多窒礙。幸賴貴大臣曲軫流來之弊，妥籌經久之困，因時制宜，酌予變通。定於兩國邊界柵門·琿春·與義州·會寧·慶源等處，聽民隨時往來交易，將從前慣例概行豁除，列入水陸貿易章程第五款內，聲明請旨定議遵照辦理在案。此莫非貴大臣仰體皇仁永綏藩服至意。謹與一國臣庶攢手感頌，不任銜結。其詳細章程，須派員至該處，會商酌行。茲擬派副護軍魚允中，於明年二月初旬，前往義州，四月下旬，轉往會寧·慶源等處，踏勘商定。望煩貴大臣飭派官員，屆期會勘，以便酌行。除定期派員外，相應備文咨明，請貴大臣查照酌復。須至咨者。

光緒八年十月十七日發，十二月初六日到。

光緒八年十二月初十日，軍機大臣奉旨。

覽。

欽此。

1) 관잡(關卡)은 세관(稅關)과 그 분소(分所)를 가리킨다. 관(關)은 세관, 잡(卡)은 그 분소를 가리킨다. 잡(卡)은 변경초소인 카룬(雜倫)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12월 10일 군기처에서 다음과 같은 李鴻章의 奏摺를 초록하여 보내왔다.

조선국왕이 관원을 파견하여 변계에 대한 공동감계를 하자고 자문을 보내어 청한 것에 대해 삼가(北洋大臣 李鴻章이) 의견을 진술하면서 상유를 내려주시기를 청하는 주접을 올립니다. 신은 이전에 상유에 따라 津海關道 周馥²⁾ 등을 인솔하여 조선의 陪臣³⁾ 魚允中⁴⁾ 등과 함께 「朝鮮水陸通商章程」⁵⁾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그 중 제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⁶⁾

鴨綠江을 마주하고 있는 柵門과 義州 두 곳, 그리고 圖們江을 마주하고 있는 琿春과 會寧 두 곳에서 변경 백성이 수시로 왕래하며 교역하도록 한다. 그리고 開市하는 곳에 稅關 및 그 分所를 설치하여 匪類를 조사하고 세금을 징수한다. (조선 측이 도맡아 왔던) 중전의

2) 주복(周馥, 1837~1921)은 자(字) 산계(山溪)로 안휘성(安徽省) 건덕(建德) 출신으로 동치연간 이홍장(李鴻章)이 회군을 조직할 때 문안(文案)으로 참가한 다음 30여 년을 그와 같이 일하면서 깊은 신임을 받았다. 1882년부터 진해관도(津海關道)로 근무하여 대외교섭이나 해방(海防) 일을 맡았으며, 1904년 이후에는 양강총독겸남양대신(兩江總督兼南洋大臣)에 오르기도 하였다.

3) 배신(陪臣), 또는 중신(重臣)은 제후의 신하를 뜻한다.

4) 어윤중(魚允中, 1848~1896)은 자(字)는 성집(聖執), 호는 일재(一齋)로 조선 후기의 정치가·개화사상가이다. 1881년 조정에서 신사유람단 60명을 일본으로 파견할 때 박정양(朴定陽)·홍영식(洪英植) 등과 함께 반장인 조사(朝士)로 선발되었는데, 그가 맡은 부문은 재정·경제 부문이었다. 일본의 도쿄에 도착한 그는 약 3개월에 걸쳐 일본 메이지유신의 시설·문물·제도 등을 상세히 시찰하고 많은 참고자료를 수집했으며, 당시 중국에 가 있던 영선사(領選使) 김윤식(金允植)과 합류하여 청의 북양대신(北洋大臣) 이홍장(李鴻章), 해관감독(海關監督) 주복(周馥) 등과 회담한 뒤 이해 12월에 귀국했다. 그는 1년간에 걸친 일본·중국 시찰의 복명서(復命書)를 제출하여 초기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작용을 했다. 이후 1882년 조미수호조규, 조중수륙무역장정(朝中水陸貿易章程)의 체결에 관여하였으며 1883년 서북경략사(西北經略使)에 임명되어 청나라와 중강무역장정(中江貿易章程)·회녕통상장정(會寧通商章程)을 협정하고, 또한 도문강(圖們江)과 두만강의 국경지대를 조사했다. 1884년에 서북경략사와 병조참관을 겸임했으며, 뒤에는 호조참관을 겸임했다. 1884년 갑신정변 이후 중용되지 못하다가 1894년 갑오개혁 내각이 수립되자 김홍집내각과 박정양내각에서 탁지부대신이 되어 재정·경제 부분의 대개혁을 단행했다. 1896년 2월 아관파천으로 갑오개혁 내각이 붕괴되자 그는 고향인 보은으로 피하다가 원한을 품고 있었던 향반(鄉班)의 습격으로 1896년 2월 17일 피살되었다. 저서로는 『종정연표(從政年表)』 등이 있다. 1910년 규장각대제학에 추증되었다.

5) 정식 명칭은 「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이다.

6) 맨 앞부분은 분명히 5조의 내용이지만 인용문 전체로 보면 5조만이 아니라 다른 조항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객숙 운영비[餼廩]·식량과 말먹이[芻糧]·접대[迎送] 등의 비용을 모두 없앤다. 그리고 변경 백성의 금전이나 재산 관련 범죄 등은 지방관이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와 관련된) 모든 상세한 章程은 북양대신과 조선국왕이 파견한 관원이 해당 지역에 가서 직접 조사하고 상의한 후 보고를 올리면, 상주하여 정하는 것을 기다린다.

신은 이미 이를 총리아문으로 넘겼으며, 거기서 예부와 함께 다시 논의하여 상주한 결과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다.

논의한 대로 하라.

(이런 상유를 받았으므로) 이를 각기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바로 어윤중이 저와 직접 대면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내년 봄 압록강과 도문강 두 강 일대에 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해당 지방관과 함께 공동감계를 하여 상의하고 처리한 다음 다시 天津으로 돌아와서 보고를 올려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에 신은 盛京將軍⁷⁾과 吉林將軍⁸⁾ 奉天府尹⁹⁾과 太僕寺卿¹⁰⁾ 吳大澂 등에게 각기 자문을 보내어, 각자 먼저 가까운 곳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조선 관원과 함께 상황을 살펴보고, 적절하게 논의한 다음 다시 상세한 장정을 수정하라고 하였습니다. 본래 변민의 互市는 이번에 상주를 통해 변통을 허락 받았지만, 역대 법제와 금지령 가운데 반드시 서로 참작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지의 省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조사하고 상의하지 않으면, 아마도 적절하게 조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제 11월 14일의 軍機處에서 보낸 寄信上諭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7) 성경장군(盛京將軍)은 청대의 관명(官名)으로 청조가 관내(關內)로 진입한 이후 성경(盛京, 오늘날의 瀋陽)을 유도(留都)로 삼아 대신(大臣)한 사람이 남아 지키게 하였는데, 건륭(乾隆) 17(1747)년 이후 성경장군이란 명칭으로 굳어지면서 봉천(奉天, 遼寧省)의 주둔군대를 관할하면서 지방을 관할하였다. 1907년 폐지되면서 동삼성총독(東三省總督)으로 대체되었다.
- 8) 청대 길림지구의 최고군정장관(最高軍政長官)을 가리킨다. 원래는 영고탑장군(寧古塔將軍)이었으나 길림으로 이주하고(1676년), 건륭 연간에 들어 길림장군으로 개칭되었다(1759년). 길림에 주방(駐防)하는 팔기 부대(旗營) 및 지방의 군민(軍民) 사무를 관장하고 문무관원을 이끌면서 봉강(封疆)을 진수(鎮守)하는 역할을 맡았다. 1907년 순무(巡撫)로 바뀌었다.
- 9) 청초 성경(盛京)에 설치된 봉천부(奉天府)의 장관으로 성경장군의 지휘 아래 성경의 지방사무를 관할하였다.
- 10) 태복시(太僕寺)는 전통시대 조정의 중앙기구 가운데 하나로 목마정령(牧馬政令), 황제출순(皇帝出巡), 호종거마잡물(扈從車馬雜物) 등을 총관하였으며 경(卿), 소경(少卿), 원외(員外) 등의 관직이 있었다.

(盛京將軍) 崇綺¹¹⁾과 (奉天府尹) 松林¹²⁾이 조선과의 무역은 마땅히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상주하였다.¹³⁾ 이후에 奉天과 관련된 사안을 조선국왕과 함께 어떻게 상의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응당 장군·부윤에게 자문으로 알려 함께 점검을 한 다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니, 적절히 논의하여 함께 상주토록 지시를 내리는 바이다.

이 방안은 바로 저희 부서에서 계획한 처리방안과 대체로 같은 것으로 이 주접에서 아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상유에 따라 각기 적절하게 논의하였으며, 총리아문과 예부에 자문을 보내 승인할지 거부할지 다시 검토하여 상주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음과 같은 조선국왕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副護軍 어윤중을 파견하여 내년 2월 초순에는 義州로 보내고, 4월 하순에는 다시 회녕과 경원 등지로 가서 답사하고 상의하여 결정하게 하고자 합니다. 번거롭겠지만, 관원을 파견하여 시기를 맞추고 공동감계를 한 다음 상황을 헤아려 처리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삼가 조선국왕으로부터 온 자문 1건을 초록하여 바치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건대 봉천과 길림 지방의 교섭상황과 역대 금지령에 대해서는 다른 성의 관원들은 사람이나 지리에 대해 문외한이라 아마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조선과 장정을 조인하여 기존 상황을 변동하여 互市를 시작하는 것은 실로 屬藩을 보살피고 누적된 폐해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邊界를 侵越하는 것을 엄격히 막아 훗날의 근심을 예방하겠다는 점도 깊이 고려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해당 장군과 부윤 대신 등은 응당

11) 송기(崇綺)는 광서 6(1880)년 5월부터 광서9(1883)년 12월 사이 성경장군의 자리에 있었다.

12) 송림(松林)은 광서 6(1880)년부터 광서 10(1884)년 3월까지 봉천부윤의 자리에 있었다.

13) 이 번역서의 원본인 『淸季中日韓關係史料』 1063~1081쪽에 의하면 조선과의 통상장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중국관리가 결국 ‘陪臣’인 조선 관리와 “平行相對” 하게 된다는 것이 알려지자 성경장군·길림장군 등이 그에 대해 강력한 반발 의사를 표시하였던 일이 있었다(이를테면 11월 14일 군기처에서 내려보낸 성경장군 崇綺의 주접). 여기서는 바로 그 의견을 말하고 있는데, 이 글의 내용에도 보듯이 이홍장은 그들의 의사를 참작하여 결론을 내겠다고 대답하였다. 이홍장의 「朝鮮會勘邊界摺」에 대해서는 광서 8년 11월 14일의 기유(寄諭, 즉 군기처를 통해 전달되는 상유인 寄信上諭)가 붙어 있는데(『李鴻章全集』, 제10권 『주의』, 127~128쪽), 이러한 승후와 송림의 상주가 지방상황을 살피고 아울러 기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입장에서 나온 것이므로 총리아문과 이홍장이 다시 적절하게 장정에 대해 논의하고 예부와 협의한 후 상주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예부에서는 ‘평행’이란 구절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조공(朝貢)과 무역(貿易)의 차이를 들어 장정에서 정해진 그대로 사용하자는 상주를 올렸다. 『淸季中日韓關係史料』, 1085~1088쪽의 12월 10일자 「禮部文」을 참조.

청렴하고 유능한 고위 관원을 골라 파견하여, 시기가 되면 조선의 배신 어윤중과 함께 현지를 답사하여 협상을 하고, 각지 상황에 따라서 상세한 장정을 논의하며, 이것을 보고 받으면 다시 해당 장군과 부윤 대신 등이 함께 헤아려 상의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의 부서에서는 상세하고 신중하게 다시 따져서 결론을 내린 다음 그 결과를 상주하여 황상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응당 성경장군과 봉천부윤, 태복시경 오대징에게 이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도록 지시를 내려주시기를 우러러 간청하는 바입니다. 이들에게 각기 자문을 보내 알리고, 조선국왕에게도 자문으로 답장을 하는 외에도 응당 주점을 갖추어 역참을 통해 상주해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엿드려 빌건대 황태후·황상께서 살펴보시고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삼가 주를 올립니다.

광서 8년 12월 10일에 군기대신이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다.

해당 아문에 알려라. 편(附片) 1건과 첨부 서류(粘單) 2건도 아울러 발송하라.
이상.

첨부문서(清單) 초록(照錄) :

조선국왕이 보낸 咨文 1건을 照錄하여 삼가 살펴보시도록 올리는 바입니다.

조선국왕이 자문으로 알립니다.

살펴보건대, 弊邦의 義州·會寧·慶源 지역에서는 上國의 변계 백성과 호시를 할 경우, 종래에는 모두 (조선의) 관원들이 주관하여 곤란한 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다행히 귀 대신께서 이전부터 내려온 폐단을 안타깝게 여기고 오래된 곤란함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해주시고자 하여, 시기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종래의 관행을) 變通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양국의 변경지역 가운데 柵門·琿春과 義州·會寧·慶源 등 지역에서 백성이 수시로 왕래하며 교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전의 관례는 모두 없애기로 정하여, 그 내용을 水陸貿易章程 제5조에 삽입하고, 황상께 보고하여 유지를 받은 다음 결정을 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귀 대신께서 藩服을 영원토록 돌봐주시는 皇上的 지극한 뜻을 우러러 본받은 일로, 삼가

은 나라의 신하·백성과 함께 손뺌을 치며 축하하는 바이며, 그 은혜는 도무지 갚을 길이 없을 정도입니다. 한편 그 상세한 章程에 대해서는 곧 관원을 선발해 그곳으로 보내 함께 상의한 후 적절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副護軍 魚允中을 내년 2월 초순에 義州로 보내고, 4월 하순에는 회녕·경원 지역으로 옮겨가서 직접 조사한 다음 논의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번거롭겠지만 귀 대신께서도 관원을 보내 기간에 맞춰 함께 조사하여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시하여 주십시오. 기한을 정해 관원을 파견하는 일 외에도, 마땅히 문서를 갖추어 咨文으로 알려야 하는 바이니, 귀 대신께서는 살펴보고 답장을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자문은) 광서 8년 10월 17일에 발송하여 12월 6일에 도착하였다.

광서 8년 12월 10일에 군기대신은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다.

알았다.

이상.



동북아역사재단
NORTH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문서번호 : 1-3-1-03 (664, 1093b)

사안 : 관원의 파견을 상주하여 요청하였다는 점을 편지로 전합니다(函述奏請派員).

날짜 : 光緒八年十二月十一日(1883년 1월 19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署北洋大臣 李鴻章

十二月十一日, 致署北洋大臣李鴻章函[詳見密檔]

草目. 函述奏請派員.

12월 11일에 署北洋大臣 李鴻章에게 서한[函]을 보냈다[密檔에 자세히 보인다].

내용 요약 : 관원의 파견을 상주하여 요청하였음을 편지로 전합니다.

(4) 문서번호 : 1-3-1-04 (665, 1094a)

사안 : 조선국왕이 관원을 파견해 함께 공동감계를 할 것을 요청한 사안 및 무역장정을 다듬어 정하고, 총포와 탄약을 발급해 준 것에 대해 謝恩하는 내용 등을 북양대신이 상주하였는데, 이에 대해 내려진 황상의 유지를 초록하여 알리는 바입니다(北洋具奏 朝鮮國王請派員會勘邊界及申謝訂定貿易章程, 撥給槍炮彈藥等摺片, 錄旨知照).

날짜 : 光緒八年十二月十一日(1883년 1월 19일)

발신 : 禮部

수신 : 總理衙門

十二月十二日, 禮部文稱.

主客司案呈.

光緒八年十二月初十日, 軍機處片交署北洋通商大臣李奏朝鮮國王咨請派員會勘邊界事宜一摺, 本日軍機大臣奉旨.

該衙門知道. 片一件, 單二件. 併發.

欽此.

又另片.

奏朝鮮國王申謝所訂商民水陸貿易章程, 並撥給槍砲藥彈各項, 交該國王領回. 等因.

又照抄朝鮮國咨二件. 均於本日軍機大臣奉旨.

覽.

欽此.

相應恭錄諭旨，知照總理衙門查照可也.

12월 12일에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본 예부의)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광서 8년 12월 10일에 署北洋通商大臣 李鴻章이 조선국왕이 관원을 파견해 공동감계를 하자고 자문으로 요청한 내용을 상주한 附片에 대해 오늘 군기대신이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다고 군기처에서 알려 왔습니다.

해당 아문에 알려라. 부편 1건과 첨부자료 2건도 아울러 발송하라.

또한 (군기처에서 함께) 보낸 또 다른 부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조선국왕이 商民水陸貿易章程을 다듬어 정하고, 총포와 폭약 등을 지급하여 수령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보내왔다는 것을 (이홍장이) 상주합니다.

아울러 그는 조선국왕의 자문 2건을 그대로 초록하여 올렸는데, 이것들에 대해 오늘 군기 대신은 각각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알았다.

따라서 마땅히 삼가 유지를 초록하여 총리아문에 알려드려 참조하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 문서번호 : 1-3-1-05 (685, 1118a-1119a)

사안 : 東邊道 陳本植을 보내 조선 배신 어윤중과 함께 공동감계를 시행하고 아울러 中江 지역에 稅關(및 分所)을 설치해 互市할 장소로 삼고자 합니다(派東邊道陳本植與朝鮮陪臣魚允中會勘邊界並於中江地方設立關卡以爲互市之地).

날짜 : 光緒九年正月十九日(1883년 2월 26일)

발신 : 軍機處

수신 : 總理衙門

正月十九日, 軍機處交出盛京將軍崇綺等摺稱.

奏爲 派員會勘邊界事宜, 並就近設卡, 以符奏案, 恭摺具陳, 仰祈聖鑒 事.

竊努才¹⁴等前因朝鮮“邊民交易, 改爲隨時往來, 亟宜嚴定限制, 並申明禁令, 以固邊防.” 當經悉心會核, 擬於“中江地方, 就近躡擇設立關卡, 以爲互市之地.” “其餘地方, 仍應永遵例禁, 卽請領執照, 採買土貨, 亦抵准由鳳凰邊門出入, 仍由貢道折回, 不得肆意游行, 有違成憲.” 其“鴨綠江以內” “各處河口”, “益申前禁, 兩國人民概不得以濱海隨其捕魚藉口影射往來, 致啓侵踰之漸.”¹⁵ 等因. 奏奉諭旨, 令經總理各國事務衙門·李鴻章再行妥議章程, 會商禮部具奏. 嗣准李鴻章咨開.

據朝鮮國王咨請派員會勘邊界事宜, 奏請飭下奴才揀派廉正明練大員, 屆期會同朝鮮陪臣魚允中, 踏勘妥商, 各就地方情形, 擬議詳細章程, 稟由奴才等公同斟酌, 咨商該大臣請旨遵辦.

等因. 抄錄原奏, 並恭錄諭旨知照前來.

奴才等查明朝鮮與奉天接壤處所, 均係東邊道所轄地面, 該道陳本植係創辦東邊事務

之員，於該處山河道里·風土人情，最爲熟悉，堪以委令會同朝鮮陪臣妥商擬議。正在繕摺具奏間，復准總理各國事務衙門，將會議奏准朝鮮通商事宜鈔摺，咨會奴才等。詳核所奏，如朝鮮採買土貨，祇准由鳳凰邊門出入，以及鴨綠江內河口，仍申前禁各節，均照奴才等議奏蒙俞允。應即分飭各員，實力遵行。至邊民互市設立關卡一節，據稱。

如慮邊民往來過廣，不足以謹防閑，就近於中國擇地立卡，自可俟踏勘後，體察商情辦理。

等語。

查奴才等前奏，擬於鴨綠江對岸中江地方，就近躡擇設立關卡，以爲互市之地，原係於體恤商情之中，藉嚴邊禁之意。此次總理各國事務衙門會議就近設卡之處，既與奴才等所奏並無不符。自應即行飭知東邊道陳本植，以憑遵照，其一切詳細章程，仍由該道員會同踏勘後，妥商擬議，稟由奴才等公同斟酌，咨商署北洋大臣李鴻章，請旨遵辦，以昭詳慎而期周密。除咨明總理各國事務衙門·禮部·北洋大臣外，理合恭摺具陳，伏乞皇太后皇上聖鑒訓示。謹奏。

光緒九年正月十九日，軍機大臣奉旨。

該衙門知道。

欽此。

1월 19일 군기처에서 盛京將軍 崇綺 등이 올린 주접을 보내왔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14) 여기서의 노재(奴才, 奴材)라 쓰여 있는데, 이것은 명청대의 환관이나, 청대 팔기소속 문무관원이 황제에 대해 자신을 칭하는 용어이다. 청대 기적(旗籍) 가정의 노복은 주인에 대해 자신을 노재라고 칭하였으며, 팔기 소속의 관리도 마찬가지로 황제에게 노재(奴才)라고 칭하였던 것이다. 한족 관리의 경우 보통 신(臣)이라고 자칭하였던 것과는 구별된다고 하겠다.

15) 이 부분은 원래의 상주문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편의상 필요에 따라 일부씩 간접 인용을 한 부분이다. “ ”안의 부분이 원 상주문에 담긴 내용이다. 원 상주문은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故宮博物院 編, 北京: 1932) 卷3의 資料 164, 「盛京將軍崇綺等奏朝鮮交易往來宜定限制摺」(光緒 8年 11月 初7日), 38b-40a에 실려 있다.

관원을 파견해 공동감계를 시행하고 아울러 가까운 곳에 세관(및 분소)을 설치함으로써 앞서 상주를 올린 사안에 부합하고자 합니다. 삼가 주점을 갖추어 아뢰어 살펴 주시기를 우러러 바라는 바입니다.

저희들은 전에 조선 “邊民과의 교역을 수시로 왕래하도록 고치는 것에 대해 가급적 엄격히 제한하고 아울러 금지령을 다시 밝혀서 邊防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상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함께 검토한 결과, “中江 지역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해 세관을 설치한 다음 互市 장소로 삼고”, “그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응당 영원토록 과거의 금지령을 준수해야 하니, 통행증(執照)을 신청하여 수령 받은 다음에야 (조선 상인은 중국의) 토산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역시 다만 봉황성의 변문만을 통해 출입하고 기존의 조공로(貢道)를 거쳐 돌아가야 하지, 제멋대로 여행하며 기존 법규를 어기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압록강 이내”의 “各地 河口”에 대해서는 이전의 금령을 더욱 강조하여, 양국 백성이 해안 지역에서 어획하는 것을 구실로 삼아 왕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점차 국경을 침범하는 일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상주하여 그에 관한 상유를 받았었는데, 지금 총리아문 및 李鴻章이 다시 章程에 대해 적절하게 논의하고 예부와 함께 상의한 다음 상주를 하였습니다. 뒤이어 李鴻章이 (이에 대해) 보낸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조선국왕이 관원을 파견해 함께 공동감계를 할 것을 요청하는 咨文을 받고 다음과 같이 상주하여 요청하였습니다. 성경장군 등으로 하여금 청렴하고 경험 많은 고급 관원을 파견하여 기간에 맞춰 조선의 배신 어윤중과 함께 직접 조사한 다음, 적절하게 논의하여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상세한 章程을 논의하여 마련하되, 그 결과를 보고하면 성경장군 등이 공동으로 점검하고 이홍장에게 자문으로 논의를 한 다음 유지를 주청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장은 이상의) 原奏를 초록하고 아울러 그에 대해 내려진 유지를 삼가 베껴 저희에게 알려 왔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건대 조선과 奉天이 맞닿은 곳은 모두 東邊道の 관할지역입니다. 동변도 道臺인 陳本植은 동변도의 사무를 처음 시작한 관원으로 해당 지역의 산천·도로 및 풍수·인정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조선의 배신과 함께 적절히 논의하여 방안을 작성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마침 주점을 갖추려는 사이에, 총리아문에서 조선과의

통상사무에 관해 논의하여 상주한 내용을 咨文으로 알려진 주접 초록을 받았습니다. 해당 주접을 자세히 살펴보니, 조선에서 물품을 매매할 때는 鳳城의 邊門을 통해서만 출입하고, 압록강 이내의 하구에 대해서는 과거의 금령을 다시 밝혀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모두 저희들이 논의하여 상주한 바에 따라 운허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응당 각 관원에게 각기 힘을 다해 따라서 시행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邊民의 互市에 세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가령 邊民들의 왕래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제대로 막아내기 어렵다고 염려되면, 중국에 가까운 지역을 골라 세관 분소를 세우고, 현지 감계가 끝난 다음 무역 상황을 살펴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앞서 압록강 맞은편 中江 지역 중 가까운 곳에 직접 장소를 골라 세관 분소를 설치하여 互市할 지역으로 삼자하고 한 것은, 원래 상민의 입장을 체휼하면서도 이것을 빌어 邊禁을 엄격히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번에 총리아문에서 함께 논의하여 가까운 곳에 세관 분소를 세우고자 한 것은 저희들이 상주한 바와 결코 부합되지 않은 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응당 즉각 동변도 陳本植에게 앞서 결정한 내용을 따라서 시행하되, 그 모든 상세한 章程은 그가 (조선 배신과) 함께 직접 감계를 한 다음 적절하게 상의하여 마련하고, 그 다음 보고를 올리면 저희들이 함께 검토한 다음 署北洋大臣 李鴻章과 咨文으로 상의하고 나서 황상의 유지를 청하여 그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중함을 드러내고 주도면밀함을 피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총리아문·예부·북양대신에게 咨文으로 알려 확인하는 것 외에도, 마땅히 주접을 갖추어 아뢰어 황태후·황상께서 살펴보고 훈시를 내려주시기를 엿드려 간청하는 바입니다. 삼가 주를 올립니다.

광서 9년 1월 19일 균기대신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다.

해당 아문에 알려라.

이상.

(6) 문서번호 : 1-3-1-06 (686, 1119b)

사안 : 관원을 파견하여 공동감계를 시행하고 아울러 근처에 세관 분소를 설치하겠다고
공동으로 상주한 주점을 초록하여 咨文으로 보내오니 참고하십시오(鈔錄會奏派員會
勘邊界並就近設卡摺咨行查照).

날짜 : 光緒九年正月二十三日(1883년 3월 2일)

발신 : 盛京將軍 崇綺

수신 : 總理衙門

正月二十三日, 盛京將軍崇綺文稱.

於光緒九年正月初十日, 會奏爲派員會勘邊界事宜, 並就近設卡, 以符奏案等因一摺.
除俟奉到諭旨, 再行鈔錄咨照外, 合先抄奏咨行. 爲此合咨貴衙門, 請煩查照施行.

정월 23일 盛京將軍 崇綺가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 왔다.

광서 9년 1월 10일에, 관원을 보내 함께 공동감계를 실시하고, 아울러 근처에 세관 분소를
설치하여 이전의 상주한 사안에 부합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주점을 공동으로 상주하였습니
다. 유지를 받기를 기다려 다시 그것을 초록하여 자문으로 알리는 것 외에도, 응당 먼저 이
상주문을 초록하여 자문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귀 아문에 咨文을 보내오니
번거롭겠지만 참고하여 주십시오.

(7) 문서번호 : 1-3-1-07 (691, 1122b-1123b)

사안 : 彭光譽를 파견해 조선 陪臣 魚允中과 함께 互市에 대한 새로운 章程을 논의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擬派彭光譽會同朝鮮陪臣魚允中議定互市新章).

날짜 : 光緒九年二月初三日(1883년 3월 11일)

발신 : 軍機處

수신 : 總理衙門

二月初三日, 軍機處交出銘安·吳大澂摺稱.

奏爲 派員會同朝鮮陪臣議定新章, 按照出使外洋之例辦理, 恭摺仰祈聖鑒 事.
竊臣等前准臣李鴻章咨稱.

所有具奏朝鮮國王咨請派員會勘邊界事宜一摺, 抄錄原稿咨會.

前來.

臣等查原稿內云.

竊維奉, 吉地方交涉情形, 及列朝法制禁令, 隔省人員人地生疎, 恐其未能洞悉. 此次與朝鮮定章, 變通互市, 實爲體卹屬藩, 禁革積弊起見, 而嚴杜侵越, 豫防後患之處, 亦當熟悉深籌. 自應歸該將軍府尹大臣等, 揀派廉正明練大員, 屆期會同朝鮮陪臣, 踏勘妥商擬議.

等語.

臣銘安查此項差務, 從前不過派驍騎校等官前往監視. 與臣吳大澂咨商, 現當與屬藩更議交涉新章之際, 自非器識宏遠·才具精細之員前往不能勝任. 而吉林·甯古塔等處地方營務候補·差委各員, 本屬無多, 非奏派要差, 卽現署要缺, 一時實無可派. 各滿員雖

通漢文，派員會議章程，不能筆談，斷難得其體要，上無以尊國體，即可無以順藩屬。惟查有奏調邊務差委京員，丁憂後經臣銘安奏奉特准留募辦事，前刑部候補郎中彭光譽，器識宏通，有爲有守，於邊防吏治，均能細心講求。臣等往返函商，實非該員不能勝任。惟係丁憂人員，可否派往之處，會同咨商到臣李鴻章。查刑部郎中彭光譽，通達政體，才識很優，亦未有訪聞。若派人前往琿春與魚允中會議朝鮮通商事宜，均堪勝任。現雖在丁憂期內，自可比照出使外洋人員丁憂亦可派往之例辦理。咨覆內，臣等會銜奏派，俾符原案。合無仰懇天恩，俯念邊省人才缺乏，准照出使外洋人員丁憂亦可派往之例，派丁憂刑部候補郎中彭光譽，前往朝鮮屬之會寧慶源等處，合同陪臣魚允中踏勘通商地勢，妥議一切新章，以期得人而服屬國。如蒙恩允，遵卽筭飭該員迅速前往遵辦，所有援照出使外洋之例，派員會同朝鮮陪臣勘議通商新章緣由，理合會同署北洋大臣李鴻章，專摺具陳。伏乞皇太后皇上聖鑒，謹奏請旨。

光緒九年二月初三日，軍機大臣奉旨。

著照所請。該衙門知道。

欽此。

2월 3일 군기처에서 내려온 銘安·吳大徵의 주접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인원을 파견하여 조선의 陪臣과 함께 새로운 장정을 논의하여 정하는 것은 외국에 사신을 파견하는 사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삼가 주를 올리니 황상께서 살펴 주십시오.

신 등이 전에 이홍장이 보내온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선국왕이 자문을 보내 인원을 파견하여 공동감계를 하자고 요청한 주접의 원고를 옮겨 적어 자문으로 알립니다.

신 등이 원고를 검토해보니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생각건대 봉천과 길림 지방의 교섭상황과 역대 금지령에 대해서는 다른 성의 관원들은 사람이나 지리에 대해 문외한이라 아마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조선과

장정을 조인하여 기존 상황을 변통하여 互市를 시작하는 것은 실로 屬藩을 보살피고 누적된 폐해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변계를 침월하는 것을 엄격히 막아 훗날의 근심을 예방하겠다는 점도 깊이 고려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해당 장군과 부윤 대신 등으로 하여금 응당 청렴하고 유능한 고위 관원을 골라 파견하여, 시기가 되면 조선 배신과 함께 현지를 답사하여 적절하게 초안을 마련하게 해야 합니다.

신 銘安이 생각건대 이 파견 임무는 종전에는 驍騎校 등의 무관을 파견하여 감시하는 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吳大徵에게 공문을 통해 상의해보니 현재는 屬藩과 통상교섭과 관련된 새로운 장정의 개정을 논의하고 있으므로 도량과 식견이 넓고 멀며 재능 있고 세심한 인원을 파견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吉林·寧古塔 등지의 지방 군무를 담당하고 있는 候補나 差倅 등의 관원은 본래 수가 많지 않고, 상주를 통해 중요한 임무로 파견이 되거나 아니면 현재 임시로 요직을 대리하고 있으므로 지금으로서는 실제 파견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滿人 관원은 漢文에 능통한 경우가 거의 없고, 파견되어 장정을 함께 논의하게 된다고 해도 筆談을 나눌 수 없으니 결코 그 요령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로는 國體를 높일 수가 없고, 아래로는 藩屬國을 따르도록 설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변무 처리를 위해 상주를 통해 파견된 중앙관원[京員]으로 丁憂¹⁶⁾를 만났지만 이미 신 명안이 주를 올려 특별히 幕友¹⁷⁾로 남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바 있는 前 刑部候補郎中¹⁸⁾ 彭光譽만이 도량과 식견이 두루 통달하고, 장래성이 있고 절조가 있어서 변방의 행정사무를 모두 세심하게 강구할 수 있습니다. 신 등이 서신을 왕래하며 상의해보니 실로 그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우 기간 중인 인원이기 때문에 파견 여부는

16) 정우(丁憂)는 직계존속의 상을 당해 관직에서 약 3년 동안 벗어나는 것을 가리킨다. 부모의 사후 자녀는 3년상을 치르면서 관직에 나가지 않고 결혼하거나 연회에 참석하거나 과거에 응시하지 않는 과제의 예법에서 나왔다. 정우는 또한 정간(丁艱)이라고도 하며, 정내간(丁內艱)은 모친상, 정외간(丁外艱)은 부친상을 가리킨다.

17) 막우(幕友)는 지방의 군사·행정 관서에서 전곡, 형명, 문서관리 등의 처리를 도와주던 인원을 가리키는데, 국가로부터 내려지는 관직이 없이 지방장관이 개인적으로 초빙하면서 벗처럼 대우하기 때문에 막우라고 한다. 따라서 막우는 국가나 정부가 아니라 지방관에게만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18) 낭중(郎中)은 중앙 각부(各部)의 주관(主官)으로 정오품의 품급이다. 후보(候補)는 실제 관직(實缺)을 갖지 못한 관원이 임용을 대기하고 있으면 이부(吏部)에서 종합적으로 명단을 올려 직위나 자격, 대기반에 따라 월별로 추천하여 중앙 각부서의 아문이나 지방으로 보내는 것을 가리킨다. 돈을 내어 어떤 성이나 직분으로 가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성이나 직분의 명칭이 붙기도 한다.

함께 북양대신 이홍장에게 자문을 보내 상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刑部郎中 彭光響는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재능과 식견이 모두 우수하므로 결코 만나 본 적은 없지만 瑋春에 파견하여 어윤중과 함께 조선과의 통상사무를 논의하게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비록 정우 중이나 외국에 사신으로 보낼 인원은 정우 기간에도 역시 파견한 사례에 따를 수 있다고 답장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신 등은 공동명의로 주를 올려 그를 파견하여 그 사무를 맡기고자 하오니 황상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러러 바라옵니다. 변방의 인재가 부족함을 굶어살피시어 외국에 사신으로 파견한 인원이 정우 기간일지라도 역시 파견한 사례에 비추어 정우 중인 刑部候補郎中 彭光響를 조선의 회녕·경원 등지로 파견하여 배신 魚允中과 함께 통상할 지역의 지세를 실제로 조사하고 모든 새로운 장정을 적절하게 논의하게 함으로써 업무에 필요한 인재를 얻고 아울러 속국을 설득할 수 있기를 기대하오며, 만약 허락을 해주신다면 그에 따라 곧바로 그에게 신속하게 가서 지시대로 처리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외국에 사신을 파견한 사례에 비추어서 인원을 파견함으로써 조선 배신과 함께 통상에 관련된 새로운 장정을 논의하게 하려는 연유에 대해 擧北洋大臣 이홍장과 협의하여 응당 주접을 올려 아뢰는 바이오니, 황태후·황상께서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주를 올려 유지를 내려주실 것을 청합니다.

광서 9년 2월 3일에 군기대신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다.

청한 바에 따라 해당 아문에 알려라.

이상.

(8) 문서번호 : 1-3-1-08 (699, 1129a)

사안 : 관원을 파견해 공동감계를 시행하고 아울러 근처에 세관 분소를 설치하겠다고 공동으로 상주한 다음, 유지를 받았으므로 삼가 초록하여 알리는 바입니다(會奏派員會勘邊界並就近設卡摺, 奉旨恭錄知照).

날짜 : 光緒九年二月十二日(1883년 3월 20일)

발신 : 盛京將軍 崇綺

수신 : 總理衙門

二月十二日, 盛京將軍崇綺文稱.

光緒九年正月初十日, 會奏派員會勘邊界事宜, 並就近設卡, 以符奏案等因一摺, 當經抄奏咨行在案. 茲於本月二十七日, 奉到回摺, 後開軍機大臣奉旨.

該衙門知道.

欽此.

除欽遵並分行外, 相應恭錄諭旨咨行. 爲此合咨貴衙門欽遵查照施行.

2월 20일에 盛京將軍 崇綺가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광서 9년 1월 10일 관원을 파견하여 공동감계를 시행하고 아울러 근처에 세관 분소를 설치하여 이전에 상주한 사안에 부합시키겠다고 공동으로 상주한 주점은 이미 奏文을 초록하여 咨文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2월 27일에 다시 되돌아온 그 주점을 받았는데, 뒷부분에 軍기대신이 받는 다음과 같은 유지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아문에 알려라.

참가 이에 따라 각기 관련된 곳에 알리는 것 외에도, 마땅히 유지를 초록하여 자문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귀 아문에 咨文을 보내오니 참가 준수하여 참고해 주십시오.



(9) 문서번호 : 1-3-1-09 (792, 1257b-1258a)

사안 : 관원을 파견해 琿春과 片通 지방의 한·중 접경지역을 조사하여 그리고, 아울러 康熙 53년의 石標銘文과 찾아낸 石片의 문자를 초록했습니다. 이에 立案해주기를 상주하여 청합니다(派員勘查琿春, 片通地方中韓界坻繪圖並錄康熙五十三年石標銘文殘石拓片奏請立案).

날짜 : 光緒九年十二月初一日(1883년 12월 29일)

발신 : 軍機處

수신 : 總理衙門

十二月初一日, 軍機處交出希元鈔片稱.

再,¹⁹⁾ 查接管卷內, 前因朝鮮慶源府民, 有攔阻片通地內新放地戶種地等情. 經前署將軍玉亮, 督辦甯古塔等處事宜·太常寺卿吳大澂, 檄令奏派會同朝鮮陪臣勘議「吉林·朝鮮商民貿易地方章程」前刑部郎中彭光譽, 就便會同琿春副都統前往勘明片通地方, 是否應屬琿春, 詳細聲覆. 去後.²⁰⁾ 旋據該郎中呈報.

會同查明片通地內, 有康熙五十三年朝鮮重刻明宣德間上水石標銘一通. 又訪得原刻中水·下水石標故址, 掘出有字踐石數片. 以理推測, 康熙五十三年以前, 其為朝鮮之地無疑. 康熙五十三年以後, 由琿春副都統飭司徧查, 並無別項分界案, 按據則仍為朝鮮之地, 當無疑義. 繪具地圖, 鈔錄朝鮮原送石標全文, 有字踐石塌本, 呈請擬示.

並稱.

邊禁既開, 應請奏明咨會朝鮮國王, 由中外地方官, 將沿江上下交界勘明, 繪圖立案,

及朝鮮攔江壩故址，行由該國王轉飭盡行拆毀。

等情。

經該署將軍等擬，既經詳細勘明三標故址，顯然決非近年侵佔可知，卽照會朝鮮魚使臣，曉諭朝民，俾各安業，毋使失所。至攔江筑壩，於水利農田，不無妨碍，自應奏明禁止，以免沖刷而社紛爭。未及具奏，玉亮因病出缺，吳大澂奉旨西上。除沿江界址 候該郎中派查土門江源聲覆到日再議，及照錄照繪該郎中原呈等件，咨送禮部備查外，理合附片具陳，伏乞聖鑒，飭部核咨施行。謹奏。

光緒九年十二月初一日，軍機大臣奉旨。

覽。

欽此。

12월 1일에 군기처에서 길림장군 希元이 올린 다음과 같은 附片의 초록을 보내왔습니다.

(새로 길림장군에 부임하여) 인계를 받은 서류 가운데, 전에 조선 慶源府의 백성이 片通 지역 내에 새로 토지를 나눠 받은 농민들의 작물재배를 막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前署將軍 玉亮과 督辦甯古塔等處事宜·太常寺卿 吳大澂이 조선의 배신과 함께 「吉林·朝鮮商民貿易地方章程」을 논의하도록 상주를 통해 파견된 형부낭중 彭光譽로 하여금 바로 혼춘부도통과 함께 현지에 가서 片通 지역이 과연 혼춘 소속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 후 곧 해당 郎中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함께 가서 조사해보니 片通 지역에는 上水 石標銘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은 조선에서 明 宣德 연간에 세웠다가, (淸) 康熙 53년에 重刻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찾아보니 中水·下水

19) 여기서 재(再)는 추가적으로 첨부해서 이야기한다는 뜻(post script)이다. 상주문에 첨부된 부건(附件)으로 독립 상주문으로 쓸 만한 내용이 아닌 간단한 상주인 편(片)의 경우, 보통 이 용어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 거후(去後)는 어떤 일의 처리나 문서의 발송을 완료하였다는 뜻으로 그리고 그 이후(또는 그 때문에) 다음의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알리는 구절이라고 보면 된다.

石標의 옛터가 있어 글자가 있는 돌 몇 조각을 파냈습니다. 이치로 따지건대 康熙 53년 이전 그곳이 조선의 땅임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康熙 53년 이후 혼춘부도통이 屬官으로 하여금 두루 조사하게 했는데 달리 分界에 관한 사항이 전혀 없으므로, 이에 근거하면 여전히 이곳이 조선 땅이라는 점은 응당 의심할 만한 점이 없습니다. 지도를 그리고 조선에서 처음에 보내온 石標의 전문과 글자가 있던 石片의 答本을 초록해서 올리면서 지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邊禁이 이미 풀렸으니 마땅히 조선국왕에게 咨文을 보내 중국·조선 지방관이 沿江 상하의 交界地域을 명확히 조사하고 지도로 그려 立案하는 문제, 그리고 강을 가로막고 있는 조선의 옛 제방 터를 조선국왕에게 공문을 보내 그쪽에서 모두 철거시키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 상주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해당 署將軍 등은 세 개의 석표가 있는 옛터를 이미 명확히 확인하여 결코 최근에 침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조선 陪臣 어윤중에게 조회하여 조선 백성에게 알려 각기 그곳에서 안주하게 하여 그 땅을 잃지 않게 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을 막고 제방을 쌓은 것에 대해서는 水利와 농사에 방해됨이 없을 수 없으니, 응당 상주하여 금지시킴으로써 농토가 유실되고 양쪽 마을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처 이런 내용을 상주하기 이전에 (전임 장군) 玉亮이 병으로 인해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 吳大澂은 유지를 받아 서쪽으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沿江 경계지역은 토문강 수원을 조사하도록 파견된 璜光예 낭중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알리면 다시 논의하는 것 외에, 해당 낭중의 원 보고문건 등을 초록하고 지도를 베껴 그려 咨文으로 禮部에 보내 검토하게 하였습니다. 응당 附片으로 아뢰어야 할 것이니, 삼가 살펴보고 예부에 지시하여 자문을 검토한 다음 처리하라고 지시해주시기를 엿드려 빕니다. 삼가 주를 올립니다.

광서 9년 12월 1일에 군기대신이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다.

알았다.

이상.

(10) 문서번호 : 1-3-1-10 (825, 1336b-1337a)

사안 : 朝鮮 慶源府로 하여금 변민을 단속해 開市하기 전에 불법적으로 왕래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令朝鮮慶源府約束邊民勿在開市之前私行往來).

첨부문서 1 : 「琿春副都統 依克唐阿가 조선 경원부에 보내는 照會(琿春副道統依克唐阿致朝
鮮慶源府照會)」 : 開市通商 이전에 邊民이 멋대로 왕래하는 것을 엄격하게 단
속하기를 요청합니다(開市通商之前請嚴禁邊民勿任私行往來).

날짜 : 光緒十年二月初七日(1884년 3월 4일)

발신 : 吉林將軍 希元

수신 : 總理衙門

二月初七日, 吉林將軍希元文稱.

本年正月二十一日, 准琿春副都統依克唐阿咨報.

竊查朝鮮邊民, 因知議准通商, 撤除邊禁, 沿江一帶, 遂任意往來, 不但稽查不易, 尤恐滋生事端, 殊覺不便. 是以照會慶源府, 令其行知沿江各處, 約束邊民, 勿任私行來往, 以俟通商官員至日, 會同開市, 方與事體相合. 除照會朝鮮慶源府查照外, 合將照會鈔粘文尾, 呈請咨報. 爲此咨報將軍衙門查核可也.

等因. 前來.

相應鈔錄照會, 呈報總理衙門, 謹請查核施行.

照錄連單.

爲 照會 事.

現在邊界通商, 雖然章程已定, 而通商官員尚未臨蒞, 一切事務均未委設, 若任邊民私行往來, 難免不無滋出事故. 合亟照會慶源府, 行知沿江各城, 約束邊民, 勿任私行來往. 須俟通商官員至日, 會同安設妥當, 開市通商, 則稽查彈壓亦有所歸, 於事體, 政體始屬相合. 爲此照會貴府使, 請煩查照, 希卽行知沿江各城, 一體約束邊民, 勿任私行往來, 靜候通商官至日, 再會同開市可也.

2월 7일에 吉林將軍 希元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올해 1월 21일에 혼춘부도통 依克唐阿가 다음과 같은 咨文을 보내왔습니다.

조선 邊民들이 통상이 허락되어 邊禁이 철폐되리라는 것을 알고沿江일대에서 멋대로 왕래하고 있는데, 비단 점검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말썽이 생길까봐 염려되어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원부에 照會를 보내沿江 각처에 알려 邊民을 단속하여 멋대로 개인적으로 왕래하지 못하게 하고, 通商관원이 도착하여 함께 開市 작업을 마무리하기를 기다려야 비로소 적절한 일 처리가 될 것입니다. 조선의 경원부에 照會하여 참고하게 하는 것 외에, 마땅히 照會를 초록하여 문서 뒤에 첨부하여 올리면서 咨文으로 알려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에 장군아문에 咨文으로 보고하오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과 같은 자문을 받았으므로 마땅히 照會를 초록하여 총리아문으로 보고하니, 삼가 검토하여 주시기를 청하는 바입니다.

첨부문서 1 : 琿春副都統 依克唐阿 照會의 초록

조회를 보내 알립니다.

지금 邊界通商은 비록 章程이 이미 정해졌지만 通商官員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모든 사무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邊民들이 멋대로 왕래하는 것을 방임한다면 사고가 생겨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땅히 서둘러 경원부로 照會하여沿江各城에 알려 邊民을

단속하여 멋대로 개인적으로 왕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통상관원이 도착하여 함께 적절하게 모든 조치를 취하고 開市通商을 시작하기를 기다려야만, 치안 유지 또한 역시 책임소재가 제대로 가려지고, 사무 처리와 행정의 원칙에도 비로소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貴府使에게 조회를 보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참조하셔서 沿江各城에 알려, 모두 邊民을 단속하여 개인적으로 왕래하는 것을 막고, 조용히 통상관원이 도착하기를 기다린 다음, 그때 가서 다시 함께 開市事務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11) 문서번호 : 1-3-1-11 (916, 1524a)

사안 : 상유에 따라 조선과의 접경지역 邊防事務에 대해 마련한 대책을 상주하는 바입니다
(具奏遵旨籌備朝鮮交界地方邊防事宜).

날짜 : 光緒十年十一月初九日(1884년 12월 25일)

발신 : 盛京將軍 慶裕

수신 : 總理衙門

十一月初九日, 盛京將軍慶裕抄摺[詳見密檔]

草目. 具奏遵旨籌備朝鮮交界地方.

11월 9일, 盛京將軍 慶裕의 奏摺 초록[密檔에 자세히 보인다].

내용 요약 : 상유에 따라 조선과의 접경지역 [邊防事務에 대해 마련한 대책]을 상주하는 바입니다.

(12) 문서번호 : 1-3-1-12 (1030, 1889b-1890a)

사안 : 관원을 파견하여 토문강의 舊界를 조사해주실 것을 청하며, 咨文으로 보내오니 대신 상주해 주십시오(咨請轉奏派員查勘土門江舊界).

날짜 : 光緒十一年六月二十二日(1885년 8월 2일)

발신 : 朝鮮國王

수신 : 總理衙門

六月二十二日, 朝鮮國文稱.

照得敝邦西北疆域, 原以土們江爲界. 於康熙五十一年, 烏拉總管穆克登, 奉旨查邊, 勒石立分水嶺上, 以土們江以南以北, 定爲上國朝鮮界限. 敝邦慮邊民或爭哄滋擾, 以貽憂上國, 空土們以南之地, 禁民不得入居. 適年以來, 往往移就空地築室耕田, 邊禁之漸久漸弛, 固敝邦地方官責耳. 乃若其地實係敝邦, 以敝邦之民居敝邦之地, 宜無不可. 後人不知, 反認豆滿爲界, 至癸未年間, 敦化知縣照會敝邦該地方官 刷還農民. 恐境界不明, 致日後兩界民人爭哄不息. 據去年冬至兼謝恩正使金晚植 副使南廷哲, 已將此事狀呈文禮部, 仍將地圖碑文等件, 請禮部替存, 以資後考. 查此事有關境界, 亦係後弊, 理宜一番查勘, 申明舊疆. 茲派副司直李應浚, 齎咨前往, 望煩貴王公諸大臣, 將此事理轉奏天陛, 仍派員踏勘, 酌核辦理, 以明舊疆, 以息邊擾, 幸甚. 爲此相應備文咨明, 請貴王公諸大臣, 查照酌復.

6월 22일, 조선국왕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조선의 서북 강역은 원래 土門江을 경계로 하여 왔습니다. 강희 51년 烏喇總管 穆克登이 유지를 받들어 변계를 조사한 다음, 돌에 새겨 분수령 위에 세워놓아, 土門江 이남과 이북으로 중국과 조선의 경계를 삼았던 것입니다. 조선에서는 변민이 혹시 다투다가 소란을 일으킴으로써 중국에 폐를 끼칠까 염려하여 토문강 이남 지역은 비워둔 채 백성이 들어가 살지 못하도록 해 왔습니다. 최근 종종 그 빈 땅으로 이사하여 집을 짓고 경작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변경 금지령이 오래되면서 점차 해이해졌는데, 이는 진실로 저희 지방관의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은 실은 조선 땅이므로 조선 백성이 거기 거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 사람들은 [이런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豆滿江을 경계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癸未年(광서 9[1883]년)에 이르러 敦化縣에서 조선 지방관에게 조회를 보내 농민을 거두어들이라고 요구했는데,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양쪽 백성의 다툼이 그치지 않을 것으로 염려됩니다. 그래서 작년 冬至使 兼 謝恩使로 正使 金晚植과 副使 南廷哲이 이에 관한 공문을 예부에 올리고, 아울러 地圖와 碑文 등은 예부에서 잠시 보존하여 나중에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국경에 관한 것이자 나중의 문제와도 관계되는 것이니, 응당 한 차례 조사를 통해 옛 강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副司直 李應浚을 파견하여 자문을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귀 王公諸大臣께서 이 문제를 대신 황상께 상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조사한 다음 처리하여 옛 강계를 명확하게 하고 변경의 말썽거리를 잠재울 수 있다면 큰 다행이겠습니다. 이에 응당 문서를 갖추어 자문을 보내 알리니, 貴王公諸大臣께서 살펴보고 답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13) 문서번호 : 1-3-1-13 (1037, 1898a-1899a)

사안 : 조선국왕이 土門江 舊界를 조사하는 문제를 (예부에서) 대신 상주해달라고 咨文으로 요청해왔으니, 吉林將軍에게 관원을 파견해 직접 가서 답사하도록 지시해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朝鮮國王咨請代奏踏勘土門江舊界, 請飭吉林將軍派員履勘).

첨부문서 : 1. 「조선국왕의 咨文(朝鮮國王咨)」 : 土門江 舊界를 조사해주십시오(請查勘土門江舊界).²¹⁾

날짜 : 光緒十一年七月六日(1885년 8월 15일)

발신 : 軍機處

수신 : 總理衙門

七月初六日, 軍機處交出禮部摺稱.

光緒十一年六月二十一日, 據朝鮮國王李特遣齋咨官李應浚齋到咨文一件. 臣等共同閱看係,

因土們江舊界請派員踏勘, 以息邊擾.

等情.

臣等查本年二月間, 據朝鮮國進貢使臣金晚植等呈稱.

土們江疆界不明, 繪具地圖等件, 懇請代奏.

當經臣部以事關兩國邊界, 未便僅憑該使臣等一紙呈詞, 遽行代奏. 當將原呈發還, 其

21) 바로 앞에 수록된 내용이라 여기서는 목록만 남기고 생략하도록 한다. 다만 그 내용을 보면 수신자가 왕공제대신(王公諸大臣)에서 부당대인(部堂大人)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앞 번호의 자료처럼 총리아문에 보낸 것이 아니라 예부로 보낸 자문이었기 때문이다.

所遞地圖等件存部備查 在案. 今該國王遣使來京, 以踏勘土們江舊疆, 咨請代奏. 事關疆界, 自應澈底清查, 應請飭下吉林將軍, 速派妥員詳細覆勘, 奏明辦理. 除將該齋咨官李應浚等安置會同四譯館居住, 所有例賞筵宴事宜, 應由臣部照例辦理外, 謹抄錄該國王原咨, 恭呈御覽. 爲此謹奏請旨.

光緒十一年七月初六日, 軍機大臣奉旨.

該衙門議奏.

欽此.

照錄抄單 : 「朝鮮國王咨」 생략(바로 앞 번호의 자료에 수록된 것과 같은 내용임).

7월 6일 軍機處에서 다음과 같은 禮部의 문서를 보내왔다.

광서 11년 6월 21일 조선국왕²²⁾이 특별히 파견한 자문전달관[齋咨官] 李應浚이 가져온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공동으로 열람해보니 다음과 같은 요청이었습니다.

토문강의 옛 경계 때문에 인원을 파견하여 답사함으로써 변경의 소란을 잠재웠으면 합니다. 신 등은 원래 올해 2월에 조선의 進貢使臣 金晩植이 올린 다음과 같은 탄원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²³⁾

토문강 강계가 명확하지 않아 지도 등을 그려 보고하는 바이니, 청컨대 대신 상주하여 주십시오.

(그렇지만) 이 사항은 양국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단지 해당 사신의 탄원서 한 장에 의지하여 대신 상주하기는 불편하였으므로 원건은 다시 전달한 곳으로 돌려보내고, 지도 등은 저희 예부에 보존하여 나중에 참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조선국왕이 파견한

22) 원문에는 조선국왕의 이름이 쓰여져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하였다.

23) 이에 대해서는 『승정원일기』(고종 제9, 151c)나 『日省錄』, 『高宗實錄』 高宗 22年 4月 4日의 「동지 삼사(冬至三使)【正使 金晩植, 副使 南廷哲, 書狀官 尹命植】를 인견(引見)하였다(回還冬至使 金晩植·副使 南廷哲·書狀官 尹命植)」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신이 京師에 와서 토문강 옛 강계를 조사하는 문제로 자문을 전달하면서 대신 상주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사항이 강계에 관련된 것이니 응당 명확하게 조사할 터이므로, 길림장군에게 적절한 인원을 신속히 파견하여 상세히 조사하게 하고 상주하여 지시를 받은 다음 명확히 처리하도록 지시를 내려주실 것을 간청하는 바입니다. 해당 자문전달관 이용준 등은 會同四譯館²⁴⁾에 머무르게 하였고 상이나 연회 등 의례에 관계된 모든 사항은 예부에서 전례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만, 응당 삼가 조선국왕의 자문 원건을 옮겨 적어 살펴보시도록 올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삼가 주를 올려 유지를 청하는 바입니다.

광서 11년 7월 6일 군기대신은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다.

해당 아문에서 논의하여 상주하도록 하라.

이상.

첨부문서 초록 : 생략(바로 앞 번호에 수록된 자료와 같은 내용임).



24) 청대 예부 소속의 기구(官署)로 각국의 조공사절을 접대하는 임무를 맡았다. 순치 연간에는 회동관과 사역관으로 설치되었으나 건륭 연간 통합되었다. 여기에는 조선통사관(朝鮮通事官) 8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14) 문서번호 : 1-3-1-14 (1039, 1902b)

사안 : 조선 사신 金晩植 등이 제출한 지도 등을 본 총리아문으로 자문과 더불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請將鮮使臣金晩植等所遞地圖等件咨送本衙門).

날짜 : 光緒十一年七月八日(1885년 8월 17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禮部

七月初八日, 行禮部文稱.

光緒十一年七月初六日, 軍機處鈔交貴部代奏朝鮮國王咨請派員踏勘土們江舊界等因
一摺, 奉旨.

該衙門議奏.

欽此.

查原奏內稱.

本年二月間, 朝鮮使臣金晩植等所遞地圖等件存部備查.

等語.

希卽檢齊咨送本衙門, 以憑辦理可也.

7월 8일, 예부에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다.

광서 11년 7월 6일에 조선국왕이 관원을 파견해 土們江의 舊界를 조사해달라며 咨文을 보내
요청한 내용을 귀 예부에서 대신 상주한 것에 대해 군기처에서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으며

로 이를 초록하여 보냅니다.

해당 아문(총리아문)에서 논의하여 상주하게 하라.

원래의 상주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올해 2월쯤에 조선 사신 金晩植 등이 제출한 지도 등의 문건은 참고하기 위해 예부에 남겨두었습니다.

바라건대 바로 그것들을 점검해서 자문과 함께 보내 본 총리아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5) 문서번호 : 1-3-1-15 (1040, 1903a-1910a)

사안 : 조선국왕의 咨文을 대신 상주한 주접 부편, 그리고 조선국왕의 원 자문 등을 초록하여 보내니, 논의한 다음 상주하여 처리하십시오(錄送轉奏朝鮮國王咨文摺片及該國王原咨等件, 請議奏辦理).

- 첨부문서 : 1. 「예부 주접(禮部奏摺)」 : 조선국왕이 자문을 보내 토문강 舊界를 조사해달라고 하니, 길림장군에게 관원을 파견해 직접 조사하도록 지시해주십시오(朝鮮國王咨請踏勘土們江舊界, 請飭吉林將軍派員履勘).
2. 「예부가 상주한 주접 부편(禮部奏片)」 : 조선국왕이 자문을 보내, 조선 進貢使 일행의 모든 행장과 화물에 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해진 章程과 부합하지 않아 대신 상주하기 불편하다고 거절하였습니다(朝鮮國王咨請蠲徵該國進貢使員一切行李貨物稅課, 與定章不合, 未便代爲奏陳).
3. 「조선국왕의 원 자문(朝鮮國王原咨)」 : 토문강 舊界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대신 상주해달라고 자문으로 청하는 바입니다(咨請轉奏踏勘土們江舊界).
4. 「조선국왕의 원 자문(朝鮮國王原咨)」 : 進貢使 일행의 모든 행장과 화물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시기를 자문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咨請蠲免進貢使員一切行李貨物稅課).

날짜 : 光緒十一年七月九日(1885년 8월 18일)

발신 : 禮部

수신 : 總理衙門

7월 9일 예부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七月初九日，禮部文稱。

主客司案呈。

所有朝鮮國王遣官齋到咨文，本部抄錄原咨轉奏一摺，於光緒十一年七月初六日具奏，本日軍機大臣奉旨。

該衙門議奏。

欽此。

又同日具奏附片一件，軍機大臣奉旨。

該衙門議奏。

欽此。

相應抄錄原奏附片，並該國王原咨，知照總理各國事務衙門查照議奏，俟旨後 知照過部可也。

照錄清單

(1) 「禮部奏摺」：省略(문서번호 13의 자료와 같은 내용임)

(2) 「禮部奏片(再此次該齋咨官另齋咨文一件)」

據原咨內稱。

朝鮮國王 爲 咨會 事。

照得敝邦恭進年貢，歲歷三百，蒙列聖朝暨我皇上體恤深恩，凡屬進貢使臣，齋奏咨官等進京，及回國時其隨同員役所攜行李貨色，一切均與免稅。至光緒八年，北洋大臣奏開海禁，仍於中江設市，聽兩界邊民隨時往來交易，妥定稅章，務爲經遠之圖。

此固仰体我皇上撫綏藩服至意，俾小邦獲霑利益，攢手感頌，不任銜結。

夫海禁旣開，商務伊始，征稅一事，雖不得不舉，第事係勅行，弊又難言。每於征稅

之際，一行行李，貨色，除照斤數蠲免外，概用抽征，行之未幾，害已形現。查光緒八年十一月二十二日，承准禮部來咨。

節該。主客司案呈。

所有本部謹奏，為請旨事。

查臣部則例內開。

外國貢船所帶貨物，及貢使回國時所帶貨物，俱停其稅。又朝鮮人出入山海關，由該監督驗明鳳凰城城守尉印文，及禮部筭付相符者，免其輸稅。又朝鮮使臣，齎咨官到京所帶貨物，均由臣部行文崇文門監督免稅。定期在四譯館交易，中國商民購易朝鮮貨物，均不納稅。

歷經辦理在案。

查各國貢使所攜貨物，例得免稅，朝鮮恪守東藩，臣服最久，尤宜格外優容。現于各口岸准商民交易，所以優加體恤，原非推擴利權起見。查本年九月，議准朝鮮交易章程，如北洋大臣所請，必須預防流弊，審慎圖維。臣等伏惟朝廷撫綏藩服，較之各與國迥不相同，即以後各口岸交易，該商民應征稅課，諒必無多。其隨同貢使貿易者，尤必寥寥無幾。臣等再四思維，與其勾積微利，未必能裨益庫儲，何如推廣皇仁，轉藉以維持典禮，詳繹國家定制貢使免稅之深意。為此謹奏請旨。於本年十月二十二日奏，本日軍機處發出上諭。

嗣後該國朝賀·陳奏等使臣，齎咨官，自入境以及到京，所帶貨物仍照例免稅。其中國商民購易朝鮮貨物，如係該使臣等所帶，由朝鮮官出具切結，照四譯館交易成案，准予免稅。

本日奉旨。

知道了。

欽此。

相應鈔錄原奏，知照朝鮮國王欽遵辦理可也。

等因在案。

竊念此次所奉上諭，寔係我皇上曲賜體察，格外優惠之至仁盛意也。洪恩渥澤，迥出

尋常。第惟貢使來往，只為恭行典禮，原非有關貿易。即其隨同員役所帶貨物，本自零星，不可與私商往來視同一例，而就新稅章程中，紅參百抽十五，已有偏重之患，回貨之稅，分毫厘亦多吃虧之歎，每一番使行，便有多少碍難。若積以歲年，弊將有不可勝言者，非所以仰體我皇上撫綏體恤之仁，亦非部堂大人暨北洋大臣所以膝念弊邦曲費代籌之盛意也。茲派副司直李應浚齋咨前往，請煩部堂大人，將此情形轉奏天陛，嗣後貢使及齋咨官來回所帶行李·貨色，並照舊章特准蠲征。至邊民私商交易，應照新章納稅，以符定制，以廣皇仁，以垂敝邦無窮之惠，幸甚。為此相應備文咨請，煩部堂大人查照酌辦。

等情。

臣等查該國貢使及齋咨官攜帶貨物，例准免稅。自光緒八年該國與各國通商，經臣部奏奉諭旨。

嗣後該國朝賀陳奏等使臣，齋咨官所帶貨物，仍照例免稅，以後各口岸交易，應徵稅課。並着李鴻章於商辦詳細章程之時，會同朝鮮官通盤籌畫，應如何寬予限制設法變通之處，妥慎酌辦。

等因。欽此。欽遵在案。

嗣經李鴻章將「奉天與朝鮮邊民交易酌定詳細章程」二十四條，繕單具奏。其第八條內開。

朝鮮入京朝貢，典禮攸關，一切恪遵定例，貢物例不徵稅。其使臣及差官從人攜帶行李，零星物件，自應遵照部議，寬予限制。使臣不攜帶貨物，所帶衣服，行李，書籍，藥物，每員以三百斤為度。差官從人攜帶貨物，並圖沾潤，准帶紅參，每差官一員，定額二十斤。從人一名，定額十斤。又衣服·行李·零星貨物，每差官一員，定額一百六十斤，從人一名，定額八十斤。另有色裏，確係屏障粗重·途中食物，量予免稅。此外裝箱成捆，查係貨物，仍報明納稅。至於別項公務差官攜帶貨物，照章征稅，不准援免。

第九條內開。

中江貿易征收稅課，紅參一項，應納稅則，按價值百抽十五為定。

各等語。

光緒九年九月，經總理各國事務衙門會同戶部·臣部奏准亦在案。是該國貢使及齋咨官所帶貨物，分別免稅征稅，及紅參一項，值百抽十五均係奏定章程，自應永遠遵守。今該國王仍以照舊蠲征為請，核與定章未符，其事既非可行。臣部即未便代為陳奏，徒瀆聖聽。當將原咨發還來使，仍由臣部行文該國王，令其恪遵光緒九年奏准稅務章程辦理，毋得再行瀆請。謹將情由，附片奏聞。

(3) 「朝鮮國王原咨」：省略(문서번호 13의 첨부문서 1과 같은 내용임)

(4) 「朝鮮國王原咨」

朝鮮國王 為 咨會 事。

照得敝邦恭進年貢，歲歷三百，蒙列聖朝暨我皇上體恤深恩，凡屬進貢使臣，齋奏咨官等進京及回國時，其隨同員役所攜行李·貨色·一切均與免稅。至光緒八年，北洋大臣奏開海禁，仍於中江設市，聽兩界邊民隨時往來交易，妥定稅章，務為經遠之圖。此固仰體我皇上撫綏藩服至意，俾小邦獲霑利益，攢手感頌，不任銜結。

夫海禁既開，商務伊始，征稅一事，雖不得不舉，第事係初行，弊又難言。每於征稅之際，一行行李·貨色，除照斤數蠲免外，概用抽征，行之未幾，害已形現。查光緒八年十一月二十二日，承准禮部來咨。

節該。主客司案呈。

所有本部謹 奏為 請旨 事。

查臣部則例內開。

外國貢船所帶貨物及貢使回國時所帶貨物，俱停其稅。又朝鮮人出入山海關，由該監督驗明鳳凰城城守尉印文及禮部箭付相符者，免其輪稅。又朝鮮使臣齋咨官到京所帶貨物，均由臣部行文崇文門監督免稅，定期在四譯館交易，中國商民購易朝

鮮貨物，均不納稅。

歷經辦理在案。

查各國貢使所携貨物，例得免稅。朝鮮恪守束藩，臣服最久，尤宜格外優容。現于各口岸准商民交易，所以優加體恤，原非推擴利權起見。查本年九月 議准朝鮮交易章程，如北洋大臣所請，必須預防流弊，審慎圖維。臣等伏惟朝廷撫綏藩服，較之各與國迥不相同，即以後各口岸交易，該商民應征稅課，諒必無多，其隨同貢使貿易者，尤必寥寥無幾。

臣等再四思維，與其勾積微利，未必能裨益庫儲。何如推廣皇仁，轉藉以維持典禮，詳繹國家定制貢使免稅之深意。為此謹奏請旨。於本年十月二十二日奏，本日軍機處發出上諭。

嗣後該國朝賀陳奏等使臣齋咨官，自入境以及到京，所帶貨物仍照例免稅。其中國商民購易朝鮮貨物，如係該使臣等所帶，由朝鮮官出具切結，照四譯館交易成案，准予免稅。

本日奉旨。

知道了。

欽此。

相應鈔錄原奏，知照朝鮮國王欽遵辦理可也。

等因在案。

竊念此次所奉上諭，寔係我皇上曲賜體察，格外優惠之至仁盛意也。洪恩渥澤，迥出尋常。第惟貢使來往，只為恭行典禮，原非有關來視同一例。而就新稅章程中，紅參百抽十五，已有偏重之患，回貨之稅，分毫厘亦多吃虧之歎，每一番使行，便有多少碍難。若積以歲年，弊將有不可勝言者，非所以仰體我皇上撫綏體恤之仁，亦非部堂大人暨北洋大臣所以膝念弊邦曲費代籌之盛意也。茲派副司直李應浚齋咨前往，請煩部堂大人將此情形轉奏天陛，嗣後貢使及齋咨官來回所帶行李，貨色，並照舊章特准蠲征，至邊民私商交易，應照新章納稅，以符定制，以廣皇仁，以垂敝邦無窮之惠，幸甚。為此相應備文咨請，煩部堂大人查照酌辦。

(禮部)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조선국왕이 관원을 파견해 보내온 咨文을 본 예부에서 초록하여 광서 11년 7월 6일에 대신 상주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날 군기대신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서 논의하여 상주하라.

또 같은 날 附片 한 건도 아울러 상주하였는데, 군기대신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서 논의하여 상주하라.

(이러한 유지를 받았으므로) 마땅히 原奏와 附片을 초록하고, 아울러 조선국왕의 原咨를 총리아문에 알리니, 총리아문에서 검토한 다음 상주하여 유지가 내려오면 본 예부로 알려주시면 될 것입니다.

첨부문서 초록 :

(1) 「예부 주접(禮部奏摺)」[문서번호 13의 자료와 같은 내용임]

(2) 「예부가 상주한 주접 부편(禮部奏片)」

原 咨文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국왕이 자문으로 알립니다.

조선에서 공손히 年貢을 올린 지가 이미 3백여 년이 되었는데, 列聖朝 및 현재의 皇上으로부터 보살펴 주시는 깊은 은혜를 받아 進貢 使臣·상주문 전달관·자문 전달관 등이 경사가 가거나 돌아올 때 그 隨行 員役이 휴대한 行裝과 화물에 대해서는 모두 세금이 면제되었습니다. 광서 8년에 이르러 북양대신이 海禁을 열어주기를 상주하였고, 아울러 中江에 시장을 설치하여 양쪽 변민이 수시로 왕래하며 교역하는 것을 허락하고, 무역장정을 적절하게 정하여 힘써 장기적인 방안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진실로 皇上께서 藩服을 어루만져주시는 지극한 마음을 본받아 조선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신 것이니, 손을 모아 감격하여 송축하며 그 은혜를 이루 다 갚을 수 없는 바입니다.

海禁이 열린 다음 무역이 시작되었으니 징세 문제는 비록 시행하지 않을 수 없지만, 다만 일이 처음 행하는 것이라 폐단 또한 이루 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매년 징세할 때마다

일행의 행장과 화물에 대해 그 무게에 따라 (일정한 무게까지) 면제하는 것 외에는 (그 이상 무게에 대해서는) 모두 세금을 징수하게 되었는데,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서 8년 11월 22일에 예부에서 보낸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생략.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예부에서 삼가 주를 올려 유지를 청합니다.

臣部の 則例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外國 貢船이 가져온 물품 및 貢使가 귀국할 때 지니는 물품은 모두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또 조선인이 山海關을 출입할 때 해당 감독관은 鳳凰城 城守尉의 직인이 찍힌 공문[印文] 및 禮部에서 발행한 증빙 공문[筭付]이 서로 들어맞는지를 확인하여, 그 경우 모든 세금 납부를 면제한다. 또한 조선 사신 및 자문 전달관이 북경에 올 때 휴대하는 화물은 모두 禮部에서 崇文門 監督에게 공문을 보내 면제하고, 四譯館에서 시기를 정하여 교역하도록 허용하며, 中國 商民이 조선의 화물을 구매하는 경우 모두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한 이상의 규정에 따라 종래 이 문제를 처리해왔습니다.

조사해보건대, 各國 貢使가 가지고 온 화물은 의례적으로 세금을 면제해 왔고, 조선은 東藩을 성실히 지키며 가장 오래도록 臣服해왔으니 특히 각별하게 우대해야 합니다. 현재 각 개항장에서 (조선) 商民의 무역을 허락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하게 보살피 주기 위해서이지, 애초에 利權을 확장하려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올해 9월 조선과의 교역장정을 논의하여 허락받았으므로, 북양대신이 요청한 대로 반드시 폐단을 미리 막아 신중하게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臣 등이 생각건대, 조정에서 藩服을 생각해주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전혀 같지 않으니, 이후 각 개항장에서 무역을 할 때 조선 상민에게 응당 세금을 징수하겠지만 그 액수는 분명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進貢使를 따라와 무역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더욱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臣 등이 거듭 생각건대 과세를 통해 작은 이득을 긁어모으는 것은 반드시 국가재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니, 차라리 皇上의 은혜를 넓히고 이것을 빌어 典禮를 유지하고, 국가에서 貢使에 대해 면제해주기로 정한 제도의 깊은 뜻을 더욱 상세하게 적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에 삼가 주를 올려 유지를 청하는 바입니다. 올해

10월 22일 상주하였는데, 이날 군기처에서 [상주하여] 다음과 같이 상유를 받아 내려보냈습니다.

(군기처에서 논의한 결과) 앞으로 조선의 朝賀·陳奏使臣 및 자문 전달관이 경내에 들어오거나 京師에 도착할 경우, 휴대한 화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례대로 세금을 면제하고자 합니다. 중국 상민이 조선의 화물을 구입한 경우, 해당 사신들이 가져온 물건이라면, 조선 관원이 확인서를 제출하면 四譯館 무역의 기존관례에 비추어 면세를 허락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알았다.

따라서 마땅히 原奏를 초록하여 조선국왕에게 알려, 이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국왕은) 이상과 같은 예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이번에 받은 상유는 진실로 황상께서 곡진히 몸소 살피시고, 특별히 도타운 은혜를 내려 주시는 지극히 인자한 호의를 보여주시는 것이니, 그 커다란 은혜와 두터운 은택은 정말로 보통 기준을 훨씬 넘은 것입니다. 다만 貢使가 왕래하는 것은 삼가 典禮를 행하기 위해서이지 애초에 무역과 관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행 員役이 휴대하는 화물도 본래 얼마 되지 않아 민간상인의 왕래와 같은 사례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새로운 稅金章程에서 紅蔘에 대해 15/100稅를 거두게 되어 있어 이미 세금이 무겁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돌아올 때 휴대하는 화물에 대해 작은 무게까지 따지면서 세금을 매기게 되면 또한 손해가 크다고 한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매번 사행 때마다 다소 많고 적은 장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니, 이것은 皇上께서 아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인자함을 우러러 받드는 것이 되지 못할뿐더러, 禮部의 部堂大人 및 북양대신께서 조선을 염려하여 대신 계획해주신 훌륭한 뜻과도 어긋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副司直 李應浚을 파견하여 자문을 보내니, 번거롭겠지만 部堂大人께서 이런 사정을 황상께 대신 상주하여, 앞으로 進貢使 및 자문 전달관이 귀국할 때 가지고 오는 행장과 화물에 대해서는 모두 이전 章程처럼 특별히 면세해 주시고, 또한 변경의 민간 상인 무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章程에 따라 납세하여, 정해진 제도에 부응하고 皇上의 인자함을 넓힘으로써 조선에 무궁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문서를 갖추

어 자문으로 청하오니, 번거롭겠지만 部堂大人께서 살펴보고 참고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예부에서는 이상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시다) 臣 등이 살펴 보건대, 조선의 進貢使 및 자문 전달관이 휴대한 화물은 전례대로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런데 광서 8년부터 조선이 각국과 통상을 하게 되었는데, 臣部에서 상주하여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선의 朝賀·陳奏使臣 및 자문 전달관이 휴대한 화물은 여전히 전례에 따라 면세를 하지만, 이후 각 개항장에서의 무역은 마땅히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 아울러 이흥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章程을 논의할 때 조선 관원과 함께 전반적으로 계획을 마련하여 어떻게 제한을 풀어주고 방법을 강구하여 변통할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 적절하고 신중하게 처리 하도록 하라.

(이러한 지시에 따라) 이후 이흥장이 「奉天과 朝鮮 邊民의 무역에 대해 마련한 詳細章程」 24조를 첨부문서로 만들어 상주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제8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사신이 북경으로 들어와 朝貢을 하는 것은 典禮와 관계되므로 모두 삼가 定例를 준수 하여 貢物에 대해서는 전례대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그 사신 및 差官·從人이 휴대하는 행장 및 자질구레한 화물에 대해서는 응당 예부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느슨하게 제한을 가한다. 사신은 화물을 휴대하지 않으니, 휴대한 의복·책·약품은 각 관원당 300斤으로 제한한다. 差官과 從人이 화물을 휴대하고 아울러 이것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경우, 紅蔘의 휴대를 허용하며 차관 한 사람당 정량 20근으로 하고 從人은 한 사람당 10근으로 한다. 또 의복·행장 등의 자질구레한 화물은 차관 한 사람당 정량 160근으로 하고 從人은 한 사람당 정량 80근으로 한다. 별도의 짐 꾸러미가 있더라도 무거운 장막이거나 여행용 음식이 확실하면 헤아려 세금을 면제해준다. 이밖에 상자에 넣고 묶은 것은 화물임이 확인 되면, 그대로 신고하여 세금을 내도록 한다. 다른 공무로 파견된 差官이 휴대하는 화물은 장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며, (위의 사례를 원용한) 면세를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제9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中江에서 무역을 할 때 세금을 징수하며, 홍삼에 대한 납부 세율은 그 가격의 15/100세를 거두는 것으로 정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광서 9년 9월 총리아문과 戶部 및 禮部에서 공동으로 상주하여 재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즉 조선 進貢使 및 자문 전달관이 휴대한 화물은 각기 면세하거나 세금을 징수하며, 그리고 홍삼에 관해서는 15/100세를 거둔다는 것은 상주하여 재가를 받은 章程에

실려 있으니 응당 영원히 준수해야 합니다. 지금 조선국왕이 기존 장정에 따라 감세를 요청해 왔는데, 검토해보니 章程과 부합하지 않아, 그 일은 이미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부에서는 (조선의 자문을) 대신 상주하여 황상을 번거롭게 하기 불편하므로, 응당 원 자문을 귀국할 조선 사신에게 돌려주고, 아울러 예부에서 따로 조선국왕에게 문서를 보내 광서 9년에 재가를 받은 稅務章程을 삼가 준수하여 처리할 것이니, 다시 번거롭게 요청하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삼가 이러한 사정을 附片으로 상주하며 아뢰는 바입니다.

(3) 「조선국왕의 원 자문(朝鮮國王原咨)」: 생략(문서번호 13의 첨부문서 1과 같은 내용임).

(4) 「조선국왕의 원咨文(朝鮮國王原咨)」

조선국왕이 자문으로 알립니다.

조선에서 공손히 年貢을 올린 지가 이미 3백여 년이 되었는데, 列聖朝 및 현재의 皇上으로부터 보살펴 주시는 깊은 은혜를 받아 進貢 使臣·상주문 전달관·자문 전달관 등이 경사에 가거나 돌아올 때 그 隨行 員役이 휴대한 行裝과 화물에 대해서는 모두 세금이 면제되었습니다. 광서 8년에 이르러 북양대신이 海禁을 열어주기를 상주하였고, 아울러 申江에 시장을 설치하여 양쪽 변민이 수시로 왕래하며 교역하는 것을 허락하고, 무역장정을 적절하게 정하여 힘써 장기적인 방안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진실로 皇上께서 藩服을 어루만져 주시는 지극한 마음을 본받아 조선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신 것이니, 손을 모아 감격하여 송축하며 그 은혜를 이루 다 갚을 수 없는 바입니다.

海禁이 열린 다음 무역이 시작되었으니 징세 문제는 비록 시행하지 않을 수 없지만, 다만 일이 처음 행하는 것이라 폐단 또한 이루 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매번 징세를 할 때마다 일행의 행장과 화물에 대해 그 무게에 따라 (일정한 무게까지) 면제하는 것 외에는 (그 이상 무게에 대해서는) 모두 세금을 징수하게 되었는데,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서 8년 11월 22일에 예부에서 보낸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생략.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예부에서 삼가 주를 올려 유지를 청합니다.

臣部の 則例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外國 貢船이 가져온 물품 및 貢使가 귀국할 때 지니는 물품은 모두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또 조선인이 山海關을 출입할 때 해당 감독관은 鳳凰城 城守尉의 직인이 찍힌 공문[印文] 및 禮部에서 발행한 증빙 공문[箭付]이 서로 들어맞는지를 확인하여, 그 경우 모든 세금 납부를 면제한다. 또한 조선 사신 및 자문 전달관이 북경에 올 때 휴대하는 화물은 모두 禮部에서 崇文門 監督에게 공문을 보내 면세하고, 四譯館에서 시기를 정하여 교역하도록 허용하며, 中國 商民이 조선의 화물을 구매하는 경우 모두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한 이상의 규정에 따라 종래 이 문제를 처리해왔습니다.

조사해보건대, 各國 貢使가 가지고 온 화물은 의례적으로 세금을 면제해 왔고, 조선은 東藩을 성실히 지키며 가장 오래도록 臣服해왔으니 특히 각별하게 우대해야 합니다. 현재 각 개항장에서 (조선) 商民의 무역을 허락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하게 보살피 주기 위해서이지, 애초에 利權을 확장하려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올해 9월 조선과의 교역장정을 논의하여 허락받았으므로, 북양대신이 요청한 대로 반드시 폐단을 미리 막아 신중하게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臣 등이 생각건대, 조정에서 藩服을 생각해주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전혀 같지 않으니, 이후 각 개항장에서 무역을 할 때 조선 상민에게 응당 세금을 징수하겠지만 그 액수는 분명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進貢使를 따라와 무역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더욱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臣 등이 거듭 생각건대 과세를 통해 작은 이득을 긁어모으는 것은 반드시 국가재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니, 차라리 皇上의 은혜를 넓히고 이것을 빌어 典禮를 유지하고, 국가에서 貢使에 대해 면세해주기로 정한 제도의 깊은 뜻을 더욱 상세하게 적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에 삼가 주를 올려 유지를 청하는 바입니다. 올해 10월 22일 상주하였는데, 이날 군기처에서 [상주하여] 다음과 같이 상유를 받아 내려보냈습니다.

(군기처에서 논의한 결과) 앞으로 조선의 朝賀·陳奏使臣 및 자문 전달관이 경내에 들어오거나 京師에 도착할 경우, 휴대한 화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례대로 세금을 면제하고자 합니다. 중국 상민이 조선의 화물을 구입한 경우, 해당 사신들이 가져온 물건이라면, 조선 관원이 확인서를 제출하면 四譯館 무역의 기존관례에 비추어 면세를 허락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알았다.

따라서 마땅히 原奏를 초록하여 조선국왕에게 알려, 이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국왕은) 이상과 같은 예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이번에 받은 상유는 진실로 황상께서 곡진히 몸소 살피시고, 특별히 도타운 은혜를 내려 주시는 지극히 인자한 호의를 보여주시는 것이니, 그 커다란 은혜와 두터운 은택은 정말로 보통 기준을 훨씬 넘은 것입니다. 다만 貢使가 왕래하는 것은 삼가 典禮를 행하기 위해서이지 애초에 무역과 관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행 인원이 휴대하는 화물도 본래 얼마 되지 않아 민간상인의 왕래와 같은 사례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새로운 稅金章程에서 紅蔘에 대해 15/100稅를 거두게 되어 있어 이미 세금이 무겁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돌아올 때 휴대하는 화물에 대해서 작은 무게까지 따지면서 세금을 매기게 되면 또한 손해가 크다고 한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매번 사행 때마다 다소 많고 적은 장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니, 이것은 皇上께서 아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인자함을 우러러 받드는 것이 되지 못할뿐더러, 禮部의 部堂大人 및 북양대신께서 조선을 염려하여 대신 계획해주신 훌륭한 뜻과도 어긋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副司直 李應浚을 파견하여 자문을 보내니, 번거롭겠지만 部堂大人께서 이런 사정을 황상께 대신 상주하여, 앞으로 進貢使 및 자문 전달관이 귀국할 때 가지고 오는 행장과 화물에 대해서는 모두 이전 章程처럼 특별히 면세해 주시고, 또한 변경의 민간 상인 무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章程에 따라 납세하여, 정해진 제도에 부응하고 皇上의 인자함을 넓힘으로써 조선에 무궁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문서를 갖추어 자문으로 청하오니, 번거롭겠지만 部堂大人께서 살펴보고 참고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16) 문서번호 : 1-3-1-16 (1041, 1910b-1915a)

사안 : 조선 사신이 올린 地圖·碑文 및 조회 등을 咨文으로 발송합니다(咨送朝鮮使臣所遞之地圖, 碑文及照會等件).

- 첨부문서 : 1. 「조선 중성부사가 돈화현에 보내는 조회(朝鮮鍾城府使致敦化縣照會)」 : 중·한 변계는 마땅히 토문강으로 구분해야 하며, 토문강과 두만강을 서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中韓邊界應以土門江分界, 土門與豆滿不能相混).
2. 「조선 회녕부사가 돈화현에게 답하는 조회(朝鮮會寧府使覆敦化縣照會)」 : 즉시 양국의 경계를 분명히 조사해 주십시오(請即查明兩國界限).
3. 「조선 북병사가 政府에 올리는 서신(朝鮮北兵使上政府書片)」 : 중국인이 까닭 없이 소요를 일으켜 백성의 재산을 약탈하니 백성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華人無端起鬧, 掠奪民財, 居民不堪其苦).
4. 「조선이 보낸 도문강비문(朝鮮所遞圖們江碑文)」 : 康熙 51년 오라총관 목극등이 유지를 받들어 변계를 조사하고 돌에 새긴 비문(康熙五十一年烏喇總管穆克登奉旨查邊勒石碑文).

날짜 : 光緒十一年七月初九日(1885년 8월 18일)

발신 : 禮部

수신 : 總理衙門

七月初九日, 禮部文稱.

准總理各國事務衙門片稱.

軍機處抄交禮部代奏朝鮮國王咨請派員踏勘土們江舊界等因. 朝鮮使臣所遞地圖等

件，希卽檢齊咨送本衙門，以憑辦理。

等因。前來。

相應將二月間朝鮮使臣所遞地圖·碑文各一張，抄錄照會一本，一併片送貴衙門查照，俟辦結後，仍將各原件送回本部存案可也。

(1) 照錄「朝鮮鍾城府使照會敦化縣」

朝鮮國咸鏡道鐘城都護府使 李，

爲 照會 事。據鐘城·穩城·會寧·茂山民人等呈狀，內稱：

小人等雖耕墾爲生，豈全昧國家經法？小人等所墾之土，卽土門以南也。粵昔在東方立國最久者，惟本國耳。不務拓地，以土門爲界，而退守豆滿江，土門·豆滿兩江之間，作爲荒地，禁民入居者，慮有邊患矣。一自上國龍興東土，東北無事，而至康熙壬辰，烏喇總管穆克登大人，奉旨查邊，亦以土門江爲界，“西爲鴨綠，東爲土門，”勒右爲記，于白頭山分水嶺矣。土門南岸或有上國逃民之潛處者，自上國每行刷還，亦不敢顯居于本國相望之地。近來邊禁漸弛，入居者相續。列邑官憲瓜期甚近，不以邊事存心。居民以過江爲禁，雖有見聞而不敢告官。至近年因荐歉，民失本業，聞中國之開邊墾荒，小人等亦過江墾種矣。無入居之朝令，故春結農幕，秋輒掇歸，且劃地爲界，不敢深入矣。近年冬始聞自吉林將軍大人行文本國，遵旨令刷還土門江以北·以西占墾之朝鮮貧民。小人等以爲本國流民之冒禁流入吉林界內者甚多，往年雖刷還而未盡，恐必此類也。本年四月，自敦化貼告示于鐘，會兩邑，越邊流民歸回淨盡，始知敦化縣之誤認豆滿江爲土門也。小人等相顧愕眙，嘗往訴于上國派員 彭正郎大人及敦化縣知縣大人，而未承題示。欲先審查土門·豆滿之別，乃派人往審白頭山立碑處，碑東連置土堆·木柵爲限。下有土門兩岸，對立如門，而非石而土。其下有水發源，另作別派。此水之合流處，則江岸路絕，不能沿流。又於鐘城越邊九十里，甘土出有分界江，江名之爲分界，則以此分界明矣。有卡鋪亦在分界江北岸，則上國邊界之止於此亦審矣。東西宜無異同，鳳凰城柵外，雖爲荒地，亦于沿鴨綠一帶，皆設卡

鋪。若以豆滿爲土門，則上國何不置卡鋪于豆滿北岸乎？且于開市，上國人商貨在本國界內，則民出牛馬輸送，而每送至分界江矣。若欲中路替輸，則責以此乃國界限也云矣。此亦一據也。竊念敦化縣今乃新設，界限之從某至某，未及明審，乃有指豆滿以北爲土門以北矣。考諸上國咨文，與吉林將軍大人札飭有曰：“以土門爲界。”又曰：“占墾之地在土門以北以西矣。”未嘗言及于豆滿以北矣。土門則在分水嶺查審定界處，豆滿則源出本國界內，非上國之所知也。且或以豆滿·土門之譯音相近爲疑，亦可有辨者。上國之或土門或圖門，皆有所由。土門者分界處土門也，圖們者慶源以下入海處也。本國通稱，由本國界內發源至入海處，謂豆滿。故稱圖門者，乃本國豆滿之譯音相殊者也。今指豆滿以北，謂土門以北者，乃入居土門以南之上國流民，本國民之春耕秋歸，以過江爲禁，因認爲占耕而誣告敦化縣，至有告示而使之歸回淨盡也。請以此意，照會于敦化縣，卽查界掃淨，使民安于耕作之地。

爲辭。查中外界限，向以土門爲界。本國只知豆滿之外，更有土門之別派。按有故地圖爲據，實未嘗往闕源流。今此列邑民人，私往窮源，歸以爲告，不可遽以民人私言爲憑，乃派弁往審白頭山分水嶺，拓得康熙時穆總管碑記，踏勘土門源流，果民所告相符，另爲別派。濱江皆懸崖壁，乃至黃口嶺而還。繪有新圖，與舊地圖校閱，則土門分界江爲界，間有不相屬處，曾以爲疑。今此遣人踏勘，又如此。是否土門江歸合分界江乎？本職于疆域圖志，未曾詳悉。且貴縣則辟荒建署未久，宜查審勘定，一遵康熙時所疆界，請煩貴縣派人，約同先審白頭山定界碑，知土門發源之處，而查明界限，辨別疆土爲妥。茲據民人所呈，并將土門江·分界江以南舊圖移摸一本，新圖一本，白頭山分水嶺定界牌墨摺二本齎送，查照商辦可也。爲此照會。須至照會者。

右照會 敦化知縣 趙

光緒九年六月 日

(2) 「照會敦化縣」

朝鮮國咸鏡道會寧都護府使洪 爲 照覆 事。

准貴照會內稱。

土門江以北越壑流民一節，穩城永達利·中光逆，鍾城霸王城·高麗鎮，會寧，茂山等處所管各界，隔江之處，東自穩城起，西至茂山止。江之北岸俱有越壑流民，亟宜統將各該處流民一律刷還，務於今秋禾稼收割後，卽行依限回國，勿許逗遛。

等因。

前以鐘城·穩城·會寧·茂山民人等呈狀，據土門以南，豆滿以北所墾之土，卽康熙朝穆管定界立碑之內也。一邊所劃疆域，遣人踏勘爲辭。聞自鐘城府具由照會于貴知縣，希卽詳審白頭山定界碑土門江發源處，查明界限爲妥。爲此照覆，須至照會者。

(3) 「朝鮮國北兵使上政府書片」

茂山西面，地接華界，邊民無賴，種種作弊，我人不堪其苦。或假稱夫物，白地橫徵，或無端起鬧，搶奪民財。去年春，西面人尹奉順等往訴于新開城，自新開城派送委員賈元桂與薩丙夏，會同本邑查究妥辦，以兩國交界官公文外，勿相往來之意，明定條約，邊鬧稍息。忽於八日晦日，茂山民人等訴云。

今月初五日，上國人六名，稱以失物，攔入間島我民農幕，奪馬二匹，牛四隻，農民四名亦爲反接而去。民等不勝憤恨，齊往上國人農幕，推牛隻馬匹，被擄四人，亦爲索還。亂魁吳仁安·吳仁成及姓韓的人三名，并率來嚴責以送矣。初十日暮時，上國人五十餘名，荷銃帶劍，渡江衝突，本社人被刺者二人。又於十四日，有上國人八十餘名，騎馬揮刀，橫行間里，燒廬倉，破家產，屠盡畜產，攘奪財帛，男女奔波，村落空虛。而又於是十八日，上國人百餘名，攔入城中，逢人輒刺，座首軍校一起被縛，禍色及於知府，一邑遑遑，罔知攸措。而稱以渠輩所失之物，計錢一千八百六十餘兩，推捧然後可以退去云。強弱不齊，危亡在即，不得已以九月初五日準報之意，自邑成標以送矣。見今一社蕩殘，舉邑倉皇，傷者未起，散者未還。而白地冤徵，無力可辦，將不免再遭強暴之患，故裹足來訴，卽爲照會于暉春官禁止邊患。

云云. 上國人之不遵條約, 肆開鬧端, 奪我民財, 火我民居, 甚至荷銃帶劔, 逢人輒刺, 寔無之變怪也. 已送帶率軍官及解事首校使之詳探以來. 而此若仍置有開後弊, 札飭茂山倅照會于新開營. 若依去年條約, 嚴查懲辦則幸矣. 不然則將自營明言利害, 備文往復, 而若又終不得妥辦, 則北巡特當親到慶興, 送人曉譬計料矣. 幸於今年節使之行以次間島事, 詳告于禮部及北洋衙門, 明土門以南豆滿以北之爲我國境界, 更立新碑於分水嶺, 定界碑之下, 設柵於土門江之邊, 使民入居, 然後可以還我土地, 弛我邊患. 云云.

(4) 照錄「朝鮮所遞圖們江碑文」

大清烏喇總管穆克登, 奉旨查邊至此審視,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勒石爲記.

大清 康熙五十一年五月十五日.

7월 9일 예부에서 다시 문서를 보내왔다.

총리아문에서 보내온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기처에서 예부가 대신 주접을 올린 문서를 초록하여 보내왔습니다.

조선국왕이 자문을 통해 인원을 파견하여 도문강 옛 경계를 조사할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조선사신이 전달한 지도 등 문건은 가지고 온 자문을 검토한 후 본 아문으로 보내주셔서 처리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응당 2월에 조선사신이 가지고 온 지도, 비문 각 1장, 베껴 쓴 조회문 1건을 귀 아문에 함께 보내니 대조해보시고, 처리가 끝나면 각 원건을 본 예부로 돌려보내 주셔서 등록·보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1) 「조선 鍾城府使가 敦化縣에 보낸 照會」 초록

조선 咸鏡道 鍾城都護府使 李正東이 조회를 보냅니다. [함경북도의] 鍾城·穩城·會寧·茂山の 백성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일구어 농사짓고 있지만, 어찌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아예 모르겠습니까? 저희들이 개간한 땅은 토문 이남의 지역입니다. 아득한 예로부터 동쪽에 나라를 세운지 가장 오래된 나라는 오로지 본국뿐입니다. 땅을 개척하는 데 힘을 쓰지 않고, 土門이 경계인데도 오히려 豆滿江으로 물러나서 土門江과 豆滿江 사이를 황무지로 삼아 백성이 들어와 살지 못하게 한 것은 변경에 문제가 있을까 근심해서였습니다. 청조가 중국의 동쪽에서 일어나 큰 나라를 세운 다음 동북 지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康熙 연간 壬辰年(강희 51년, 1712년)에 烏喇總管²⁵⁾ 穆克登 大人이 上諭를 받들어 邊界를 조사했는데, 역시 토문강을 경계로 삼아 서쪽은 압록이고 동쪽은 토문이라고 둘에 새겨서 백두산 분수령에 세워놓았습니다. 토문강 남쪽 기슭은 간혹 중국에서 도망친 사람들이 잠적하던 곳이기도 한데, 중국에서 매번 이곳 사람들을 송환시켰으므로 역시 감히 조선에서 바로 보이는 땅에는 아무도 드러내놓고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래에 변경의 봉금령이 점차 느슨해지자 들어와 거주하는 사람도 계속 줄을 잊고 있습니다. 각 지방관들도 근무교대 주기가 아주 짧아 변경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강을 건너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기에 비록 보고들은 것이 있어도 감히 관청에 알리지 못합니다. 특히 근년에는 거듭된 흉년으로 백성이 생업을 잃게 되었는데, 중국이 변경 황무지를 개간한다는 소식을 듣자 소인들도 역시 강을 건너 개간과 경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들어와 살아도

25) 청조는 만주의 특산품인 삼(蔘), 동주(東珠), 송자(松籽), 봉밀(蜂蜜), 철갑상어(鯉魚) 등을 공물(貢物)로 삼아 내무부(內務府)에서 징수하였는데, 이러한 채집은 관방의 독점사업이었고, 그 관청은 길림오라(吉林烏喇, 또는 길림오랍 吉林烏拉이라고도 쓴다) 북쪽 80리쯤에 있는 타생오라(打牲烏喇)에 있었다. 즉 순치(順治)연간에 설립된 타생오라총관아문(打牲烏喇總管衙門)이 바로 그것이다. 원래 육품에서 출발하여 사품 총관(總管)이었던 것이 강희 37년 삼품총관(三品總管)으로 바뀌었다. 목극등(穆克登)은 강희 58년까지 이 자리를 맡았고, 이후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옹정(雍正) 7년까지 이 사무를 계속 담당하였다. 李澍田主編, 『打牲烏拉志典全書·打牲烏拉地方鄉土志』(長白叢書二輯, 吉林文史出版社, 1988)을 참조. 길림오라(吉林烏喇, 吉林烏拉)는 '강주변(沿江)'이란 뜻의 만주어로 오늘날 길림성에 해당되며, 옛 이름은 선창(船廠)이었다. 강희 15년 영고담장군이 이곳으로 이동하면서 길림장군이라 칭하게 되었다.

좋다는 조정의 허가가 없었기에 봄이면 농막을 지었다가 가을에는 거두고 돌아왔으며, 경계를 설정하여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년 겨울에 吉林將軍 대인이 조선에 보낸 공문에 대해 처음 듣게 되었는데, 상유에 따라 토문강 이북·이서의 땅에서 개간을 한 조선빈민을 모두 거두어들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유민들은 금지령을 무릅쓰고 길림경내로까지 깊이 들어간 조선유민 역시 많고, 과거에도 비록 이들을 모두 거두어들이려 하였지만 다 하지 못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올 4월 敦化縣에서 중성·회녕에 고시를 해서 월간 유민을 모두 남김없이 거두어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비로소 돈화현에서 두만강을 토문강으로 착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서로 쳐다보면서 놀라다 못해, 중국에서 특별히 파견한 관리인 彭光譽 正郎(즉 郎中) 大人과 돈화현 지현 대인에게 이 일을 호소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토문강과 두만강의 차이를 조사해서 밝히고자 사람을 보내 백두산에 비석을 세운 곳을 조사하게 해보니, 비석의 동쪽으로부터 흙담·돌담·나무울타리가 이어져 경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아래에는 토문강의 양쪽 언덕이 문처럼 서로 마주 서 있는데, 돌이 아니라 흙이었으며, 그 아래 다른 데서 발원한 다른 물줄기가 따로 하나 있었습니다. 이 물이 합류하는 곳은 강 언덕의 길이 끊어져 물길을 따라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또한 중성의 변경 너머 90리쯤 甘土山 아래에 分界江이 있는데, 이름이 분계라는 점에서 이것이 경계를 가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중국의 경비초소[卡鋪]도 분계강 북쪽 기슭에 있으니 중국의 변경이 여기서 멈춘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동쪽과 서쪽 역시 당연히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니, 鳳凰城의 柵門 밖[즉 柵門에서 鴨綠江에 이르는 사이의 지역]은 황무지이지만, 또한 압록강 일대를 따라 경비초소를 설치 하였으니, 만약 두만강이 토문강이라면 왜 두만강 북쪽에 초소를 설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시장이 열릴 때에도 중국상인이 구입한 물품은 조선경내에서 이곳 백성이 牛馬를 내어 운송해주는데, 매번 보내는 곳이 분계강에 이릅니다. 만약 그 이전에 옮겨 실으려고 하면 여기는 여전히 너희나라 국경 안인데 왜 그러느냐고 질책하는 것도 역시 증거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보기에 돈화현은 새로 신설된 것이라²⁶⁾ 어디서 어디까지가 경계인지 제대로 잘 확인하지 않은 채 두만강 이북을 토문강 이북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26) 광서 7년 12월(1882.01.28) 길림직예청(吉林直隸廳)이 길림부(吉林府)로 승격되면서 돈화현(敦化縣)도 함께 설치되었다.

것 같습니다. 중국의 沱文, 길림장군 대인의 지시에도 “토문을 경계로 한다”고 한 것, 또한 “땅을 빌려 개간한 땅은 토문강 북쪽·서쪽이다”라고 하였던 것을 보면 모두 두만 이북이라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문강은 분수령에서 경계를 조사하여 비석을 세운 곳에 있고, 두만강은 조선 내에서 발원하고 있어 중국 측에서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두만강·토문강의 음이 서로 비슷하여 의심을 낳는 것도 해명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선 土門江이라고도 하고 圖們江이라고도 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토문은 경계를 가르는 곳의 토문이고, 도문은 경원 위쪽의 바다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조선에서는 국내에서 발원하여 바다로 들어가는 강을 두만강이라고 통칭합니다. 따라서 도문이라고 해도 여전히 조선의 두만의 譯音과는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두만강 이북을 가리켜 토문강 이북이라 하는 것은 강을 건너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조선 백성이 봄에는 [강을 건너가서] 경작을 하지만 가을에는 [강을 건너] 돌아오는 것을 토문강 이남 중국유민들이 보고 조선 백성이 몰래 땅을 차지해서 경작한다고 돈화현에 무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돈화현에서는 공문을 고시하여 이들을 모두 남김없이 돌려보내겠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내용을 돈화현에 조회하니 경계의 구분을 분명히 하고 아울러 백성이 경작하는 곳에 안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생각건대, 중국과 조선은 종래 토문을 경계로 하였고, 조선에서는 단지 두만강 이외에도 토문강이라는 다른 줄기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옛 지도를 보아 근거로 삼았지만, 실은 그 발원지까지 거슬러 올라가 확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지방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발원지를 찾아 올라간 다음 돌아와 보고한 경우도 있지만, 백성들의 개인적인 증언을 곧바로 믿을 수는 없어서, 하급 무관(武官)을 보내 백두산 분수령을 조사하고, 강희 연간 목극등 총관이 세운 비석의 탁본을 뜨고, 토문강의 원류를 돌아다니며 조사하게 해보니, 과연 백성들이 알린 것과 합치하며 따로 한 줄기 강이 있었습니다. 강 양쪽은 모두 깎아지른 듯한 험한 절벽이라 黃口嶺까지 간 다음 돌아왔습니다. 지도도 새로 그렸는데, 옛 지도와 비교해보니, 토문강과 분계강이 [중국과 조선의] 경계가 되는데 중간에 서로 이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종래 의심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 사람을 보내 조사해보니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였습니다. 토문강은 과연 분계강에 흘러드는 것일까요? 저희는 疆域에 대한 지도나 기록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며, 또한 귀현도 황무지를 개척하여 관청을 설치한 지 오래되지 않았으니, 마땅히 함께 조사하여 확정함으로써 강희 연간 정해진 경계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번거롭더라도

귀현에서 사람을 보내 함께 먼저 백두산 정계비를 조사하여 토문의 발원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경계를 분명히 해서 영토를 구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올린 탄원서와 토문강과 분계강 이남의 옛 지도를 옮겨 그린 것 1부, 새 지도 1부, 그리고 백두산 분수령의 정계비 탁본 2부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고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상의 조회를 돈화현 지현 趙敦誠에게 보냅니다.

(2) 「[함경도 회녕부사 홍이] 돈화현에 조회합니다」

조선국 함경도 회녕도호부사 홍이 조회에 답변합니다. 귀 돈화현에서 보낸 조회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토문강 이북의 월간유민 문제에 관하여, 穩城의 永達利·中光逆, 鍾城의 [霸]王城·高麗鎮, 會寧·茂山 등 관할하는 각 경계에서 강 건너의 지역은 동으로는 穩城에서 시작하여 서로는 茂山에 이릅니다. 강의 북안은 월간 유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조속히 각 해당 지역의 유민을 일률적으로 거두어들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가을 벼를 수확한 다음 바로 기한을 정해 귀국하게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서는] 잠시라도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에 종성·온성·회녕·무산 백성이 탄원서를 올렸는데, 토문강 이남에서 두만강 이북에 이르는 지역의 개간한 토지는 바로 康熙朝에 총관 穆克登이 경계를 정하여 비석을 세운 [조선의] 경계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때 구획한 강역에 따라 사람을 파견하여 실지조사를 하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듣기로 종성부에서 귀 지현에게 조회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바라건대 백두산 정계비와 토문강 발원지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경계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조회에 답변합니다. 이상.

조선국 함경도 회녕도호부사 洪이 照會로 답합니다.

(3) 「조선국 北兵使가 정부에 올린 서신」

무산 서면의 땅은 중국의 경계와 인접합니다. 변민 가운데 무뢰배들이 종종 말썽을 일으키는데, 조선 백성들은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혹은 물건을 분실하였다고 거짓으로 칭하면서 농사도 못 짓는 땅에 대해 멋대로 징수를 하거나, 혹은 무단으로 소란을 일으켜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하기도 합니다. 작년 봄 서면 사람 윤봉순 등이 새로 설치한 성[新開城, 아마 璿春을 가리키는 것 같다]에 가서 고소를 했는데, 거기서 委員 賈元桂와 薩丙夏[薩丙阿]를 파견하여 본부사과 함께 조사하여 적절하게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 교계의 지방관이 주고받는 공문 외에는 서로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을 약속을 분명하게 정하자 변경의 소란은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일 그믐날 무산 백성이 다음과 같이 호소해 왔습니다.

이번 달 5일 중국인 6명이 물건을 분실했다고 하면서 간도에 들어와 조선 백성의 농막에 난입하여 말 두 필과 소 네 쌍을 약탈해갔으며, 농민 4명이 또한 (그들에게) 잡혀갔습니다. 백성은 분함을 참지 못하고 일제히 중국인 농막으로 가서, 소와 말을 되찾아 왔으며, 붙잡혀 간 네 명을 또한 찾아왔습니다. 소란을 일으킨 우두머리 吳仁安·吳仁成 및 韓氏 성을 가진 사람 세 명을 끌고 와서 엄하게 꾸짖어 돌려보냈습니다. 10일 해질 무렵 중국인 50여 명이 총과 칼로 무장하고 강을 건너와 공격하여, 우리 마을(本社)의 사람 중 칼에 찔린 사람 2명, 총에 맞은 사람 2명, 사로잡힌 자가 2명이었습니다. 또한 14일에는 상국인 80여 명이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며 마을을 휘젓고 다니면서 집을 불태우고 가산을 파괴했으며, 가축을 도살하고 재산을 약탈하였으므로 조선 백성은 분주하게 도피하여 촌락이 텅 비게 되었습니다. 또한 18일에는 중국인 백여 명이 성중에 난입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칼로 찌르고, 座首와 軍校까지 포박하였으며, 마침내 知府까지 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온 고을이 매우 당황해서 어찌 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들은 잃어버린 물건의 합계가 錢 1,860여 兩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받아내면 물러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서로 간의 힘의 격차가 너무 크고, 눈앞에 위기가 닥쳐 있었으므로 부득이하게 9월 5까지 정확하게 보상을 해준다는 뜻으로 읍에서 증서를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현재 마을(社) 한군데가 완전히 망가졌고 온 고을사람들이 놀라서 당황하고 있으며, 부상자는 아직 회복되지 못했고, 도망간 자도 돌아오지 않는데, 농사를 짓지 않는 빈 땅에 억지로 징수를 하려 해도 도저히

그럴만한 힘이 없습니다. 장차 다시 이러한 난폭한 재난을 다시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받을 싸매고 와서 호소하니, 신속하게 琿春의 관리에게 조회를 보내셔서 변경의 근심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호소를 받았는데) 중국인이 조약을 준수하지 않고 멋대로 소란을 피우면서 조선 백성의 재산을 약탈하고 거주지를 불태웠으며, 심지어는 총과 칼로 무장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칼로 공격했으니, 정말 이런 변고가 없습니다. 이미 부하 군관 및 사리를 잘 아는 말이 통하는 首校를 보내 상세하게 정탐하였으므로 앞으로 이와 관련된 폐해에 대해서는 무산부에 지시하여 새로 설치된 중국 부대[新開營]에 조회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작년 조약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조사하고 처벌한다면 곧 다행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즉 장차 병영에서 분명하게 이해관계를 밝히는 문서를 갖추어 주고받을 것입니다. 만약 그래도 또한 결국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곧 북방을 순찰할 때 당연히 직접 慶興에 가서 사람을 보내 분명하게 깨우치고 경고하면서 헤아려 볼 것입니다. 다행히 금년 조공 사절이 이 간도와 관련된 일을 예부 및 북양대신에게 상세하게 보고했으니, 토문강 이남에서 두만강 이북 사이의 지역이 조선국의 영토라는 것을 밝혀, 분수령에 새로운 비석을 세우고, 토문강변에 목책을 설치한 다음 백성이 들어가 살게 한다면, 우리 땅을 되돌려 받을 수 있고 변경의 근심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4) 「조선이 건넌 토문강 비석」의 초록

烏喇總管 穆克登오라총관 목극등이 유지를 받들어 변계를 조사하기 위해 이곳에 이르러 살펴 보니, 서쪽은 鴨綠이고 동쪽은 土門이다. 따라서 분수령 위에 비석을 세워 기록한다.

大清 康熙 51년 5월 15일

(17) 문서번호 : 1-3-1-17 (1042, 1915b-1918a)

사안 : 조선 流民이 월경하여 개간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조선 지방관은 越壘하는 백성들을 방안을 마련해 데려가지는 않고, 오히려 두만과 토문이 다른 강이라며 말을 꾸미고 강변하니, 청컨대 조선국왕에게 자문을 전달하여 관원을 파견해서 정해진 기간에 함께 강계를 조사함으로써 분쟁을 영원히 종식시키도록 해주십시오(歷陳朝鮮流民越壘滋事情形, 該國地方官不將占壘朝鮮民設法收回, 反指豆滿土門爲兩江, 節詞強辯, 請轉行該國王, 派員定期會勘疆界, 永息爭端).

날짜 : 光緒十一年七月初十日(1885년 8월 19일)

발신 : 吉林將軍

수신 : 總理衙門

七月初十日, 吉林將軍希元等文稱.

邊務承辦處案呈.

本年六月十七日, 准北洋大臣咨.

據委辦朝鮮商務分省補用道陳樹棠稟稱.²⁷⁾

竊職道昨晤朝鮮外部督辦金允植面稱.

該國北境與吉林接壤, 時有華人往來, 驅逐人民, 燒燬農房, 沿江上下一帶, 蕭然空虛, 民不聊生. 疊接咸境北道節度使趙秉稷函開.

先後據鐘城茂山會寧等府縣稟報畧同, 請設法諭禁.

等語.

據情稟請查禁, 以杜後患.

等情。到本大臣。據此。

查所稟吉林邊界，華人驅逐朝鮮人民，並燒燬農幕，沿江一帶，皆不聊生。如果朝民越界墾種，自應彼此會查妥議遣撤，未便任意凌虐殘害。

等因。咨行前來。

正在查卷核辦間，於六月二十四日，准總理各國事務衙門咨開。

准北洋大臣咨。

照前事，相應轉行貴將軍迅速查明，所稱驅逐燒燬等情，究因何事。如以朝民越墾，亦應行知該國，商同辦理。豈可遽使藩屬之民，流離失所，致有違言。望將辦理情形咨覆可也。

各等因。准此。

詳查光緒七年十一月十四日，奉上諭。

前據銘安吳大澂奏。

朝鮮貧民占種吉林邊地，懇准一體領照納租。

當諭令該部議奏。茲據恩承等奏。

近邊各國，不得越界私開田廬，例禁綦嚴。該國官員擅給執照，縱民渡江盜墾，事閱多年。現在宜令該國王盡數招回，設法安置，重申科禁，方為正辦。或於領照納租外，令其隸我版圖，置官設兵，如屯田例，仍請飭令該將軍等再行籌畫，求一有利無害之方。

等語。

著銘安吳大澂再行詳細妥籌具奏，旋經議覆，擬俟查明戶籍，分歸琿春，敦化縣管轄為中原之民，均照吉林民一律辦理。

八年八月二十六日，奉上諭。

禮部奏據朝鮮國王咨稱。

習俗既殊，風土不一，若因該民人等占種，便隸版圖，萬一滋事，深為可慮。懇恩將流民刷還本國，交付本地方官弁歸籍辦理。

等語。

該國之民令其仍回本國原屬正辦。著銘安吳大澂體察情形，悉心籌畫，該流民人數衆多，應會商該國妥爲收回。

又於十一月初二日奉上諭。

銘安吳大澂奏稱。

朝鮮貧民占種吉林邊地，現擬派員前赴該處查明戶口。知照該國地方官陸續收回，妥爲撫輯。惟念該流民等人數衆多，安土重遷，若即時驅逐出境，誠恐該國地方官無從安插，轉致流離失所，懇恩寬予限期。

等語。

所奏自係實在情形，著照所議辦理。並著禮部傳知該國王轉飭該處地方官豫籌，妥爲安置，准其於一年內悉數收回，以示體恤。

各等因。欽此。

當飭署敦化縣知縣趙敦誠，確查該貧民實有若干戶口，知照該國地方官剴切曉諭，陸續收回，妥爲撫輯在案。

嗣於九年秋間，復經該國使臣魚允中，轉行該國地方官，限以是年中秋，將越壑流民一律收回本國，乃至期又不收回，反肆侵佔，復指豆滿土門爲兩江，飾詞強辯，搦摹界碑，請爲勘界。當於十年十月，咨行琿春副都統依克唐阿，揀派協領德玉，招壑局委員府經歷銜賈元桂，前往會勘，而該國官員以冰雪在地，請俟今歲春融再行勘辦。迨至今夏，乃猶以待候政府爲詞。屢經行令該委員備具照會，催其會勘，詎該國官吏一味狡賴，任意推延。

又據敦化縣稟稱。

該國流民日多，侵地愈廣，且肆無忌憚，將該縣屬民戶安花孫炳乾兩家房地强行佔去。又將馱夫韓姓及居民沙永奎李明新等行裝並永泰德鋪戶馬匹布物一併竊回茂山城內，事主韓馱夫等追捕至江，乃被臨江台佔壑流民恃衆羣毆，綁至其國。我民共憤，不期而集者數十人，齊赴茂山城，見其官長理論，幸將被綁各事主放回，應許賠贖。該流民又復揚言，南崗一帶係伊國界址，不日即令我民蓄髮歸順，以致該處居民强者欲與爭衡，弱者咸思搬避，人心惶惑，不能安堵。若不派兵彈壓，萬一滋生事端，不堪設想。

等情. 前來.

當卽咨商琿春副都統依克唐阿, 就近派兵彈壓, 禁其不許再行侵佔. 並照催該國早爲清理界務. 嗣經琿春副都統派兵數十名前往彈壓. 惟該處流民日衆, 侵佔日廣, 遣之不去, 禁之不聽, 經營弁將新搭草棚焚燬數間, 並將新越墾民鞭責示懲, 始稍斂跡, 旋卽撤隊回防. 乃該國官吏將流民滋事一節, 置不理論, 竟以我兵沿江來往, 焚燬農幕, 驅逐人民, 藉詞聳聽. 以小事大之道, 當如是乎. 至陳樹棠所云, “藩屬之民, 必當體恤撫字, 不可使其流離失所”, 固屬正論. 無如我欲懷柔, 彼反抗辯, 若不嚴行禁止, 則侵佔伊于胡底. 況此項流民衆多, 該國既不肯令入我版圖, 遵我政教. 我又焉能置越墾流民於不問, 坐使疆土日削乎. 要無事理也.

總之, 該國王於欽奉諭旨後, 並不將流民設法收回, 遷延至今. 而越墾者益肆侵佔, 且復滋生事端. 若不早爲之所, 勢必滋蔓難圖. 自應咨請北洋大臣轉行該國王, 速派委員, 定期會勘疆界, 則地之屬吉屬朝, 不辯自明. 然後或令將流民收回, 或令隸我版圖, 俾邊氓各安生業, 永息爭端, 以示體恤屬藩之意. 除咨請北洋大臣轉咨該國並咨報禮部查照外, 相應咨覆總理各國事務衙門, 請煩查照施行.

7월 10일 길림장군 希元 등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邊務承辦處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올해 6월 17일에 북양대신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委辦朝鮮商務分省補用道 陳樹棠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선의 外部督辦 金允植을 만났는데,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조선의 북쪽 지역은 길림과 맞닿아 있는데 때로 중국인이 오가며 사람들을 쫓아내고 농가에 불을 질러 두만강 주변 상하 일대가 완전히 텅 비어 백성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울러 威鏡北道節度使 趙秉稷의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27) 분성보용(分省補用)은 분발(分發)과 같은 뜻으로 도대나 지부 이하의 비실결(非實缺) 인원을 지정된 성으로 보내 후보로 임용(補用)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분발(分發)은 후보관원을 경사의 각 아문(分)이나 지방 각성(發)에 보내 실습을 하거나 임무를 맡기는 것을 가리킨다.

중성·무산·회녕 등의 府縣으로부터 연이어 받은 보고가 대략 비슷하오니, 방법을 강구해 금지령을 선포해주십시오.

이러한 사정에 근거해 청하니 이런 일을 조사·금지시켜 후환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陳樹棠의 보고)를 받아보니, 吉林 邊界에서 중국인이 조선 백성을 쫓아내고 아울러 農幕을 불 지르고 부숴 버려 두만강 일대 백성이 살아가기 힘든 것 같습니다. 만일 조선 백성이 월경하여 경작을 한 것이라면 마땅히 서로 함께 조사하여 적절히 논의한 다음 남기든지 철수시키든지 해야지, 임의로 확대하면서 피해를 입혀서는 곤란합니다. 이상과 같은 북양대신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문제를 조사해서 처리하려는 사이에 6월 24일 총리아문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총리아문에서는) 북양대신의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상의 일에 비추어보면 응당 귀 길림장군에게 소식을 전달하여 이른바 쫓아내고 불을 질렀다는 사정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인지 분명히 조사·확인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조선 백성이 越江하여 개간했다면, 또한 마땅히 조선에도 알려 함께 상의한 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 갑작스레 藩屬의 백성으로 하여금 집을 잃고 떠돌아다니게 만들어 이런 불평이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장군께서는 처리 상황을 자문으로 답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자문들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서 7년 11월 14일에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전에 銘安과 吳大澂의 다음과 같은 상주를 받은 바 있다.

조선 빈민들이 吉林 邊地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들 모두에게 증명서를 지급하고 소작료를 납부하도록 재가해주실 것을 간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부로 하여금 논의한 후 상주하게 하였는데, 이에 恩承 등의 다음과 같은 상주를 받았다.

접경하고 있는 각국이 경계를 넘어와 불법적으로 개간을 하거나 농막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금지령은 종래 매우 엄격하였습니다. 조선 관원이 멋대로 [월간민에게] 허가증 [執照]을 발급하여 백성이 몰래 강을 건너 개간하도록 한지 이미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응당 조선국왕에게 그들을 모두 데리고 돌아가 방법을 강구하여 안치시키고 거듭

금지령을 밝히도록 지시해야 비로소 올바른 일 처리가 될 것입니다. 가령 증명서를 지급하고 소작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 외에 그들을 우리의 版圖에 예속시키려면 屯田의 경우처럼 官兵을 설치하되 아울러 길림장군에게 다시 계획을 마련하여 이익은 있고 해는 없는 방법을 추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銘安과 吳大澂에게 다시 상세하게 계획을 마련하여 상주하도록 하였더니, 곧바로 (명안 등이) 논의하여 그들의 호적 조사를 기다렸다가 각기 琿春과 敦化縣에 나누어 귀속시켜 中原의 백성으로 삼고, 길림 백성과 똑같이 대우하고자 한다는 답장을 받았다.

8년 8월 26일에 또한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다.

예부에서 조선국왕의 자문을 받아서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습속이 다르고 풍토가 같지 않으니, [황무지]를 차지하여 경작했다고 해서 중국의 행정 구역으로 편입시킨다면 만에 하나 말썽을 일으킬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삼가 황상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조선유민을 본국에서 거두어들이게 하여 조선의 지방 문무 관원에게 넘겨준 다음 원적지로 돌려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조선 백성을 다시 본국의 원래 속했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올바른 처리방법이다. 銘安과 吳大澂은 상황을 확인하고 최선을 다해 계획하되 유민들의 숫자가 많으니, 마땅히 조선 측과 함께 논의하여 적절하게 거두어가도록 하라.

또 11월 2일에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다.

銘安과 吳大澂이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조선 빈민이 길림 변지를 개간한 일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 가서 호구를 조사하고, 조선 함경도 소속 지방관에게 알려 간절하게 깨우쳐서 계속 거두어들여 적절하게 안무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선 유민은 그 수가 많고 정착했던 곳을 쉽사리 떠나려 하지 않는 데다가, 만약 한꺼번에 쫓아내어 경계 밖으로 몰아낸다면 조선 지방관이 안치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갈 곳을 잃고 떠돌게 될까 몹시 염려됩니다. 그래서 그 기한을 관대히 늘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청합니다.

상주한 바가 실제 상황이라면 그렇게 처리해도 좋다. 아울러 예부로 하여금 조선국왕에게 알려 해당 지방관에게 미리 준비하여 적절하게 안치시킬 수 있도록 지시하게 하라. 1년 기한을 주어 모두 거두어들이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보살피 주는 뜻을 보여주도록 하라. 그래서 곧바로 돈화현[試署知縣] 趙敦誠에게 지시를 내려 해당 빈민의 호구가 실제로 얼마인

지 정확하게 조사하고, 조선지방관에게 간절하게 깨우쳐서 계속 거두어들이고 적절하게 위무 하라고 조회를 보낸 바 있습니다.

뒤이어 광서 9년 가을 다시 조선의 西北經略使 魚允中을 통해 조선 지방관에게 지시하여 이 해 중추절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월간 유민을 모두 본국으로 거두어들이라고 하였지만, 기한이 다 되도록 거두어들이지는 않고, 오히려 멋대로 침범하여 농지를 차지하고 두만강과 토문강이 다른 강이라는 억지를 꾸며 강변하면서 界碑를 탁본하여 勸界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광서 10년 10월에는 혼춘부도통 依克唐阿에게 자문을 보내 協領 德玉과 招墾局委員 賈元桂 등을 파견하여 공동감계를 하려 했으나, 조선 관원은 얼음과 눈이 남아 있다는 이유를 봄에 눈이 녹기를 기다려서 다시 조사를 진행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이 되자 다시 정부의 답변을 기다린다는 핑계를 대었습니다. 누차 해당 위원에게 지시하여 조회를 보내 공동감계를 독촉하라고 하였지만, 조선 관리는 일관되게 발뺌을 하면서 멋대로 늦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돈화현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선 유민은 날로 늘어나 차지하여 개간한 땅이 더욱 넓어지고, 또한 조금도 거리낌이 없어져 돈화현에 사는 安花·孫炳乾 양가의 집과 땅을 강제로 점거하였습니다. 또한 마바리꾼 한씨(韓姓)와 거민 沙永奎·李明新 등의 짐꾸러미와 永泰德 점포의 馬匹·布物을 몰래 훔쳐 茂山城內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물건주인인 마바리꾼 한씨 등이 그들을 추격하여 강까지 갔는데, 그들이 강에 이르자 월간 유민들은 자신들의 수가 많음을 믿고 이들을 구타해서 묶고 데려가 버렸습니다. 현에서 이 소식을 듣고 조사하여 이미 완결시켰던 것은 이미 올린 8월분의 撥冊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유민들은 또한 다시 南崗 일대가 조선 땅에 속한다고 하면서, 머지않아 비석을 세우고 성을 쌓을 것이며, 머지않아 우리 백성이 [중국식 변발을 버리고] 머리를 길러 귀순해야 할 것이라고 떠들었습니다. 이래서 이곳 거민들 가운데 힘센 사람은 더불어 다투려 하고, 약한 사람들은 모두 피해서 이주할 생각을 하는 등 백성이 당혹해하면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병사를 보내어 질서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혹시라도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결과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은 보고가 올라왔으므로 바로 혼춘부도통 依克唐阿에게 자문을 보내 상의하여 가까운 곳에서 병사들을 보내 질서를 유지하되, 다시 가서 침범하여 차지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 유민이 날로 늘어나고, 침범하는 땅도 날로 넓어지며, 쫓아내도 가지 않고 금지해도 듣지 않아, 담당부대의 장교들이 초가집 몇 채를 불태워 부수고 아울러 새로 월간해

은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려 처벌하니, 그때야 비로소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부대를 원 근무지로 철수시켰습니다. 그러나 조선 관리는 유민이 말썽을 일으킨 것에 제쳐두고 마침내 우리병사들이 강을 따라 농막을 불태우고 백성을 쫓아냈다는 것을 구실로 선동하니,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방법이 응당 이래야 합니까? “번속의 백성은 응당 보살피고 아껴줌으로써 돌아갈 곳을 잃고 떠돌게 해서 안 된다”는 陳樹棠 道臺의 말은 물론 正論입니다. 그렇지만 이쪽에서는 화유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오히려 반항하니, 만약 엄격하게 금지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침범하여 차지하는 일이 언제 끝이 나겠습니까? 하물며 이 유민들은 수가 많고, 조선에서는 이들을 중국으로 귀화시켜 중국의 政教를 받도록 하지도 않으니, 어찌 월간 유민을 그대로 놔두어 앉아서 영토가 날마다 침식되는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이런 도리는 없습니다.

요컨대, 요컨대 조선국왕이 상유를 받은 다음 결코 방법을 강구하여 유민을 거두어들이지 않고 지금까지 질질 끌어왔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러 월간민이 더욱 멋대로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일찌감치 이에 대처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런 일이 확산되어 [나중에 대책을] 도모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응당 북양대신께 자문을 보내 요청하니, 조선국왕에게 알려 신속하게 인원을 파견하여 시기를 정하고 공동감계를 하게 되면, 그 땅이 길림에 속하는지 조선에 속하는지 가리지 않아도 저절로 밝혀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민을 거두어들이든지 아니면 중국으로 귀속시키든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변민이 각기 생업에 안주하고 영원히 다툼 거리가 없게 하여 藩屬을 보살피 주는 뜻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북양대신께 자문을 보내 조선국왕에게 자문을 전해줄 것을 요청하며, 아울러 총리아문과 예부에 대해서도 자문으로 알렸는데, 응당 귀 총리아문에도 자문으로 답장을 드리니 번거롭더라도 참고해 주십시오.

(18) 문서번호 : 1-3-1-18 (1048, 1921b-1926a)

사안 : 이미 조선국왕에게 자문을 보내 관원을 파견해 정해진 기간에 강계를 함께 조사하고 했습니다(已轉咨朝鮮國王, 派員定期會勘疆界).

첨부문서 : 1. 「이홍장이 조선국왕에게 보내는 자문(李鴻章致朝鮮國王咨)」 : 길림과 조선의 강계 문제에 대해, 신속히 적절한 관원을 파견하고 길림 지방관에게 알려 정해진 기간에 전심으로 함께 조사하여 다시는 모호하게 만들거나 지체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吉朝疆界事, 請迅派委員知會吉林地方官定期認真會勘, 勿再含混稽延).

2. 「조선국왕의 자문(朝鮮國王咨)」 : 청건대 대신 상주하여, 관원을 파견해 舊疆을 직접 조사함으로써 변경의 소요를 잠재워주십시오(請轉奏派員踏勘舊疆, 以息邊擾).

날짜 : 光緒十一年七月十五日(1885년 8월 24일)

발신 : 北洋大臣

수신 : 總理衙門

七月十五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本年七月初十日, 准吉林將軍來咨, 以.

朝鮮國不將占墾吉林邊地流民設法收回, 深恐越墾者益肆侵佔, 且後滋生事端. 咨請轉行該國王速派委員, 定期會勘疆界辦理.

等因.

除經本大臣即咨該國王派員知會吉林地方官, 定期認真會勘, 分明疆界, 妥商辦理, 勿

致含混稽延。並咨覆吉林將軍暨咨禮部外。相應抄稿咨明貴衙門，請煩查核施行。

照錄粘單

(1)「李鴻章致朝鮮國王咨」

為咨會事。

本年六月初五日，據委辦朝鮮商務道員陳樹棠稟稱。

五月間，晤朝鮮外部督辦金允植面稱。

該國北境與我吉林接壤，時有華人往來驅逐人民，燒燬農房，沿江上下一帶，蕭然空虛，民不聊生。疊接咸境北道節度使趙秉稷函附。

先後據鐘城茂山會寧等府縣稟報畧同，生靈溝壑，慘不可言。請設法諭禁。

等語。

據情稟請查禁，以杜後患。

等情。

當經本閣爵大臣咨請吉林將軍查明確情妥辦，並咨總理衙門。在案。

又於七月初四日，准貴國王四月二十七日來咨。

朝鮮西北疆域，原以土們江為界。前慮邊民或爭哄滋擾，空土們以南之地，禁民不得入居。適年往往就空地築室耕田，以朝鮮之民，居朝鮮之地，宜無不可。後人不知，反認豆滿為界，敦化縣照會朝鮮地方官刷還農民。請轉奏派員踏勘酌辦。

等因。

復經本閣爵大臣分咨吉林將軍並禮部核辦。在案。

茲於七月初十日，准吉林將軍希六月二十五日咨開。

詳查光緒七年十一月十四日，奉上諭。

前據銘安吳大澂奏，“朝鮮貧民占種吉林邊地，懇准一依領照納租。”當諭令該部議奏。

茲據恩承等奏。

近邊各國，不得越界私開田廬，例禁甚嚴。該國官員擅給執照，縱民渡江盜墾，事閱多年，現在宜令該國王盡數召回，設法安置，重申科禁，方為正辦，或於領照納租外，令其隸我版圖，置官設兵如屯田例，仍請飭令該將軍等再行籌畫，求一有利無害之方。

等語。

著銘安吳大澂再行詳細妥籌具奏。旋經議覆。擬俟查明戶籍。分歸琿春敦化縣管轄。為中原之民。均照吉林民一律辦理。

八年八月二十六日，奉上諭。

禮部奏據朝鮮國王咨稱。

習俗既殊，風土不一，若因該民人等占種，便隸版圖，萬一滋事，深為可慮。懇恩將流民刷還本國，交付本地方官弁歸籍辦理。

等語。

該國之民，令其仍回本國，原屬正辦。著銘安吳大澂體察情形，悉心籌畫。該流民人數眾多，應會商該國妥為收回。

又於十一月初二日奉上諭。

銘安吳大澂奏稱。

朝鮮貧民占種吉林邊地，現擬派員前赴該處查明戶口，知照該國地方官陸續收回，妥為撫輯。惟念該流民等人數眾多，安土重遷，若即時驅逐出境，誠恐該國地方官無從安插，轉致流離失所，懇恩寬予限期。

等語。

所奏自係實在情形，著照所議辦理。並著禮部傳知該國王轉飭該處地方官豫籌，妥為安置。准其於一年內悉數收回，以示體恤。

各等因。欽此。

當飭署敦化縣知縣趙敦誠，確查該貧民實有若干戶口，知照該國地方官剴切曉諭，陸續收回，妥為撫輯。在案。

嗣於九年秋間，復經該國使臣魚允中轉行該國地方官，限以是年中秋，將越壑流民一律收回本國，乃至期又不收回，反肆侵佔。復指豆滿土門為兩江，飾詞強辯，搦募界碑，請為勘界。

當於十年十月，咨行琿春副都統依，揀派協領德玉，招壑局委員府經歷銜賈元桂，前往會勘，而該國官員以冰雪在地，請俟今歲春融再行勘辦。迨至今夏，乃猶以待候政府為詞。屢經行令該委員備具照會，催其會勘，詎該國官吏一味狡賴，任意推延。

又據敦化縣稟稱。

該國流民日多，侵地愈廣，且肆無忌憚。將該縣屬民戶安花孫炳乾兩家房地，強行佔去。又將馱夫韓姓及居民沙永奎李明新等行裝，並永泰德鋪戶馬匹布物一併竊回茂山城內，事主韓馱夫等追捕至江，乃被臨江台佔壑流民恃眾羣毆，綁至其國。我民共憤，不期而集者數十人，齊赴茂山城見其官長理論，幸將被綁各事主放回，應許賠贖。該流民又復揚言，南崗一帶係伊國界址，不日即令我民蓄髮歸順，以致該處居民強者欲與爭衝，弱者咸恩搬避，人心惶惑，不能安堵。若不派兵彈壓，萬一滋生事端，不堪設想。

等情。前來。

當即咨商琿春副都統依，就近派兵彈壓，禁其不許再行侵佔。並照催該國早為清理界務。嗣經琿春副都統派兵數十名前往彈壓。惟該處流民日眾，侵佔日廣，遣之不去，禁之不聽，經營弁將新搭草棚焚燬數間，並將新越壑民鞭責示懲，始稍斂跡，旋即撤隊回防。乃該國官吏，將流民滋事一節，置之不理，竟以我兵沿江來往焚燬農幕，驅逐人民，藉詞聳聽，以小事大之道，當如是乎。至陳樹棠所云，藩屬之民，必當體恤撫字，不可使其流離失所，固屬正論。無如我欲懷柔，彼反抗辯，若不嚴行禁止，則侵佔伊于胡底。況此項流民眾多，該國既不肯令入我版圖，遵我政教。我又焉能置越壑流民於不問，坐使疆土日削乎。要無事理也。

總之，該國王於欽奉諭旨後，並不將流民設法收回，遷延至今。而越壑者益肆侵佔，且復滋生事端，若不早為之所，勢必滋蔓難圖。惟有咨請貴大臣轉行該國王，速派委員，定期會勘疆界，則地方屬吉屬朝，不辯自明。然後或令將流民收回，或令隸我版

圖，俾邊氓各安生業，永息爭端，以示體恤屬藩之意。除咨覆總理各國事務衙門並咨報禮部查照外，相應咨覆，請煩轉咨。

等因。到本閣爵大臣。

准此，查此事貴國王既於光緒八年咨請禮部轉奏，懇將流民刷還本國，交付本地方官弁歸籍辦理。九年秋間，又經朝官魚允中轉行本國地方官，限以是年中秋，將越墾流民一律收回本國。是朝民越界占種，確有其事，貴國君臣寔共知之。乃統署金允植告陳樹棠，僅言華人驅逐朝民，而貴國王來咨則謂朝民居朝地，不宜刷還，何以原奉上諭及自請刷還各節，均未提及，殊屬先後歧異。凡事應開誠布公，查案確核，未可矛盾其詞，稍涉欺隱。相應咨會貴國王，請煩查照，迅派妥員知會吉林地方官，定期認真會勘，分明疆界，妥商辦理，勿致含混稽延。須至咨者。七月十一日發。

(2) 「朝鮮國王 爲 咨會 事」

照得敝邦西北疆域，原以土們江爲界。於康熙五十一年，烏喇總管穆克登奉旨查邊，勒石立分水嶺上，以土們江以南以北，定爲上國朝鮮界限。敝邦慮邊民或爭哄滋擾，以貽憂上國，空土們以南之地，禁民不得入居。邇年以來，往往移就空地築室耕田，邊禁之漸久漸弛，固敝邦地方官責耳。乃若其地，實係敝邦，以敝邦之民，居敝邦之地，宜無不可。後人不知，反認豆滿爲界，至癸未年間，敦化知縣照會敝邦該地方官刷還農民。恐境界不明，致日後兩界民人爭哄不息。

據去年冬至兼謝恩正使金晚植，副使南廷哲，已將此事狀呈文禮部，仍將地圖碑文等件請禮部替存，以資後考。查此事有關境界，亦係後弊，理宜一番查勘，申明舊疆。茲派副司直李應浚齋咨前往，望煩貴大臣將此事理轉奏天陛，仍派員踏勘，酌核辦理。以明舊疆，以息邊擾，幸甚。爲此相應備文咨明，請貴大臣查照酌覆。須至咨者。

7월 15일 북양대신 이홍장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올해 8월 10일, 길림장군이 보내온 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국에서 길림 변지를 차지하여 개간한 유민을 방법을 마련하여 거두어들이지 않고 있으니, 월간민이 더욱 멋대로 침범하는 데다가 말썽을 일으키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오니, 조선국왕에게 대신 자문을 보내주셔서 신속하게 위원을 파견하여 기간을 정하고 공동감계를 실시하여 처리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미 본 대신이 즉시 조선국왕에게 자문을 보내 인원을 파견하도록 했으며, 길림 지방관에게도 통보하여 기간을 정해 성실하게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강계를 분명히 밝힌 다음 잘 상의하여 처리하되, 얼렁뚱땅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시하고, 아울러 길림장군에게 자문을 보내 답변하고, 예부에도 자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마땅히 초록한 문서를 귀 아문에 자문으로 보내 밝히니, 번거롭더라도 검토하고 시행해주십시오.

첨부문서 초록 :

(1) 「이홍장이 조선국왕에게 보내는 자문(李鴻章致朝鮮國王咨)」

자문으로 알립니다.

올해 6월 5일 委辦朝鮮商務分省補用道 陳樹棠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5월에 조선 外部[督辦] 金允植을 만났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조선의 북쪽 변경은 러시아·길림과 인접해 있는데, 중국인이 왕래하면서 조선 백성을 내쫓아내고 農房을 불태우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만강 상·하류 주변 일대가 삭막할 정도로 텅 비어 백성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 차례 威鏡北道按撫使 趙秉稷의 서신을 받았는데, 그것을 전후하여 종성·무산·회령부 등에서 보고한 내용과 대략 동일합니다. 응당 중국에서 방법을 강구하여 금지시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사정에 근거해 아뢰오니 삼가 조사하여 금지시킴으로써 후환을 막아주시기를 청하는 바입니다.

本閣爵大臣²⁸⁾ (李鴻章)은 길림장군에게 자문을 보내 명확히 조사하여 실정을 확인한 후 적절히

28) 각(閣)은 내각대학사를 의미하며, 작(爵)은 작위를 말한다. 즉 大學士이자 直隸總督이고 一等肅毅伯의

처리해달라고 했고, 아울러 총리아문에도 자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또한 7월 4일에 귀 국왕이 4월 27일자로 보낸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선의 서북 강역은 원래 토문강을 경계로 하여 왔습니다. 조선에서는 변민이 흑시 다투다가 소란을 일으킴으로써 중국에 폐를 끼칠까 염려하여 토문강 이남 지역은 비워 둔 채 백성이 들어가 살지 못하도록 해 왔습니다. 최근 종종 그 빈 땅으로 이사하여 집을 짓고 경작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변경 금지령이 오래되면서 점차 해이해졌으니, 이는 진실로 저희 지방관의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은 실은 조선 땅이므로 조선 백성이 거기 거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 사람들은 [이런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두만강을 경계로 생각하였던 것이므로, 돈화현에서도 조선 지방관에게 조회를 보내 농민을 거두어들이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청컨대, 대신 상주하여 관원을 파견해 직접 답사 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本閣爵大臣은 다시 길림장군과 예부에 자문을 보내 적절히 처리하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 7월 10일에 길림장군 希元이 6월 25일자로 보낸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서 7년 11월 14일에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전에 銘安과 吳大澂의 다음과 같은 상주를 받은 바 있다.

조선 빈민들이 吉林 邊地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들 모두에게 증명서를 지급하고 소작료를 납부하도록 재가해주실 것을 간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부로 하여금 논의한 후 상주하게 하였는데, 이에 恩承 등의 다음과 같은 상주를 받았다.

접경하고 있는 각국이 경계를 넘어와 불법적으로 개간을 하거나 농막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금지령은 종래 매우 엄격하였습니다. 조선 관원이 몇대로 [월간 민에게] 허가증[執照]을 발급하여 백성이 몰래 강을 건너 개간하도록 한지 이미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응당 조선국왕에게 그들을 모두 데리고 돌아가 방법을 강구하여 안치시키고 거듭 금지령을 밝히도록 지시해야 비로소 올바른 일 처리가 될 것입니다. 가령 증명서를 지급하고 소작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 외에 그들을 우리의 版圖에 예속시키려면 屯田의 경우처럼 官兵을 설치하되 아울러 길림장군에

작위를 지닌 이홍장(李鴻章)을 가리킨다.

게 다시 계획을 마련하여 이익은 있고 해는 없는 방법을 추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銘安과 吳大澂에게 다시 상세하게 계획을 마련하여 상주하도록 하였더니, 곧바로 (명안 등이) 논의하여 그들의 호적을 조사하기를 기다렸다가 각기 琿春과 敦化縣에 나누어 귀속시켜 中原의 백성으로 삼고, 길림 백성과 똑같이 대우하고자 한다는 답장을 받았다. 8년 8월 26일에 또한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다.

예부에서 조선국왕의 자문을 받아서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습속이 다르고 풍토가 같지 않으니, [황무지를] 차지하여 경작했다고 해서 중국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킨다면 만에 하나 말썽을 일으킬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삼가 황상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조선유민을 본국에서 거두어들이게 하여 조선의 지방 문무 관원에게 넘겨준 다음 원적지로 돌려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조선 백성을 다시 본국의 원래 속했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올바른 처리방법이다. 銘安과 吳大澂은 상황을 확인하고 최선을 다해 계획하되 유민들의 숫자가 많으니, 마땅히 조선 측과 함께 논의하여 적절하게 거두어가도록 하라.

또 11월 2일에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다.

銘安과 吳大澂이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조선 빈민이 길림 변지를 개간한 일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 가서 호구를 조사하고, 조선 함경도 소속 지방관에게 알려 간절하게 깨우쳐서 계속 거두어들여 적절하게 안무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선 유민은 그 수가 많고 정착했던 곳을 쉽사리 떠나려 하지 않는 데다가, 만약 한꺼번에 쫓아내어 경계 밖으로 몰아낸다면 조선 지방관이 안치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갈 곳을 잃고 떠돌게 될까 몹시 염려됩니다. 그래서 그 기한을 관대히 늘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청합니다.

상주한 바가 실제 상황이라면 그렇게 처리해도 좋다. 아울러 예부로 하여금 조선국왕에게 알려 해당 지방관에게 미리 준비하여 적절하게 안치시킬 수 있도록 지시하게 하라. 1년 기한을 주어 모두 거두어들이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보살피 주는 뜻을 보여주도록 하라.

그래서 곧바로 돈화현[試署知縣] 趙敦誠에게 지시를 내려 해당 빈민의 호구가 실제로 얼마인지 정확하게 조사하고, 조선지방관에게 간절하게 깨우쳐서 계속 거두어들이고 적절하게 위무하라고 조회를 보낸 바 있습니다.

뒤이어 광서 9년 가을 다시 조선의 西北經略使 魚允中을 통해 조선 지방관에게 지시하여 이 해 중추절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월간 유민을 모두 본국으로 거두어들이라고 하였지만, 기한이 다 되도록 거두어들이지는 않고, 오히려 멋대로 침범하여 농지를 차지하고 두만강과 토문강이 다른 강이라는 억지를 꾸며 강변하면서 界碑를 탁본하여 勘界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광서 10년 10월에는 혼춘부도통 依克唐阿에게 자문을 보내 協領 德玉과 招墾局委員 賈元桂 등을 파견하여 공동감계를 하려 했으나, 조선 관원은 얼음과 눈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올 봄에 눈이 녹기를 기다려서 다시 조사를 진행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이 되자 다시 정부의 답변을 기다린다는 핑계를 대었습니다. 누차 해당 위원에게 지시하여 조회를 보내 공동감계를 독촉하라고 하였지만, 조선 관리는 일관되게 발뺌을 하면서 멋대로 늦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돈화현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선 유민은 날로 늘어나 차지하여 개간한 땅이 더욱 넓어지고, 또한 조금도 거리낌이 없어서 돈화현에 사는 安花·孫炳乾 양가의 집과 땅을 강제로 짐거하였습니디. 또한 마바리꾼 한씨(韓姓)와 거민 沙永奎·李明新 등의 짐꾸러미와 永泰德 점포의 馬匹·布物을 몰래 훔쳐 茂山城內로 도망가 버렸습니디. 물건주인인 마바리꾼 한씨 등이 그들을 추격하여 강까지 갔는데, 그들이 강에 이르자 월간 유민들은 자신들의 수가 많음을 믿고 이들을 구타해서 묶고 데려가 버렸습니디. 현에서 이 소식을 듣고 조사하여 이미 완결시켰던 것은 이미 올린 8월분의 撥冊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유민들은 또한 다시 南崗 일대가 조선 땅에 속한다고 하면서, 머지않아 비석을 세우고 성을 쌓을 것이며, 머지않아 우리 백성이 [중국식 변발을 버리고] 머리를 길러 귀순해야 할 것이라고 떠들었습니다. 이래서 이곳 거민들 가운데 힘센 사람은 더불어 다투려 하고, 약한 사람들은 모두 피해서 이주할 생각을 하는 등 백성이 당혹해하면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병사를 보내어 질서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혹시라도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결과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디.

이상과 같은 보고가 올라왔으므로 바로 혼춘부도통 依克唐阿에게 자문을 보내 상의하여 가까운 곳에서 병사들을 보내 질서를 유지하되, 다시 가서 침범하여 차지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곳 유민이 날로 늘어나고, 침범하는 땅도 날로 넓어지며, 쫓아내도 가지 않고 금지해도 듣지 않아, 담당부대의 장교들이 초가집 몇 채를 불태워 부수고 아울러 새로 월간해 온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려 처벌하니, 그때야 비로소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부대를 원 근무지로 철수시켰습니다. 그러나 조선 관리는 유민이 말썽을 일으킨 것은 아예 제쳐두고 마침내 우리 병사들이 강을 따라 농막을 불태우고 백성을 쫓아냈다는 것을 구실로 선동하니,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방법이 응당 이래야 합니까? “번속의 백성은 응당 보살피고 아껴줌으로써 돌아갈 곳을 잃고 떠돌게 해서는 안 된다”는 陳樹棠 도대의 말은 물론 正論입니다. 그렇지만 이쪽에서는 회유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오히려 반항하니, 만약 엄격하게 금지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침범하여 차지하는 일이 언제 끝이 나겠습니까? 하물며 이 유민들은 수가 많고, 조선에서는 이들을 중국으로 귀화시켜 중국의 政教를 받들도록 하지도 않으니, 어찌 월간 유민을 그대로 놔두어 앉아서 영토가 날마다 침식되는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이런 도리는 없습니다.

요컨대, 조선국왕이 상유를 받은 다음 결코 방법을 강구하여 유민을 거두어들이지 않고 지금까지 질질 끌어왔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러 월간민이 더욱 멋대로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일찌감치 이에 대처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런 일이 확산되어 [나중에 대책을] 도모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응당 북양대신께 자문을 보내 요청하니, 조선국왕에게 알려 신속하게 인원을 파견하여 시기를 정하고 공동감계를 하게 되면, 그 땅이 길림에 속하는지 조선에 속하는지 가리지 않아도 저절로 밝혀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민을 거두어들이든지 아니면 중국으로 귀속시키든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변민이 각기 생업에 안주하고 영원히 다툼 거리가 없게 하여 藩屬을 보살피 주는 뜻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북양대신께 자문을 보내 조선국왕에게 자문을 전해줄 것을 요청하며, 아울러 총리아문과 예부에 대해서도 자문으로 알렸는데, 응당 귀 총리아문에도 자문으로 답장을 드리니 번거롭더라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의 내용이 本 閣爵大臣에게 도착했습니다.

생각건대, 이 사안은 귀 국왕이 이미 광서 8년에 예부에 자문을 보내, 유민들을 본국으로 거두어들여 해당 지방관에게 넘겨 본적으로 돌려보내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광서 9년 가을에는 또 朝官 魚允中을 통해 본국 지방관에게 공문을 보내 그 해 中秋까지 越江해서 경작한 유민들을 모두 본국으로 거두어들여 데려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조선 백성이 월경하여 경작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귀국의 君臣도 모두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統署 金允植이 陳樹棠에게 알리며 한다는 말이, 중국인이 조선 백성을 내쫓는다는 것만을 이야기하

였고, 귀 국왕이 보낸 자문에서는 조선 백성이 조선 땅에 거주하는 것이므로 거두어들이는 것은 마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애초에 받은 上諭와 스스로 거두어들이겠다고 요청했던 일은 모두 다 언급하지 않는 것인지, 이것은 정말로 앞뒤의 발언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모든 일은 성심껏 公正하게 처리하고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확인하여 그 말에 서로 모순이 되거나 조금이라도 꾸미고 숨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응당 귀 국왕에게 자문을 보내니, 번거롭겠지만 참고하시고, 신속하게 적절한 관원을 파견하여 길림 지방관과 함께 정해진 기간에 성실하게 공동감계를 하고, 강계를 분명히 확인하고 적절하게 상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모호하거나 지체되는 일이 있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7월 11일 발송.

(2) 「조선국왕의 자문(朝鮮國王咨)」

조선국왕이 자문으로 알립니다.

조선의 서북 강역은 원래 토문강을 경계로 하여 왔습니다. 강희 51년 烏喇總管 穆克登이 유지를 받들어 변계를 조사한 다음, 돌에 새겨 분수령 위에 세워놓아, 土門江 이남과 이북으로 중국과 조선의 경계를 삼았던 것입니다. 조선에서는 변민이 혹시 다투다가 소란을 일으킴으로써 중국에 폐를 끼칠까 염려하여 토문강 이남 지역은 비워둔 채 백성이 들어가 살지 못하도록 해 왔습니다. 최근 종종 그 빈 땅으로 이사하여 집을 짓고 경작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변경 금지령이 오래되면서 점차 해이해졌으니, 이는 진실로 저희 지방관의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은 실은 조선 땅이므로 조선 백성이 거기 거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 사람들은 [이런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豆滿江을 경계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癸未年(광서 9[1883]년)에 이르러 돈화현에서 조선 지방관에게 조회를 보내 농민을 거두어들이라고 요구했는데,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양쪽 백성의 다툼이 그치지 않을 것으로 염려됩니다. 그래서 작년 冬至使 兼 謝恩使로 正使 金晚植과 副使 南廷哲이 이에 관한 공문을 예부에 올리고, 아울러 地圖와 碑文 등은 예부에서 잠시 보존하여 나중엔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국경에 관한 것이자 나중의 문제와도 관계되는 것이니, 응당 한 차례 조사를 통해 옛 강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副司直 李應浚을 파견하여

자문을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貴 大臣께서 이 문제를 대신 황상께 상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조사한 다음 처리하여 옛 강계를 명확하게 하고 변경의
말썽거리를 잠재울 수 있다면 큰 다행이겠습니다. 이에 응당 문서를 갖추어 자문을 보내
알리니, 貴 大臣께서 살펴보고 답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19) 문서번호 : 1-3-1-19 (1050, 1930b-1932a)

사안 : 길림장군에게 적절한 관원을 파견하여 조선 관원과 함께 경계 지역을 명확히 조사함으로써 분쟁을 면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해주시기를 상주하여 청하는 바입니다(具奏 請飭令吉林將軍, 委派妥員會同朝鮮官員查明界址, 俾免爭執).

날짜 : 光緒十一年七月二十日(1885년 8월 29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皇帝

七月二十日, 本衙門具奏摺稱.

遵旨議奏事.

光緒十一年七月初六日, 禮部奏朝鮮國王請勘圖們江舊界據咨轉奏一摺, 軍機大臣奉旨.

該衙門議奏.

欽此. 欽遵.

抄交到臣衙門.

查原奏稱.

據朝鮮國王李熙來咨.

因圖們江舊界請派員踏勘, 以息邊擾.

等情.

咨請代奏, 事關疆界, 應請飭下吉林將軍, 速派妥員詳細履勘奏明辦理.

等語.

並經臣衙門片行禮部，將該國使臣本年二月間所遞地圖界碑各一張，照會一件，調取察核。正在核辦間，復接據吉林將軍希元咨稱。

光緒七八年間，朝鮮無業流民占墾吉林邊地 歷奉諭旨。

飭銘安吳大澂會商該國轉飭該處地方官豫籌安置 准寬予限期一年 悉數收回，以示體卹。

等因。欽遵辦理在案。

乃該國至期並不收回，反肆侵佔，復指豆滿圖們為兩江，飾詞強辯，搦募界碑 請為勘界。當咨行琿春副都統派員前往會勘，該國官員屢次藉詞推延。又據敦化縣稟稱，“該國流民日多 至有佔驅房地 盜竊鋪戶 及事主追捕 又被恃眾羣毆。”各情事。經琿春副都統派兵彈壓，將新搭草棚焚毀數間，並將越墾之民鞭責示懲，旋即撤隊回防。惟此項流民，該國既不肯令入我版圖，遵我政教，該國王於欽奉諭旨後，並不設法收回，恐越墾者益肆侵佔，且復滋生事端。自應咨請北洋大臣轉行該國王，速派妥員，定期會勘疆界，則地之屬吉屬朝，不辯自明。

並據李鴻章咨稱。

業已轉行該國王派員會勘。

各等語。

臣等詳度以上各節，似朝鮮流民越界佔墾，該國王始終未能洞察情形，嚴行勒禁 妥為收回，第據邊吏一面之詞，輒行陳請。而琿春將吏於派兵彈壓之際，並不先移撤該國邊吏，責以縱民越墾之罪，遽行焚毀棚屋，辦理亦屬操切，且亦非了事之法。原朝鮮世守藩服，恪供職貢，伊國邊界，自應亟予勘定，俾無業游民，各安耕墾，以副聖朝字小之仁。

惟該國所指圖們豆滿為二江者，實無依據。其所畫地圖，亦不明晰。考之載籍，厥證有三。恭查欽定皇朝通典邊防門，欽定皇朝四裔考，均載明吉林朝鮮以圖們為界，別無豆滿之流，一證也。會典地圖及一統輿圖，載在職方者，圖們鴨綠二江，為東西兩界，標畫分明。別有小圖們江在經流之北，亦不得蒙豆滿之名，二證也。又朝鮮國人自著地理小識云，白頭山在中國朝鮮之界，有大澤周迴十里，西流為鴨綠江，北流為松花江，東

流爲豆滿江，豆滿鴨之南，則朝鮮也。又云咸鏡道以鐵嶺之東北豆滿江爲界，設茂山會寧鐘城穩城慶源慶興六鎮營于江邊云云。蓋白頭乃長白之異名，豆滿卽圖們之轉音，方言至殊，實爲一水，三證也。至該國咨稱，康熙五十一年烏喇總管穆克登定界碑文一節，查康熙十二年始建吉林烏拉城，十五年甯古塔將軍移鎮于此。雍正五年增寘永吉州，乾隆十二年州罷。云總管者，沿順治初舊名稱之也。當日定界情形，正在移鎮之後，吉林將軍署內當有檔案可稽。應請飭下該將軍查明界址，派委委員，會同該國所派官員，指證明確，俾免懷疑爭執。並分別將流民收回安插，其難於遷徙者，奏明酌量隸入版圖，俾各安生業，以恤藩部，而靖邊氓。所有臣等遵議緣由，理合恭摺覆陳。伏乞聖鑒，謹奏。

光緒十一年七月二十日，軍機大臣奉旨。

依議。

欽此。

상유에서 지시한 바에 따라 논의한 결과를 삼가 상주합니다.

광서 11년 7월 6일 예부에서 조선국왕이 토문강의 옛 경계를 조사할 것을 요청한다는 자문을 받아 주를 올렸는데, 이에 대해 군기대신은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서 논의하여 상주하라.

이 지시가 저희 아문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부의 原奏를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조선국왕이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내왔습니다.

토문강의 옛 경계를 적절한 인원을 파견하여 상세하게 조사함으로써 변경의 분쟁을 막아주십시오.

아울러 이를 (예부에서) 대신 상주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국경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응당 (황상께서) 길림장군에게 지시를 내려 속히 적당한 인원을 파견하여 상세하게 조사한 다음, 분명하게 상주하여 처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부의 원주는 이와 같은 내용이었는데) 臣 衙門에서 예부에 공문을 보내 조선 사신이 올해 2월에 보내온 地圖와 界碑 [탁본] 각 1장, 조회 1건을 넘겨받아 검토를 하던 중, 마침 길림장군 希元이 보내온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광서 7·8년에 조선의 無業 유민들이 길림 변지를 차지해서 개간하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래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銘安과 吳大澂 등이 조선과 상의하여 해당 지방관에게 미리 안치할 준비를 하도록 하고, 관대하게 1년의 기한을 주어 모두 거두어들িয়ে 함으로써 보살피 주는 뜻을 보여 주도록 하라.

이 유지를 받들어 그대로 처리하였는데, 조선에서는 기한이 되어도 유민들을 거두어들이지 않고 오히려 멋대로 침범하여 차지하였고, 또한 두만과 토문이 서로 다른 강이라고 말을 꾸며 억지주장을 하면서, 界碑를 탁본하여 경계를 조사할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당시 혼춘부도통에게 자문을 보내 인원을 파견하여 공동감계를 하도록 했지만, 조선 관원은 누차 핑계를 대며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돈화현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선 유민들이 날로 늘어나고, 침범한 땅은 점점 넓어지는 데다가 또한 아무 거리낌 없이 방자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상점을 도둑질하여 주인이 쫓아가서 붙잡았으나 무리를 믿고 몰매를 때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혼춘부도통을 통하여 군사를 파견하여 탄압하도록 하여, 새로 지은 초가집 몇 간을 태우고 아울러 越壘한 백성은 채찍으로 때려 징벌을 보인 다음, 부대를 철수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에서는 이 유민들을 우리에게 귀속시켜 우리의 정교를 따르게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조선국왕은 유지를 받든 다음에도 거두어들일 방법을 세우지 않으니, 越壘民이 더욱더 마음대로 침범하여 차지하고 말썽을 일으킬까 두렵습니다. 응당 북양대신에게 자문을 보내 조선국왕에게 전달하여 신속하게 적당한 인원을 파견하여 기간을 정하고 공동감계를 시행하면 그 땅이 길림에 속하는지 조선에 속하는지 가지리 않아도 저절로 밝혀질 것입니다.

아울러 또한 북양대신 이홍장의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미 조선국왕에게 인원을 파견하여 공동감계를 하자고 전하였습니다.

신 등이 이상 각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해보니, 조선 유민이 월간을 하여 토지를 차지하고 개간한 문제에 대해 조선국왕은 시종일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엄격하게 통제하고 적절하

게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있으며, 오로지 변방 관리의 일방적인 말만을 믿고서 쉽사리 (이러한 감계) 요청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琿春의 문·무관들도 부대를 파견하여 질서를 유지하고자 할 때 조선의 변방관리에게 미리 공문을 보내 알림으로써 백성을 풀어놓아 월간한 것을 질책하지 않고, 갑작스레 집을 불태우는 행동으로 나선 것은 이미 성급한 처리 방법이자, 또한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원래 조선은 대대로 藩服으로서의 분수를 지켜 삼가 직분을 다해왔으며, 조선과의 경계는 응당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확정하여 無業流民들이 모두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함으로써, 중국에서 그동안 조선을 어여삐 여겨온 뜻에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조선에서 토문과 두만이 서로 다른 강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그들이 그려서 보내온 지도 역시 그다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자료에 실려 있는 것을 검토해보면 그 증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欽定皇朝通典』²⁹⁾의 「邊防門」³⁰⁾이나 「欽定皇朝四裔考」³¹⁾에는 분명하게 길림과 조선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고 실려 있고, 다른 두만강 지류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欽定大清]會典圖』³²⁾ 및 『一統輿圖[皇朝

29) 건륭(乾隆)년 황제의 지시에 의해 편찬된 책(100권)으로 두우(杜佑)의 『통전(通典)』을 이어서 편찬한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인 『속통전(續通典)』은 당대 이후 명대까지의 일을 다루고 있으며, 『황조통전(皇朝通典)』(오늘날에는 『청조통전』이라고도 한다)은 건륭 이전의 청대를 다루고 있는데, 『통전』의 기준인 여덟 가지 분류(八門)에 따라 항목을 나눠서 역대의 전장제도(典章制度)를 설명하고 있다.

30) 『황조통전』 권97의 「변방(邊防) 일(一) 조선(朝鮮)」에서는 건륭 연간까지의 청-조선 관계를 개괄하고 있으며, 국경문제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강희(康熙) 45년 강희제의 발언뿐이다. “四十五年十月諭大學士等曰：觀朝鮮國王，凡事極其敬，其國人亦皆感戴。聞其國有八道，北道與瓦爾喀地方土門江接界，東道接倭子國，西道接我鳳凰城，南接海猶有數小島。太宗文皇帝定朝鮮之役，我兵無處不到，以已破之國，我朝之重加營建，安堵如故，其國人於太宗文皇帝駐軍之地，樹立石碑，備書更生之德，累世感戴，以至於今。且彼更有可取者，明之末年彼始終未嘗叛之，猶重禮義之邦也。”

31) 앞서 나온 『황조통전』과 마찬가지로 건륭 연간 황제의 명에 의해 편찬된 『황조문헌통고(皇朝文獻通考)』 300권(건륭52년, 1787년)에 있는 권 293의 「사예고(四裔考)」를 가리키는 것 같다. 마단림(馬端臨)의 『문헌통고(文獻通考)』는 두우가 통전에 쓴 팔문(八門)이란 분류기준을 이십사(二十四)로 확대하면서 그 명칭을 고(考)로 바꾸었는데, 「사예고」도 그 24 가운데 하나이다. 마찬가지로 건륭 연간에 편찬된 『속문헌통고(續文獻通考)』는 송·요·금·원·명의 일을 다루고 있고, 『황조문헌통고』는 건륭 이전까지의 청대를 다루고 있다. 이 『황조문헌통고』의 권294 「사예(四裔) 동(東) 조선(朝鮮) 이(二)」에도 앞서와 같은 강희 45년조의 기사가 실려 있다.

32) 청대에는 총 6차에 걸쳐 역대의 전장제도(典章制度)의 연혁을 집대성한 『흠정대청회전(欽定大清會典)』이 연속적으로 간행되었는데(『崇德會典』, 『康熙會典』, 『雍正會典』, 『乾隆會典』, 『嘉慶會典』, 『光緒會典』)

一統輿地全圖]』의 「관도(職方)」³³⁾ 방면에는 토문강과 압록강이 동서 양쪽의 경계가 되고 표시된 그림이 아주 분명한 데다가, 따로 小土們江이 있는데, 본류의 북쪽에 있어 이 역시 두만강이란 이름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두 번째 증거입니다. 또한 조선사람이 스스로 지은 『地理小識』에도 백두산은 중국과 조선의 경계에 있고, 큰 호수가 있는데, 주변이 10리이며, 서쪽으로 흐르는 것은 압록강, 북쪽으로 흐르는 것은 송화강, 동쪽으로 흐르는 것은 두만강이고, 두만강의 남쪽은 조선이라고 실려 있습니다. 또한 함경도는 鐵嶺의 동북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며, 무성·회녕·중성·온성·경원·경흥 여섯 鎭營을 강변에 설치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백두산은 장백산의 다른 이름이고, 두만강은 토문강의 다른 발음이며, 방언이 다를 뿐 실제로는 하나의 강이라는 것이 세 번째 증거입니다.

조선의 자문에서 칭하길 강희 51년 烏喇總管 穆克登이 정계비를 세웠다는 부분의 경우, 조사해보면 강희 12년 처음 吉林 烏喇城을 두었고, 15년에는 寧古塔將軍을 이곳에 주둔하게 옮겼습니다. 雍正 5년에 永吉州를 두었다가, 乾隆 12년에 다시 폐지하였습니다. 총관이라고 하는 것은 順治 초기의 옛 명칭입니다. 당일 定界 상황은 바로 주둔지를 옮긴 다음으로 길림장군의 관청에 확인해볼 수 있는 공문기록이 있을 것이니, 해당장군에게 지시하여 경계를 조사해서 확인하고, 적절한 인원을 파견해서 조선에서 파견한 관원과 함께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어 회의나 분쟁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유민들을 거두어들여 안치시키고, 옮겨가기 힘든 사람들은 상주를 통해 확인을 받은 다음 적절하게 중국에 귀속시켜 각기 생업에 안주시키게 한다면, 藩部를 무마할 수 있고 邊民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신들이 논의한 모든 것에 대해서 奏摺를 갖추어 다시 아뢰므로, 엿드려 빌건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삼가 주를 올립니다.

광서 11년 7월 20일, 군기대신이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다.

논의한 대로 하라.

이상.

6차본인 『흙정광서회전(欽定光緒會典)』에는 『흙정대청회전사례(欽定光緒會典事例)』 1,220권과 『흙정대청회전도(欽定光緒會典圖)』 270권이 부가되어 있다. 보통 『대청회전』이라 하면 이 판본을 가리킨다. 『회전도』는 5차본인 『가경회전』부터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그림을 통해 청대의 문물, 제도, 전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33) 직방(職方)은 관도, 영토를 가리키는 뜻이다.

(20) 문서번호 : 1-3-1-20 (1052, 1933b)

사안 : 도문강 舊界를 조사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답장 상주로 올렸고, 조선 사신이 휴대하는 물품의 징세에 관해서도 논의하여 답장 附片을 올렸는데, 논의한 대로 하라는 유지를 받았으므로, 이를 초록하여 알리는 바입니다(覆奏查勘圖們江舊界摺, 及議覆朝鮮使臣所帶貨包徵稅片, 奉旨依議, 錄旨知照).

날짜 : 光緒十一年七月二十日(1885년 8월 29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禮部

七月二十日, 行禮部文稱.

光緒十一年七月二十日, 本衙門覆奏查勘圖們江舊界一摺, 及議復朝鮮使臣所帶貨包徵稅一片, 本日軍機大臣奉旨.

依議.

欽此.

相應恭錄諭旨, 抄錄原奏知照可也.

7월 20일, 禮部에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다.

광서 11년 7월 20일, 본 아문에서는 도문강의 舊界를 조사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답장 상주로 올렸고, 조선 사신이 휴대하는 물품의 징세에 관해서도 논의하여 답장 附片을 올렸는데, 오늘 군기대신이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논의한 대로 하라.

따라서 마땅히 유지를 삼가 초록하여, 原奏를 초록하여 알려야 할 것입니다.

(21) 문서번호 : 1-3-1-21 (1053, 1934a)

사안 : 조선에서 보낸 지도와 비문 및 조회 각 1건을 附片으로 돌려보냅니다(片還朝鮮所遞地圖碑文照會各一件).

날짜 : 光緒十一年七月二十日(1885년 8월 29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禮部

七月二十日, 行禮部文稱.

本月初九日, 准片.

送朝鮮所遞地圖等件, 俟辦結後, 仍將各原件送回本部存案.

等因. 前來.

相應將原送地圖碑文照會各一件, 一併片送貴部查收可也.

7월 20일에 예부에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다.

이번 달 9일 다음과 같은 片文³⁴⁾을 받았습니다.

조선에서 건넨 지도 등의 문서를 보내니, 일 처리가 끝난 다음 각 원건을 본부로 돌려보내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마땅히 보내준 지도·비문·조회 각 1건을 모두 片文으로 귀 예부에 돌려보내니 확인하고 수령하십시오.

34) 여기의 편(片)은 앞서 나온 부편(附片)과는 다른 형식의 공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즉 예부와 총리아문 사이에 간단한 형식으로 교환하는 공문의 형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2) 문서번호 : 1-3-1-22 (1054, 1934b)

사안 : 도문강의 舊界를 조사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하여 올린 주접과 조선 사신이 휴대한 물품의 면세에 대하여 논의하여 올린 附片에 대해 유지를 받은 다음 이미 조선국왕·북양대신 및 길림장군에게 알려주셨습니까(議奏查勘圖們江舊界摺, 及免徵朝鮮使臣所帶貨包片, 得旨後已否知照朝鮮國王, 北洋大臣及吉林將軍)?

날짜 : 光緒十一年七月二十三日(1885년 9월 1일)

발신 : 禮部

수신 : 總理衙門

七月二十三日, 禮部文稱.

准總理各國事務衙門咨稱.

本衙門覆奏查勘圖們江舊界一摺, 及議覆朝鮮使臣所帶貨包征稅一片, 本日軍機大臣奉旨.

議依.

欽此.

恭錄諭旨, 抄錄原奏知照.

前來.

查向來朝鮮齋咨官來京, 本部據咨轉奏, 得旨後, 抄錄原奏及所奉諭旨, 知照朝鮮國王及咨行各處, 歷經辦理在案. 此次係由貴衙門議奏, 所有北洋大臣·吉林將軍·朝鮮國王, 已否由貴衙門知照之處, 來文並未聲敘. 相應片行總理各國事務衙門查明聲覆過部, 以便辦理可也.

7월 23일, 예부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다음과 같은 총리아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본 아문에서 도문강의 舊界를 조사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여 올린 주접과 조선 사신이 휴대한 물품의 징세에 대해 논의하여 附片을 올렸는데, 오늘 군기대신이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논의한 대로 하라.

이에 삼가 諭旨를 기록하고 原奏를 초록하여 알리는 바입니다.

살펴보건대, 과거 조선의 자문 전달관이 북경에 오면 예부에서 자문을 받아 대신 상주하였고, 유지를 받은 다음에는 原奏 및 유지를 초록하여 조선국에 알리고 각처에 자문을 보내는 일을 줄곧 처리해 왔습니다. 이번 일은 귀 아문에서 논의하여 상주했는데, 북양대신과 길림장군 및 조선국왕에게 이미 귀 아문에서 알린 것인지 아닌지, 보내주신 문서에는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땅히 총리아문에 片文을 보내오니, 명확히 확인한 다음 본 예부에 답장으로 보내어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23) 문서번호 : 1-3-1-23 (1055, 1935a)

사안 : 길림장군에게 관원을 파견하여 도문강 영역을 함께 조사하도록 지시를 내려달라고 논의하여 상주하였고, 이에 대해 논의한 대로 하라는 유지를 받았으므로,諭旨를 기록하고 原奏를 초록하여 알리는 바입니다(議奏飭令吉林將軍派員會勘圖們江界址, 奉旨依議, 錄旨抄奏知照).

날짜 : 光緒十一年七月二十二四日(1885년 9월 2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北洋大臣

七月二十四日, 行北洋大臣李鴻章文稱.

光緒十一年七月二十日, 本衙門議奏圖們江界址請飭吉林將軍派員與朝鮮官員會勘一摺, 本日奉旨.

依議.

欽此.

相應恭錄諭旨, 抄錄原奏, 咨行貴大臣遵照可也.

[同日行吉林將軍希元文同上]

7월 24일, 북양대신 이홍장에게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다.

광서 11년 7월 20일, 본 아문에서 도문강 경계 지역에 대해 길림장군에게 관원을 파견해 조선 관원과 같이 함께 조사하도록 지시를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논의하여 상주하였는데, 오늘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논의한 대로 하라.

마땅히 삼가 諭旨를 기록하고 原奏를 초록하여 자문으로 귀 대신께 보내오니, 참고해주십시오.

[같은 날 길림장군 希元에게 보낸 문서도 위와 같다]



(24) 문서번호 : 1-3-1-24 (1058, 1936b)

사안 : 조선 사신이 휴대하는 화물의 징세에 대해서 변통할 방법을 지금 당장 확정할 수는 없으니 아직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도문강의 옛 경계를 조사하는 일에 대해서는 과거의 장정에 따라 대신 문서를 전달하여 알려 주십시오(朝鮮使臣所帶貨包徵稅事, 刻下未核定變通辦法, 尙毋用知照. 該國王至查勘圖們江舊界請, 照向章轉行).

날짜 : 光緒十一年七月二十六日(1885년 9월 4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禮部

七月二十六日, 行禮部文稱.

光緒十一年七月二十三日, 接准片稱.

向來朝鮮齎咨官來京, 據咨轉奏得旨後, 抄錄原奏及所奉諭旨, 知照朝鮮國王及咨行各處. 此次議覆查勘圖們江舊界一摺, 議覆朝鮮使臣所帶貨包征稅一片, 已否知照北洋大臣·吉林將軍·朝鮮國王, 希查明聲覆過部, 以便辦理.

等因. 前來.

查朝鮮使臣所帶貨包徵稅, 既經貴部駁還. 本衙門現已遵旨知照北洋大臣·盛京將軍·奉天府府尹會商酌核, 刻下尚無辦法, 即可毋庸知照朝鮮國王. 其查勘圖們江舊界一摺, 本衙門奉旨後, 已咨行北洋大臣·吉林將軍. 相應咨復貴部, 卽照向章轉行知照朝鮮國王可也.

7월 26일, 예부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다.

광서 11년 7월 23일에 받은 附片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 조선의 자문 전달관이 북경에 오면 예부에서 그 자문을 받아 대신 상주하여 유지를 받은 다음에, 原奏 및 받은 諭旨를 초록하여 조선국왕에게 알리고 각처에도 자문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도문강의 舊界를 조사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여 답장으로 올린 상주 및 조선 사신이 휴대한 물품의 징세에 대해 논의하여 올린 附片에 대해서 이미 북양대신과 길림장군 및 조선국왕에게 알렸는지, 확인한 다음 본부에 알려주시면 처리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조선 사신이 휴대한 물품의 징세는 이미 귀 예부에서 반박하여 자문을 돌려보냈습니다. 본 총리아문에서는 현재 유지에 따라 북양대신과 성경장군 및 봉천부 부윤에게 알려 함께 검토하도록 하였는데, 지금 당장은 아직 별다른 방안이 없으니 조선국왕에게 알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도문강 舊界를 조사해야 한다는 상주는 본 아문에서 유지를 받은 다음 이미 북양대신과 길림장군에게 자문으로 알렸습니다. 이에 마땅히 귀 예부에도 자문으로 알리니, 과거의 장정에 따라 조선국왕에게 전달하여 알려주시면 될 것입니다.



(25) 문서번호 : 1-3-1-25 (1060, 1938a-1939b)

사안 : 조선이 도문강 경계를 가지고 심중에 교활한 속셈을 가지고 있어, 이미 도문강 경계에 대해 기간이 되면 전력으로 함께 조사하여 모호하게 만들거나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하였습니다(朝鮮存心狡賴圖們江界, 已飭屬屆時認真會勘, 勿令含混稽延).

날짜 : 光緒十一年八月十二日(1885년 9월 20일)

발신 : 吉林將軍

수신 : 總理衙門

將軍衙門爲咨行事.

本年七月十七日, 准北洋大臣直閣爵督部堂咨.

光緒十一年七月初四日, 准朝鮮國王咨開.

照得敝邦西北疆域, 原以土們江界, 於康熙五十一年, 烏喇總管穆克登, 奉旨查邊, 勒石立分水嶺上, 以土們江以南以北, 定上國·朝鮮界限. 敝邦慮邊民或爭哄滋擾, 以貽憂上國, 空土們以南之地, 禁民不得入居. 邇年以來, 往往移就空地, 築室耕田, 邊禁之漸久漸弛, 固敝邦地方官責耳. 乃若其地實係敝邦, 以敝邦之民居敝邦之地, 宜無不可, 後人不知, 反認豆滿爲界. 至癸末年間, 敦化知縣照會敝邦, 該地方官刷逐農民, 恐境界不明, 致日後兩界人民爭哄不息. 據去年冬至兼謝恩正使金晚植, 副使 南廷哲, 已將此事狀呈文禮部, 仍將地圖·碑文等件, 請禮部替存, 以資後考. 此事有關境界, 亦係後弊, 理宜一番勘, 申明舊疆, 派副司直 李應浚, 齎咨前往, 望煩貴王公諸大臣, 將此事理轉奏天陛, 仍派員踏勘, 酌核辦理, 以明舊疆, 以息邊擾, 幸甚. 爲此相應備文咨請, 查照酌復.

等因. 到本閣爵大臣. 准此.

除咨禮部核辦外，相應咨會貴將軍，請煩查核酌辦見復。

等因。前來。

案查光緒七年，據李守金鏞稟稱。

朝鮮貧民越界墾荒，已由該國咸鏡道發給執照，分段註冊。據穩城府兵官 趙秉稷面稱。

沿江之民半多仰給於北岸，彼民自知越界墾種，但求格外施仁。

等語。

當經前將軍銘安·大臣吳大澂，據情入奏，墾照吉林向章，令朝民一體納租，查明戶籍，分琿春·敦化縣管轄，奉旨允准在案。該國王旋以習俗不一，恐滋事端，有咨由禮部懇請刷還之奏，是知吉林·朝鮮接壤，原以土門江為界，江之東南為朝鮮，西北為吉林，界限整然，毫無疑義。乃該國官吏日久變生，竟以土門江名豆滿江，以吉林海蘭河指土門江，直將舊有江河故意混淆。恭攷『欽定盛京通志』，及『吉省輿地圖』，土門江發源於長白山，自西南而東北曲折，至朝鮮界南折入海。其海蘭河又名駭浪河，發源於吉林南崗地方二道溝，掌之秫秸塚嶺，與土門江源遠隔數百里。自西而東百數十里，入博爾哈通河，再東行數十里，入嚙哈里河，俗名嘎雅河，復南折十餘里入土門江。江河之源流，歷歷可考，今該國指海蘭河為土門江，顯係張冠李戴，不知土門·豆滿實止一江，緣土人之轉音稍別，而該國遂分為二，殊屬有心狡賴。且稱慮邊民爭哄，空土門江以南之地，禁民不得入居，彼蓋指海蘭河為土門江，則所云空地，在江以南者，實係在江以北。乾隆·道光間，該國王以分界之地，彼此僅隔一江，恐兩居民滋生事端，前後咨請禮部奏墾，沿江一帶稍留樵採餘地，足見該處空地屬中而不屬朝，確有可徵。至稱康熙年間查邊勒石，固屬可憑，然事遠年湮，碑或可以遷移，江則千古不易，與其就碑而論，究不若以江為據。總之，朝民越墾之地，按李守摺所開，共有八處，均在土門江北岸，彼國官民非不公知。其所以再三狡辯者，想因無力刷還，不得不作此違心之論耳。正在核辦間，復於本月二十四日，又准北洋大臣咨覆。

業經轉行該國王，令其速派委員，定期會勘，由本爵將軍轉飭地方官，隨時催辦。

等因。鈔稿咨行前來。

除咨覆北洋大臣·禮部查核，咨行琿春副都統，屆時派委員，認真會勘，分明界址，勿令
含混稽延外，相應咨報總理衙門，請煩查核施行。

(길림) 장군아문에서 자문을 보내 알립니다. 올해 7월 17일 북양대신 겸 직예총독의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니다.

광서 11년 7월 4일 조선국왕의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니다.

조선국왕이 자문을 보내 알립니다. 조선의 西北 강역은 원래 土門江을 경계로 하여 왔습니니다. 강희 51년 烏喇總管 穆克登이 유지를 받들어 변경을 조사한 다음, 돌에 새겨 분수령 위에 세워놓아, 토문강 이남과 이북으로 중국과 조선의 경계를 삼았던 것입니니다. 조선에서는 邊民이 혹시 다투다가 소란을 일으킴으로써 중국에 폐를 끼칠까 염려하여 토문강 이남 지역은 비워둔 채 백성이 들어가 살지 못하도록 해 왔습니니다. 최근 종종 그 빈 땅으로 이사하여 집을 짓고 경작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변경 금지령이 오래되면서 점차 해이해졌는데, 이는 진실로 저희 지방관의 책임입니니다. 그렇지만 그 땅은 실은 조선 땅이므로 조선 백성이 거기 거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니다. 나중 사람들은 [이런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두만강을 경계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니다. 癸未年(광서 9[1883]년)에 이르러 敦化縣에서 조선 지방관에게 조회를 보내 농민을 거두어들이라고 요구했는데,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양쪽 백성의 다툼이 그치지 않을 것으로 염려됩니다. 그래서 작년 冬至使 兼 謝恩正使 金晚植, 副使 南廷哲이 이에 관한 공문을 예부에 올리고, 아울러 지도와 비문 등은 예부에서 잠시 보존하여 나중에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니다. 이 문제는 국경에 관한 것이자 나중의 문제와도 관계되는 것이니, 응당 한 차례 조사를 통해 옛 강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니다. 그래서 지금 副司直 李應俊을 파견하여 자문을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예부상서께서 이 문제를 대신 황상께 상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조사한 다음 처리하여 옛 강계를 명확하게 하고 변경의 말썽거리를 잠재울 수 있다면 큰 다행이겠습니니다. 이에 응당 문서를 갖추어 자문을 보내 알리니, 예부상서께서 살펴보고 답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本 閣爵大臣이 위 문서를 받아서 예부에 자문을 보내 검토하고 처리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자문을 보내 귀 장군에게 알리니 번거롭더라도 검토하고 적절하게 처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吉林將軍은 광서 7년 李金鏞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조선 빈민이 경계를 넘어 황무지를 개간하고, 이미 조선 함경도에서는 그들에게 증명서(執照)를 발급하고 구역별로 나누어 장부에 등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선 穩城府의 兵官 趙秉稷이 직접 제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강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은 北岸에서 나는 것에 의존해서 사는데,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경계를 넘어 경작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단지 [중국 측에서] 각별한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때 이미 전임장군 銘安과 대신 吳大徵이 당시의 상황을 보고하면서 길림의 기존 장정에 따라서 조선 백성에게 모두 조세를 납부하게 하고 호적을 조사하여 琿春과 敦化縣이 나누어 관할하게 해달라고 奏請하였고, 이를 재가하는 상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조선국왕은 바로 뒤이어 습속이 같지 않고 말썽이 생길까 두렵다는 이유로 자문을 보내 예부를 통해 대신 상주를 올리게 하여 그들을 거두어들이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길림과 조선이 맞닿은 것이 원래 토문강을 경계로 삼고 있으며, 강의 동남쪽이 조선이고 서북쪽이 길림으로 경계가 분명하여 조금도 의심스러운 것이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조선 관리가 태도를 바꾸어 마침내 토문강을 두만강이라고 하고 길림의 海蘭河를 토문강이라고 하면서 곧바로 기존의 강 이름을 일부러 뒤섞어버리고자 하였습니다. 삼가 『欽定盛京通志』³⁵⁾와 『吉省輿地圖』를 살펴보니 토문강은 장백산에서 발원하고, 서남쪽에서 동북쪽으로 흐르다가 구부러져 조선 땅과의 경계에 이르러 남쪽으로 꺾어져 바다로 들어갑니다. 해란하는 駭浪河라고도 하는데 길림 南崗지방의 二道溝 상류의 秫秸塚嶺에서 발원하는데, 토문강의 발원지와 멀리 수백 리나 떨어져 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백 수십 리를 흘러서 博爾哈通河로 흘러들어 가고, 다시 동쪽으로 수십 리를 가서 속칭 嘎雅河라고 하는 噶哈里河로 들어가서 다시 남쪽으로 꺾여 십여 리를 흐른 다음 토문강으로 들어갑니다. 강하의 원류가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지금 조선에서 해란하를 토문

35) 건륭 연간 황제의 지시로 편찬된 것으로 120권의 분량으로 기존 기록에 미비되었던 성경(盛京)·흥경(興京) 등의 창건과 태조·태종의 정도(定都) 경과를 보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타 건치연혁(建置沿革), 강역의 형승(形勝), 고적능묘(古蹟陵墓), 풍속토산(風俗土產) 등을 다루었다.

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張氏의 모자를 李氏가 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토문과 두만이 실은 하나의 강에 지나지 않고 현지인들의 발음이 조금 다른 것임을 모르고, 조선에서 끝내 두 강으로 나누는 것은 일부러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또한 변민이 문제를 일으킬까 염려되어 토문강 이남의 땅을 비워두고 백성이 들어가서 사는 것을 금지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해란하를 토문강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강의 남쪽에 있다고 언급된 빈 땅은 실은 강의 북쪽에 있는 땅이 됩니다. 살펴보니 乾隆·道光 연간에 조선국왕이 경계가 되는 땅에 겨우 강 한 줄기를 사이에 두고 있어서 양쪽 백성이 말썽을 일으킬까 두렵다고 하여 차례로 예부에 자문을 보내 강 연안에 땔나무를 켄 땅을 조금 남기도록 奏請한 바 있으니, 이 곳의 빈 땅이 중국에 속하지 조선에 속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강희 연간에 변경을 조사하고 비석을 새겼다는 말은 실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아주 오래된 일인 데다가, 비석은 옮겨질 수도 있지만 강은 천고에 바뀌지 않는 것이니, 비석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사실 강을 근거로 삼는 것만 못합니다. 요컨대 조선 백성이 越壑한 땅은 李金鏞의 목록에 따르면 여덟 곳으로 모두 토문강의 북안에 있으며, 조선 관리와 백성은 모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도, 두 번 세 번 교활한 억지를 부리는 것은 사실 월간한 백성을 거두어들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마음속과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침 이 문제를 처리하려던 중 이번 달 24일 다시 북양대신이 보낸 다음과 같은 답장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미 조선국왕에게 전달하여, 조속히 적절한 사람을 파견하여 날짜를 정해 공동감계를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길림장군께서는 지방관에게 수시로 독촉하도록 지시를 전달해 주십시오.

(이러한 문서초고를 옮겨 써서 자문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북양대신과 예부에 답장자문을 보내 검토하도록 함과 동시에 아울러 훈춘부도통에게도 자문을 보내 때가 되면 적절한 사람을 골라서 파견하여 확실하게 공동감계를 실시하여 경계를 분명하게 만들되, 불명확하게 하거나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응당 총리아문에 자문을 보내 보고하니, 번거롭더라도 참고해 주십시오.

(26) 문서번호 : 1-3-1-26 (1065, 1946a-1946b)

사안 : 조선국왕이 안변부사 이중하를 파견해 길림의 파견 관원과 함께 강계를 조사하게 하였습니다(朝鮮國王派安邊府使李重夏, 會同吉林派員勘審疆界).

날짜 : 光緒十一年八月二十日(1885년 9월 28일)

발신 : 北洋大臣

수신 : 總理衙門

八月二十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光緒十一年八月十八日, 准朝鮮國王咨開.

照得光緒十一年八月十一日, 准本年七月二十七日貴大臣照會內開.

光緒十一年七月二十五日, 准總理各國事務衙門咨開.

光緒十一年七月二十日, 本衙門議奏圖門江界址請飭吉林將軍派員與朝鮮官員會勘一摺, 本日奉旨.

依議.

欽此.

相應恭錄諭旨, 鈔錄原奏咨行貴大臣遵照可也.

等因. 到本閣爵大臣.

准此, 查本年七月間, 准吉林將軍來咨, 以朝民越界占種, 恐滋事端, 業經本閣爵大臣轉咨貴國王派員知會吉林地方官, 定期認真會勘, 分明疆界, 妥商辦理在案.

茲准前因, 相應鈔錄摺稿, 咨會貴國王, 請煩查照派員會同辦理施行.

等因.

准此. 查圖門勘界一事, 屢經邊官請期, 緣未奉貴大臣知照, 未便派員. 刻已飭派安邊府使李重夏, 會同吉林地方官勘審疆界, 妥爲辦理. 相應備文照覆, 請煩查照施行. 等因. 到本閣爵大臣.

准此. 除咨吉林將軍迅派委員, 速赴交界地方, 詳審會勘, 劃定界限, 妥商辦理外, 相應咨明貴衙門, 請煩查照施行.

8월 20일, 북양대신 이홍장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광서 11년 8월 18일 조선국왕의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광서 11년 8월 11일 같은 해 7월 27일 귀 대신이 보낸 다음과 같은 조회를 받았습니다.

광서 11년 7월 25일 다음과 같은 총리아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광서 11년 7월 20일 본 아문에서 도문강 경계문제에 대해 길림장군에게 사람을 파견하여 조선 관원과 공동감계를 하도록 지시해 달라는 의논한 결과를 상주하였는데, 오늘 의논한 대로 하라는 상유를 받았습니다. 이에 삼가 유지를 옮겨 적고 원주를 빼껴 귀 대신에게 자문으로 보내니 그에 따라 처리해주시오.

이상의 자문이 본 대신에게 도착하였습니다. 올해 7월 길림장군이 조선 백성이 경계를 넘어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지어 말뚝을 일으킬까 염려된다고 자문을 보내와 이미 본 대신이 조선국왕에게 자문을 전하여 인원을 파견하고 길림 지방관에게 알려 날짜를 정하고 확실하게 공동감계를 실시하여 강계를 분명하게 하고 적절하여 의논하여 처리해 달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자문에 의거하여 주점 원고를 빼껴 귀 국왕에게 자문으로 보내 알리니 번거롭더라도 그대로 따라서 인원을 파견하여 함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문강 경계를 조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변경 관리가 기간을 정할 것을 청하였으나, 귀 대신의 통지를 받지 못하여 인원을 파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미 安邊府使李重夏를 파견하여 길림 지방관과 함께 공동감계를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문서를 갖추어 답장을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자문이 본 각작대신에게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길림장군에게 알려 신속하게 적절

한 관원을 交界 지방으로 파견하여 함께 자세하게 공동감계를 실시하여 경계를 확정하고 적절하게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이상의 내용을 귀 아문에 자문을 보내 알리니 번거롭더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 문서번호 : 1-3-1-27 (1066, 1947a-1947b)

사안 : 1. 秦煥을 파견하여 조선 관원과 함께 변계를 명확히 조사하게 했습니다(派秦煥會同朝鮮官勸明邊界).

2. 勅使 穆克登이 疆域을 정할 때의 옛 檔案에 대해, 이미 琿春副都統衙門에 자문을 보내 상세히 찾아보도록 하였습니다(勅使穆克登定界舊檔, 已咨行琿春副都統衙門就近詳查).

날짜 : 光緒十一年八月二十二日(1885년 9월 30일)

발신 : 吉林將軍

수신 : 總理衙門

八月二十二日, 吉林將軍 希元文稱.

邊務承辦處案呈.

本年八月初二日, 接准[總署]咨開.

光緒十一年七月二十日, 本衙門議奏圖們江界址請飭吉林將軍派員與朝鮮官員會勘一摺, 奉旨.

依議.

欽此.

恭錄諭旨, 抄錄原奏咨行前來.

原奏內稱.

朝鮮流民越界佔墾, 該國王始終未能洞察情形, 嚴行勒禁, 妥爲收回, 第據邊吏一面之詞, 輒行陳情. 而琿春將吏於派兵彈壓之際, 不先移檄該國邊吏, 責以縱

民越墾之罪，遽行焚毀棚屋，辦理既屬操切，且亦非了事之法。原朝鮮世守藩服，恪供職貢，伊國邊界，自應亟予勘定，無業游民各安耕鑿，以副聖朝字小之仁。惟該國所指圖門·豆滿二江者，實無依據，其所地圖亦不明。考之載籍，吉林·朝鮮以圖門界，別無豆滿支流。又圖們·鴨綠二江，爲東西兩界，標畫分明，別有小圖們江，在經流之北，亦不得蒙豆滿之名。又咸鏡道以鐵嶺之東北豆滿江爲界，設茂山等六營于江邊。蓋白頭乃長白之異名，豆滿卽圖門之轉音，方言互殊，實爲一水。

等語。

考證洵爲精確，自應遵照貴衙門原奏，派員前往勘辦，有督理商務委員·五品銜分發補用知縣秦令煥³⁶⁾前在該處辦理招墾事務，地勢情形頗熟悉，堪以就近派委。兼由琿春副都統遴派委員，會同該國官員，指證明確，俾免懷疑爭執，令將流民收回安插，其難於遷徙者，再行奏明辦理。至原奏內請飭康熙五十一年烏拉總管穆克登定界碑文一節，遵查吉林將署內遠年檔案，久已霉爛無存，應咨行琿春副都統衙門，就近詳查。除照原奏咨行琿春副都統，檄飭秦令煥遵照外，相應咨覆貴衙門，請煩查核施行。

8월 22일 길림장군 희원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변무승관처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올해 8월 2일에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광서 11년 7월 20일 본 아문에서 도문강 경계문제에 대해 길림장군에게 사람을 파견하여 조선 관원과 공동감계를 하도록 지시해 달라는 의논한 결과를 상주하였는데, 오늘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다.

의논한 대로 하라

36) 진령영(秦令煥)에서 령(令)은 진영의 관직, 지현을 가리킨다. 따라서 지현 진영이라는 뜻이다. 령(令) 대신 다른 글자(이를테면 道는 道臺를 가리킨다)가 들어가면 그것도 역시 다른 관직을 가리킨다.

이에 삼가 유지를 옮겨 적고 원주를 베껴 귀 대신에게 자문으로 보내니 그에 따라
처리해주십시오.

원래의 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선 유민이 월간을 하여 토지를 차지하고 개간한 문제에 대해 조선국왕은 시종일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엄격하게 통제하고 적절하게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있으며, 오로지 변방 관리의 일방적인 말만을 믿고서 쉽사리 (이러한 감계) 요청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혼춘의 문·무관들도 부대를 파견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자 할 때 조선의 변방 관리에게 미리 공문을 보내 알림으로써 백성을 풀어놓아 월간한
것을 질책하지 않고, 갑작스레 집을 불태우는 행동으로 나선 것은 성급한 처리 방법일
뿐더러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원래 조선은 대대로 藩服으로서의
분수를 지켜 삼가 직분을 다해왔으며, 조선과의 경계는 응당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확정하여 無業流民들이 모두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함으로써, 중국에서 그동안 조선을
어여삐 여겨온 뜻에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조선에서 토문과 두만이 서로 다른
강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그들이 그러서 보내온 지도 역시 그다
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책에 실려 있는 것을 검토해보면 길림과 조선은 圖們江
을 경계로 한다고 실려 있고, 다른 두만강 지류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한
도문강과 압록강이 동서 양쪽의 경계가 되고 표시된 그림이 아주 분명한 데다가, 따로
小圖們江이 있는데 본류의 북쪽에 있어 또한 두만강이란 이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함경도는 鐵嶺의 동북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여 茂山 등의 여섯 진영을 강변에
설치하였습니다. 백두산은 장백산의 다른 이름이고, 두만강의 도문강의 다른 발음이며
방언이 다를 뿐 실제로는 하나의 강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고증이 실로 정확합니다. 이에 응당 귀 아문이 올린 원주에 따라서 인원을
파견하여 공동감계를 실시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商務를 감독하는 위원이자 五品銜을
지닌 分發補用知縣 秦煥이 전에 이곳에서 招墾 업무를 맡았으며 지형과 정세에 매우 익숙
하니 일을 맡겨 파견하기에 적당할 듯합니다. 아울러 혼춘부도통을 통해서도 적절한 인원
을 선발·파견함으로써 조선 관원과 만나 증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밝혀 의심이 남아 분쟁
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유민들을 거두어들여 정착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옮겨가기 어려
운 유민에 대해서는 다시 주를 올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에서 강희 51년 오라총관

목극등이 경계를 정한 비문에 대해 자료가 있는지 조사해달라고 황상의 지시를 요청한 문제는 그에 따라서 길림장군 관서에 있는 오래된 당안을 살펴보았지만, 연도가 오래되고 이미 곰팡이가 피고 문드러져 [아무런 관련 기록도] 남아있지 않으니, 응당 혼춘부도통아문에 자문을 보내 [혹시 거기에 기록이 남아 있는지] 자세히 조사하도록 할 것입니다. 원주를 베껴서 혼춘부도통에게 자문을 보내고, 秦瑛에게 공문을 보내 따르도록 한 것 외에도 응당 귀아문에 자문을 보내어 답장을 해야 하니 번거롭더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문서번호 : 1-3-1-28 (1085, 1961a-1962a)

사안 : 寧古塔에서 康熙 51년의 檔案冊을 조사했는데 烏拉總管의 定界에 관한 옛 檔案이 전혀 없었고, 또한 琿春衙門에서 協領 德玉 및 委員 賈元桂를 보내 秦煥과 함께 朝鮮 官원과 分界 事務를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經查寧古塔康熙五十一年檔冊, 並無烏拉總管定界舊案. 又琿春衙門派出協領德玉, 委員賈元桂, 會同秦煥與朝鮮官員勘辦分界事宜).

날짜 : 光緒十一年十月十一日(1885년 11월 17일)

발신 : 吉林將軍

수신 : 總理衙門

十月十一日, 吉林將軍 希元文稱.

案查前准貴衙門咨開.

光緒十一年七月二十日, 本衙門議奏圖門江界址請飭吉林將軍派員, 與朝鮮官員會勘一摺, 奉旨.

依議.

欽此.

恭錄諭旨, 鈔錄原奏咨行前來.

原奏內稱.

朝鮮流民越界佔墾, 該國王始終未能洞察情形, 嚴行勒禁, 妥爲收回, 第據邊吏一面之詞, 輒行陳情. 而琿春將吏於派兵彈壓之際, 不先移檄該國邊吏, 責以縱民越墾之罪, 遽行焚毀棚屋, 辦理旣屬操切, 且亦非了事之法. 原朝鮮世守藩服, 恪供

職貢，伊國邊界，自應亟予勘定，無業游民各安耕鑿，以副聖朝字小之仁。惟該國所指圖們·豆滿二江，實無依據，其所地圖亦不明。考之載籍，吉林·朝鮮以圖們爲界，別無豆滿支流。又圖們·鴨綠二江，東西兩界，標畫分明，別有小圖們江，在經流之北，亦不得蒙豆滿之名。又咸鏡道以鐵嶺之東北豆滿江爲界，設茂山等六營于江邊。蓋白頭乃長白之異名，豆滿圖們之轉音，方言互殊，實一水。

等語。

考證洵爲精確。自應遵照原奏，派員前往勘辦，有督理商務委員·五品銜分發補用知縣秦令煇，前在該處辦理招墾事務，地勢情形頗熟悉，堪以就近派委。兼由琿春副都統遴派委員，會同該國官員，指證明確，俾免懷疑爭執，令將流民收回安插，其難於遷徙者，再行奏明辦理。至原奏內請飭康熙五十一年烏拉總管穆克登定界碑文一節，遵查吉林將軍署內遠年檔案，久已霉爛無存，當經咨覆查核。至咨行琿春，寧古塔副都統衙門，查照有無康熙年間定界舊案，趕緊查明見覆。去後，旋准琿春副都統咨稱。遵查琿春於康熙五十三年始初設官，烏拉總管定界之事，在康熙五十一年，並無檔案。現經本副都統揀派協領德玉，委員賈元桂等，會同秦令煇，前往妥爲勘辦。

等因。

嗣准寧古塔副都統咨稱。

遵查塔署遠年檔案，業於同治十三年七月間，被賊入焚無存，雖有康熙五十一年來文行文檔案，詳查檔內並無康熙五十一年烏拉總管定界舊案。

各等因。咨報前來。

除札飭督理吉林朝鮮商務委員 秦煇，遵照會同琿春派出之協領德玉，委員賈元桂等，會同朝鮮官員，妥爲勘辦外，相應咨呈貴衙門，請煩查核施行。

10월 11일 길림장군 희元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서류를 검토해보니 전에 귀 (총리)아문의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광서 11년 7월 20일 본 아문에서 도문강 경계문제에 대해 길림장군에게 사람을 파견하여

조선 관원과 공동감계를 하도록 지시해 달라는 의논한 결과를 상주하였는데, 오늘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다.

의논한 대로 하라.

이에 따라 삼가 유지를 옮겨 적고 원주를 빼껴 귀 대신에게 자문으로 보내니 그에 따라 처리해주십시오.

원래의 상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선 유민이 월간을 하여 토지를 차지하고 개간한 문제에 대해 조선국왕은 시종일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엄격하게 통제하고 적절하게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있으며, 오로지 변방 관리의 일방적인 말만을 믿고서 험사리(이러한 감계) 요청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혼춘의 문·무관들도 부대를 파견하여 질서를 유지하고자 할 때 조선의 변방 관리에게 미리 공문을 보내 알림으로써 백성을 풀어놓아 월간한 것을 질책하지 않고, 갑작스레 집을 불태우는 행동으로 나선 것은 성급한 처리 방법일 뿐더러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원래 조선은 대대로 藩服으로서의 분수를 지켜 삼가 직분을 다해왔으며, 조선과의 경계는 응당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확정하여 無業流民들이 모두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함으로써, 중국에서 그동안 조선을 어여삐 여겨온 뜻에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조선에서 토문과 두만이 서로 다른 강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그들이 그려서 보내온 지도 역시 그다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책에 실려 있는 것을 검토해보면 길림과 조선은 도문강을 경계로 한다고 실려 있고, 다른 두만강 지류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한 도문강과 압록강이 동서 양쪽의 경계가 되고 표시된 그림이 아주 분명한 데다가, 따로 소도문강이 있는데 본류의 북쪽에 있어 또한 두만강이란 이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함경도는 鐵嶺의 동북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여 茂山 등의 여섯 진영을 강변에 설치하였습니다. 백두산은 장백산의 다른 이름이고, 두만강의 도문강의 다른 발음이며 방언이 다를 뿐 실제로는 하나의 강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고증이 실로 정확합니다. 이에 응당 귀 아문이 올린 원주에 따라서 인원을 파견하여 공동감계를 실시하게 할 것입니다. 상무를 감독하는 위원이자 오폭함을 지닌 분발보용지현 진영이 전에 이곳에서 招墾 업무를 맡았으며 지형과 정세에 매우 익숙하니 일을 맡겨 파견하기에 적당할 듯합니다. 아울러 혼춘부도통을 통해서도 적절한 인원을

선발·과견함으로써 조선 관원과 만나 증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밝혀 의심이 남아 분쟁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유민들을 거두어들여 정착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옮겨가기 어려운 유민에 대해서는 다시 주를 올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의 주에서 강희 51년 烏拉總管 穆克登이 경계를 정한 비문을 조사해달라고 황상의 지시를 요청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시에 따라 길림장군 관서에 있는 오래된 당안을 살펴보았지만 연도가 오래되고 이미 곰팡이가 피고 문드러져 남아있지 않다는 내용을 이미 자문으로 답변하여 검토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춘과 영고탑의 부도통아문에 자문을 보내 지시에 따라 강희 연간에 경계를 정한 옛 문서가 있는지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답장을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 뒤 바로 혼춘부도통의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시에 따라 조사해보니 혼춘은 강희 53년에 처음으로 관청이 설치되었고 오라총관이 경계를 정한 일은 강희 51년에 있었기 때문에 당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본부도통은 협령 덕옥과 위원 가원계 등을 선발·과견하여 진영과 함께 적절하게 감계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寧古塔副都統도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내왔습니다.

지시에 따라 조사해보니 寧古塔副都統衙門의 오래된 당안은 同治 13년 7월에 도적이 들어와 불태워서 전혀 남아있지 않으며, 강희 51년에 받은 문서와 보낸 문서가 있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지만, 역시 강희 51년 오라총관이 경계를 정한 옛 문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길림과 조선의 상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위원인 진영에게 지시에 따라 혼춘에서 파견된 협령 덕옥, 위원 가원계 등과 함께 조선 관원을 만나 적절하게 답사하고 처리하라는 지시를 보냈는데, 응당 귀 아문에 자문을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9) 문서번호 : 1-3-1-29 (1108, 2010b)

사안 : 관원을 파견해 조선 관원과 함께 도문강의 경계 지역을 명확히 조사하되 우선 지도를 그려 자문으로 올리면서 아울러 상주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派員會同朝鮮官勘明圖們江界址, 先行繪圖咨呈, 並請具奏).

날짜 : 光緒十二年正月初七日(1886년 2월 10일)

발신 : 吉林將軍

수신 : 總理衙門

正月初七日, 吉林將軍希元文[詳見密檔]

草目. 委員會同朝鮮官勘明圖們江界址, 先行繪圖咨呈, 並請具奏.

정월 7일, 길림장군 希元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密檔에 상세하게 보인다].

내용 요약 : 관원을 파견해 조선 관원과 함께 도문강의 경계를 명확히 조사하되 우선 지도를 그려 자문으로 올리면서 아울러 상주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0) 문서번호 : 1-3-1-30 (1111, 2018b)

사안 : 조선에 주둔하는 袁世凱가 도문강의 공동조사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駐朝鮮袁守稟詳圖們江會勘等情).

날짜 : 光緒十二年正月十四日(1886년 2월 17일)

발신 : 北洋大臣

수신 : 總理衙門

正月十四日, 北洋大臣李鴻章文[詳見密檔]

草目. 據駐朝鮮袁守稟詳圖們江會勘等情核辦.

정월 14일 북양대신 이홍장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密檔에 상세하게 보인다].

내용 요약 : 조선에 주둔하는 원세개가 도문강의 공동 조사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를 올린 내용을 근거로 검토하여 처리하다.

(31) 문서번호 : 1-3-1-31 (1112, 2019a-2024b)

사안 : 조선국왕이 도문강 감계 문제에 대하여咨文을 보내왔습니다(朝鮮國王咨開圖們江勘界情形).

- 첨부분서 : 1. 「예부에서 백두산의 국경 조사를 조선(한국)에서 도움을 받아 처리하라고 통보한咨文(禮部知會白山查境, 令韓國照管咨)」: 穆克登은 다음 봄에 백두산에 가서 변경을 조사하되, 만약 중도에 어려움이 있으면 조선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라는 유지를 받았습니다(穆克登奉旨, 於明春至白山查邊, 倘中途有阻, 令朝鮮照管).
2. 「조선의 接伴使가 백두산에 함께 갈 것을 요청한 문서(韓接伴使請偕行白山帖)」: 穆克登에게 험준한 산세를 무릅쓰고 힘들게 장백산을 오를 필요가 없다고 만류하였습니다(勸阻穆克登不必犯險攀登長白山).
3. 「칙사가 답장으로 보낸 문서(勅使回帖)」: 穆克登이 조선 접반사들의 만류와 동행을 거절하였습니다(穆克登拒韓伴使之勸阻與隨行).
4. 「칙사가 木柵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 묻고 논의하는咨文(勅使問議立柵便否咨)」: 토문강 伏流지점에 목책을 세워 강계를 구분하고자 합니다(擬於土門江伏流處, 樹立木柵以分疆界).
5. 「목책을 세우는 문제에 대한 보고(設柵便宜咨文)」: 조선의 접반사들이 목책은 영구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흙을 쌓거나 돌을 쌓는 것이 적절하므로, 농한기에 백성을 동원하여 시행하려 한다고 알려왔습니다(韓伴使以木柵非長久之計, 築土或聚石爲宜, 擬乘農閒役民爲之).
6. 「조선국왕이 定界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表文(朝鮮國王謝定界表)」: 국경을 확정하고 석비를 세워 간악한 무리들이 국경을 넘어가는 것을 근절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感謝定界立碑以杜奸民犯越).

날짜 : 光緒十二年正月十四日(1886년 2월 17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總理衙門

正月十四日, 北洋大臣 李鴻章文.

草目: 據朝鮮國王咨開, 圖們江勘界等情, 核辦.

(1) 「禮部知會白山境令本國照管咨」

禮部, 爲 知會 事.

康熙五十年八月初四日, 太學士溫達等奏本, 奉旨.

今年穆克登等, 自鳳凰城至長白山, 查我邊境, 因路遠水大, 未獲抵彼處. 俟明春水泮時, 另差司員, 同穆克登, 自義州江源, 造小船, 泝流而上. 若小船不能前進, 由陸路往土門江, 查我地方. 此去爲特查我邊境, 與彼國無涉. 但我邊內, 路途遙遠, 地方甚險, 倘中途有阻, 令朝鮮國稍照管. 將此情由着該部曉諭朝鮮國本年進貢官員, 令其抄寫, 齎付該王.

欽此.

欽遵除曉諭朝鮮國進貢正使礪山君李枋等, 令其抄寫, 齎付該王外, 仍應知會朝鮮國王可也. 爲此合咨前去, 查照施行. 云云.

康熙五十一年二月初七日

(2) 「接伴使請偕行白山帖」

朝鮮國接伴使議政府右參贊朴權, 咸鏡道觀察使李善溥, 謹再拜上書于欽差大人烏喇總管閣下.

伏以大人恭承皇命, 辱臨遠邦, 跋屨山川, 備嘗險阻, 而志氣彌勵, 勇往不怠, 盡瘁之

意，叱馭之忠，實有令人起敬而興歎者矣。職等叨任，獲親皇華，非不敢竭誠殫心，以體邦君尊敬之意，而窮邊郡邑物力殘薄，供奉之節不成貌樣，夙宵懍懍，惟獲戾於下，執事之懼。不意閣下曲賜軫恤，過加節省，飲膳皆出於行廚，絲毫不煩於敝邦，感祝之餘，慙愧寔深。側聞閣下審兩江水源，征將至長白山頂。職等於此不勝憂慮之至。蓋山頂大池之水，溢而西下，鴨綠上流，而自山下至山頂，其間數百里，俱是斷崖峭壁，絕壑深谷。獵夫佃戶僅得攀援穿過，蜀道井徑不足以喻其險也。今閣下以千金之軀，輕涉不測之地，縱有神明之扶護，必致途道之頓，此職等所然寒心者也。顧此交界看審之舉，實出於皇上軫念敝邦，欲杜奸民犯越生事之弊，而大人之必欲躬自諗視者，亦職分然也。第山路險惡如彼，貴體之跋涉甚難，體國之誠雖切，垂堂之戒或亦大，閣下於此可無商量慎重之道乎。抑有一事，極知僭猥，無所逃罪，而妄恃寬假之仁，輒此冒陳。今閣下之行，只帶筆帖式·大通官各一員，及甲軍二十名而已，則簡約可謂至矣。而所騎及行糧所載，合為三十八馬，馬皆有牽夫，敝邦官員之陪往者亦至五六，而各有所騎，及牽夫從人，并計指路·開路人，其數殆將七十餘人。一人各齎十五日糧，路險馬弱，不能重載，若至馬不行，則將以人丁擔負以行，應帶去者，馬至八十餘匹，人至一百三十餘名。長白山之高大，甲於海內，雖當盛暑，永雪不消。況今雨勢連日，已有成霖之漸。若於山谷中，猝過烈風暴雨，則許多人畜，必不免死傷之患。伏見閣下沿路所經，仁聲大播，惟恐一事之貽弊，一夫之受傷者，想體皇上若保之仁而然也。今若不幸萬一如此，則不但閣下惻隱之心有所不忍，豈不有害於皇上如傷之故耶。職等愚意有一得焉。鴨綠江之發源於山頂大池，派脈連接，澗谷分明，不待明者而一見可知。閣下倘選隨中捷明數者數三人，與敝邦譯官·及知路人，偕往看審，且令畫師圖寫以來，則水源·山徑可以了然於心目之間，以此歸奏，恐無不可，未知閣下以如何耶？且聞閣下令職等，勿為隨行，先往茂山侍候，此必閣下憫憐職等衰老疲殘之狀，有此曲恕之教。而職等既受國君之命，儻接欽差之行，而自占便安之地，使閣下獨冒畏道，此實義分之不敢出也。伏願閣下俯加諒察，特許職等一人得陪後塵，千萬幸甚。

康熙五十一年五月初七日

(3) 「勅使回粘」

頃閱來翰，備陳長白山險峻難行，恐徒往返情狀，爲我之計，可謂詳矣。非償价誠，安能諄諄開復如此也。但我身奉聖旨，雖死不辭，豈容避難而就易乎？況皇帝天眷之子，天必默佑，其物縈懷抱可也。又審詞意，償价二臣懇求一人陪行，此誠不辱君命之義，大堪嘉美。但山逕岫嶙，踰險探奇，俱各步行，爾高年有壽之人萬難隨往，倘去必悞公事，必不偕爾同行。勿容再請。

康熙五十一年五月初八日

(4) 「勅使問議立柵便否咨」

奉旨查邊大人穆等，移咨朝鮮接伴使·觀察使，爲查邊事。我親至白山，審視鴨綠·土門兩江，俱從白山根底發源，東西兩邊分流。原定江北爲大國之境，江南爲朝鮮之境，歷年已久不議外，在兩江發源分水嶺之中立碑。從土門江之源，順流而下審視，流至數十里，不見水痕，從石縫暗流至百里，方現巨水，流於茂山。兩岸草稀地平，人不知邊界，所以往返越境結舍，路徑交雜。故此於接伴，觀察同商議，於茂山惠山相近此無水之地，如何設立堅守，使衆人知有邊界，不敢越境生事，庶可以副皇帝軫念生民之至意，且你我兩邊無事。爲此相議咨送。

康熙五十一年五月二十八日

(5) 「設柵便宜呈文」

朝鮮國接伴使，議政府右參贊朴權，咸鏡道觀察使李善溥等，謹呈，爲審定境界樹柵立標，以杜日後之弊事。

伏以僉大人，欽承皇命，辱履敝邦，跋履艱險，查明交界，分水嶺上立碑爲標。而又慮土門江源暗伏潛流，有欠明白，旣以圖本親自指示，立柵之便否，復爲面詢，猶恐其不能詳盡，有此送咨更問之舉。其所以仰體皇上一視之仁·俯軫小邦生事之端，委曲諄複，一至於此，感激欽歎，無以爲喻。日者閣下以設柵便宜，俯賜詢問。職等以木柵非長久之計，或築土，或聚石，或樹柵，趁農歇始後之意，及大國人監董與否仰稟。則大人以爲。

已定界之後，則立標之時，似無大國人來監之事，而農民不可出役。且非一日爲急之事，監司主張隨便始役，雖至二三年後完畢，亦且無妨。每年節使之來，以居行形止，言及通官，傳至俺處，則或不無轉達皇上之道。

爲教。

故職等辭退後，以此意狀聞于國王咨文中兩邊無事之道，此外更無所達矣。且回咨則有所不敢，謹以呈文仰答。伏惟閣下曲加恕察，不勝幸甚。合行具呈。須至呈者。

右謹具呈。

康熙五十一年六月初二日

朝鮮國接伴使 議政府右參贊朴權，咸鏡道觀察使李善溥

(6) 「謝定界表」

朝鮮國王臣(姓諱)言。

去夏皇華審界之行，不煩外國之供億，克正邊疆之界限，莫非皇上字小之德，庶絕奸民犯禁之患，小邦君臣聚首咸頌，不勝瞻天愛戴之忱。謹奉表稱謝者，臣諱誠惶誠恐，稽首稽首，伏以候度謹守，猥被柔遠之仁，使節遙臨，聿觀審界之舉，幸逾始望，感激中情。伏念臣獲際昌期，粗奉遺緒，僻處下土，徒結拱辰之誠，視同內封，久沐漸海之化。詎意皇華之枉辱，特軫疆事之修明，嚴兩地之禁防，指水爲限，表一山之南北，立石以鐫，省陋邦供頓之煩，曲垂睿念，絕奸氓犯越之患，用作永圖，寵眷所加，震惶罔措。蓋

伏遇皇帝陛下，功參並育，業光重熙，均動植而咸和，惠澤普洽，通梯航而相接。聲教遐覃，至令偏藩亦霑異數，臣敢不勉竭駑鈍，益篤忠貞，仰戴洪庥？惟思銜結之報，恒遵定制，敢弛警惕之心。臣瞻天仰聖，無任激切屏營之至。謹奉表稱謝以聞。

康熙五十一年十一月初三日

朝鮮國王 臣 (姓諱)，謹上表

1월 14일, 북양대신 이홍장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내용 요약 : 조선국왕이 [강희 연간의] 도문강 감계에 대한 자료를 보내왔으니 검토하고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예부에서 알립니다」(예부에서 백두산의 국경 조사를 조선(한국)에서 도움을 받아 처리하라고 통보한 咨文)

예부에서 알립니다. 강희 50년 8월 4일 大學士 溫達 등이 상주한 뒤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다.

올해 穆克登 등이 鳳凰城에서 長白山까지 중국 변경을 조사하려 했으나, 길은 멀고 물줄기는 커서 그곳에 도착하지 못했다. 내년 봄에 얼음이 줄어드는 시기를 기다려 司員을 따로 파견하여 목극등과 같이 義州江의 발원지에서 작은 배를 만들어 강을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라. 만일 작은 배가 나아가기 어렵게 되면 육로를 경유하여 토문강으로 가서 중국지역을 조사하라. 이번에 가는 것은 특별히 중국 변경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니, 조선국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 다만 중국 변경 내에서 길이 요원하고 지역이 너무 험하여 혹 중도에 장애가 나타나면 조선국으로부터 약간 도움을 받도록 하라. 이런 사정에 대해 예부는 조선국에서 올해 進貢을 하러 온 관원에게 알리고 그로 하여금 자문을 베껴서 국왕에게 전하게 하라.

(이러한 상유를 받았으므로 예부에서는) 조선국에서 진공하러 온 正使 礪山君 李枋 등에게 알리고 글을 베껴서 조선국왕에게 가져가게 하며, 곧장 응당 조선국왕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에 응당 자문을 보내니 살펴보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희 51년 2월 7일

(2) 「(조선의) 접반사가 백두산에 함께 오를 것을 요청한 문서」

조선국 접반사 議政府 右參贊 朴權과 威慶道觀察使 李善溥가 欽差大人 烏拉總管 閣下께 삼가 再拜하고 글을 올립니다. 삼가 대인께서 皇命을 공경히 받들어 힘들게 遠邦에 오셔서 산천을 모두 거치고 온갖 험난함을 맞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과 기세가 더욱 강해지고 용감히 나아감을 게을리하지 않으시니, 최선을 다하는 뜻과 충성은 실로 공경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저희들은 외람되이 대인을 인도하는 임무를 맡게 되어 직접 뵈 수 있으니, 감히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쏟아 저희 임금께서 중국을 존경하는 뜻을 감히 본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궁벽한 변방의 郡邑에 물품과 인력이 거의 없어 모시는 예절이 모양을 갖추지 못해 하루 종일 불안해하였고, 오직 아래에서 죄를 얻게 될까 저희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합하께서 곡진히 賑恤을 베푸셔서 대단히 절약해주시고 음식은 모두 각하의 行廚에서 쓰시며 조금도 조선을 번거롭게 하지 않으시니, 감격한 나머지 부끄러운 마음 깊고도 깊었습니다.

전해 들으니 합하께서 두 강의 발원지를 살피기 위해 장차 백두산 정상으로 향할 것이라 하는데, 저희들은 이에 몹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 정상 호수의 물이 넘쳐 서쪽으로 흘러내려 압록강의 상류가 됩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서 정상까지 그 사이가 몇백 리이며 모두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깊고 험한 골짜기입니다. 사냥꾼과 화전민도 겨우 헤쳐 갈 수 있으니, 蜀道³⁷⁾와 井陘³⁸⁾도 그 험난함을 비교하기에 부족합니다. 지금 합하께서 귀하신 몸으

37) 촉도(蜀道)는 촉, 즉 오늘날의 사천성(四川省)으로 통하는 험난(險難)한 길이라는 뜻이다. 유명한 시인 이백(李白)의 「촉도난(蜀道難)」이라는 시는 사천으로 가는 길의 어려움을 ‘푸른 하늘을 오르기도 어렵다(難於上青天)’고 묘사하고 있다. 때로는 인정(人情)과 세로(世路)의 어려움을 비유(比喩)하여 이르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로써 헤아릴 수 없는 땅에 가벼이 가신다면 아마도 神明의 도움이 있더라도 필히 가는 중에 곤란한 일을 당하실 것이니, 이것이 저희들이 불안해하며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번 교계를 살펴보는 일은 실로 황상께서 조선을 염려해 주셔서 간악한 백성이 국경을 넘나들며 말썽을 일으키는 폐단을 막으려는 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인께서 반드시 몸소 가서 보려 하시는 것도 직분상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산길의 험준함이 그와 같으니 귀하신 몸으로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나라일을 실행하려는 정성이 비록 간절하고, 지시를 받은 훈계 또한 아주 막중한 것이라 하더라도 합하께서는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하여 신중하게 할 여지는 없겠습니까?

또한 한 가지 일에 대해, 극히 외람되고 또한 죄를 얻는 점도 알지만, 망령되이 (대인의) 너그러운 관용을 믿고 이 기회를 빌려 아뢰고자 합니다. 지금 합하의 행차에 다만 筆帖式·大通官 각 1명 및 甲軍 20명만을 대동하고 있는 즉 간소함이 지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는 말 및 식량을 실은 말이 모두 38마리이며 말마다 마부가 달려 있습니다. 조선 관원 가운데 대인의 행차를 뒤따르는 사람이 또한 5~6명에 이르고 이들도 각기 타는 말과 마부, 하인이 있습니다. 아울러 길을 찾고 여는 사람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거의 70여 명에 이릅니다. 한 사람이 각기 15일치 식량을 가지고 가는데, 길은 험하고 말은 약하여 무겁게 실을 수 없고, 만일 말이 가지 못하게 되면 사람이 짐을 지고 가야 할 것이니, 응당 데려갈 숫자는 말은 80여 필, 사람은 130여 명에 이르게 됩니다. 장백산의 높이와 크기는 海內 으뜸이라 비록 한여름이라도 빙설이 녹지 않습니다. 하물며 지금 비가 연일 계속 내리는 것으로 보아 이미 장마의 기운이 있습니다. 만일 계곡에서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친다면 많은 사람과 가축이 반드시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우환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삼가 합하께서 沿路를 지나오신 것을 보면 인자하다는 명성이 자자하며, 오직 한 가지라도 폐가 생길까, 한 사람이라도 다치게 될까 걱정하시는 것은 아마도 황상이 어린아이를 보살피 주시는 인자함을 본받으셔서 그러하실 것입니다. 지금 만일 불행히 만에 하나 위와 같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면

38) 정형(井陘)은 한(漢)나라 장수 한신(韓信)이 조나라를 공격할 때 물을 등지고 진을 펼치는 배수진(背水陣)을 사용하여 대승을 거두었던 장소(오늘날의 하북성 정형현)를 가리킨다. 장수들이 배수진을 친 이유를 묻자 그는 “병법에 ‘죽을 자리에 빠진 다음에 삶을 피할 수 있고, 죽을 자리에 들어간 다음에야 목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답하였다 한다. 이에 대해서는 『사기(史記)』 권92 「회음후 한신열전(淮陰侯韓信列傳)」을 참조.

합하의 측은지심으로써 차마 하지 못하는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고통을 나누시는 황상의 정사에 대해서도 해를 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의 어리석은 생각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합하께서 혹 수행한 사람 중에 날래고 명민한 자, 세 사람을 뽑아 조선의 역관 및 안내인과 같이 가서 살펴보게 하고, 또 畫師로 하여금 그림을 그려서 돌아오게 한다면 발원지와 산길이 눈과 마음에 분명해질 것이니 아마 이것으로 돌아가셔서 아뢰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합하께서 어떻게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듣기에 합하께서 하여금 수행하지 말고 우선 무산에 가서 기다리게 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반드시 합하께서 저희들의 노쇠하고 병약한 상황을 걱정하셔서 이런 꼭진하게 걱정해주시는 가르침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임금의 명을 받아 흠차대신의 행차를 접대해야 하므로 스스로 편안한 곳에 있으면서 합하께서 홀로 험한 길을 무릅쓰게 한다면, 이는 실로 의리와 직분상 결코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삼가 원컨대 합하께서 너그러이 살펴 주셔서 특별히 저희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뒤따를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강희 51년 5월 7일

(3) 「칙사(목극등)가 답장으로 보낸 문서」

보내온 서한을 보니 장백산이 험준하고 행차하기 어려워서 내가 헛된 발걸음을 할 수 있는 상황을 갖추어 이야기하였으니, 나를 위한 계산이 정말로 상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의 진실한 정성이 아니라면 어찌 간곡히 정성을 다함이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본인은 몸소 황상의 유지를 받들었기에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피하지 않을 터인데 어찌 어려움을 피해 쉬운 것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황제께서는 하늘이 사랑하는 자식이어서 하늘이 필시 소리 없이 도울 것이니, 너무 얽매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서한의 뜻을 살펴보면 접반사 가운데 한 명이라도 따라갈 것을 간곡히 청하고 있는데, 이는 진실로 임금이 명한 뜻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는 것이니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만 산길이 가파르고 험난한 곳을 넘고 위험한 곳을 확인해 나가려면 모두 각자 걸어서 가야 하는데, 당신들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은 따라가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고, 만일 함께 간다면 반드시 공무를 그르칠 것이니, 결코 당신들과 동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요청하지 마십시오.

시오.

강희 51년 5월 8일.

(4) 「칙사가 木柵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 묻고 논의하는 咨文」

황상의 유지를 받들어 변경을 조사하는 穆克登이 조선의 접반사와 관찰사에게 변경 업무에 대해 자문을 보내 알립니다. 내가 친히 白山에 이르러 압록·토문강 두 강을 살펴보니 모두 백산의 근저를 따라 발원하여 동서 양변으로 나뉘어 흐르고 있습니다. 원래 강북을 중국의 영역으로 삼고, 강남을 조선의 영역으로 삼은 것은 역사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논의할 대상이 되지 못하기에 두 강이 발원하는 분수령의 가운데에 비를 세웠습니다. 토문강의 원류로부터 물길을 따라 내려와서 살펴보니 물이 수십 리를 흐르다가 물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바위틈을 따라 지하로 흐르다가 백 리쯤 아래에 이르면 비로소 큰 물줄기로 다시 드러나 무산으로 흘렀습니다. 물이 흐르는 양쪽 둔덕에는 수풀이 별로 없고 땅이 평평해 사람들이 邊界임을 알지 못하며, 그 때문에 국경을 넘나들면서 집을 지어서 길이 혼잡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접반사·관찰사와 함께 상의하니, 茂山과 惠山이 가까운 물이 없는 곳에 굳건한 경계표시를 세워 사람들로 하여금 변계가 있음을 알게 하여 감히 월경하여 말썽을 일으키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아마도 황제께서 백성을 아끼시는 지극한 뜻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며, 양쪽 국경도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상의하기 위해 자문을 보냅니다.

강희 51년 5월 28일

(5) 「목책을 세우는 문제에 대한 보고」

조선국 접반사 의정부 우참찬 박권, 함경도 관찰사 이선부 등이 삼가 보고를 올립니다. 경계를 살펴 정하고 나무울타리를 세워 표시함으로써 나중의 폐단을 막고자 합니다. 삼가 대신께서 황명을 받들어 조선에 힘들게 왕립하셨는데, 험하고 힘든 일을 겪으시면서 교계를 조사하고 분수령 위에 비를 세워 표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 토문강의 원류가 눈에 보이지 않게

복류하므로 명백함에 흠이 생길까 걱정하여, 이미 지도와 책으로써 친히 (경계를) 지시하시고, 울타리를 세울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직접 물었으면서도 여전히 그 일 처리가 꼼꼼하지 못할까 걱정하셔서 이렇게 자문을 보내 다시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위로는 항상께서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인자함을 몸 받으시고, 아래로는 조선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여 거듭 당부하면서 자세히 물으시는 바가 이와 같으시니, 그 감격스러움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합하께서 나무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자세히 물어봐 주셨습니다. 저희 생각에 나무울타리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계획은 아니라고 여겨서, 혹 흠을 쌓거나, 혹 돌을 모으거나, 혹 나무를 키워 울타리를 삼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농한기를 틈타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뜻과 중국에서 사람을 보내 감독할 것인지 삼가 여쭙었습니다. 그러자 대인께서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미 경계를 결정한 후이므로 표식을 세울 때에 아마 중국에서 사람이 가서 감독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을 동원해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또한 하루아침에 해야 할 급한 일이 아니니 監司가 주관하여 편리한 대로 공사를 시작하여 비록 2~3년 후에 마친다 하더라도 역시 상관의 없을 것입니다. 매년 節使를 보낼 때 공사의 상황을 파악하여 通官에게 말하여 내게 전달된다면 항상께 전달할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퇴한 다음 이런 뜻을 저희 국왕께서 아뢰었습니다. 자문에서 말씀하신 양쪽 국경에 아무 일도 없게 하는 방안은 이것 외에는 더 이상 여쭙 바가 없습니다. 또한 저희가 감히 자문으로 답장을 하기에는 불편하여 삼가 이러한 보고의 형식으로 아뢰는 바입니다. 엿드려 생각건대 합하께서 꼭진히 인자하신 성찰을 베풀어 주신다면 천만다행일 것입니다. 이에 응당 보고를 갖추어 보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희 51년 6월 2일

(6) 「조선국왕이 定界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表文」

조선국왕[성명 생략]이 말씀드립니다. 지난 여름 중국사신께서 경계를 살피러 오셔서 조선에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번거롭게 하지 않으면서도 변경의 경계를 바로잡아 주시으로써, 항상께서 작은 나라를 어여뻐 여기는 은덕으로 간악한 백성이 국경을 넘나드는 근심을 거의 없앨

수 있게 되었으니, 조선의 군신은 머리를 모아 感頌하며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고 떠받드는 마음을 가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에) 삼가 表文을 올려 감사를 드리는 바이니, 진실로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또 조아립니다. (제가) 제후의 법도를 삼가 지키고 있음에, 외람되이 먼 나라를 안무해주시는 은덕을 입어 황상의 사절이 먼 곳까지 와서 직접 경계를 살피시어, 다행함이 처음의 기대를 넘어서서 마음속 깊이 감격하였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신은 창성한 때를 만나 어설프게나마 (선조의) 유훈을 받들며 궁벽하게 下土에 살면서 황상을 떠받들기 위한 정성을 헛되이 쏟고 있으나, 황상께서 內封과 마찬가지로 대우해 주셔서 오랫동안 하해와 같은 교화에 무젓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사절이 친히 왕립하여 특별히 변경을 밝혀 닦으시고 양쪽 지역의 禁地를 엄격히 정하여 강물로 경계로 삼으셨으며, 산의 남북을 표시하여 돌에 새겨 세웠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면서도 조선에서 접대하는 비용을 덜어주는 데에도 몹시 신경을 쓰고, 간악한 백성이 국경을 넘나드는 우환을 없애 주시어 영원히 유지될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니, 은총이 베풀어지는 바에 대해 너무 황송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는 대개 황제 폐하의 功과 參을 모두 길러 주심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業光이 거듭 비춤은 동물과 식물을 막론하고 모두 이에 호응하고, 혜택이 널리 미침은 물과 바다를 막론하고 서로 이어질 정도입니다. 聲教가 멀리까지 미쳐 심지어 외진 곳에 있는 藩邦까지도 남다른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 신이 어찌 어리석지만 힘을 다하고, 충정을 더욱 독실하게 하고, 커다란 그늘(과 같은 황상의 은덕)을 우러러 떠받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미력한 힘이나마 은혜를 갚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定制를 준수하고자 하니, 어찌 감히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느슨히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하늘을 보고 황상을 우러름에 그 감정이 격렬해지고 두려워 정말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삼가 표문을 바쳐 감사를 드리는 말씀을 아뢰입니다.

강희 51년 11월 3일 조선국왕이 삼가 표문을 올립니다.

(32) 문서번호 : 1-3-1-32 (1122, 2041b)

사안 : 강희 51년의 穆克登 勘界에 대한 案卷을 검토하도록 (예부로) 片文을 보냈습니다(片查康熙五十一年穆克登勘界案卷).

날짜 : 光緒十二年二月初一日(1886년 3월 6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禮部

二月初一日, 行禮部文片稱.

上年七月初六日, 貴部奏朝鮮國王請勘圖們江舊界, 據咨轉奏一摺, 奉旨交議, 當經本衙門, 片行貴部, 調取該國使臣所遞界碑搨本一張覆奏後, 仍片送繳還在案. 本年正月十四日, 復據北洋大臣轉送朝鮮國王咨送『承文院故實』一冊, 內載有康熙五十一年烏喇總管穆克登, 奉旨往勘朝鮮邊界往返函牘各件. 本衙門查該國所送文冊, 徧檢『會典事例』, 『皇朝三通』, 並無證據. 又查內閣案卷, 據稱自道光二年以前, 因稿庫失慎被災, 案卷蕩然無存. 事關屬藩界址, 卽當據實奏明, 派員會勘. 該國事隸貴部, 當有舊存卷宗可查. 相應片行貴部, 檢查康熙五十一年定界案卷, 並將穆克登碑文抄錄一紙, 片送本衙門覈辦爲要.

2월 1일에 禮部로 다음과 같은 片文을 보냈다.

작년 7월 6일에 귀 예부에서는 조선국왕이 도문강의 옛 경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咨文을 받고 (이를) 대신하여 상주하였고, (총리아문으로) 넘겨 논의하도록 하라는 유지를 받았습니

다. 이에 본 아문에서는 귀 예부로 片文을 보내어, 조선 사신이 보내온 경계비 탁본 1장을 요청하여 받아서 답장 상주를 올린 다음, 片文을 돌려보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정월 14일에는 다시 조선국왕이 咨文으로 보내온 『承文院故實』 1책을 북양대신이 받아서 전달해온 것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강희 51년에 烏喇總管 穆克登이 유지를 받들어 조선의 국경으로 가서 조사하며 주고받은 서신들이 있었습니다. 본 아문에서는 조선에서 보낸 공문과 책자를 검토하여, 『(欽定)會典事例』와 『皇朝三通』을 두루 들춰보았는데,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內閣의 문서(案卷)도 조사해보았는데, 道光 2년 이전까지는 문서창고가 실수로 재해를 당하여 문서들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일은 藩屬의 국경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마땅히 곧바로 사실대로 명확히 상주하여, 관원을 파견해서 공동감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에 관한 업무는 귀 예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응당 참고할 만한 옛 문서철(卷宗)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귀 예부로 片文을 보내오니, 康熙 51년에 국경을 정한 것에 관한 문서를 조사해주시고, 아울러 穆克登의 碑文을 1장 초록하여 본 아문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片文으로 보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33) 문서번호 : 1-3-1-33 (1123, 2042a)

사안 : 강희 연간의 案卷은 남아있지 않으니, 응당 조선국왕이 보내온 穆克登의 碑文을 초록하여 보내야 할 것입니다(康熙年間案卷無存, 應將朝鮮國王前遞穆克登碑文錄送).

날짜 : 光緒十二年二月初六日(1886년 3월 11일)

발신 : 禮部

수신 : 總理衙門

二月初六日, 禮部片文[詳見密檔].

草目 : 康熙年間案卷無存, 應將朝鮮國王前遞穆克登碑文錄送.

2월 6일,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片文을 보내왔다[密檔에 자세한 내용이 보인다].

내용 요약 : 강희 연간의 案卷은 남아있지 않으니, 마땅히 조선국왕이 보내온 穆克登의 비문을 초록하여 보내야 할 것입니다.

(34) 문서번호 : 1-3-1-34 (1134, 2091b-2095b)

사안 : 중국·조선의 경계에 관한 사안에서 밝혀야 할 것 세 가지, 고증해야 할 것 다섯 가지를 上奏하오니, 길림장군에게 명하시어 신속히 적절한 관원을 (파견하여) 조사하게 해주십시오(具奏中韓界案, 應辨析者三, 應考證者五, 請飭下吉林將軍, 速妥員覆勘).

날짜 : 光緒十二年三月二十五日(1886년 4월 28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光緒帝

三月二十五日, 本衙門遞正摺稱.

謹奏, 爲 吉林圖們江邊界履勘未定, 謹陳大概情形, 請旨飭下吉林將軍派員覆勘, 以安邊氓而庇藩屬 事.

竊上年七月間, 臣衙門因朝鮮北境流民占墾吉林圖們江邊地, 恐日久滋生事端, 并據該國王咨請, 遂有請飭吉林將軍派員會勘安插之奏, 奉旨允准, 恭錄行知在案. 本年正月初七日, 准吉林將軍咨稱.

光緒十一年十二月十六日, 據派勘吉林邊界委員 德玉, 秦煥等稟稱.

會同朝鮮安邊府使 李重夏, 將圖們江兩岸山水原委, 并前鐘城府使所執之石碑·封堆, 一一勘驗, 詳具圖說, 會印畫押, 各執一紙. 查圖們江朝鮮呼爲頭滿江, 由茂山以上七十里, 至江口地方, 江水分爲二流. 其南流爲西豆水, 上流至平甫坪之上, 又分東西二源. 其北流爲紅丹水上流, 又分南北二源. 又查得長白山朝鮮呼白頭山. 山之絕頂有大池, 方圓數十里, 北面爲松花江正源. 山之南麓下有小石碑, 碑面漢文有“康熙年, 烏喇總管查邊定界, 西爲鴨綠, 東爲土們”等字樣. 碑之西有

溝，西南流入鴨綠江。碑之東有溝，繞長白山之東麓，朝鮮呼伊嘎力蓋，譯云黃花松溝子。溝之東南岸有石堆百余，析堆盡處至長白山正東，爲大角峰。碑之東南四十里爲小白山，有溝由大角峰東北流，與斜乙水，及黃花松溝子水，皆合流入娘娘庫，折入松花江。此各水及碑堆之原委也。總之，由長白山之南麓之朝鮮吉州界之鶴項嶺，約四五百里爲一大分水嶺。嶺西南之水入鴨綠江。嶺東北之水，小白山以南入圖們江，小白山以北入松花江。至論圖們江源，西豆水在朝鮮內地發源，兩岸居民繁衆，屋宇墳墓，均已年遠，此處斷非圖們正源。惟小白山東南發源三汲泡東面之紅丹水，當年定界立碑，應在三汲泡一段之分水嶺上，方與碑文所云：“西爲鴨綠，東爲土門”，八字相合。而安邊府使終執碑堆爲據，且執碑文之“東爲土們”四字，以爲黃花松溝子。兩岸有土如門，并以土門江爲土門，藉詞狡辯。職等以事宜妥商，未便相強，商定彼此各持圖回報。

等情。前來。

詳考圖說，所謂紅丹水者，卽『直省輿地全圖』之小圖們江。其西豆水至平甫坪之上，有東西二流。東流發源于鶴項嶺，西流發源于蒲潭山，卽知西豆水實卽輿圖之大圖們江，蒲潭山乃輿圖之費德里山。援古證今，若合符節。乃該國上年誤指海蘭河爲圖們江，今又指黃花松溝子，兩岸有土如門之說，明明有定之地，游移于無定之口，猶謂必以碑堆爲據，豈知碑無定位，可因人爲轉移，而文有定憑，實以江爲界限。安知非該國民入占據多年，潛移石碑至此乎？而況黃花松溝子固松花江源，并非圖們江源乎！該委員等意謂，“當年立碑，應在三汲泡之分水嶺上。”雖不如蒲潭山之確合輿圖，第因其居民繁衆，無事過激，似當酌得其平，且不失朝廷字小之意。合將會勘情形，并地圖咨送貴衙門，代奏請旨定奪。

等因。准此。

又正月十四日，據北洋大臣咨稱。

准督辦朝鮮商務道員 袁世凱，轉將該國議政府照復，及抄送承文院故實一件，圖一紙，申請咨送。

又同日，據北洋大臣咨稱。

接准朝鮮國王咨，辨大略，執碑堆·土門爲據，請查核轉奏。

等因。前來。

臣等恭查『欽定皇朝通典』·『文獻通考』，均載明吉林，朝鮮以圖們江爲界。又『欽定會典圖說』載有大圖們江出長白山東麓，二水合東流，小圖們江出其北山。二水合東南流來匯，又東經寧古塔城南境，匯嚙哈里河東南流，北合二小水，經琿春城西南等語。康熙五十年五月初五日，欽奉諭旨。

[朕]前特差能算善畫之人，將東北一帶山川地理，俱照天上度數³⁹⁾推算，詳加繪圖[視之，混同江自長白山後流出，由船廠打牲烏喇，向東北流，會於黑龍江入海，此係中國地方。鴨綠江自長白山東南流，向西南而往，由鳳凰城朝鮮國義州，兩間流入於海]，鴨綠江西北系中國地方，江之東南系朝鮮地方，以江爲界。土門江自長白山東邊流出，向東南流入于海。土門江西南系朝鮮地方，江之東北系中國地方，亦以江爲界，此處俱已明白。但鴨綠·土門二江之間地方，知之不明，[前遣部員二人往鳳凰城，會審朝鮮人李玩枝事，又]派出打牲烏喇總管 穆克登[同往。伊等請訓旨時，朕曾密諭云。“爾等此去并可查看地方。同朝鮮官沿江而上，如中國所屬地方可行，即同朝鮮官在中國所屬地方行，或中國所屬地方有阻隔不通處，爾等具在朝鮮所屬地方行。乘此偏至極盡處。詳加閱視，務將邊界查明來奏。”想伊等已由彼處起程矣。此番地方情形，庶得明白。] 往看邊界等因。⁴⁰⁾

欽此。

又是年八月初四日欽奉諭旨。

前差[打牲]烏喇總管 穆克登查看[鳳凰城至長白山]邊界，[伊等]業將所查地方繪圖呈覽，因路遠水大，[故]未能至所指之地。著于來春[冰解之時]，自義州乘[小]舟，溯流而上，[至不可行處，令其]由陸路向土門江查去。⁴¹⁾

等因。欽此。

臣等反復紬繹，自康熙年間派員勘界，而『欽定會典』·『三通』皆在乾隆以後，所繪『一統輿圖』，山川脈絡，自己考證明晰，確可依據。第山名水名，方音不無歧異，且參校新舊各圖，準望⁴²⁾衰直亦互有參差。兩界聚訟，必有折衷，方能定勘。

現在此案有應辨析者三，應考證者五，請爲皇太后·皇上陳之。去年朝鮮以圖們·頭滿爲二水，經臣衙門指駁。此次復牽合碑文，改爲有土如門之說，詞旣屢變，理實難通。查穆克登碑文，明明東西二水爲對舉，且圖們之爲土門，康熙諭旨已然，他處地志亦屢見，第爲方音輕重之殊，不煩別爲曲解。此應辨析者一也。朝鮮立國當康熙時，地多人少，咸鏡道西北，空爲甌脫，該國王來咨云。

該處向非許民開墾之地，近來流民潛入耕種，官吏不能隨時覺察，此固敝邦[之]責。云云。是該處逼近吉省，素系封堆禁地，爲從前中江·呼蘭等處封禁之山，不准私墾一例。該國素守藩封之義，不使流民闖入，情分顯然。近年地少人稠，日漸佔墾，該朝官豈得顯背封山之禁，陰爲拓地之謀，此應液辨析者二也。至吉林將軍來咨謂，紅丹水卽小圖們江，西豆水卽大圖們江，浦潭山卽費德里山，此卽未能確鑿，尙待參求。蓋『皇朝一統輿圖』所列紅丹水，卽紅丹河，在茂山之南，其與茂山迤北之小圖們江無涉可知。西豆水旣在紅丹之南，且發源于彼圖吉州內地之鶴項嶺，其非大圖們江可知。費德里山在黑山之南，圖們江之北，非其西豆水西源之浦潭山可知。總之，此事必須佐證確實，方能定斷。此應液辨析三也。自朝境茂山府以東，會寧·鐘城·穩城·慶源·慶興·與五府東之鹿屯島海口，自有圖們江天然界限，爲之劃分，豪無可疑。彼此所斷斷未定者，茂山以西距分水嶺穆克登勒石之地。惟此二百八十余里間，仍卽康熙諭旨所謂“二江之間地方，知之不明者”，必應逐細告究，乃勘界之要領。該委員等所計道里，僅據土人之口，未足證信，亦以測量緯度爲憑，方有把握。此應考證者一也。此二百八十里之間，迤西豆入吉境，迤南折入甌山，凡分界之說，或順山勢，或順水形，總以確尋江源爲主，不在東西繩直，斬然齊整。至該將軍所稱“界碑不過數尺，有無占墾之民潛移向北”，亟應徹底根究，此應考證者二也。『會典』所載之小圖們江，在大圖們江內地之北，自不必言。至云大圖們江出長白山東麓，二水合流，所謂二水，必有指名，按之方言，審其準望，是否卽系紅丹上游之二源，抑或別有名字，此應考證者三也。詳穆克登碑文，第言“奉旨查邊，至此審視，西爲鴨綠，東爲土門”，勒石爲記，碑中並無分界字樣。不過記二水之源委，是當日立碑之處，未必卽當日分界之處，何以朝鮮人卽執此爲分界確據。此應考證者四也。且碑文所載審視云云，自系欽遵聖諭，以江爲界之指，渾括⁴³言之。若

必分析言之，卽鴨綠江上源，不名鴨綠，名曰：建川溝，與圖們江之上源，不必卽有圖們之名，事同一例。夫中國之濟源曰：沈，漢源曰：漾，而沈與漾仍得蒙濟·漢大川之名，以大川得統小川故也。然則紅丹小水，獨不可以圖們江源，統而目之乎？此應考證者五也。

竊惟該國世守藩封，恪共職貢。其流民占墾之地，屬吉者自應酌量刷還，或編入版圖，屬朝者自應申明舊界，添立界碑，永息紛紜。該將軍所稱，“碑無定位，文爲定憑”，實爲確論，總應將圖們江指定確墾，卽界限可分明。中國之于藩封，原無不在覆幬⁴⁴⁾之內。然我疆我理，亦不容稍有越畔。相應請旨飭下該將軍，卽行派爲熟悉邊政輿地之員，按照以上各節，逐細會勘，酌定界址，妥籌安插，以折藩服之心，而靖邊氓之業。所有吉林·朝鮮勘界緣由，理合恭摺上陳，并將文卷·地圖等件，封送軍機處備查，伏候聖鑑訓示遵行。謹奏。

光緒十二年三月二十五日，軍機大臣奉旨。

依議。

欽此。

- 39) 천상도수(天上度數)는 아마 위도와 경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상유의 맨 앞부분은 “천상도수(天上度數)는 모두 지구의 넓이(寬大)와 딱 들어맞는데, 주(周)나라 때의 자(尺)로 계산하면, 천상의 1도(度)는 바로 지하(地下)에서는 250리이며, 지금의 자로 계산하면 천상 1도는 즉 200리이다. 자고이래로 지도를 그릴 것은 경우 모두 천상의 도수에 따르지 않고 지리의 원근을 추산하여 그랬기 때문에 오차가 아주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 40) 여기에는 ‘往看邊界’라고 축약되어 있지만 실제 원문은 “爾等具在朝鮮所屬地方行，乘此便至極盡處，詳加閱視，務將邊界查明來奏。想伊等已由彼處起程矣。此番地方情形廉得明白”이며, ‘往看邊界’란 구절 자체는 원문에 없다. 『大清歷朝實錄(康熙朝)』 卷246, 康熙 50年 5月 癸巳條, 9a~10b 참조.
- 41) 『大清康熙實錄』 康熙 50年 8月 辛酉條, 卷247, 6a~6b.
- 42) 준망(准望)은 지도를 그릴 때 방위를 판정하는 것, 또는 지도를 그리는 방법을 말한다.
- 43) 혼괄(渾括)은 총괄(總括), 개괄(概括)한다는 뜻.
- 44) 복주(覆幬, 覆燾)는 복피(覆被)와 같은 뜻으로 은혜를 베푼다는 뜻. 『예기(禮記)』 「중용(中庸)」편에 나오는 “이틀테면 하늘과 땅이 실지 않는 바가 없고 뒤덮지 않는 바가 없는 것과 같다(辟如天地之無不持載, 無不覆燾)”라는 구절에서 비롯되었다.

3월 25일에 본 아문에서 다음과 같은 奏摺을 올렸다.

길림·도문강의 공동감계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삼가 대체적인 상황을 보고하면서 아울러 길림장군에게 지시하여 인원을 파견하여 다시 勘界를 함으로써 변경의 백성을 안정시키고 번속을 무마해주시도록 상유를 내려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지난해 7월 중 총리아문에서는 조선의 북방 유민이 길림 도문강 변지를 차지해서 개간·경작하는 문제에 대해 시간이 오래 지나면 말썽이 생길 것이고, 또한 조선국왕이 자문으로 요청하였으므로 길림장군에게 지시하여 인원을 파견하여 공동감계를 실행함으로써 백성을 안정시킬 것을 상주해서 요청한 바 있고, 그것을 재가하는 상유를 받아 삼가 옮겨 적은 다음(길림장군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7일 길림장군이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내왔습니다.

광서 11년 12월 16일 파견한 길림변계 감계위원 덕옥과 진영 등이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하였습니다.

조선 안변부사 이중하와 만나 도문강 변계를 조사하여, 현재 이미 도문강 양쪽 연안 山水의 형세와 前 鍾城府使 李正東이 고집한 石碑와 돌더미(石堆)·흙무더기(土堆)를 일일이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상세한 지도와 설명서를 작성하고 같은 자리에서 함께 직인을 찍고, 각자 친필로 서명한 다음 각기 한 장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생각건대 조선에서는 土門江을 豆滿江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무산에서 위로 70리에 있는 강어귀에 이르면, 강이 두 줄기로 갈리는데 남쪽 줄기는 西豆水입니다. 서두수는 平甫坪 위에 이르러서 다시 동·서 두 줄기로 갈라집니다. 그 북쪽 줄기는 紅丹水이며, 상류는 다시 남북 두 물길로 나뉘집니다. 또한 장백산을 조선에서는 백두산이라고 부르며, 산꼭대기에 큰 연못이 있어 둘레가 수십 리로, 북쪽에 松花江의 正源이 있습니다. 산의 남쪽 기슭에 작은 석비가 있는데, 비면에는 한문으로 “[강희 연간] 烏拉總管 穆克登이 유지를 받들어 변계를 조사하기 위해 이곳에 이르러 살펴보니, 서쪽은 鴨綠이고 동쪽은 土門이다. 따라서 분수령 위에 비석을 세워 기록한다”⁴⁵⁾라고 한 내용이 적혀 있으며, 비의 서쪽에 물줄기가 있어 서남으로 흐르다 압록강에 유입하며, 비의 동쪽에도 물줄기가 있어 장백산 동쪽 기슭을 감돌며, 조선에서는 이를 伊嘎力蓋라고 하며, 중국어로

45) 정계비의 원문에 따라 번역하였다.

바꾸면 黃花松溝子가 됩니다. 이 물줄기의 동남 연안에 돌더미가 백여 개 있으며, 그것이 끝나는 지점은 장백산의 正東에 있는 大角峰입니다. 비석의 동남쪽 40리는 小白山으로 물줄기가 있어 대각봉 동북으로 흐르다가 斜乙水 및 황화송구자의 물줄기와 합류하여 娘娘庫로 들어갔다가, 송화강으로 꺾어듭니다. 이것이 각 물줄기 및 비석과 돌더미의 본모습입니다.

요컨대 장백산 남쪽 기슭의 조선 吉州 지역에 있는 鶴項嶺은 약 400~500리의 길이로 아주 큰 분수령을 이루며, 그 서남쪽의 물줄기는 압록강으로 흘러들고, 동북의 물은 소백산 이남의 경우에는 도문강으로, 소백산 이북의 경우에는 송화강으로 흘러듭니다. 도문강의 발원지에 대해 따지자면, 서두수는 조선의 내지에서 발원하고, 양안의 거민이 아주 많은데다가 집이나 분묘는 모두 연도가 오래되었으므로 이곳은 단연코 도문강의 정원이 아닙니다. 오로지 소백산 동남에서 발원하는 三汲泡 동쪽의 홍단수가 (바로 도문강의 정원에 해당되는데, 그러려면) 당시 응당 삼급포 일대의 분수령 위에서 경계를 정하고 비석을 세웠어야만 비로소 비문에서 말하는 “서쪽은 압록이고 동쪽은 도문이라”는 여덟 글자와 일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安邊府使는 시종 비석과 돌더미를 근거로 고집하면서, 또한 비문에서 말하는 “동쪽은 도문”의 토문이 바로 황화송구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화송구자의 양쪽 언덕이 마치 문처럼 생긴 흙무더기 때문이라면 서 토문강이 바로 이 土門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실로 삼는 말이 아주 교활합니다. 저희들은 이 일을 응당 타협해서 마무리해야지 억지로 강요해서 마무리할 수는 없었으므로 피차 각기 지도를 가지고 돌아가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길림장군이 생각건대) 지도와 설명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른바 홍단수라는 것은 바로 『直省輿地全圖』에 나오는 소도문강입니다. 서두수는 平甫坪 위에 이르면 동·서 두 갈래로 나뉘는데, 동쪽 줄기는 학항령에서 발원하고 서쪽 줄기는 蒲潭山에서 발원하므로 서두수는 바로 『여도(直省輿地全圖)』에 보이는 대도문강이라는 것을 즉각 알 수 있습니다. 포담산은 바로 『여도』에 보이는 費德里山입니다. 옛것을 들어 지금의 것을 고증하니, 마치 符節⁴⁶⁾처럼 딱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작년에 海蘭河를 도문강으로 잘못 지적

46) 부신(符信)이라고도 하며, 돌이나 대나무옥 따위로 만들어 신표로 삼아 주로 사신들이 소지하던 물건을 가리킨다. 원래 하나이던 것을 두 조각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함께 맞추어 들어맞으면 확인이 가능한 일종의 신분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였었는데, 지금은 다시 황화송구자에 문과 같은 흠언덕이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땅은 너무도 분명히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음에도 그것을 가리키는 (조선 측의) 주장은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비석과 돌더미를 반드시 증거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데, 인위적으로 옮길 수 있는 비석은 정해진 위치가 없지만, 문서에는 확실한 증거가 남아 있어 실제로는 강을 경계로 삼는다는 것을 어찌 안다고 하겠습니까? 또한 조선 백성이 오래도록 이 지역을 차지하여 살면서 몰래 여기로 옮겨 놓은 것이 아님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界碑 동쪽의 황화송구자는 본디 송화강의 발원이지 결코 도문강의 발원이 아닌데 말입니다. 해당 위원 등은 말하기를 “당시 경계를 정하여 비석을 세운 곳은 응당 三汲泡 일단의 분수령 위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비록 포담산의 위치가 지도와 확실하게 들어맞는 것만은 못하지만, 단지 그 거민들이 아주 많고, 과격할 일 일어나서지도 않았기 때문에, 서로 공평하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게다가 중국이 작은 나라를 사랑하는 뜻을 잃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감계 상황과 함께 지도를 아울러 귀 아문에 보내니 대신 상주하여 상유를 내려주시도록 간청해주시시오.

또한 1월 14일 북양대신의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朝鮮商務를 감독하는 道臺 원세개가 조선 의정부의 답장 조회 및 『承文院故實』 초록 1건, 지도 1장을 보내면서 자문으로 전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북양대신의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선국왕의 자문을 받았는데, ‘대체적인 윤곽을 가렸으므로 비문과 돌더미 그리고 토문이 라는 글자를 근거로 삼고자 하니 검토하고 대신 상주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총리아문의) 신 등이 『欽定皇朝通典』·『文獻通考』를 삼가 살펴보니 모두 길림과 조선은 도문강을 경계로 한다고 실려 있고, 또한 『欽定會典圖』에도 대도문강이 장백산의 동쪽 기슭에서 나와 두 물줄기가 합류하여 동쪽으로 흐르며, 소도문강은 그 북쪽 산에서 나오는데, 두 물줄기가 동남으로 흘러 합류하며, 또한 동쪽으로 寧古塔城의 남쪽 경내를 지나 噶哈里河와 만난 다음 동남으로 흐르면 북쪽에서 두 작은 물줄기가 합류하며, 琿春城의 서남을 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희 50년 5월 5일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짐이) 전에 특별히 계산을 잘하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을 파견하여 동북일대의 산천형세를 모두 天上의 경도·위도에 따라 추산하고 상세하게 지도를 그리게 하였다. [그것을 보면, 混同江은 장백산 뒤에서 흘러나와 船廠 打牲烏喇를 거쳐 동북으로 흐르다 黑龍江을

만나 바다로 들어간다. 이곳은 중국 땅이다. 압록강은 장백산에서 동남쪽에서 흘러나와 서남으로 흘러가며, 鳳凰城과 조선의 義州 사이에서 바다로 흘러든다.] 압록강 서북은 중국의 땅이고, 강의 동쪽은 조선 지방으로 강을 경계로 삼고 있다. 토문강은 장백산 동쪽으로 흘러나와 동남으로 흐르다 바다로 접어든다. 토문강의 서남은 조선 땅이고, 강의 동북은 중국 땅인데, 역시 강을 경계로 삼고 있다. 이곳은 모두 분명하지만, 압록강과 토문강 사이의 땅은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전에 部の 관원 2명을 鳳凰城에 보내 조선인 李玩枝 事件을 공동으로 재판할 때, 또한] 打牲烏喇總管 穆克登[을 같이 가게 하였다. 그들이 혼시를 요청하였을 때 짐은 일찍이 몰래 다음과 같은 유지를 내린 바 있다. 너희들은 이번에 가서 아울러 그 지방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조선 관원과 함께 강을 거슬러 올라가되, 만약 중국에 속한 땅으로 갈 수 있으면 조선 관원과 함께 중국에 속한 땅으로 가고, 혹 중국에 속한 땅에 장애가 있어 통하지 않는 곳이 있으면 너희들은 모두 조선에 속하는 땅으로 가도록 하라. 이 기회를 틈타 갈 수 있는데 데까지 두루 가서, 상사하게 살펴봄으로써, 변계를 확실하게 조사하여 돌아와 상주하라. 생각건대 너희들은 이미 그곳에 출발했을 것이니, 이번에는 그 지방의 상황에 대해서는 대체로 파악하였을 것이다]을 파견하여, 거기에 가서 변계를 살펴보게 하라.

또한 이해 8월 4일에는 다음과 같은 상유가 내려졌습니다.

전에 烏拉總管 穆克登을 파견하여 (봉황성에서 장백산에 이르는) 변계를 살펴보게 하였는데, (그들이) 이미 조사한 지역의 지도를 그려 바쳤으나, 길이 멀고 물길이 커서 (그 때문에) 지정한 곳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내년 봄(얼음이 녹을 때)에 다시 의주에서 (작은)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 이르면) 육로로 길을 바꿔 토문강을 찾아가 조사하도록 하라.

(총리아문의) 신 등이 거듭하여 궁리해보니, 강희 연간에 관원을 파견하여 감계를 하였지만, 『흙정회전』이나 『欽定三通』은 모두 건륭 연간에 들어온 이후에 만들어졌으므로 (근거가 되기 어렵지만), 이른바 『一統輿圖』⁴⁷⁾에 나타나는 산천의 맥락은 자연히 아주 분명하게 고증되어

47) 『일통여도』는 앞서도 나왔지만 『황조일통여지전도(皇朝一統輿地全圖)』를 가리킨다. 청대에 이조락(李兆洛)과 동방립(董方立)이 그린 중국전도(中國全圖)로道光(道光) 12(1832)년 처음 간행되었는데, 강희·건륭 이후 가장 좋은 목각판본 지도로 일컬어진다. 주로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와 『건륭내부여도(乾隆內府輿圖)』를 기초로 행정구역이나 물길의 변화를 참작하여 수정하여 만들었다고 하며, 경도와

있어 확실한 의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 이름이나 강 이름은 방음에 차이가 있고, 또한 옛날과 지금의 각 지도를 비교해보면 방위나 곧고 비스듬한 점에 또한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양쪽에서 다투니 반드시 절충되는 점이 있어야 비로소 감계 결과를 확정할 수 있고, 현재 이 사안에서는 응당 구분해서 가려야 할 것이 세 가지, 고증해야 할 것 다섯 가지가 있으니, 이점에 대해 황태후·황상께 아뢰고자 합니다. 작년 조선에서는 도문강과 두만강이 서로 다른 강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총리아문에서는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에서 다시 비문을 억지로 끌어다가 문처럼 생긴 흠벽이라는 주장으로 바꾸었는데, 이미 여러 차례 말을 바꾸었으므로 그 주장은 제대로 먹힐 리 없습니다. 목극등의 비문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동·서의 두 물길을 대조하였고, 또한 도문강이 토문강이라는 것은 강희제의 유지에서 이미 분명히 나타나 있고 다른 지리지에서도 누차 보이는 바입니다. 다만 방음의 가볍고 무거움의 차이가 있어 따로 곡해되는 경우가 있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응당 구분해서 가려야 할 첫 번째 사항입니다.

조선이 세워지고 난 다음 강희 연간 무렵에는 땅은 많고 사람은 적어 함경도 서북은 모두 甌脫⁴⁸⁾ 지역으로 비워놓았으며, 조선국왕이 보내온 자문에도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곳은 종래 백성에게 개간을 허용해온 지역이 아닌데, 근래 유민들이 몰래 들어가 농사를 짓는데 관리들이 수시로 찾아내서 단속하지 못한 것은 저희 책임입니다

그곳은 길림성과 가까워 평소에 출입이 금지된 봉금 지역으로 종전의 中江이나 呼蘭 등지처럼 개간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았던 곳입니다. 조선이 평소 藩封의 도리를 지켜 유민이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던 일은 분명합니다만, 최근에는 땅이 적고 인구가 늘어나자 점차(중국의 변경지역을) 차지해서 개간하게 되었는데, 조선 관리가 왜 봉금령을 분명하게 위반하면서 은근히 땅을 넓힐 계획을 꾸미게 되었는지, 이것이 응당 구분해서 가려야 할 두 번째 사항입니다. 길림장군의 자문에서 이르기를 홍단수는 바로 소도문강이고, 서두수가 대도문강, 포담산이 비덕리산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좀 더 따져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일통여도』에 보이는 홍단수는 바로 紅丹河로 무산의 남쪽에 있어 무산에서 북쪽으로 뻗은 소도문강과 관계가 없음은 곧 알 수 있습니다. 서두수는 홍단수의 남쪽에 있고, 또한

위도 역시 모두 첨가되어 있다.

48) 구탈(甌脫)은 변방, 변경의 황지, 또는 양국 국경 사이의 완충지대를 가리킨다.

지도의 길주 내지에 있는 학항령에서 발원하므로 대도문강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이 됩니다. 비덕리산은 흑산의 남쪽·도문강의 북쪽에 있어 서두수의 발원지인 포담산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요컨대 이런 것들은 반드시 보조증거가 확실해야만 비로소 단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응당 구분해서 가려야 할 세 번째 사항입니다.

조선경내의 무산 동쪽에 있는 會寧·鐘城·穩城·慶源·慶興과 이 5府 동쪽의 鹿屯島 海口는 도문강이라는 천연의 경계가 자리 잡고 있으면서 경계를 구분하고 있어 조금도 의심스러운 점이 없습니다. 피차간에 확정이 되지 못한 곳은 무산 서쪽에서 穆克登이 석비를 세운 곳까지의 땅입니다. 이 280여 리 사이는 바로 강희제의 유지에서 말하는 이른바 “두 강 사이의 부분으로 잘 알지 못하는 땅”이며, 이곳을 반드시 세밀하게 고찰해보는 것이 바로 감계의 요령일 것입니다. 해당 위원들이 말하는 거리는 단지 토착인들의 이야기에만 근거한 것이라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는 되지 못하므로, 또한 위도를 측량해서 증거로 삼아야만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응당 고증해야 할 첫 번째 사항입니다.

또한 이 280리 사이의 땅은 西豆水 쪽으로 뻗어 길주 경내로 들어가고, 남쪽으로 뻗어 甌山⁴⁹⁾으로 꺾어 들어갑니다. 무릇 경계를 가르는 것은 산세를 따르거나 혹은 물 모양을 따르거나 하는데, 결국은 강의 발원지를 찾는 것이 주가 되며, 동서 쪽 사이를 새끼줄로 맨 듯 반듯하고 가지런하게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界碑는 경우 몇 자 정도의 크기에 지나지 않으니 월간한 백성이 몰래 북쪽으로 옮겨놓았을지도 모른다고 길림장군이 지적한 문제도 신속하고도 철저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응당 고증해야 할 두 번째 사항입니다.

『會典』에 실려 있는 소도문강이 대도문강 내지의 북쪽에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도문강이라고 하는 것은 장백산 동쪽 기슭에서 나와 두 물줄기가 합류한다고 하는데, 이 두 물줄기는 반드시 이름이 있을 터인데, 방언에 의하거나 그 지도상의 방위로 가려보더라도 홍단수 상류의 두 물줄기인지 아닌지, 아니면 다른 이름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응당 고증해야 할 세 번째 사항입니다.

목극등의 비문을 상세히 살펴보면 단지 “유지를 받들어 변경을 조사하는데, 여기에 이르러 둘러 보니 서쪽은 압록이고 동쪽은 토문이다”고 돌에 새겼을 뿐이지, 비문에는 결코 경계를 나눈다

49) 증산(甌山)은 소백산(小白山)으로부터 뻗어 나온 산줄기(支脈)로 소백산 동쪽 180리 해당되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산 남쪽은 홍단수(紅丹水)이고, 북쪽은 석을수(石乙水)이며, 이 산줄기는 석을·홍단 두 물줄기 사이에서 끝난다.

(分界)는 말이 없습니다. 단지 두 물줄기의 모습을 말했을 뿐이니, 당시 비석을 세운 곳이 반드시 당시 경계를 나눈 곳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왜 이것을 고집하면서 경계를 나눈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지, 이것이 응당 고증해야 할 네 번째 사항입니다.

또한 비문에 실려 있는 “돌러본다”는 말은 당연히 강희제의 聖諭를 받들어 강을 경계로 삼는다는 뜻을 뭉뚱그려 이야기한 것이므로, 만약 반드시 자세하게 나누어서 이야기해야 한다면, 압록강의 발원은 압록이라 하지 않고 建川溝라고 하므로 도문강의 발원도 반드시 도문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경우입니다. 중국의 濟水는 그 발원을 沈이라 하고 漢水는 그 발원을 漾이라고 하지만, 침과 양은 여전히 제수나 한수와 같은 큰 강의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큰 강으로 작은 강을 통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홍단수만 가지고 도문강의 발원이라고 총괄해서 지목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것이 응당 고증해야 할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조선은 대대로 변방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직분을 따라왔습니다. 그 유민들이 차지해서 개간한 땅은 길림에 속하는 곳은 당연히 유민들을 적절하게 거두어들이거나 아니면 중국의 판도에 편입하고, 조선에 속하는 것은 당연히 옛날의 경계를 분명히 밝히고 경계비를 추가로 세워 영원히 분란을 잠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비석은 정해진 위치가 없지만, 문서에는 확실한 증거가 남아 있다”는 길림장군의 지적은 그야말로 정곡을 찌른 이야기입니다. 결국 반드시 도문강을 분명하게 확정해야만 경계가 분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藩封에 대해서 원래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영토는 중국에서 관리하며, 또한 조금도 그 안으로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허용할 수 없으므로, 응당 길림장군에게 즉시 변경의 상황과 지도에 익숙한 관원을 파견하고 이상에서 서술한 각 사항에 따라 세밀하게 공동감계를 실행하여 경계를 설정하고 유민을 적절하게 안치시킴으로써 藩服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변민의 생업을 안정시키도록 지시를 내려주실 것을 간청하고자 합니다. 길림과 조선의 감계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주점을 갖추어 아뢰고 동시에 문건과 지도 등을 군기처로 보내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엿드려 황태후·황상께서 살펴보시고 지시를 내려주시기를 기다려 그에 따라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삼가 주를 올립니다.

광서 12년 3월 25일, 군기대신은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다.

논의한 대로 하라.

이상.

(35) 문서번호 : 1-3-1-35 (1135, 2096a)

사안 : 길림장군의 감계관련咨文과 지도를 참고할 수 있도록 밀봉하여 보냅니다(封送吉林將軍勘界咨文及地圖備查).

날짜 : 光緒十二年三月二十五日(1886년 4월 28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軍機處

三月二十五日, 行軍機處文稱.

本月二十五日, 本衙門具奏覆勘吉林圖們江邊界一摺, 內有吉林將軍等咨文及地圖, 應送軍機處備查. 相應錄來咨並原地圖一紙, 一併封送貴處查收. 其北洋大臣文二件, 及承文院故實一本, 地圖一紙, 仍須交還本衙門備查可也.

3월 25일에 군기처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다.

이번 달 25일에 본 아문에서는 길림과 도문강의 변계를 재조사하는 문제에 관한 奏摺 1건을 올렸는데, 그 안에 길림장군 등이 보낸 咨文과 지도가 있으니, 응당 군기처로 보내서 참고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착한 咨文과 原地圖 1장을 초록하여, 아울러 귀 군기처에 보내니 검토한 다음 보관해 주십시오. 북양대신이 보내온 문서 2건과 『승문원고실』 1권, 지도 1장은 다시 본 아문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돌려보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6) 문서번호 : 1-3-1-36 (1136, 2096b)

사안 : 도문강의 변계에 대해 길림장군에게 조사하도록 지시해주실 것을 청하는 奏摺을 올렸는데, 논의한 대로 하라는 유지를 받았으므로, 주접과 유지를 초록하여 알립니다(具奏圖門江邊界事, 請飭下吉林將軍履勘摺, 奉旨依議, 鈔奏錄旨知照).

날짜 : 光緒十二年三月二十七日(1886년 4월 30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北洋大臣

三月二十七日, 給北洋大臣文稱.

三月二十五日, 本衙門奏吉林圖們江邊界履勘未定, 謹陳大概情形, 請旨飭下吉林將軍派員覆勘一摺. 本日, 軍機大臣奉旨.

依議.

欽此.

相應鈔錄原奏, 恭錄諭旨, 行知貴大臣, 欽遵辦理可也.

同日, 行吉林將軍.

3월 27일에 북양대신에게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다.

3월 25일 본 아문에서는, 길림과 도문강의 변계에 대한 조사가 확정되지 않아 삼가 대략적인 정황을 아뢰면서, 길림장군에게 관원을 파견하여 조사할 것을 청하는 주접 1건을 올렸습니다.

오늘 군기대신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논의한 대로 하라.

마땅히 원 상주문을 초록하고, 유지도 삼가 옮겨서, 귀 대신에게 문서를 보내 알리니 삼가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은 날 길림장군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37) 문서번호 : 1-3-1-37 (1224, 2265b)

사안 : 중국·러시아 경계비를 새로 세우기로 한 일은 이미 3월 13일에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新立中俄界牌, 已於三月十三日, 豎立完竣).

날짜 : 光緒十三年四月二十二日(1887년 5월 14일)

발신 : 吉林將軍 希元

수신 : 總理衙門

四月二十二日, 吉林將軍希元文稱.

本年四月初五日, 准琿春副都統依克唐阿咨開.

於三月二十三日, 據送界牌差員藍翎佐領托倫托呼呈稱.

竊職奉派, 由親軍營帶兵十名, 督同送界牌. 於二月初九日, 裹帶口糧, 啓程進山, 於二十六日, 抵至俄卡. 因無石工, 自帶鎚斧, 由牌之四圍, 鑿削去五百餘觔, 兩面有字處, 毫無傷損. 於三月十三日, 用爬力運至分水嶺, 在於俄筑舊牌基處, 眼同俄國二畫兵頭都什新, 將牌之華文向西, 俄文向東, 安於牌基, 豎立完竣. 於十五日, 旋回塔署之處.

等情. 呈報轉咨前來.

相應咨報貴衙門, 請煩查核施行.

4월 22일에 길림장군 希元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올해 4월 5일에 훈춘부도통 依克唐阿가 다음과 같은 咨文을 보내왔습니다.

3월 23일에 경계비를 세우러 파견된 관원인 藍翎佐領 托倫托噶이 보내온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파견 지시를 받아 親軍營에서 병사 10명을 뽑아서 함께 거느리고 경계비를 운반하는 일을 관리하였습니다. 2월 9일에 식량을 휴대하고 출발하여 산에 올랐고, 26일에 러시아의 변경 초소(卡倫)에 도착하였습니다. 석공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간 망치와 도끼로 경계비의 4면에서 500여 근을 깎아냈지만, 양쪽 면에 글자가 있는 곳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3월 13일에 힘을 써서 운반하여 분수령에 이르렀고, 러시아가 세웠던 옛 경계비의 기단이 있던 곳에 러시아의 畫兵 2명 頭都什新과 함께, 경계비의 漢文 부분은 서쪽을 향하게 하고, 러시아 文字 부분은 동쪽을 향하게 하여 기단에 안착시켜 세우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5일에 곧바로 寧古塔副都統衙門로 돌아왔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보고받아 (훈춘부도통이 다시 자문으로 길림장군에게) 전달해왔습니다. 마땅히 귀 아문에 咨文으로 보내 알리오니, 번거롭겠지만 검토하여 주십시오.



변경 답사(履勘邊界)

(38) 문서번호 : 1-3-2-01 (1185, 2176b)

사안 : 조선에서는 내년 봄 정해진 시기에 관원을 파견하여 백두산에 가서 공동감계를 하여
경계를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朝鮮於明春定期派員, 赴白頭山會勘定界).

날짜 : 光緒十二年十月二十二日(1886년 11월 17일)

발신 : 吉林將軍 希元

수신 : 總理衙門

十月二十二日, 吉林將軍希元等文稱.

邊務承辦處案呈.

本年十月初六日, 准北洋大臣李來電內開.

據袁世凱電稱.

朝鮮外署金允植, 遵於明春定期派委員, 赴白頭山會勘定界.

云云.

除電復北洋大臣, 並咨行琿春副都統, 暨札飭勘界委員德玉, 秦煥等遵照外, 相應咨報

貴衙門, 請煩查核施行.

10월 22일에 길림장군 希元 등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변무승판처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올해 10월 6일에 북양대신 이홍장의 다음과 같은 전보를 받았습니다.

원세개로부터 다음과 같은 전보를 받았습니다.

조선의 外署 金允植이 내년 봄 정해진 시기에 적절한 관원을 파견하여, 백두산에 가서 함께 공동감계를 하여 경계를 확정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북양대신에게 전보를 보내 답장을 보내고, 아울러 琿春부도통에게 咨文을 보냄과 동시에 또한 勸界委員 德玉과 秦瑛 등에게도 이를 따르도록 지시하는 것 외에도, 마땅히 귀 아문에게도 咨文을 보내 알리는 바이오니, 번거롭더라도 검토해 주십시오.



(39) 문서번호 : 1-3-2-02 (1198, 2186b)

사안 : 조선에서 李重夏를 北邊으로 파견하여 勘界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미 德玉과 秦煥 등에게 지시하여 勘界를 기다리도록 하였습니다(韓派李重夏赴北邊勘界, 已飭德玉秦煥等候勘).

날짜 : 光緒十三年二月初六日(1887년 2월 28일)

발신 : 吉林將軍 希元

수신 : 總理衙門

二月初六日, 吉林將軍希元文稱.

邊務承辦處案呈.

光緒十三年正月二十三日, 接准北洋大臣李來電, 內云.

據袁世凱來電.

白頭山覆勘一案, 昨晤商金允植, 定於三月中旬, 派李重夏赴北邊. 計四月中可到, 乞豫電吉林, 派員候勘.

等因. 前來.

除札飭分勘委員二品頂戴花翎⁵⁰協領德玉, 補用知縣秦煥遵照外, 相應咨行貴衙門, 查核施行.

50) 정대화령(頂戴花翎)에서 정대(頂戴)는 청대 관원의 모자 꼭대기에 붙인 여러 가지 색깔의 재료로 만든 보석(나중에는 유리로 바뀐다)으로 정자(頂子), 정주(頂珠)를 가리킨다. 반드시 관원의 품급에 따라 착용하였다. 화령(花翎) 역시 관원의 모자 위에 붙이는 공작 깃털로 깃털 안에 있는 눈동자 모양의 무늬 수(하나에서 셋까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졌는데, 황제에 의해 하사되는 일종의 장려이자 영예의 상징이었다. 이 두 가지를 합쳐 정대화령(頂戴花翎) 또는 영정(翎頂)이라 한다.

2월 6일, 길림장군 희원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변무승판처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광서 13년 정월 23일, 북양대신 이홍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전보를 받았습니다.

원세개로부터 온 다음과 같은 전보를 받았습니다.

백두산을 재차 감계하는 사안에 대해서 어제 金允植을 만나 상의했는데, 3월 중순에 李重夏를 北邊으로 파견하기로 정하였습니다. 4월 중순이면 도착할 것이니, 길림으로 미리 전보를 보내 관원을 파견하여 勘界를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이상과 같은 전보를 받았으므로) 分勘委員 二品頂戴花翎 協領 德玉과 補用知縣 秦瑛에게 지시하여 따르도록 하는 것 외에, 마땅히 귀 아문에 자문으로 알리니 검토해 보십시오.



(40) 문서번호 : 1-3-2-03 (1201, 2190a)

사안 : 조선의 勘界官이 4월 초에 무산에 도달할 예정이니, 길림장군에게 咨文을 전달하여
관원을 파견하여 共同勘界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朝鮮勘界官將於四月初抵茂山,
請轉咨吉林將軍派員會勘).

날짜 : 光緒十三年二月十九日(1887년 3월 13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二月十九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袁世凱稟稱.

竊照本年正月二十五日, 准朝鮮外署督辦金允植照會內開.

照得圖們界址會勘一事, 前准貴總理照會抄錄北洋來文, 催行覆勘, 業經照覆在案. 現由敝政府再派原勘界官德源府使李重夏, 訂於三月上旬, 由德源府起程, 四月初可到茂山. 應請貴總理, 轉達北洋大臣, 以便知照吉林將軍, 派員會同李重夏, 前往白山之分水嶺, 覆勘界址爲要. 相應備文照會, 請煩查照.

等因. 准此.

當經電稟憲鑒, 並照覆各在案. 理合稟請憲台查核, 轉咨吉林將軍, 查照辦理, 實爲公便.

等情. 到本閣爵大臣. 據此.

除分咨外, 相應咨會貴衙門, 請煩查照施行.

2월 19일, 북양대신 이홍장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⁵¹⁾ 원세개의 다음과 같은 보고(稟文)를 받았습니다.

올해 정월 25일에 조선의 外署督辦 金允植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照會를 받았습니다.

도문강 경계 공동감계 문제에 대해서, 북양대신께서 재차 공동감계를 독촉하는 문서를 일찍이 貴 總理(원세개)께서 초록하여 照會로 보내주신 것을 받아 이미 照會로 답장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 조정에서는 原 勘界官이었던 德源府使 李重夏를 다시 파견하여, 3월 상순에 덕원부에서 출발하도록 하였으니, 4월 초에는 茂山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귀 총리께 청하오니, 북양대신께 전달하여 길림장군에게 알림으로써 관원을 파견하여 이중하와 함께 백두산 분수령에 가서 재차 공동감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문서를 갖추어 照會를 보내오니, 번거로우시겠지만 검토해주시옵시오. 이상의 내용을 받아, 이미 전보로 보고하여 大人께서 검토하도록 하였고, 또한 답장 照會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응당 대인께서 검토하시고 길림장군에게 다시 咨文을 보내시어, 이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稟請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보고를 받았으므로 本 閣爵大臣은 각기 나누어 咨文을 보내는 것 외에도, 마땅히 귀 아문으로 咨文을 보내 알리는 바이니, 번거롭겠지만 검토하여 주십시오.

51) 주찰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는 조선에 주재하면서 교섭(외교)와 통상 업무를 총괄한다는 원세개의 직무를 가리킨다. 승용도(升用道)는 도대 품급으로 승진이 가능한 직함에 올라 있다는 뜻으로 순서에 따라 승진을 대기하는 것이고, 보용지부(補用知府) 역시 지부로서의 임용을 기다리는 후보관원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현재 맡고 있는 실질적인 관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로에 대한 장려로 주어지는 일종의 직함이나 품급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41) 문서번호 : 1-3-2-04 (1211, 2245b-2246a)

사안 : 方郎을 추가로 파견하여 길림·조선 경계를 나누는 일을 돕도록 하겠습니다(加派方令郎, 協助勘辦吉·朝分界事宜).

날짜 : 光緒十三年三月二十日(1887년 4월 13일)

발신 : 吉林將軍 希元

수신 : 總理衙門

三月二十日, 吉林將軍希元文稱.

邊務承辦處案呈.

本年二月二十六日, 據督理吉林·朝鮮商務委員·補用知縣秦令燠稟稱.

竊照吉林界事, 疊奉憲札, 並接朝鮮咸鏡道南廷順來函. 韓廷仍派原勘界官德源府使李重夏前來覆勘, 該府使須在三月中旬, 方能由任所起程, 約計至四月間可到. 但卑職細思此事, 前雖辦有端倪, 而查總署復奏, 尚須參考互証, 悉心辯晰, 測量里數, 措置殊非易易. 若以卑職之性成愚昧, 輿圖之學既素所未諳, 兼之心思才力, 更屬有限, 斷難勝此鉅任. 況乎事在垂成, 尤宜加慎. 萬一辦理失宜, 一旦敗壞決裂, 貽誤寔非淺鮮. 惟有仰懇再行派一員, 一同前往, 和衷商辦, 庶幾相助有成.

各等情. 據此.

查該令所稟各節, 尚屬實情. 卽准如所請, 添員辦理. 查有花翎同知銜·分發補用知縣方令郎, 勘以派往, 會同勘辦吉朝分界事宜. 除分別咨札外, 相應咨報貴衙門, 查照施行.

3월 20일, 길림장군 희원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다.

변무승판처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올해 2월 26일, 督理吉林·朝鮮商務委員이자 補用知縣인 秦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고(稟文)를 받았습니다.

길림의 경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누차 대인의 지시를 받은 바 있고, 아울러 조선 함경도의 南廷順이 보내온 서신도 받아보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조선 조정에서는 原勸界官인 德源府使 李重夏를 파견하여 재차 공동감계를 하겠다고 하였고, 해당 府使가 3월 중순에 임지에서 출발하여, 대략 4월 중에는 도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보건대, 이전에 비록 실마리를 마련해두었지만, 총리아문의 復奏를 검토해보니, 아직도 참고하면서 대조하여 세밀하게 분석하고, 거리를 측량해야 하는 등 해야 할 일이 실로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저처럼 성품이 우매하고, 地圖學에 대해 평소에 아는 바도 없으며, 아울러 지식과 재능이 더욱 제한된 경우라면 결코 이 막중한 임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사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 더욱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처리함에 있어 실수가 있다면, 하루아침에 일을 망치게 되어 그르치는 일이 실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다시 관원 1명을 더 파견하여 함께 가서 마음을 합쳐 논의하여 처리해야만, 비로소 서로 도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러러 간청하는 바입니다.

해당 知縣 秦煥이 보고한 각 내용을 검토해보니, 확실히 실제 상황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그가 요청한 대로, 곧바로 관원을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花翎同知銜을 지닌 分發補用知縣 方郎이 파견되어 함께 길림·조선 경계 사안을 처리할 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로 각기 咨文으로 지시를 보내는 것 외에도, 마땅히 귀 아문에도 咨文을 보내 알리는 바이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42) 문서번호 : 1-3-2-05 (1228, 2268b)

사안 : 중국·조선의 勘界人員이 4월 22일에 茂山으로 가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 水源을 찾고, 境界地域을 상세히 다시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中韓勘界人員已定四月二十二日前往茂山, 溯流窮源詳細覆勘界址).

날짜 : 光緒十三年閏四月十三日(1887년 6월 4일)

발신 : 吉林將軍 希元

수신 : 總理衙門

閏四月十三日, 吉林將軍希元等文稱.

邊務承辦處案呈.

本年四月三十日, 據勘界委員·琿春左翼協領德玉, 分發補用知縣方朗, 秦煥呈稱.

卑職等遵飭前赴會寧, 與朝鮮勘界官李重夏, 會同覆勘圖們江邊界, 業經呈報. 茲卑職等先後到甯, 與李重夏會晤筆談, 迄無定議. 現已商定四月二十二日, 由會寧一同起身, 前往茂山, 再由茂山, 沿江而上, 溯流窮源, 隨處測量, 指證明確, 公同詳細覆勘. 俟勘畢後, 再行會圖貼說詳報.

等情. 前來.

所有據報, 勘界委員會晤朝鮮勘界官, 並由會寧起程日期, 相應咨報. 爲此, 合咨貴衙門, 請煩查核施行.

윤4월 13일, 길림장군 希元 등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변무승판처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올해 4월 30일, 감계위원인 琿春左翼協領 德玉과 分發補用知縣 方郎, 秦煥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시에 따라 會寧으로 가서, 조선의 감계관 李重夏와 함께 도문강 변계에 대해 다시 공동감계를 하게 되었음은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는 전후하여 회녕에 도착하여 李重夏와 만나 筆談을 나누었는데, 아직 합의한 결론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4월 22일에 會寧에서 함께 출발하여 茂山으로 가고, 무산에서 다시 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서 水源을 찾으면서 곳곳을 측량하고 증거를 명확하게 확인하면서 함께 상세히 다시 勘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勘界가 끝나기를 기다려 다시 공동으로 그린 지도와 설명서를 통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보고에 따라 감계위원이 조선 감계관과 만난 것, 그리고 會寧에서 출발하기로 한 날짜 등은 마땅히 咨文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귀 아문으로 咨文을 보내는 바이오니, 번거로우시겠지만 검토해 주십시오.



(43) 문서번호 : 1-3-2-06 (1293, 2383b)

사안 : 조선국왕이 보내온 자문과 지도·책 각 1권은 도문강 勘界에 관련된 것이므로 아울러

검토해주시오(朝鮮國王咨文及圖, 冊各一份, 事關圖們江勘界, 請併案核辦)

날짜 : 光緒十三年十月十六日(1887년 11월 30일)

발신 : 禮部

수신 : 總理衙門

十月十六日, 禮部文稱.

准北洋大臣咨送.

准朝鮮國王送到咨文一角, 圖·冊一分. 應咨送禮部, 查收施行.

等因. 到部.

查閱該國王來咨, 係因圖們江勘界一事. 此案前於光緒十一年七月, 經總理各國事務衙門議奏奉旨後, 移咨本部. 經本部恭錄諭旨, 抄錄原奏, 知照朝鮮國王欽遵在案. 今該國王復將此案, 移咨前來, 自應仍由貴衙門斟酌辦理. 相應將原咨一件, 地圖一張, 抄冊一本, 咨送總理各國事務衙門核辦. 俟辦結後, 仍將原咨等件, 送回本部備案可也.

10월 16일, 예부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북양대신이 다음과 같은 咨文을 보내왔습니다.

조선국왕이 咨文 1건과 지도·책 각 1권을 보내왔습니다. 마땅히 예부에 咨文으로 보내어 검토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국왕이 보내온 咨文을 검토해보니, 도문강의 勘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서는 이전에 광서 11년 7월에 총리아문에서 논의하고 상주하여 유지를 받은 다음, 本 禮部에 咨文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本 禮部에서는 유지를 삼가 베끼고 原 奏文도 초록하여, 조선국왕에게 알려 삼가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조선국왕이 다시 이 사안에 대해서 咨文을 보내왔으니, 응당 귀 아문에서 헤아려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原 咨文 1건과 지도 1장, 抄錄冊 1권을 귀 총리아문에 咨文으로 보내 검토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처리가 끝난 다음에는 原 咨文 등의 문건을 돌려보내 本部에서 보관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4) 문서번호 : 1-3-2-07 (1296, 2387b-2392a)

사안 : 감계위원 德玉 등이 石乙水를 도문강의 수원으로 감정하고, 아울러 경계 비석을 세우고자 한다는 주접 1건과 (조선의 감계관와) 함께 조사하고 직인을 찍은 지도 1장을 咨文으로 보내왔습니다(勘界委員德玉等勘定石乙水爲圖們江源, 並咨送擬立界牌淸摺一件, 會勘鈐印地圖一張).

- 첨부문서 : 1. 「도문강 경계 지역에 대한 재차 공동감계를 하였을 때의 회담 요약(覆勘圖們江界址談話節略. 이하 ‘요약’으로 약칭) 1」 : 李重夏는 중국과 조선의 경계에 穆克登의 비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힘써 주장하였습니다(李重夏力言, 中韓界址應以穆碑爲準).
2. 「요약 2」 : 秦煥은 재차 공동감계는 반드시 강줄기를 따라 올라가 수원을 찾는 것이 되어야 하며, 穆克登의 석비는 변경지역을 살피면서 세운 것이지, 경계를 나는 것은 아니라고 답하였습니다(秦煥答, 以覆勘界址應因江流而探江源, 穆碑係查邊所立, 非分界之碑).
3. 「요약 3」 : 李重夏는 중국과 조선의 국경에 대해서는 이미 穆克登의 비문이 근거가 되니, 洪丹水와 西豆水는 실로 조사할 만한 것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李重夏言中韓國界, 既有穆碑爲據, 洪丹·西豆兩水實無可勘).
4. 「요약 4」 : 秦煥은 茂山의 서쪽에 대해서는 위로 分水嶺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먼저 수원을 고증한 다음에야 강의 경계를 밝힐 수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秦煥駁以茂山以西, 上抵分水嶺, 必須先考證江源, 然後始可辯析江界).
5. 「요약 5」 : 李重夏는 穆克登의 석비가 諭旨를 받들어 세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分界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李重夏答辯穆碑係奉旨所立, 當可爲分界之據).
6. 「요약 6」 : 측량위원 劉虞卿을 파견하여, 17일에 출발하여 수원을 측량할 것입니다(派測量委員劉虞卿, 於十七日起程測量水源).
7. 「요약 7. 李重夏가 秦煥에 답하는 조회(李重夏覆秦煥照會)」 : 吳元貞 등 2명을

과견하여, 劉虞卿 위원과 함께 가서 측량하도록 하겠습니다(派吳元貞等二人, 會同劉委員虞卿前往測量).

8. 「요약 8」: 秦煥은 穆克登은 변경을 조사한 것이지 分界를 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穆克登의 석비는 당연히 分界의 비석이 아니라는 것은 유지에 명백히 실려 있으니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답하였습니다(秦煥答, 穆克登係查邊非分界, 穆碑自非分界之碑, 聖諭煌煌, 無庸置辯).
9. 「요약 9」: 李重夏는 穆克登의 석비가 비록 변경을 조사하고 세운 것이라고는 하지만, 석비는 응당 원래 경계를 정한 곳에 세우는 것이므로, 양자는 사실상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李重夏辯, 穆碑雖係查邊所立, 而豎碑當在原定界處, 兩者實無區別).
10. 「요약 10」: 22일에 출발하여 수원을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로지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 수원을 찾고 경계를 정하는 것만이 가장 공정한 주장일 것입니다(定二十二日起程踏勘江源. 惟溯流窮源以定界址, 持論最爲公允).
11. 「요약 11」: 李重夏가 22일에 함께 출발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李重夏允於二十二日會同起程).
12. 「요약 12. 李重夏가 茂山 長坡에서 秦煥에게 보낸 照會(李重夏在茂山長坡致秦煥照會)」: 먼저 洪단수를 조사한 후에 여타 수원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려 합니다(擬先勘洪丹水後, 再議勘其他水源).
13. 「요약 13. 秦煥이 李重夏에게 보낸 답장 조회(秦煥覆李重夏照會)」: 먼저 洪단수를 조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同意先勘洪丹水).
14. 「요약 14. 李重夏가 秦煥에게 보낸 조회(李重夏致秦煥照會)」: 서두수는 대도문강의 수원이 아니므로 답사할 필요가 없습니다(西豆水非大圖們江源, 無須踏勘).
15. 「요약 15. 秦煥이 李重夏에게 보낸 답장 조회(秦煥覆李重夏照會)」: 서두수가 대도문강의 수원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증거가 명백해야 단정할 수 있습니다(西豆水是否爲大圖們江源, 必須佐證確鑿, 方可定斷).
16. 「요약 16. 李重夏가 秦煥에게 보낸 조회(李重夏致秦煥照會)」: 도문강은 장백산의 강이니, 수원을 답사할 때는 응당 장백산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圖們

江爲長白山之水，踏勘江源，當以長白爲主).

17. 「요약 17. 秦煥이 다시 이중하에게 보낸 답장 조회(秦煥再覆李重夏照會)」 : 강물의 형세를 따라 수원을 찾는다면, 마땅히 서두수를 조사하는 것이 이치에 맞고 공평한 조치입니다(順水形尋江源，合勘西豆水，正爲循理從公之舉).
18. 「요약 18. 이중하가 진영에게 보낸 조회(李重夏致秦煥照會)」 : 서두수를 답사하는 것은 마치 북쪽의 燕나라로 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남쪽에 있는 越나라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踏勘西豆水之行，殆同適燕而途越).
19. 「요약 19. 紅土山水를 조사한 다음 만나서 담화한 조회(勘紅土山水後晤談照會)」 : 홍토산수가 도문강의 수원인지 아닌지 변론하였습니다(辯論紅土山水是否圖們江源).
20. 「요약 20. 석을수 답사 상황(踏勘石乙水各情形)」
21. 「요약 21. 李重夏가 秦煥에게 답장으로 보낸 조회(李重夏覆秦煥照會)」 : 黃花松甸이 언덕인지 물줄기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黃花松甸爲崗爲水，希告知).
22. 「요약 22」 : 黃花松甸은 언덕도 산봉우리도 아니며, 마치 평평한 비탈 같지만, 진흙이 늘 물에 젖어 있습니다(黃花松甸非崗非嶺，儼若平坡而泥土常濕).
23. 「요약 23」 : 장백산 일대의 지형 중에는 黃花松甸과 흡사한 곳이 많습니다(長白山一帶地形多有如黃花松甸者).
24. 「요약 24」 : 산세와 강물의 형태로 보아 홍토산수가 도문강 수원임이 입증되었습니다(以山水·里數，指證紅土山水爲圖們江源).
25. 「요약 25」 : 『회전』과 『여도』에는 홍토산수가 대도문강이라는 기록이 없으니, 헛되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會典』·『輿圖』未載紅土山水即大圖們江，徒然強辯，無益於事).
26. 「요약 26」 : 물줄기의 크고 작음으로 논할 때, 홍토산수가 실로 대도문강의 수원입니다(以水之大小論之，紅土山水實爲大圖們江源).
27. 「요약 27」 : 秦煥이 지도를 그린 후에 도문강 수원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秦煥主繪圖後再商圖們江源).

28. 「요약 28. 李重夏가 秦煥에게 보낸 조회(李重夏致秦煥照會)」: 흥토산수와 석을수 두 물줄기를 함께 조사한 내용을 지도로 그려 총리아문에 보고하고, 총리아문에서 유지를 청하여 정계 문제에 대해 황상이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청합니다(請將會勘紅土·石乙兩水情形繪圖呈總署, 請旨酌奪定界之處).
29. 「요약 29. 진영의 답장 조회(秦煥覆照)」: 석을수가 그래도 옛 경계와 부합하니, 지금 응당 지도로 그려 총리아문에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石乙水尙與舊界相符, 今當繪圖稟報總署).

날짜: 光緒十三年十月二十一日(1887년 12월 5일)

발신: 總理衙門

수신: 北洋大臣 李鴻章

十月二十一日, 行北洋大臣 李鴻章文稱.

光緒十三年九月二十一日, 接准貴大臣咨開.

九月十七日, 准朝鮮國王咨稱.

派德源府使 李重夏覆勘圖們江界址一事, 並送勘界會印地圖一紙, 談錄公文節略一冊.

等因. 到本閣爵大臣. 查該國王已備公文圖冊, 咨送禮部在案, 相應據情咨請核辦.

等因. 准此.

查此事本衙門於本年七月初二日, 接准吉林將軍咨開.

據會勘吉朝界務委員德玉·秦煥等稟稱.

竊卑職等遵飭復勘圖們江界址, 于本年三月下旬, 馳赴會寧, 與朝鮮勘界官·德源府使 李重夏會議. 除茂山以東, 誠如總署原奏, 有圖們江天然界限, 毫無疑義不論外, 惟茂山以西之江界, 自應逐細考究. 是以會同該府使, 由會寧起行, 于茂山城督同測量委員. 溯江而上, 裹糧前進, 辟路披荊, 隨處測量, 徧勘水道, 凜遵總

署奏議，與該府使辯晰考證，務將茂山以西二百八十餘里，知之未明者，逐細考究，悉心體認，確尋江源。故不覺雨淋露宿，涉險踏危，歷期兩月有餘，直至五月初旬，甫經勘畢，回至會寧。竊思前次履勘，時值嚴冬，雪深水涸，尋源較難，猶有未經指辯者，茲則一一勘明，按照所測量里數，詳細繪圖。查茂山以西之江流，原勘祇有西豆·紅丹·紅土三水，合此次尋出之石乙一水，共有四流。總署章奏(所載)。

『皇朝一統輿圖』所列西豆水，在紅丹水之南，且發源于彼國吉州之鶴項嶺，其非大圖們江可知。紅丹水在茂山之南，其與茂山北之小圖們江無涉可知。

論其水流，則西豆水較為寬闊，而察其方向，以及西岸居民繁衆，墳墓久遠，又非分界之大圖們江。至若紅丹一水，不得謂小圖們江，猶可謂之大圖們江，以其與鴨綠江源，相距四十八里半。總署亦謂。

鴨綠上源不名鴨綠，名曰：建川溝，與圖們上源，不必卽有圖們之名，事同一列。考建川溝三字，朝人呼爲良莫千各里，由三汲泡西南行，順嶺坡而下，有一水向西南流者，卽是此水。據該府使送來節摹，李申耆所繪，與皇朝圖，其中列三池，卽三汲泡，與建川溝宛然相對。此前勘稟中，所以有當年定界立碑，應在三汲泡分水嶺上之議。但以此次復勘情形而論，紅丹水源亦在茂山之南，旣與總署奏議相合。而長坡一帶，朝鮮居民計有百餘戶，所有田廬·墳墓，察其形迹，均屬舊制。密詢華民僉云：“歷有百年。”及查閱『茂山府志』，載明設立長坡社倉係在乙巳年。當年已有七十二戶，于戊申年又增五十三戶，以時考之，似非道光年間之乙巳，百年之說亦非無憑。若以紅丹水源爲大圖們江源，統而目之，則長坡內曲小紅丹廟一帶地方，應在中國界內，于理似有未洽。故論其水形，可以擬定，而論其情理，又非可以指定。按紅土山一水查勘，至再所謂四十里伏流，并無確據。水流盡處，隔以平岡，與董棚南面向東北流之水，固屬不接，而與碑堆又兩不相貫。該府使照會中亦云：“該處水流不接。”復經逐一推勘，紅土山水斷非大圖們江源可知。然則穆克登所立之碑，何以立于該處，應遵照總署所奏，徹底根究。當經再三研詰，博訪周諮，均謂山深地僻，人迹罕至，實屬無從考究。伏查康熙五十年八月初四日，欽奉諭旨。

前差烏喇總管，查看邊界，業將所查地方繪圖呈覽，因路遠水大，未能至所指之

地。着于來春，自義州乘舟，遡流而上，由陸路向土門江查去。

等因。欽此。

立碑在五十二年，但是年未奉上諭，亦未見有奏文。以上年諭旨爲准，可見立碑之地，並非所指分界之地顯有確據。故碑文特冠以審視二字，不載明分界字樣，原有深意。至年深日久，以訛傳訛，朝鮮之堅執誤認，似亦情有可原。由此觀之，即使此碑果在此處，亦不得爲分界之碑。查石堆·土堆一節，詳詢土人，乃當年獵戶入山，爲引路之堆，無足深究。持是，與該府使反復辯論，致令心折。前次因雪深水涸，未經勘明石乙一水，朝鮮呼爲島浪水，由小紅丹紆曲向西，繞過長坡，復折而南，緊貼甌山，經過石乙·紅土匯流處，向西南行，復向西至一水溝處，其溝向西南行，計長十二里，溝寬二三丈，深五六尺不等。此溝盡處又接黃花松甸，水痕深漬，淤陷難行，向西五里復接一溝，寬四五丈至二三丈，深一二丈不等，向西北行，計長二十二里，至小白山東麓。以石乙·紅土兩水分流處相較，石乙水寬若三丈有餘，紅土水僅寬二丈，寬闊相去倍半，即兩水之長短而論，石乙水源亦較長于紅土水源，而且原流相貫。上年雖見有石乙之水，因冰雪深積，未窮其源，故未深論。茲經查明石乙水，由茂山至小紅丹，計一百九里一百八十八步，復由小紅丹至水源出處，一百七十里三百二十五步，合計之共二百八十里有餘，與知之未明之數，以及西豆入吉境，南折入甌山之義，適相符合。又查『欽定會典圖(說)』，載明大圖們江出長白山東麓，二水合流，小圖們江出其北，二小水合東南流來會。按長白山形，五峰環峙，高二百里，綿亘千里，頂有大池，爲諸水發源之地，具載『盛京通志』，班班可考。卑職等此次復勘，同測量委員，兩至池邊。正擬測量，不料雲霧陡起，風雪大作。故池之寬未經測准。當山之際，風和日暖，天氣清明，遙望諸峰，歷歷在目。見白山南面，劈分兩幹，其一向西南指者，即往盛京之幹。其一蜿蜒向蒲潭山去者，爲東南一幹，臙脂·小白等山同在一幹，不過突起巒頭。此幹之西麓，爲鴨綠江源，如西豆·紅丹·石乙諸水，均出其東麓，實係一大分水嶺。長白與小白，相距不遠，以綿亘千里觀之，小白東麓，即爲長白東麓，何必易其名。所以稱爲小白者，以朝鮮人相稱已久，遽更其名，敘事恐難明顯。參觀山勢水形，互證欽定諸書，

則石乙水源明明出于長白東麓下，與紅土山水合流，洽合大圖們江源形勢。紅旗河出其北，上源爲外馬鹿溝，又有二小水，合東南流來匯，適成爲小圖們江。查朝鮮所呼之小白山，實係分水嶺。若以此嶺之下石乙水源爲大圖們江源，似覺毫無牽強，且源頭水溝兩岸，均係沙石山崖，相間水道，確鑿可指。再，由小白山測鴨綠江上源，相距四十二里，于“西爲鴨綠，東爲土門”八字，均能一一吻合。卑職等會同該府使，復勘情形如此。原擬遵奉總署奏中之旨，逐細會勘，酌定界址，該府使心以爲然。但因其政府命意，必以紅土山之水爲大圖們江源，方可定界，是以始終不能作主。此次該府使目見紅土山水不接與碑·堆·又兩不相貫，即董棚南面向東北流之水(系松花江源)，亦與碑·堆不相關涉。所來照會，據實答復，知非當年舊界，祇因政府命意，不能自下作主。是以相懇卑職等，將所勘之石乙水，一併繪圖報憲臺，轉咨總署，請旨定奪。竊思前鍾城府使誤指海蘭河爲分界江，朝鮮政府不察虛實，信其一面之詞，申辯多端，幸經總署奏駁，始不置辯。想朝鮮政府前次誤指海蘭河爲界，今又誤會紅土山水伏流執爲大圖們江舊界。伏查元山坐探委員姚令文藻稟中有。

該府使曾與言及，明知松花江·海蘭河指界之誤，因其政府授意，不敢不遵奉以行。

等語。

可見其政府屢次授意，并非虛語，似此一誤再誤，伊于胡底。可否仰懇憲臺，詳加察核，切實咨請總署，按圖指定界址，得早日了結，免其又生詞辯。爲此卑職等共同酌議，惟有將所勘諸水，按照所測里數，詳細繪圖一樣兩張，共同會蓋騎印，各執一張，另折開明測量里數，一併據實稟呈憲台查核，轉咨總署，奏明請旨定界。

再，界址定後，遵當另立界碑，申明舊界，所有穆克登所立之碑，既與界址不相關涉，而石堆·土堆又相引至松花江掌上。此時若不將此碑毀去，仍恐將來存爲疑案，別生枝節，且于松花江有碍。如以石乙水源定界，則小白山東麓起，至茂山城止，自應摘要立碑，庶凡界劃分明，永垂久遠。爰將應立界碑之處，預爲公同擬定，附開折之後，以省周折，可否仰懇憲台酌奪，一併咨明，實爲公便。

等因。准此。

茲該委員等指稱，紅旗河爲小圖們江，石乙水入紅土山水匯流處爲大圖們江，由小白山測量鴨綠江上源，相距四十二里，與“西爲鴨綠，東爲土門”二語，尚能一一吻合。擬于此處酌定界址，其說亦與前咨“當年定界立碑，應在三汲泡一段之分水嶺上之意”相符。惟事關邊地出入，該府使雖心以爲然，而其詞猶涉推，未便遽以定界，相應將復勘情形，及印圖·清摺，一併咨請貴衙門，查核具奏，請旨定奪施行。至舊立碑，未便遽行毀去，應于此次定界時，會同該國，移立于該委員等所擬華字界碑處，以備稽考，合併聲明。

等因。前來。

當經本衙門於七月二十二日，咨覆吉林將軍內稱。

吉林與朝鮮會勘圖們江界一案，前經本署兩次奏請，飭下貴將軍派委委員，逐細會勘，酌定界址，妥將前項朝鮮游民分別安插。欽奉諭旨允准，歷經恭錄行知在案。朝鮮世列藩封，列朝字小之義厚往薄來。本無所謂分界之說。如康熙中，將軍穆克登奉旨查邊，其所立碑文不過記載圖們·鴨綠兩江之源，亦無分界字樣。不知邊吏何故，以訛傳訛，居然執分界之據，誠所不解。再上溯崇德二年·四年大兵時，督外藩科爾沁等部，出入朝鮮咸鏡道往征瓦爾喀部。當日會寧·茂山一帶，皆大兵往返必由之路，其時咸鏡·平安二道之北境，地曠人稀，無朝鮮民人入長白山部境內墾居住可知。及至承平日久，朝民生齒倍繁，漸次開墾咸鏡道北境，近年流氓竟至入寧古塔·琿春等處。此係百餘年來休養生息之故，情事顯然。該朝官因無地可資收回安插，希圖佔越，遂煩會勘之舉。據咨稱。

該委員等詳勘西豆·紅丹·紅土三水之外，復勘出石乙一水。

按圖在三汲泡之東，大紅丹水源之北，與前咨所勘，稍有出入。長坡小紅丹廟一帶，朝鮮居民所有田廬·墳墓，綿歷百年，自未便指爲寧古塔界內之地。至紅土山碑堆之誤，該府使李重夏亦已心知其非。該委員等指石乙一水發源至茂山城約和二百八十餘里，與『欽定會典圖說』所載，大圖們江出長白東麓二水合流之方向，約略推尋，尚爲吻合。所擬於小白山·黃花松甸子·石乙水，長坡浮橋等處，設立界碑十處，編立字

號之處，亦屬可行。查此次勘界，經貴將軍核明各節，辦法持平。該處係吉林古塔所轄之地，現會勘已有端緒，應如何與該府使訂立界碑，將前項越墾流民分別刷還及入籍安之處，均應由貴將軍查核明確，照會朝鮮勘界官，會勘立碑，專案奏明，酌度辦理。

等因。咨覆。去後。

接准貴大臣來咨，合抄錄前文，吉林寄來擬立界牌摺一件，圖一張，現行咨行貴大臣查照。至應如何辦理之處，應俟吉林將軍奉承諭旨，再行欽遵可也。

「覆勘圖們界址談錄公文節」

1) 吉林派員秦煥，朝鮮勘界使李重夏，在會寧府說帖照會

重夏說：

勘界一事，敝邦本意初何嘗希圖展土哉？職緣民情之憫迫，一番指證碑界，以明無隱之心，然後標界安民，惟俟皇朝寬恩而已。乙酉總理衙門奏稿內有曰。

『欽定通典』，『邊防門』，『欽定四裔考』，均載明：吉林，朝鮮以圖們為界。

又曰。

『一統輿圖』，『會典地圖』載在職方者，圖們·鴨綠二江為東西兩界，標劃分明。

又曰。

白頭山在中國·朝鮮之界。白頭乃長白之異名，豆滿圖們之轉音，方言互殊，實為一水。

上年春勘界圖繪後，總理衙門咨移內有曰。

吉林，朝鮮界址，自朝境茂山府以東，會寧，穩城，鍾城，慶源，慶興五府，東至鹿屯島海口，自有圖們江天然界限，為之劃分，毫無疑議。自茂山以西，上距分水嶺穆克登勒石立碑之地，有應辦者，應考證者。是以飭下吉林即行會勘。

敵邦初緣民情起見，有所論辯，前後所奉總署議奏，若是鄭重。圖們，豆滿乃是一水，而圖們天限，載在圖典，則敵邦惟求碑堆之與圖們相照應，考證辦晰，仍應遵守，爲了事之方也。今聞貴督理乃欲定界於紅丹水之上云，誠夢外之言。紅丹水在小白山以南，原屬敵邦內地，無關於論界。況茂山之長坡等地，僅在其外，寧有是理！總署前咨，亦以分水嶺立碑之地辯考證主。今此覆勘，惟當更審圖們江舊界與穆碑之限，照『一統輿圖』，務求吻合，以爲勘完。貴督理之泛指紅丹·西豆，莫曉所以。自有載籍以來，皆以長白發源圖們。往年貴論亦云：“准以發源長白之圖們江界。”今忽指小白山以下之水源者，萬萬意想之所不到也。一一示答爲妥。四月初七日。

煇答：

往年會勘，廷旨係令因江流而探江源，非謂先擇江源而定江流也。當時由茂山行至三江口，訂分三路，先探江源。嗣因府使堅執碑堆之說，故勉往一勘，以釋其疑。府使始云：“水流相接。”及勘紅土山至董維窩棚，盡屬漫岡，並無水流。故繪圖鈐押，各無異言。熟知墨跡未乾，又生詞辯，有伏流四十里之說。歷考『會典』諸書，論圖們江源，從無此解。貴政府果何所見而云然？今府使來勘江界，先言碑堆，時而以伏流強辯，時而以紅土山爲源，游移無定。且非因江流而探江源，乃先擇江源而定江流，有是理乎？所謂指證碑界，是將查邊之碑爲分界碑。查貴政府所鈔『承文院故實』，咨我禮部內開。

康熙五十年八月初四日，有奉旨，“派穆克登，至長白山我邊境，與彼國無涉。”

等諭。況有與貴邦無涉字樣，則穆克登所立之碑，其爲查邊之碑，非分界之碑無疑。況總署奏章亦謂。“穆克登碑文第言，‘奉旨查邊，至此審視。西爲鴨綠，東爲土門。’”並無分界字樣，是當日立碑之處未必卽分界之處，所斷尤爲明晰。若竟以松花江掌上之碑爲據，非特於總署所奏不合，且於貴『承文院故實』不符。所謂定界於紅丹水之上，爲夢外之言，總署奏申明謂。“鴨綠江上源不名鴨綠，名曰，‘建川溝’。與圖們江上源不必卽有圖們之名。”且『盛京通誌』載。“長白山爲諸水發源之地。小者爲河，大者爲江，以大小別之。”亦是確尋江源之一法。所云西豆水，輿圖中注明魚潤河，紅丹水註明紅丹河，三池無論，名目不符，所示之圖爲肆市坊本，而敘明不詳。豈有華·韓人員查明會印之地

圖不可憑信，而轉以坊本爲據乎？今次總署奏請覆勘圖們江界，爲前次未經辨晰考證，不過因所計里數，僅據土人之口，未足徵信，須以測量度數爲憑。且謂分界之說，或順山勢，或順水形，總以確尋江源爲主。此次覆勘，會同府使，前往茂山以西，或順山勢，或順水形，因流溯源，隨處測量，記明里數。沿途指證，逐細勘明，再行商酌定界。此係分界之要領，乃是總署奏請覆勘之本旨。查得江流有三路，擬派測量委員，先行登程，本局處與府使一面料理起程。府使遣派何員先行同往，以便訂期前進。十一日。

重夏再說：

乙酉冬敝職奉使來勘，恭覽總理衙門奏稿。有云。

朝鮮以圖們爲界，豆滿爲圖們之轉音。考之圖誌，援據賅明。

又與貴局處躬履詳勘，屢次商論，以此歸復于敝廷。自是以後，敝邦不敢株守偏見，惟將圖們舊限遵守，斷斷無他。第貴示中有不容不條辯者。“紅土水之不接碑界，又生詞辯”云云。伏流之說，此本穆總管咨會中句語，非敝政府之所創出也。又所謂“指證碑界，是將查邊之碑爲分界之碑”云云。白山一片石，久爲大小國三百年界限，國史野誌，無不備載。而向日貴局處歸之後人僞作，又疑奸民移碑，此皆語不近理。承示總署奏稿有云。

是當日立碑之處未必分界之處。

夫查邊立石，非定界而何？敝邦承文院定界事蹟中，穆總管奏聞咨會皆自在，可以辯當日之分界與否也。今不究故事而泛看，則此碑之在於鴨綠，松花兩源之間，實爲不合。然『盛京通志』曰。

長白以南爲朝鮮界。

又『通典』曰。

朝鮮以圖們江爲界。

圖誌所載若是，則穆總管查邊立石之日，何以捨長白而立於小白山，捨圖們而立於洪丹水乎？緣圖們之源距碑稍遠，故沿設土堆而接之。今見鴨綠無堆而東邊有堆，可以想知。又細看堆尾之迤南漸可辯析也。總署奏稿。

鴨綠江上源不名鴨綠，名曰：建川溝，與圖們江上源不必卽有圖們之名。

云云。

此由貴局處前以紅丹稟報，致邊界事情不能上達而然也。謹按『一統輿圖』中鴨綠，圖們之界，點劃標識，十分明白。紅土之水爲大圖們江，確切註明。其南有小白山，三池，洪丹河等地，註明字樣。此又的確可據耶。前勘時，貴局處每以圖誌爲據，故屢懇一見，終不示之。敝職歸京購得一本而來，又謂之坊本不足憑信，不勝訝感。今此『一統輿圖』與前勘地圖，元無甚差。請指『一統輿圖』中何者爲不足信，一一較對，明白指示。總之，此次勘界，敝邦惟知謹守圖們舊界而已。貴局處所奉總署札飭及所齎輿圖，亦望分示，公明改訂，幸甚。派委員先行測量，敢不惟命。而原來上年總署覆勘札飭內。

茂山以西上距分水嶺穆克登勒石立碑之地，有應考證者，有應辯析者。

云云。

則考證宜在於此。現貴局處乃指敝邦內地紅丹·西豆之界，此非交界，實無覆勘之可議。深諒更教。十三日。

燠再答：

碑堆一節，貴『承文院故實』說明，“奉旨邊與彼國無涉。”細思分界，豈有與朝鮮無涉之理。且總署亦云，“碑中並無分界字樣。”況碑堆不應在松花江掌上，府使亦云，“此碑在於鴨綠·松花兩源之間，實爲不合。”既知不合，須細較江之水源，此碑應在何地方，方爲相合。示總署覆勘札飭，“由茂山以西上距分水嶺穆克登立碑之地，有應考證辯析者。”云云。總署所謂，“茂山以西上距分水嶺穆克登立碑之地，”係指其碑應在圖們江發源處而言。是以後來之札均言，“上距圖們江發源處，逐細考證。”可知非指松花江掌上之碑。且要知考證辯晰之意，正爲考證江源，辨晰江界。如謂指前勘立碑之地，明爲松花江源，又何考證辯晰之有？先派何員同測量委員，先行起程，或本局處與府使，隨測量委員一同前進，順圖們江流而尋江源，以定界址，免致遲誤至要。十四日。

重夏又答：

貴示以“彼國無涉”四字，與“碑文並無分界”字樣，謂非分界之碑，此有可證者。敝邦『承

文院定界故實』中，穆克登奏聞咨移兩本，茲鈔送覽，此碑之爲定界，可以瞭然。貴示謂，“總署札飭只攷證江源，非指考證界碑。”此碑乃聖祖皇帝時，烏喇總管奉旨查邊而立者，敝邦幾百年奉以爲金石。而貴局處無意攷證，此豈札飭之本旨，亦豈敝藩邦之所望哉！前覆中“泛看不合”云者，以‘泛看’二字，以明其實非不合，而其下又訂『盛京通志』及『通典』所載之確據，何不詳覽？而有碑應在何之間，茲攷證卞析而申言之。此碑卽康熙壬辰五月十五日所立，而自碑界距圖們江源，中間無水，(故)伊時築土設棚，有穆克登咨文具載。『承文院故實』業經錄呈于禮部，北洋衙門，此碑之爲分界，可證一也。今按『一統輿圖』，長白山南鴨綠·圖們兩間無水處，有點劃標識，其界限之瞭然，可證二也。『盛京通志』烏喇所轄曰，“南至長白山，其南(爲)朝鮮界。”又寧古塔所轄曰，“南至長白山，其南(爲)朝鮮界。”今此碑在於長白山麓初落處，碑之界限，可證三也。圖們上源其派爲三，而必以紅土山水謂大圖們者，此有可證。按『一統輿圖』，長白山東邊有水，注明大圖們江，今所稱紅土山水也。又其東北一條水，注明小圖們江，今所稱紅旗河也。長白山之南有山，注明小白山。再南有三圈，注明三池，其下一條水，注明紅丹河，今所稱三泡紅丹水也。又其南一條水最長，注明魚潤河，今所稱西豆水也。小白·三池·紅丹之北有水，注明曰，“大圖們江，”則此非敝職所稱紅土山水而何也！此以北只有小圖們江一派，其外惟海蘭河而已，更無他水。則紅土水之爲大圖們江，豈不的確乎？考諸中外地圖，逐派查證，毫厘不差，圖們之案可以辯晰也。

總之，以江言之，則紅土水之爲大圖們江，確切無疑。圖誌所載，自有可按也。以碑言之，則穆克登之奉旨所立，事實昭然，聖朝舊蹟，不可以替也。然則自碑至江之間，堆未盡接，易致疑眩，今宜增一碑於紅土水之上，以證穆碑，申明邊限，遵守舊界，則小國之民，更無敢冒占一步。此開誠暴懇，更無餘辭，幸垂察焉。所示勘江，當令派一員訂期偕往。十五日。

吉林派員 秦，

(爲) 照會 事。

准貴府使咨覆，除刪繁不敘外尾開。

當令派一員，訂期偕往。

等因。前來。本局處現派測量委員 劉虞卿，帶同弓兵·繩手·測量器具·駝馬，准於十七日起程，前往測量。貴府使遴派何員，早為派妥，以便同往。須至照會者。十五日。

朝鮮勘界使 李，

(爲) 照覆 事。

准貴局處照會內開。

云云。⁵²⁾

等因。准此。

查敝職頃於答覆中，援據皇朝圖志，以訂紅土水之確切爲大圖們江。且抄送穆總管定界故實，鑿鑿有據，庶可瞭然。如或猶有可疑，理應即賜駁辯，此是考訂商確之義。而今無一字可否，不勝訝郁。舊界旣無可疑，則他水實無所勘。而貴局處期欲勘審，有此訂期，敝職亦當派送隨員前任，五衛將 吳元貞等二人，以便十七日起程同往。須至照覆者。同日。

燠說：

來示辨上諭“彼國無涉”，及總署所奏“碑中無分界字樣”二語，僅鈔來穆克登奏文·咨移兩件。知府使並未將當日穆克登奉旨查邊之諭細閱，無怪措詞背謬。茲再恭錄抄奉。豈有聖旨煌煌曉諭中外，反不如穆文可憑乎？如果分界，當有明降分界上諭，豈有分界之上諭內，有“與彼國無涉”字樣？曰，“與彼國無涉”，則我國家一國之事，顯非兩國之事。然則分界之分字是一國之事乎，是兩國之事乎？與彼國有涉乎，無涉乎？請將“彼國無涉”四字細想。自然知非分界之碑。今測量委員與府使所派之員已行，吾輩亦可料理前進。希示覆日期，以便一同起程。二十日。

重夏答：

今以穆碑一案，示明當時聖諭中“無涉彼國”之旨意。竊查敝邦邊界，自古有原定界限。

穆咨中亦云。

原定江北大國之境，江南小國之境，歷年既久不議。

則當時奉旨查邊，卽立碑於原定之界，以申明之也。非有他事於小國，故恐有“無涉彼國”之聖諭也。蓋查邊立碑，與定界立碑，其議有異乎？碑文無分界字樣者，非當日之始分界也，仍舊貫標識而已。則分界字樣之有無，何足訝乎？第今所勘之圖們界限，既有明白圖誌可據，只宜增豎一碑於紅土之上，以明穆碑土門之義。須一會公堂暢論，商定入山日子，趁速起程。同日。

煇再說：

來示“宜增豎一碑於紅土山之上，以明穆碑土門之義”，並欲“一會公堂”定議。但此事辯論既久，訖無定議。府使意在紅土山增豎一碑，既經知定立碑之處，何必覆勘，又何必會議。其所以覆勘之由，原不知其處。總之，溯流窮源，以定界址。持論既爲公允，若各執意見，於事仍屬無濟。莫如商證日期，趁速起程，沿途指證，務期源流相貫，界劃分明而後已。本局處現已商定於二十二日行，府使之意如何。同日。

重夏再答：

此次覆勘專爲照古證今，務從公辦。大小圖們江瞭然於中外地圖，則無庸遠勘他水。而今貴局處之意，斷欲遍勘江源。職當以二十二日依教起程。同日。

2) 在茂山府之長坡照會

朝鮮勘界使 李，

(爲) 照會 事。

此次奉派覆勘土門江界限，敝職擬先勘紅土山，貴局處欲勘西豆水，嗣行至茂山地方，一同先往紅丹水，查看水源後，仍回長坡公議。或往西豆水，或往紅土山。再當循理從公確查，以期毋滯公事爲妥。須至照會者。二十九日。

吉林派員 秦，

(爲) 照覆 事。准貴照會內開。

云云。

等因。准此。

敝局處定於明日，同貴府使先往紅丹水，查勘水源。若無的據，仍回長坡議往他處，再勘可也。須至照覆者。同日。

朝鮮勘界使 李，

(爲) 照會 事。

西豆水之無關於交界，往年業經屢辯。不意今行貴局處又欲往勘此水，理實難曉。查圖們山水邊界形勢，具載於『一統輿地全圖』，上年總理衙門奏議，至有“西豆水之非大圖們江可知”句語。執此一節，無容再辯。敝職斷不應僅從貴局處之論，遠勘不當勘之水。須至照會者。閏四月初八日。

吉林派員 秦，

(爲) 照覆 事。准貴照會內開。

云云。

等因。准此。

查總署奏議，雖有“西豆水之非大圖們江可知”一語，但下文即聲明必須佐證確鑿，方能定斷，仍是游移之詞。又云。

分界之說，或順山勢，或順水形，總以確尋江源爲主。

可見西豆水之非圖們江，在總署亦未能遽定。意謂覆勘之時，果能佐證確鑿，亦可定斷。所以總結仍歸重於確尋江源一句。旣尋江源，凡屬於此江相連之水，皆可勘得。況西豆水爲江身之大流，焉能不勘？請將總署奏議前後文語氣，再行詳細玩味，自然領會矣。況府使日前照會內開。

先往紅丹水，看水源後，仍回長坡公議。或往西豆水，或往紅土山。再當循理從公確

查.

等語.

現在公議或往西豆水查勘，而府使忽更前議，且與前次照會之意不合，何耶？須至照覆者。同日。

朝鮮勘界使 李，

(爲) 照覆 事。准貴照覆內開。

云云。

等因。准此。

今此江源查勘之行，惟應順理作行，不必徒事先後。故前日照會。

果以先看紅丹，仍回長坡公議。再當循理從公確查。

等語。

互商於貴局處後，自紅丹而回長坡已三日矣。敝職擬照前議，屢欲面語輒見拒，一不得對商。徘徊無計，不得已頃修照會，以文代面。而所言即遵奉總署命意而已，不敢有他。總之，總署奏議一篇結辭云，“總應將圖們江指證確鑿，界限自可分明。”此正覆勘要領，斷斷知此次公事，專爲指證圖們江一段事矣。圖們江即長白山之水，而今到長白山之口，捨長白當勘之路，而乃擬往非圖們之西豆水。有是理乎？敝職照循理，從公之前議，頃陳西豆不應勘之論，有何前議之忽更乎？須至照會者。同日。

吉林派員 秦，

(爲) 照會 事。准來文所開。

云云。

等語。准此。

查西豆水不應勘，勘之既非循理從公，前次照會何以議及或往勘此不循理從公之西豆水？況勘西豆水即所以指證圖們江。攷長白山綿亘千餘里之源流不一，圖們江與西豆水係同流，安知圖們江非出西豆之源乎。總之，順水形尋江源，合勘西豆水，正是循理

從公。本局處已證於十一日同往查勘，免致遲誤。須至照會者。初九日。

朝鮮勘界使李，

(爲) 照覆 事。准貴照會所開。

云云。

等語。准此。

向日照會中或往云者，是兩水中未定之辭，及其臨行指定也。不得不執一循理而言。貴局處以或往二字責之太甚，不亦過乎？西豆水一節，往年貴局處稟中亦有所論。第念大小國疆域之限，自有『會典圖說』、『一統輿圖』刊布天下。上年總署議奏援據界限水源，亦以此圖典爲據。茲於『一統輿圖』中就吉林朝鮮交界，移摹一本呈覽。此圖原准經緯度數，東西遠近皆可瞭然。望先以此圖照攷圖們山水，參以所目勘，逐派按方而查驗，則大·小圖們江，自應有確鑿之界。夫如是，則事歸公證。至十一日西豆水之行，殆同適燕而途越，其在辦公之道，合有更諒。須至照會者。同日。

3) 勘紅土山水後晤談照會

燠曰。“今旣盡勘水派，請公平言之。”

重夏曰。“公平言之，卽紅土水也。”

燠曰。“此果公言乎？”

重夏曰。“要定於我國幾百年舊限。”

燠曰。“然則此事無復更議。我當以紅丹河。”

重夏曰。“此朝鮮內地。貴雖自定，我不可定。”

燠曰。“是吉林地，豈朝鮮地！”

重夏曰。“『皇朝一統輿圖』，自有大圖們之限。請與逐派公證可乎？”

燠曰。“地圖是皇帝所賜耶？總署所達耶？地圖不足爲證。”

重夏曰。“總署所奏，每以輿圖爲援證，是不可據，更有何遽？”

燠曰。“總署公文欲見之耶。”

重夏曰。“紅土山水，貴局處上年勘界稟報，初不一字舉論。故總署初未知有此水而然也。”

煇曰。“紅土水，貴政府屢請於北洋總署，而不欲許之。故以紅丹河爲定。”

重夏曰。“總署奏議，水源地形，論之甚詳。紅土水之大圖們亦明矣。”

煇曰。“總署亦未詳知。惟在我等之稟報如何。府使之每證總署奏議，實無益。”

重夏曰。“今番須詳繪以呈，必有裁奪。我輩何必如是爭論此事。即申明舊界而大小國三百年以來自舊界，何可今日新定他界？”

煇曰。“府使既見其不接流，不接堆，而一直以紅土水爲主耶？”

重夏曰。“此有國家舊誌。國疆不可縮。”

煇曰。“紅土之外，府使不可作主云，貴政府命意本如是耶？”

重夏曰。“我政府送我之時，知紅土水舊限定界而已。至於紅丹，西豆之說，我政府意處所不到也。”

煇曰。“舊界有可據之蹟乎？”

重夏曰。“我國朝野圖誌，皆明白有載。而我之圖誌貴必不信，故我但證以皇清地圖。”

煇曰。“然則以此互相照會可也。”

重夏曰。“當如戒。”十六日。

吉林派員 秦，

(爲) 照會 事。

本局處於閏四月十三日，會同貴府使，由長坡北向之水，自浮橋勘起，過長山嶺，至紅土水與石乙水匯流處。計測水道，八十八里半。旋將匯流兩水分別細勘。查紅土水上有兩源。其一發源於圓池，此水由匯流處曲折向西北，至圓池計二十七里二百三十步。其一由紅土水上源匯流處向西南，至平岡水盡處，計十一里三百四十步。均與董棚之水不接。且紅土水之兩源，均與碑堆相距遠，兩不相貫。又查得石乙水一水，朝鮮呼爲島浪水。此水發源於白山。本局處與府使督同測量委員等，溯流而上去。除石乙水上溝口距三汲第一泡十八里，以及兩邊匯入石乙水之水溝短流不計外，由紅土，石乙兩水匯流處

向西南行，復向西至石乙水水流涸處，計四十一里二百十五步。又由水流涸處接連一溝，向西南行，計長十二里，溝寬二三丈，深五六尺不等。此溝接黃花松甸，此甸向西，計長五里。其甸復接一溝，向西北，計長二十二里，至小白山西面第一峰之東麓下，計溝寬四五丈至二三丈不等，深一二丈不等。溝之兩岸均係沙石石崖相間。此從長坡溯流向上，所查石乙水之源流如此，由小白山順流覆查石乙水情形亦如此。再小白山以西有水流入鴨綠江，合行一併備文照會。須至照會者。五月初一日。

朝鮮勘界使 李，

(爲) 照覆 事。准貴照覆內開。

云云。

等因。准此。

查石乙水上流水涸處黃花松甸，敝邦本無此等地名。未知是岡是水。隨員 池問于貴測量委員 劉，則劉答稱岡之總名云。未知是否。須至照會者。同日。

吉林派員 秦，

(爲) 照會 事。

頃接貴照覆詢及黃花松甸命義。蓋黃花松甸並非岡之總名。因其處盡產黃花松樹，非岡非嶺，儼若平坡，若有水，若無水，泥土常濕，足跡所經，不時淤陷。此等地方通稱黃花松甸。據石乙水上流水涸處，溯溝而上視之，若似漫岡，及由小白山順溝而下察看地勢，又似平坡。該處情形實是甸子，又有黃松，故謂黃花松甸，取其通稱如此。須至照覆者。同日。

朝鮮勘界使 李，

(爲) 照覆 事。接貴照覆內開。

云云。

等因。准此。

長白一山情形，蓋多如此，若取其通稱之義，則不必深辯。須至照覆者。同日。

秦煥以山水遠近里數照會，李重夏具水陸程里實數，以答辯其說。

紅丹河自茂山府百里，至紅丹合流處(從陸遽回長坡，至柳洞六十里。沿流直上至柳洞四十八里)。自柳洞至姜刀水(從陸四十五里，沿流五十五里)。自姜刀水至源盡處(從陸十里，沿流十里)，自茂山府計(陸路二百十五里，水路二百十三里)。紅丹河水源有上下二處，其參差不滿百步計。今分之以南北二源，南源加長爲一里半者，不合本形，以此例記之，則紅土山水之源爲三四處，加鷲峯水之源爲十處。紅土山水水盡處，劉委員所記時，共目見之地即溝道也，非平岡也。今云，“平岡水盡處”，不合本形。以董棚下流論之，閏月十八日，貴總理方與敝員池往勘而歸，以水盡處中有崗屬，有貴照會，而其後二十三日，使同貴承辦處再勘此水，則因雨漲，比十八日所勘之流又過數里而水盡，四面平行，並無岡屬。蓋此地之無岡，問於貴承辦處及貴通詞，亦應有目擊者。石乙水水盡處，劉，池兩員同勘時，以平岡橫插對小白山東南麓，輪筆同記，其後貴照會忽稱曰，‘黃花松甸’，此四字地名，敝邦之所昧。故使池員問之，劉書示“岡之總名”四字。故以此照覆。今日貴照會直云：“接連溝甸，”轉轉爽實。石乙水里數，劉，池兩員同記，自所勘處至水盡處五十五里半十五步，自長白山頂至十三里，自石碑過前峯至胭脂峯十五里，自胭脂峯至小白山二十里。鴨綠江源之距土門各派里數，若記載，則各路水源宜用一例，而獨於紅土山水，闕而不論。紅土山水，即『會典』，『輿圖』所載明明是大圖們江也。反不如紅丹·石乙之小水乎？十一日。

煥答。

來單閱悉。查總署前後奏議，並未指明紅土山水爲大圖們江，『會典』·『輿圖』亦未載明紅土山水爲大圖們江。今府使不知何所見而云然。末云紅丹·石乙爲小水，意在以紅土山爲大水。獨不思此與紅丹·石乙兩水究孰爲寬闊乎？此事看來府使然不以照會爲憑，徒然強辯，勢必至聽候欽差查辦。所有測量里數，此時且不必計較議論。十三日。

重夏再答。

紅土山水，敝邦之人本以豆滿江呼之。自往年勘界時，貴局處始名之以紅土山水，遂登諸公文，因以為名者。圖典中豈有紅土水之名乎？請將輿圖逐派計之，則大圖們江自有的確無疑處。而今以圖典之未有載明駁之，未知其可也。至以水之大小論之，至小紅丹匯流處左右看二水，則不得不謂之紅土之大於紅丹也。又至石乙水匯流處觀之，大源小派自有衆人公眼，何必重辯？總之，貴局處之意堅，不許圖們舊界，前端懇商，終無以少回。敝職惟以此歸報朝廷而已。同日。

4) 回至會寧府會談

重夏曰。“長白山水，今已遍勘而回。界限商論，亦三朔之久矣。貴意則大圖們江定指何水？”

煥曰。“大圖們江無以詳知，俟繪本具成，更當商定。”

重夏曰。“以『皇朝輿圖』攷之，大圖們江不難指證。而貴意終不以輿圖為據耶？”

煥曰。“『皇朝輿圖』未可憑信。”

重夏曰。“年前土門辯論時，貴局處前後照會筆談中，必以『皇朝輿圖』為第一確據。至今日敝使欲指證輿圖，則貴局處每曰：“輿圖不足據。”此何故也？”

煥曰。“前日貴國爭海蘭河，我以輿圖指證，而今則事異於前，不可以為證。”

重夏曰。“如是說，夫無須再辯。我則日間回程。”

煥曰。“俟繪成後再商。”

重夏曰。“主意不合，繪本亦必不合。何必俟繪成。”

煥曰。“繪本若不相合，則彼此照會而回程為可。”

重夏曰。“然則當少留。”十五日。

5) 商定界限後照會

朝鮮勘界使 李,

(爲) 照會 事.

此次覆勘圖們江界, 遍審水源, 閱月細商, 自茂山府以西, 沿流至長白山中長山嶺西邊, 紅土水, 石乙水合流處, 逐段攷證, 皆以勘定. 而斷斷所未定者, 惟合流處以上兩源. 撥職在長白山至紅土水立界, 貴局處擬在小白山至石乙水立界, 屢次商議未協. 總之, 界限既盡勘定, 僅此兩源小流之分別, 雖不過深山中幾里相關. 然竊惟大小國疆土事務, 俱係慎重. 仰請公同照測量里數繪圖呈總署, 恭奏請旨酌奪, 以定立界之處. 須至照會者. 十八日.

吉林派員 秦,

(爲) 照覆 事. 傾准貴照會內開.

云云.

等因. 准此.

紅土山水, 本局處疊經會同府使逐細查勘, 水流盡處與董棚前面向東北流之水不接. 又與碑堆兩不相貫. 嗣尋得小白山東麓石乙一水, 其源流各節與舊界相符. 原擬遵定總署奏議, 逐細會勘, 酌定界址, 今府使欲照測量里數繪圖呈總署, 恭奏請旨酌奪, 以定立界之處, 本局處當照所測里數, 詳細繪圖, 公同會印, 據實稟報. 相應備文照覆. 須至照覆者. 十九日.

10월 21일에 [총리아문에서] 북양대신 이홍장에게 보낸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서 13년 9월 21일에 귀 북양대신의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9월 17일에 조선국왕의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德源府使 李重夏를 파견하여 도문강 경계지역을 재차 감계한 사안에 대하여 勘界를 하고 공동으로 도장을 찍은 지도 한 장과 『(도문강 경계 지역에 대한 재차 공동감계

52) 여기서의 '운운(云云)'은 앞서 받은 조회나 공문의 내용을 다시 서술하지 않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를 하였을 때의) 회답 기록 공문 요약본』 한 책을 보냅니다.

이상의 내용이 본 북양대신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조선국왕은 이미 별도로 공문과 지도·책자를 갖추어 자문으로 禮部에 보낸 바 있으므로, 응당 이 상황에 따라서 조사하고 처리해주실 것을 (총리아문에) 자문으로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본 총리아문은 올해 7월 2일 吉林將軍의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광서 13년 6월 7일 德玉, 秦煥, 方郎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지시를 받들어 도문강 경계를 다시 감계하였습니다. 올해 3월 하순에 會寧으로 달려가 조선감계관 덕원부사 이중하와 만나 의논을 했는데, 무산 동쪽은 진실로 총리아문의 原奏와 마찬가지로 도문강이 천연의 경계를 이루고 있어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다만 무산 서쪽의 경계지역은 응당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사와 함께 회녕에서 출발하여 무산성으로 향하면서 측량위원을 감독하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양식을 휴대하고 전진하였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길을 열면서 가는 곳마다 측량을 하고 모든 물길을 두루 조사하여 삼가 총리아문의 奏議에 따라 해당 부사와 함께 분석·고증하면서 힘써 무산 서쪽 280여 리의 밝혀지지 않은 곳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전력을 다해 확인함으로써 강의 발원지를 확실히 찾아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에 젖는 것도 모르고 노숙을 하면서 지형이 험하고 위험한 곳을 오르내린 기간이 두 달이 넘었으며, 5월 초순이 되어야 비로소 감계를 마치고 회녕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생각건대 이전의 감계는 때마침 엄동이라 쌓인 눈이 깊고 물이 말라 발원지를 찾는 일이 비교적 곤란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지정하여 가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하나하나 측량한 거리에 따라 분명하게 조사하여 상세하게 지도를 그렸습니다. 무산 서쪽의 강물은 지난 감계에서는 단지 西豆水·紅丹水·紅土山水 세 강물만을 찾았는데, 이번에 찾아낸 石乙水까지 합하면 모두 네 줄기가 됩니다. 총리아문의 원주에 의하면,

『一統輿圖』에 나오는 서두수는 홍단수의 남쪽에 있고, 게다가 조선 길주의 학항령에서 발원하므로 그것이 대도문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단수는 무산 남쪽에 있으니, 그것이 무산에서 북쪽으로 뻗는 소도문강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물길을 따지면 서두수는 비교적 넓으며, 그 흘러가는 방향을 살펴보고, 또한 서쪽 연안에 거민이 많고 분묘가 오래 되었음을 보면 분명히 경계를 나누는 대도문강이 아닙니다. 홍단수의 경우 소도문강이라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대도문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록강의 발원지와 서로 48리 반쯤 떨어져 있고, 총리아문에서도 또한

압록강 발원을 압록이라 하지 않고 建川溝라고 하는 것은 도문강 발원에 반드시 도문이라는 이름이 붙을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경우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건천구라는 세 글자는 조선에서는 良菓千各里라 부르고, 三汲泡에서 서남쪽으로 가면서 산줄기와 비탈을 따라 흘러내려 가면 아래에 서남쪽으로 흘러가는 물줄기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물줄기입니다. 安邊府使가 보내온 李申철가 그린 지도의 모사본과 중국 지도를 검토해보면, 그 안에 三池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三汲泡로 건천구와는 완연하게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감계보고에서 당시 경계를 정하고 비석을 세웠다면 응당 삼급포의 분수령 위이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번에 재감계의 상황을 가지고 논한다면 홍단수의 발원지 역시 무산의 남쪽에 있어 총리아문의 원주와 서로 들어맞지만, 長坡 일대는 조선 거민이 백여 호가 있는 데다가, 모든 토지와 가옥·분묘는 그 자취도 역시 옛날식의 것입니다. 비밀리에 중국인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백 년이 넘었다”고 이야기하며, 또한 『茂山府志』 가운데 해당 부분을 찾아보니, 장파의 社倉을 乙巳年에 설립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해에 이미 72호가 있었으며, 戊申年에 또다시 53호가 늘어났는데, 시간으로 따져보면 道光 연간의 을사년(1845)이 아니므로,⁵³⁾ 백 년이라는 주장 역시 증거가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홍단수의 발원을 대도문강 발원지라고 통틀어서 지목한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즉 長坡의 內曲·小紅丹廟 부근 지방이 응당 중국 경내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은 그다지 도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물의 모양으로 따진다면 이것으로 정할 수 있으나, 실제 상황이나 이치로 보면 이렇게 지정할 수 없는 셈입니다.

한편 紅土山水를 조사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른바 40리를 伏流한다는 이야기는 결코 확실한 근거가 없으며, 물줄기가 끝나는 곳은 평평한 비탈로 격리되어 董棚⁵⁴⁾의

53) 그렇다면 가장 늦어도 건륭 50(1785)년이 된다.

54) 동봉(董棚)은 감계 때 중국 측 위원이 지은 이름으로 동씨네 움막(董棚)라는 뜻이다.

남면에서 동북쪽으로 흐르는 물줄기와는 분명히 서로 연결되지 않고 있으며, 비문이나 돌더미·흙무더기와도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안변부사의 조회에서도 역시 그곳의 물줄기는 다시 연결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니, 홍토산수는 단연코 대도문강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극등이 세운 비석이 왜 그곳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당 신속하게 총리아문의 원주에 따라 철저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삼 이리저리 따지고 널리 물어보면서 두루 의견을 들어보니, 모두가 말하기를 “산이 깊고 땅이 외진 곳이라 인적이 거의 드문 곳이므로 도저히 알아볼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옅드려 생각건대, 강희 50년 8월 4일 다음과 같은 康熙帝의 상유가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전에 烏喇總管 穆克登을 파견하여 변계를 살펴보게 하였는데, 이미 조사한 지역의 지도를 그려 바쳤으나, 길이 멀고 물길이 커서 지정한 곳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내년 봄에 다시 의주에서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서 육로로 토문강을 찾아가 조사하도록 하라.⁵⁵⁾

이 비석은 강희 51년에 세워졌지만, 이에 관한 상유가 없고, 또한 이해에 올려진 상주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전해의 상유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비석을 세운 곳이 바로 경계를 나눈 곳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문에 특별하게 “審視”는 두 글자를 앞에 덧붙였지 “分界”라는 글자를 써넣지 않았던 것은 원래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날로 와전되었으므로 조선에서 계속 잘못된 생각을 고집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설사 당시 비석이 과연 이곳에 있었다고 해도 역시 경계를 나눈 비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돌더미·흙무더기 부분에 관해서 토착인에게 상세하게 물어보니, 옛적에 사냥꾼들이 산에 들어갈 때 길 안내 삼아 쌓은 것이라고 하므로 더 이상 깊이 따져 물을 것이 못됩니다. 이러한 주장을 가지고 안변부사와 거듭하여 논쟁을 하여 그가 결국 마음으로 굴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는 눈이 깊이 쌓이고 물이 말랐기 때문에 석을수를 조사하지 못했는데, 조선에는 島浪水라고 부르며, 소흥단에서 휘어져 서쪽을 향해 흐르다, 장파를 감싸고 돌고 다시 꺾어져 남쪽으로

55) 원문의 일부가 생략된 내용이다.

증산에 바짝 들러붙어서 흐르다가, 석을수와 홍토수의 합류지역을 경과하여 서남쪽으로 나가다가 다시 서쪽을 향해 흐르면서 물줄기 하나와 만납니다. 이 물줄기는 서남쪽을 향해 흐르며, 길이는 12리, 폭은 2~3丈이고, 깊이는 5~6尺입니다. 이 물줄기가 끝나는 곳에서 또한 黃花松甸의 물줄기에 접하는데, 물의 흔적이 깊고 진흙 때문에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서쪽을 향해 5리를 흐르다 다시 한 물줄기와 만나는데 폭은 4~5장에서 2~3丈이고, 깊이는 1~2丈 등 조금씩 다릅니다. 서북쪽을 향해 흐르는데 길이는 22리이고 소백산 동쪽 기슭에 이릅니다. 석을·홍토 두 물줄기가 나뉘는 곳을 놓고 비교해보면 석을수는 약 3丈 남짓한 폭이고 홍토수는 겨우 2丈 정도로 폭이 한 배 반 차이가 납니다. 즉 물줄기의 길이를 따진다면 석을수의 발원지(까지의 거리) 역시 홍토수의 발원지보다 더 길고, 게다가 원류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년 비록 석을수를 보았지만, 얼음과 눈이 깊이 쌓여있었기 때문에 그 발원지를 찾아보지 못했으므로 깊은 논의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석을수를 조사해보니 무산에서 소흥단까지 109리 180보이며, 또한 소흥단에서 발원지까지는 170리 325보로, 합계하면 280리 정도가 됩니다. (강희제의 상유에서 지적한) 잘 알지 못하는 땅의 길이와도 일치하고, 그리고 서쪽으로 뻗어 길주 경계로 들어가고 남쪽으로 뻗어 증산으로 꺾어 들어간다고 한 것과는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또한 『흙정회전도설』을 보면 대도문강은 장백산 동쪽 기슭에서 나와 두 강물과 합류한다고 분명하게 실려 있습니다. 소도문강은 그 북쪽의 작은 두 물줄기로, 모두 동남으로 흘러가 합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백산의 형세를 살펴보면, 다섯 개의 산봉우리가 둥글게 우뚝 솟아있으며, 높이는 200리로 천 리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정상에는 큰 연못이 있는데, 모든 강물의 발원지이며, 『(欽定)盛京通志』에 기록되어 있어 분명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의 재감계에서 측량위원과 함께 두 차례(天池의) 물가에 이르러 측량을 하려고 했으나 마침 예상치 못한 짙은 구름과 안개가 갑작스레 일어나고, 눈바람이 크게 일어나, 그 폭을 정확하게 측량하지 못했습니다. 산에 올랐을 때 바람은 온화하고 햇볕은 따듯했으며, 날씨는 아주 맑아 여러 산봉우리들을 멀리서 바라봐도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백산의 남면을 보니 두 줄기로 나뉘어 있는데, 그중 한 줄기는 서남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盛京쪽으로 뻗는 줄기입니다. 다른 한줄기는 구불구불 浦潭山쪽으로 뻗는 동남쪽 줄기로 臘脂峰·小白山 등은 이 줄기에서 다만 조금 위로 솟아오른 작고 뾰족한

봉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줄기의 서쪽은 압록강의 발원이고, 서두수·홍단수·석을수 등은 모두 그 동쪽 기슭에서 흘러나오니 실로 하나의 큰 분수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백산과 소백산은 서로 떨어진 거리가 멀지 않고, 천 리나 뻗어 있는 산맥이라는 점에서 보면 소백산 동쪽 기슭이 곧 장백산 동쪽 기슭이니, 하필 이름을 달리 바꾸어 부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소백이라고 칭하는 까닭은 조선인들이 그렇게 불러온 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으로, 갑자기 그 이름을 바꾸면 서술하기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산세와 강물의 형태를 분명하게 참고하여 살펴보고, 欽定으로 만들어진 여러 책으로 증명해보면, 석을수의 수원이 분명하게 장백산 동쪽 기슭 아래서 나와 홍토산수와 합류하니 대도문강 발원지로서의 형세와 딱 들어맞습니다. 紅旗河는 그 북쪽에서 흘러나오며, 발원은 外馬鹿溝이고, 또한 작은 물줄기들과 합류하는데, 모두 동남쪽으로 흘러가 합류하면서 소도문강을 이룹니다. 생각건대 조선에서 소백산이라고 부르는 곳은 실은 분수령입니다. 만약 이 분수령 아래의 석을수 발원지를 대도문강 발원지로 본다면, 조금도 억지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발원지 부근 물줄기 양쪽 언덕은 모두 沙石으로 이루어져, 그 사이를 흐르는 물줄기를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백산에서 압록강 발원지를 측량해보면, 서로 42리가 떨어져 있으므로 “서쪽은 압록이고, 동쪽은 토문이다”는 비문의 여덟 글자와도 모두 하나하나 들어맞습니다.

저희들이 안변부사와 함께 재감계를 실행한 상황은 이와 같습니다. 원래 총리아문의 원주에 나온 취지에 따라 세밀하게 공동감계를 실행하여 적절하게 경계지역을 설정하고자 하였는데, 안변부사는 마음속으로는 동의하면서도, 조선정부가 반드시 홍토산수를 대도문강의 강원으로 지적해야만 비로소 경계를 확정 지을 수 있다고 명령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시종일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안변부사는 홍토산수가 비석이나 돌더미와 이어지지도,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것을, 그리고 동봉 남면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물줄기(는 바로 송화강의 발원지로) 역시 비석이나 돌더미와 서로 관련이 없음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안변부사가 사실에 의거하여 답장으로 보낸 조회는 과거 정한 옛 경계가 아님을 알지만, 다만 정부의 명령 때문에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간청하기를 이번에 조사한 석을수를 포함한 지도를 그려서 돌아가 대인께 보고하고 총리아문에 자문으로 전달하여 (총리아문에서

대신 상주를 하여) 황상의 재가를 받기를 기다리자고 하였습니다.

이전에 鐘城府使가 海蘭河를 分界江으로 잘못 지목하였는데, 조선 정부에서 그 허실을 살피지 못하고 그 일방적인 이야기만을 믿고 여러 가지로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다행히도 총리아문의 상주로 확실한 반박을 당하고서야 비로소 더 이상 그런 주장을 늘어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정부는 전에는 海蘭河를 경계로 잘못 지목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다시 洪托산수가 伏流한다고 오해하여 이것을 대도문강의 옛 경계라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元山坐探委員 姚文藻의 보고에도 “해당 부사가 일찍이 언급하기를 송화강·해란하를 경계로 지목한 것은 오류였지만, 조선 정부의 지시 때문에 감히 받들어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조선 정부에서 누차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한 번, 두 번 계속 잘못을 저지르면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대인께서 자세히 검토해보시고 총리아문에 확실하게 자문을 보내 요청해주심으로써 지도에 따라 경계를 지정하여 일을 조속하게 마무리하고, 그들이 또다시 억지를 부리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러 간청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으로 논의하여, 조사한 여러 물줄기에 대해 측량한 거리에 따라 상세하게 그린 똑같은 지도 두 장을 겹쳐놓고 한꺼번에 직인을 찍은 다음 각기 한 장씩 가지고 돌아가 보고하기로 하였으며, 따로 측량한 거리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함께 사실에 의거하여 보고합니다. 대인께서 검토해보시고 총리아문에 자문을 보내 대신 상주하여 황상의 재가를 받아 경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주십시오.

또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경계를 정한 이후에는 응당 지시에 따라 따로 界碑를 세워 옛 경계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반면 穆克登이 세운 비석은 이미 경계와 관련이 없고, 나아가 돌더미·흙무더기 또한 松花江 상류로 연결되는 것이므로 지금 이 비석을 파괴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장래에도 의혹으로 남아 또 다른 말썽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또한 송화강에도 방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테면 석을수의 발원지로 경계를 정한다면, 즉 소백산 동쪽 기슭에서 시작하여 무산성에 이르기까지 응당 요지를 골라 비석을 세움으로써, 경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또한 영원히 흔적이 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비석을 세워야 할 곳을 미리 공동으로 결정한 다음 다른 주접 뒤에 첨부함으로써 나중에 다시 우여곡절을 겪는 것을 피하고자 하오니, 대인께서 참작

하여 결정하신 다음 아울러 자문을 보내 밝혀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삼가 도문강 경계를 재감계한 실제 상황과 직인을 찍은 지도·목록을 함께 첨부하여 보고를 올리니 검토하시고 처리해 주십시오.

지금 해당 위원 등은 흥기하가 소도문강이고, 석을수가 흥토산수와 합류하여 흘러가는 곳이 대도문강이며, 소백산에서부터 압록강 발원지까지 측량해보면 서로 떨어진 거리가 42리로, “서쪽은 압록강이고, 동쪽은 토문강이다”는 비문의 내용과도 모두 하나하나 들어 맞다고 하면서, 이곳을 경계로 삼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 주장은 또한 이전 자문에서 그 당시 경계를 정하고 비석을 세웠다면 마땅히 삼급포 일단의 분수령 위이어야 한다고 했던 지적과도 서로 들어맞습니다. 그렇지만 변경 지역의 출입과 관련된 문제라서 조선의 안변부사가 비록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말로는 여전히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였고 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경계를 확정하기는 힘들었으므로, 응당 재감계 상황 및 직인을 찍은 지도와 목록을 아울러 자문으로 보내니, 귀 아문에서 검토해보시고 상주하여 황상의 재가를 받은 다음 시행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세운 비석은 갑작스레 철거하기 곤란하므로, 이번에 경계를 확정할 때 조선의 위원과 함께 ‘華’字[로 시작되는 열 개의] 비석을 세우는 곳에 옮김으로써 나중에 참고할 수 있게 했으면 한다는 점을 아울러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곧바로 본 아문은 7월 22일 길림장군에게 다음과 같은 답장 자문을 보냈습니다. 길림과 조선에서 공동으로 도문강 경계지역을 조사한 사안은 전에 본 아문에서 두 차례에 걸쳐 귀 장군에게 지시하여 적당한 위원을 파견하여 상세하게 공동감계를 실행함으로써 경계를 정하고, 앞서 언급된 조선 유민들을 각기 안치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주청한 바 있고, 이를 재가하는 황상의 유지가 내려와 이를 옮겨 적어 귀 장군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생각건대 조선은 대대로 藩封의 지위에 있으면서, 역대 황상께서도 작은 나라를 사랑하는 뜻을 베풀어 적게 오더라도 후하게 보답하는 등 본래 이른바 경계를 나눈다고 할 것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강희 연간에 烏喇總管 穆克登이 유지를 받들어 변경을 조사했을 때 그가 세운 비문에는 단지 도문·압록 두 강의 발원지만 기록하고 있을 뿐, 결코 分界라는 글자는 없었던 것인데, 무슨 이유로 (조선의) 변경 관리가 이것을 와전시켜 느닷 없이 경계를 나누었다는 증거로 삼는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崇德 2년과 4년에 대규모 전쟁이 있었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外藩 (몽골의) 科爾沁部를 지휘하

여 조선의 함경도를 출입하면서 瓦爾客를 정벌했었는데, 회녕·무산 일대는 모두 정벌군이 왕래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었으므로 당시 함경·평안도의 북부 지방은 땅은 넓고 인적은 드물지만 조선 백성이 장백산 경내로 들어와 토지를 차지하고 개간하면서 거주하는 일은 절대로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태평한 세월이 오래 되자 조선 백성의 수가 날로 늘어나나 점차 함경도 북방을 개간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유민들이 결국 寧古塔·琿春 등지에 뛰어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백여 년 동안 생활이 안정되어 백성이 원기를 회복한 덕택이라는 점은 너무도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선 관리는 백성을 거두어들여 안치할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越壘한 지역을 차지하고자 피하게 되어 마침내 번거롭게도 공동감계라는 조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해당 위원 등이 지목한 석을수의 발원지에서 무산성까지는 약 280리로 『欽定會典圖(說)』에 대도문강은 장백산 동쪽 기슭의 두 물줄기가 합류하는 방향에서 나온다고 기록한 것과 대략 맞추어보면 상당히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小白山·黃花松甸子·石乙水·長坡浮橋 등지에 계비를 열 군데 세우고, 번호를 붙이는 일 또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계에서 귀 장군이 각 부분에 대해 조사하여 밝힌 방법은 아주 공정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지역은 吉林·寧古塔에서 관할하는 지역으로 해당 위원 등이 공동감계를 할 때 이미 단서가 마련되었으므로, 응당 어떻게 조선의 부사와 함께 계비를 고쳐 세울지, 그리고 앞서 언급된 월간 유민을 각기 (조선으로) 쇠환시키거나 아니면 (중국의 호적에) 편입시켜 안치시킬지 하는 점은 모두 귀 장군이 명확하게 검토한 다음, 조선의 감계관에게 조회하여 함께 조사하고 비를 세운 다음 독자 안건으로 상주하여 판단해서 처리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답장 자문을 보낸 다음 앞서와 같은 귀 북양대신의 자문을 받았으므로, 응당 앞서의 문건을 베껴 쓴 것과 아울러 길림에서 보내온 계비를 세우려고 하는 장소의 목록한 건과 지도 한 장을 지금 귀 대신께서 참고하시도록 자문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길림장군이 상주한 다음 유지를 받들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그에 따라서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첨부문서 : 「도문강 경계 지역에 대한 재차 공동감계를 하였을 때의 회담 요약」

1) 「길림에서 파견한 관원 진영, 조선감계사 이중하의 회녕부에서의 설첩(說帖) 조회」

(1) 이중하의 주장

감계 문제에서 조선의 본의가 어찌 영토를 확장하려는데 있겠습니까? 단지 백성의 사정이 어렵고 안타까워서, 일단 비석의 경계를 검증하여 숨김이 없는 마음을 밝히고, 그 다음에 경계를 표시하여 백성을 안정시키려는 것이니, 오로지 귀국이 너그럽게 은혜를 베풀기를 바랄 뿐입니다. 乙酉年(1885) 총리아문의 상주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欽定皇朝通典』 「邊防門」과 『欽定(皇朝文獻通告)』 「四裔門」에 모두 길림과 조선은 도문을 경계로 한다고 실려 있습니다. 또한 말하기를 『一統輿圖』와 『[大清]會典圖』에 실려 있기를 중국의 영토는 도문·압록 두 강을 동서의 양 경계로 하며, 표시가 분명합니다. 백두산은 중국과 조선의 경계에 있는데, 백두산은 장백산의 다른 이름으로, 두만은 도문에서 발음이 바뀐 것으로, 방언이 서로 다르지만 실은 하나의 강입니다.

지난해 봄 경계를 조사하여 지도를 그린 다음 총리아문이 보낸 자문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림·조선의 경계 지역에서 조선 경내 무산부 동쪽 회녕·종성·경원·홍경과 동쪽으로는 鹿屯島의 해구에 이르는 곳은 당연히 도문강이 천연의 경계로 이것을 구분하고 있어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산의 서쪽에서 위로 분수령의 穆克登總管이 비석을 세운 곳까지는 응당 명확하게 확인하고 고증해야 하니, 길림에 곧바로 공동감계를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에서는 처음에는 백성의 안위 문제 때문에 논쟁한 바가 있었는데, 앞뒤로 전달받은 총리아문의 상주문은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문·두만이 하나의 강이고 도문강이 천연의 경계라는 것은 예전 기록에 실려 있으므로, 조선에서는 오로지 비석·무더기와 도문강의 위치가 서로 들어맞는가 하는 점을 고증하여 밝히고자 하니, 이것은 귀국의 의견을 존중하여 따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貴 督理(즉 秦煥)⁵⁶⁾께서는 여전히 흥단수

56) 즉 독리길림조선상무 겸 도문강감계사의 보용지현(督理吉林朝鮮商務, 兼理圖門江勘界事宜, 補用知縣)인

로 경계를 정하자고 말씀하시니 정말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던 일입니다. 홍단수는 소백산 이남에 있고 원래 조선 내지에 속하는 것으로 경계 문제를 논의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물며 무산의 長坡 등지는 바로 그밖에 존재하니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총리아문의 이전 자문 역시 분수령에 비석을 세운 곳을 확인하고 고증하는 것을 주로 하였기에 지금 다시 감계를 하였던 것이고, 도문강 옛 경계와 목극등 비석의 지역을 다시 조사함에 있어 힘써 『일통여도』에 비추어 보아 들어맞는 것을 찾으려 하면 감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귀 독리는 홍단수·서두수를 막연히 지칭하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알기 어려운데, 사실 기록이 존재하게 된 이래로 모두 장백산을 도문강의 발원지로 보아 왔으며, 지난해 귀국의 논의도 역시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장백산에서 발원한 도문강을 경계로 한다”고 하였다가, 지금 갑자기 소백산 이하의 발원지를 가리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입니다. 하나하나 답변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4월 7일)

(2) 진영의 답변

지난해 공동감계에서 조정의 지시는 강의 흐름을 따라 강의 발원지를 찾는 것이었지, 우선 강의 발원지를 찾은 다음 강의 흐름을 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무산에서 三江口에 이르렀을 때 세 길로 나누어 우선 강의 발원지를 찾기로 하였는데, 뒤이어 李重夏 府使가 비석과 무더기에 관한 주장을 고집하기에 어쩔 수 없이 한번 가서 조사함으로써 그 의심을 풀고자 하였습니다. 부시는 처음에는 물의 흐름이 서로 이어지며 紅土山에서 董維窩棚에 이르러서는 모두 비스듬한 언덕으로 아무런 물의 흐름이 없다고 하였고, 따라서 지도를 그려 적인을 찍기까지 아무런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도를 그린 먹물의 흔적이 마르기도 전에 또 다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홍토산수가) 40리를 복류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흙정대청)회전』 등의 여러 기록을 두루 찾아보아도 도문강의 근원을 논한 것에는 이러한 해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귀 정부에서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李重夏 부시는 강의 경계를 조사하러 와서는 처음에는 비석과 무더기를 이야기하더니, 다음에는 복류를 가지고 강변을 하고, 그 다음에는 홍토산을 발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 말을 자주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강의 흐름에 따라 강의 발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영(秦煥)을 가리킨다.

우선 강의 발원을 찾아놓고 그 다음에 강의 흐름을 정하니 어찌 이런 이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른바 비석의 경계를 검증 하겠다는 것은 변경을 조사한 비석(查邊之碑)을 경계를 가른 비석(分界碑)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조선정부에서 베껴서 중국의 예부에 보내온 『承文院故實』은 “강희 50년 8월 4일 목극등을 장백산으로 파견하여 우리 쪽의 변경과 조선은 관계가 없음을 밝히려는 황제의 유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선은 관계가 없다”는 구절이 있으니 穆克登이 세운 비석은 바로 변경을 조사한 비석이지 경계를 가른 비석이 아니라는 점은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물며 총리아문의 상주에서도 穆克登의 비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단지 “유지를 받들어 변경 조사를 위해 여기에 이르렀다. 자세히 살펴보니 서쪽은 압록, 동쪽은 도문이다”는 내용뿐입니다. 그래서 분수령에 비석을 세워 기록한 것일 뿐이지, 결코 경계를 나누었다는 글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비석을 세운 곳이 반드시 당시 경계를 나눈 곳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결국 松花江 (상류) 위쪽의 비석[즉 이른바 백두산정계비]을 근거로 삼는다면 총리아문의 상주와 들어맞지 않을뿐더러, 귀국의 『承文院故實』과도 부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른바 홍단수의 상류 위에 경계를 정한다는 것은 바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던 말이라고 하는데, 총리아문의 상주에서도 분명히 “압록강의 발원은 압록이 아니라 건천구라고 부르고 있으니, 도문강의 발원도 반드시 도문이라는 이름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盛京通志』를 보면 “장백산은 많은 강의 발원지로, 작은 것은 河가 되고 큰 것은 江이 된다. 크고 작음을 구별하는 것은 또한 역시 확실하게 강의 발원지를 찾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서두수라는 것은 지도 속에 魚澗河로 기록되어 있고, 홍단수는 紅丹河로 기록되어 있으며, 三池는 다루지도 않고 있어 명칭이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시한 지도라는 것도 저자거리의 복사본으로 출처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찌 중국과 조선의 인원이 조사하여 함께 작성한 지도를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도리어 복사본을 근거로 삼는 것입니까? 이번에 총리아문에서 도문강 경계를 다시 조사할 것을 상주하여 요청한 것은 전번 감계가 분명한 분석과 검증을 거치지 않고 계산한 거리 수가 단지 토착민의 이야기에만 의거하여 충분히 믿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제대로 된 거리를 측량하여 증거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경계를 나누는 주장은 산세에 따르든 강의 모양을 따르든 결국 강의 발원지를 확실하게 찾는 것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의 재감계는 李重夏 부사와 만나 함께 무산 서쪽 지역으로 가서 산세를 따르든 강의 모양의 따르든, 강의 흐름을 따라 발원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곳곳마다 측량하여 거리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연도 지역도 하나하나 분명하게 확인하면서 다시 논의하여 경계를 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경계를 가르는 요령이고, 총리아문이 재조사를 상주하여 요청한 본뜻이기도 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강의 흐름은 세 갈래가 있는데, 측량위원을 파견하여 먼저 출발하게 하고 本局處⁵⁷⁾는 부사와 함께 만나 출발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부사께서도 인원을 먼저 파견하여 동행하게 함으로써 기일을 정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1일)

(3) 이중하의 주장

을유년 겨울 감계의 사명을 받고 와서 총리아문의 상주문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도문을 경계로 하며, 두만은 도문에서 바뀐 이름이다. 기존의 기록과 지도를 살펴보고 그것을 근거로 삼았다.

또한 귀 국처와 더불어 친히 가서 자세히 조사한 다음 누차 토론을 거치고 이것을 우리 조정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 이후로 조선에서 어리석게 편견을 고집하지 않고 오로지 도문의 옛 경계만을 준수하려고 한다는 점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내주신 글 가운데 여러 가지는 분명히 논변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홍토수가 비의 경계에 접하지 않은데 다시 억지로 말을 꾸며냈다”고 하는데, 복류하는 이야기는 원래 穆克登總管이 咨文에서 한 말의 일부분이지, 저희 정부가 처음 만들어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경계비를 조사·확인하겠다는 것은 변경을 조사한 비문을 경계를 나눈 비문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백두산의 이 석비는 오래전부터 중국과 조선의 300년 경계가 되어왔으며, 국가의 역사기록이나 야사 모두 이를 신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종래 귀 국처에서는 이것을 나중 사람들의 위작이라고 주장하였고, 또한 간사한 백성이 비석을 옮겼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런 주장은 모두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총리아문의 상주문도 따라서

당시 비석을 세운 곳이 반드시 당시 경계를 나눈 곳이라고는 할 수 없다. 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경지역을 조사하고 비석을 세우는 것이 경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조선의 承文院에 있는 국경 관계 기록 가운데 당연히 穆克登總

57) 혼춘부도통아문(琿春副都統衙門)의 변무승관처(邊務承辦處) 또는 거기에 근무하는 관원을 가리킨다.

관이 올린 상주문과 조선에 보내온 자문이 모두 존재하고 있으니, 당시에 경계를 구분했는지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과거의 일을 따지지 않고 막연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비석이 압록강과 송화강 사이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실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통지』에 말하기를

장백 이남은 조선의 경계이다.

고 했으며, 『(皇朝)通志』에도

조선은 도문강을 경계로 한다.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도와 기록에 실려 있는 것이 이와 같으니, 목 총관이 변경을 조사하여 비석을 세우는 날 어찌 장백산을 버리고 소백산에 세웠겠으며, 도문강을 버리고 홍단수에 세웠겠습니까? 도문강 발원지가 비석과 약간 멀리 떨어져 있기에 흙무더기를 쌓아 이것과 연결되도록 하였던 것이라는 점은 지금 압록강에 흙무더기가 없는데 동쪽에는 흙무더기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바입니다. 또한 무더기의 끝 부분이 남쪽으로 뻗어 있는 것을 자세히 보면 분명히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총리아문의 상주에서

압록강의 발원은 압록이라 하지 않고 建川溝라고 하고 있으니, 도문강의 발원도 반드시 도문이라는 이름을 가질 필요는 없다.

라고 한 부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귀 국처에서 이전에 홍단수로 보고하여 변경의 사정을 위쪽으로 제대로 알리지 않은 데서 비롯된 일입니다. 『일통여도』 가운데 압록강·도문강의 경계 부분을 살펴보면, 점과 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아주 분명합니다. 홍토수가 대도문강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그 남쪽에는 또한 小白山, 三池, 紅丹河 등의 지명에 주석을 단 글자가 있으니, 이것 또한 아주 정확한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감계를 할 때 귀 국처는 매번 기존의 기록과 지도를 근거로 하면서도 누차 그것을 보여달라고 이쪽에서 요청하였으나 결국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귀경한 다음 지도 한 장을 구해 왔는데, 또다시 이것이 복사본이므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니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일통여도』와 이전의 조사 결과는 원래 큰 차이가 없으니, 청컨대 『일통여도』의 어느 부분이 믿을 수 없는 것인지 하나하나 맞추어 가면서 분명하게 지적해주시시오. 요컨대, 이번 감계에서 조선은 오로지 삼가 도문의 옛 경계를 지키는 것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귀국처가 받은 총리아문의 지시와 가져오신 지도 역시 공개하여 공정하게 고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위원을 파견하여 우선 측량하게 하는 것은 감히 요청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지난해 총리아문의 재감계 지시에서

무산 서쪽으로 穆克登이 비석을 세운 분수령까지의 지역은 응당 고증해야 할 것이 있고 명백하게 확인해야 한다.

고 하였지만, 고증할 것이 어찌 여기에만 한정되었습니까? 현재 귀 국처는 조선 내지의 흥단수와 서두수의 경계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경계 지역이 아니므로 실로 다시 논의할 만한 재조사의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다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13일)

(4) 진영의 답변

비석과 무더기에 관한 것은 귀국 『承文院故實』이 설명하는 것처럼

향상의 유지를 받들어 변경을 조사하는 것으로 귀국과는 관련이 없는 일 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경계 구분의 문제를 자세히 생각하면 어찌 조선과 관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총리아문에서도 또한

비문의 내용에 경계를 구분한다는 글귀가 결코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비석과 무더기는 송화강의 상류 위쪽에 있을 수는 없는 일이며, 李重夏 부사 역시

이 비석은 압록·송화 두 강의 발원지 사이에 있어, 실로 들어맞지 않는다.

고 하였습니다. 들어맞지 않는 것을 알면 반드시 세밀하게 강의 발원지를 비교하고, 이 비석이 응당 어디에 세워져 있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만 비로소 들어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총리아문의 재감계 지시에서

무산 서쪽으로 穆克登總管이 세운 비석까지의 지역은 응당 고증해야 할 것이 있고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라고 한 구절을 들었습니다만, 총리아문에서 말한바 무산 서쪽으로 穆克登總管이 세운 비석까지의 지역이라는 것은 그 비석이 응당 도문강 발원지에 있어야 한다고 한 것이며, 이런 까닭에 이후의 지시는 모두 도문강 발원지까지의 지역을 언급하고 있으니, 자세히 고증해보면 松花江 상류 위의 비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증과 확인의 정확한 취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강의 발원을 고증하여 강의 경계를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전에 조사한 비석을 세운 곳은 분명히 松花江의 발원지인데, 무엇을 고증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선 인원을 파견하여 측량위원과 함께 먼저 출발하게 하든지, 아니면 본 국척와 부사가 측량위원과 함께 출발하든지 하여, 도문강의 흐름을 따라 강의 발원지를 찾아 경계를 정함으로써 더 이상 지체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14일)

(5) 이중하의 주장

귀국의 통보에서는 “조선과 관련이 없다”는 구절과 비문에 “分界”라는 구절이 없는 것을 가지고 결코 경계를 나눈 비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증명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조선 承文院의 국경 문제에 대한 기록 가운데 穆克登總管의 상주문과 조선에 보낸 공문 두 통을 지금 베껴서 보내니, 살펴보면 이 비석이 경계를 정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보내주신 공문에서 말하기를 “총리아문의 지시는 강의 발원을 고증하라는 것이지 경계비를 고증하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석은 聖祖 康熙帝 시절에 烏喇總管이 유지를 받들어 변경지역을 조사한 다음 세운 것으로, 조선에서는 수백 년 동안 金石처럼 받들어 왔는데 귀국척는 이에 대해 고증할 뜻이 없으니 어찌 총리아문 지시의 본 취지가 이런 것이겠습니까? 또한 이것이 어찌 藩邦에서 바라는 바겠습니까! 이전의 답변 가운데 “대강 살펴보니 들어맞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는데, “대강 살펴본다”는 말 자체가 기실 들어맞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주며, 그 아래 또한 『성경통지』와 『[황조]통전』에 실린 확실한 기록을 검토하였다고 하면서도 왜 자세히 살핀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아울러 비석이 응당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고증·확인하여 밝히고자 합니다. 이 비석은 강희 연간 壬申年(1712) 5월 15일 세운 것이고 비석에서 도문강 발원지까지의 사이에는 중간에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때 흙을 쌓고 나무울타리를 두른 일은 穆克登總管이 보낸 자문에 모두 실려 있습니다. 承文院의 옛 기록은 이미 복사하여 예부와 북양대신 아문에도 보낸 바 있는데, 이 비석이 경계를 가른 비석이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지금 『일통여도』에 따르면 장백산 남쪽 압록강과 도문강 사이의 물이 없는 곳을 살펴보면, 점과 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어 그 경계가 아주 분명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성경통지』에는 오라에서 관할하는 곳에 대해서 “남으로는 장백산에 이르고, 그 남쪽은 조선의 경계”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寧古塔에서 관할하는 곳에 대해서도 “남으로는 장백산에

이르고, 그 남쪽은 조선의 경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비석이 장백산 남쪽 기슭에 있으니, 처음 비석을 세운 경계라는 세 번째 증거입니다. 도문강 상류에는 세 갈래 물줄기가 있습니다만, 반드시 홍토산수를 대도문강으로 보아야 하니, 여기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일통여도』에 의하면 장백산 동쪽에 물줄기가 있고 대도문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이른바 홍토산수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또 그 동북쪽에 물 한줄기가 있는데 소도문강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지금 紅旗河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장백산 남쪽에 산이 있는데 소백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남쪽으로 세 개의 동그라미가 있는데 三池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아래에 한 줄기 강이 있는데, 紅丹河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지금 이른바 三泡·紅丹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남쪽의 한 줄기 강이 가장 긴데 魚濶河로 기록되어 있으니, 오늘날 西豆水라 불리는 것입니다. 소백산·삼지·홍단수의 북쪽에 강이 있는데 바로 대도문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제가 지적하는 홍토산수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북쪽에는 소도문강 한 줄기만 있고, 그밖에는 오로지 해란하 뿐으로 다른 강은 없습니다. 그러니 홍토수가 대도문강이라는 것이 어찌 정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외의 지도를 살펴보고 하나하나 조사하여 살펴보니 조금도 잘못된 점이 없습니다. 도문강의 문제는 이것으로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요컨대 강으로 말하자면 홍토수가 대도문강이라는 것은 의심할 나위 없이 확실합니다. 기록과 지도에 실려 있으니 당연히 찾아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비석으로 말하자면 穆克登總管이 황제의 유지를 받들어 세운 것입니다. 사실은 분명하며, 康熙時代의 옛 흔적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석에서 강에 이르기까지 흠무더기가 모두 다 연결되어 있지 않아 쉽사리 의혹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지금 응당 홍토산수 위에 비석을 하나 세워 穆克登碑石의 지위를 확정하고 변경의 경계를 명백히 밝혀 옛 경계를 준수한다면, 조선 백성은 한 걸음이라도 감히 침범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성의를 가지고 간청하는 바이며, 그밖에 다른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요청하신 江의 勘定에 대해서는 응당 따로 한 사람을 파견하여 기한을 정해 함께 가도록 할 것입니다. (15일)

(6) 진영의 조회

길림파원 진영이 조회합니다. 귀 부사의 답장을 받았습니다. 번잡한 것은 모두 삭제하고 이야

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말미에 따로 “따로 한 사람을 파견하여 기한을 정해 함께 가도록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측량위원 劉虞卿을 파견하면서 弓兵, 繩手, 측량기구, 낙타와 말(駝馬)을 이끌고 17일에 출발하여 측량을 시작하였으면 합니다. 귀 부사께서 어떤 인원을 파견하든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여 같이 출발할 수 있게 하십시오. 이상. (15일)

(7) 이중하의 답변

귀 국처에서 보낸 조회를 받았습니다. 제가 전에 보낸 답변 가운데 청조의 지도나 기록에 근거하여 홍토수가 확실하게 대도문강임을 입증하고, 아울러 穆總管의 경계구분에 관한 옛 기록을 베껴서 보내 드렸으니 확실한 근거가 있어 분명하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아직도 의심스러운 점이 남아 있다면, 응당 곧바로 반박하시는 내용을 보내셨을 터이고, 이래야만 바로 서로 고증하고 논의하자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점에 대해 가타부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시니 의아하기 짝이 없습니다. 옛 경계는 이미 의심할 나위가 없으므로, 다른 강에 대해서 실로 측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귀 국처에서 기한을 정하여 측량하고자 이렇게 일시를 정하니, 저희로서도 역시 당연히 인원을 파견해야 할 것입니다. 五衛將 吳元貞 등 2인이 17일에 출발하여 합류할 것입니다. 이상. (같은 날)

(8) 진영의 답변

보내주신 글에서 “조선과 관계없다”고 한 상유 내용과 총리아문의 상주 가운데 “비문에는 경계를 나눈다는 글귀가 없다”고 한 것을 언급하였지만, 베껴서 보내주신 것이 穆克登이 받은 지시와 조선에 통보한 공문 두 건뿐인 것을 보면 이중하 부사도 결코 당일 穆克登으로 하여금 변경을 조사하게 한 상유를 자세하게 읽으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는 말이 모두 이치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삼가 다시 베껴서 보냅니다. 어찌 황제가 중외에 명백하게 공포한 聖諭가 穆克登의 공문보다 신뢰성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만약 경계를 나누었다면, 응당 분명하게 경계를 나누는 상유를 내렸을 터인데, 어째서 경계를 나누도록 지시하는 상유에 “조선과 관계가 없다”는 글귀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조선과 관계가 없다고 했으면 중국 한 나라의 일이요, 분명히 두 나라 사이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경계를

나눈다는 글자가 한 나라의 일입니까? 조선과 관계가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조선과 관계가 없다”는 글귀를 자세히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그 비석이 경계를 나눈 비석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측량 위원과 이 부사가 파견한 인원이 이미 출발하였으므로 우리 또한 출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시일을 답변해주시면 같이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일)

(9) 이중하의 답변

지금 穆克登碑石의 문제를 가지고 당시 황상의 상유 가운데 있는 “조선과 관계없다”는 뜻을 제시하셨습니다. 생각건대 조선의 변방 경계는 자고 이래로 원래 정해진 것이 있었고, 穆克登의 자문 가운데서도

원래 강북을 중국의 경계로 삼고, 강남을 조선의 경계로 삼기로 정해져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기에 논의하지 않는다.

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 유지를 받들어 변경을 조사한 것은 바로 원래 정해진 경계에 비석을 세움으로써 그것을 분명하기 밝히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조선에 대해 다른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아마 조선과 관계없다는 상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변경을 조사하여 비석을 세우는 것과 경계를 조사하여 비석을 세우는 일이 어찌 다를 수 있겠습니까? 비문에 경계를 나눈다는 구절이 없는 것은 당시 처음으로 경계를 나눈 것이 아니라, 이전의 관행대로 표시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경계를 나눈다는 구절이 있고 없는 것을 어찌 의아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 조사하는 도문의 경계는 이미 의거할 수 있는 명백한 지도와 기록이 있으므로, 단지 홍토수 위에 비석을 하나 세움으로써 穆克登碑文에서 나오는 土門에 관한 논의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함께 공개적인 장소에서 논의한 다음 입산 일자를 결정함으로써 신속하게 출발하였으면 합니다. (같은 날)

(10) 진영의 답변

보내주신 글은 “단지 홍토수의 위에 비석을 하나 세움으로써 穆克登碑文에서 이야기한 土門에 관한 논의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아울러 공개적인 장소에서 논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변론한 지 오래되었으나 지금까지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이 부사는 홍토산에 비석을 첨가하자고 하고, 이미 비석이 세워질 곳을 아는데 어찌

다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회의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再勸界를 하는 이유는 그곳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발원지를 찾음으로써 경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공정하다고 할지라도 만약 각기 일 처리에 자기의견만 고집한다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날짜를 상의해서 정하고 신속하게 출발하여 지나가는 곳을 고증함으로써 원류가 서로 연결되고 경계를 분명히 나누게 하도록 힘쓰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본 국처는 이미 22일 출발하기로 논의하여 정하였는데 부사의 의견은 어떠신지? (같은 날)

(11) 이중하의 답변

이번 재감계는 오로지 옛것에 비추어 오늘의 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한 일이니 힘써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대·소도문강은 中外의 지도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니 멀리 다른 강까지 측량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귀 국처에서 단연코 강의 발원을 두루 조사하시겠다고 하니, 저희도 22일 가르침에 따라 출발할 것입니다. (같은 날)

2) 茂山府 長坡에서의 조회

(1) 이중하의 조회

이번에 명령을 받아 토문강 경계를 재감계하게 되면서 조선 쪽에서는 우선 홍토산을 측량하고자 하였으나, 귀 국처는 우선 서두수를 측량하고 뒤이어 무산지방에 이르면 함께 먼저 홍단수로 가서 발원지를 살펴본 다음 長坡로 돌아와 공개적인 논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서두수로 가든 홍토수로 가든 다시 순리에 따라 공정하게 확실한 조사를 함으로써 공무를 지체시키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 (29일)

(2) 진영의 답변

귀 조회를 받았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내일 귀 부사와 함께 홍단수로 가서 발원지를 조사·측량하고 만약 정확한 증거가 없다면 다시 장파로 돌아와 다른 곳으로 가서 조사하는 것을 논의한

다음 다시 조사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같은 날)

(3) 이중하의 조회

서두수가 국경 경계와 관계없다는 것은 왕년에 이미 누차 변론한 바입니다만, 뜻하지 않게 귀 국처는 다시 가서 이 강을 측량하려고 하니 실로 그 이유를 알기 곤란합니다. 도문강의 변계 형세를 살펴보면 모두 『一統輿地全圖』에 실려 있고, 지난해 총리아문의 상주에서도 “서두수가 대도문강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한 구절도 있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서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단연코 귀 국처의 주장에만 따라 조사할 필요가 없는 강을 멀리 가서 조사하는 데에는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조회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상. (윤4월 초8일)

(4) 진영의 답변

귀 조회를 받았습니다. 총리아문의 상주를 보면 비록 “서두수는 대도문강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한 구절이 있지만, 그 아래에는 반드시 이것을 보충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비로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하고 있으니, 이것은 여전히 단정하지는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경계를 나누는 문제는 산이나 물의 형세를 따르되 확실하게 강의 발원지를 찾는 일로 한다.

고 하였는데, 서두수가 도문강이 아니라는 것은 총리아문에서도 역시 단정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조사를 할 때 과연 보충할 확실한 자료를 찾아낸다면 다시 단정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확실히 강의 발원지를 찾는다는 구절에 무게의 중심이 두어져 있습니다. 강의 발원지를 찾는다면 이 산과 연결된 모든 강 역시 모두 조사해낼 수 있으며, 하물며 서두수는 폭이 큰 강이니 어찌 조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총리아문 상주문의 앞뒤 어조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고 음미한다면 자연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부사께서는 전에 조회에서

홍단수로 가서 발원지를 조사·측량하고 다시 장파로 돌아와 공동으로 논의한 다음 서두수로 가든 아니면 홍토산으로 가든 다시 순리에 따라 공정하게 분명하게 조사하자.

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서두수로 가서 조사하는가의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데 부사께서는

갑자기 주장을 바꾸니, 이전 조회의 내용과 서로 들어맞지 않는데 이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상. (같은 날)

(5) 이중하의 답변

귀 조회를 받았습니다. 이번 강의 근원을 찾아 조사하는 일은 응당 순리대로 처리해야 하지
먼저 쓸데없이 앞뒤를 다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어제의 조회에서 과연

먼저 흥단수를 보고 나서 나중에 장파로 돌아와 공동으로 논의하여 순리대로 공정하게
확실한 조사를 하자.

고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귀 국처와 함께 논의한 후 흥단수에서 장파로 돌아온 지 이미 사흘입
니다. 저희는 이전에 논의한 대로 누차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자 하였으나, 그때마다
거절을 당하여 좀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방법이 없어 배회하
다 부득이하게 조회를 보내 글로써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대신하였지만, 거기서 말한
것은 총리아문의 지시를 따르는 것뿐이지 감히 그 밖의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
다. 요컨대 총리아문 상주문 끝 부분에

결국 도문강을 정확하게 검증한다면 경계는 자연히 분명해질 것이다.

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번 재감계의 핵심이며, 이번 일은 오로지 도문강을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도문강은 장백산의 강이고, 지금 장백산의
입구에 이르렀으니 장백산에서 응당 조사해야 할 일을 제쳐 두고 도문강이 아닌 서두수로
가자고 하니 이치에 맞는 말이라고 하겠습니까? 조선 측에서는 이치에 맞고 공정한 예전의
논의에 따르려고 서두수는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데, 어찌 이전의 주장을 갑자기 바꾸
었다고 하십니까? 이상. (같은 날)

(6) 진영의 답변

보내주신 글을 받았습니다. 서두수를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으며 조사하면 이치에 맞지 않고
공정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전 조회에서는 왜 가서 조사한다면 이치에도 맞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서두수를 언급하셨습니까? 하물며 서두수를 조사하는 일은 바로 도문강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장백산은 천여 리에 걸쳐 있어 강 흐름이 하나가 아니고, 도문강과 서두수

가 같은 흐름이라면 어찌 도문강이 서두수의 발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까? 요컨대 강의 모양을 따라 강의 발원지를 찾으려면 응당 서두수를 조사하는 것이 바로 이치에 맞고 공정할 것입니다. 본 국처는 이미 11일에 같이 가서 조사하기로 결정하여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초9일)

(7) 이중하의 답변

귀 조회를 받았습니다. 앞서의 조회 가운데 “혹시 가서” 운운한 것은 두 강 가운데 결정하지 못하므로 출발에 임하여 지정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부득불 이치에 따라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귀 국처도 역시 “혹시 가서”라는 말을 가지고 따지는 것 역시 지나친 일이 아닙니까? 서두수에 관한 구절은 왕년 귀 국처의 조사 결과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단지 대·소국 사이의 강역 문제를 염두에 둔다면 당연히 『회전도설』과 『일통여도』가 천하에 공개적으로 간행되어 있고, 지난해 총리아문의 상주문에서도 경계지의 발원을 근거로 삼을 때에도 역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일통여도』 가운데 길림·조선의 경계에 관한 부분을 베껴서 한 부를 보냅니다. 이 지도는 원래 경도·위도의 숫자에 근거하고 있어 동·서, 원·근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납니다. 바라건대 먼저 이 지도를 가지고 도문강의 산과 강을 살펴보고, 아울러 눈으로 측량한 바를 참고로 하면서, 하나하나의 물길기를 따라 방향에 따라 조사해나간다면 대·소도문강은 자연스럽게 확실한 경계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일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을 터입니다. 11일 서두수로 가는 문제는 마치 북쪽의 燕나라로 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남쪽에 있는 越나라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나 거의 마찬가지이니,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같은 날)

3) 홍토산수를 조사한 다음의 대화 및 조회

진영 : 지금 이미 강줄기를 모두 조사하였으니, 공평하게 얘기해봅시다.

이중하 : 공평하게 말한다면, 즉 홍토수입니다.

진영 : 그것이 과연 공평한 말입니까?

이중하 : 우리나라의 수백 년 동안 옛 경계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진영 : 그렇다면, 이 일은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당연히 흥단수로 하겠습니다.

이중하 : 그곳은 조선의 내지인데 귀하께서 비록 스스로 정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정할 수 없습니다.

진영 : 길림의 땅이지 어찌 조선의 땅입니까!

이중하 : 『일통여도』에 당연히 대도문강의 경계가 있으니, 청컨대 물줄기를 따라 공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영 : 지도는 황제께서 내리신 것입니까? 총리아문에서 보낸 것입니까? 지도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중하 : 총리아문의 상주에서는 항상 지도를 가지고 증거로 삼았는데, 이것이 증거가 되지 못한다면, 다른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진영 : 총리아문의 공문을 보시겠습니까?

이중하 : 홍토산수는 귀 국처에서 지난해 조사해서 보고할 때 처음에 한 글자도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총리아문에서는 이 강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진영 : 홍토수는 귀 정부에서 누차 북양대신과 총리아문에 요청하였지만 이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흥단하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중하 : 총리아문의 상주에 강의 발원이나 형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홍토수가 대도문강이라는 것도 역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영 : 총리아문 역시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들이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부사께서 매번 총리아문의 상주문을 근거로 삼는 것은 실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중하 : 이번에 상세한 지도를 그려서 올리면 반드시 결정이 내려질 터인데, 우리가 하필 이렇게 이 문제를 놓고 다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옛 경계를 제대로 밝히면 대·소국이 삼백 년이래 지켜온 옛 경계가 저절로 분명해질 터인데, 왜 지금 따로 새로운 경계를 나누어야 합니까?

진영 : 부사는 이미 물의 흐름이 연결되지 않고, 무더기와도 연결되지 않음을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줄곧 홍토수를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이중하 : 이것은 나라의 옛 기록에도 있는 바이며, 나라의 강토는 축소될 수 없습니다.

진영 : 홍토수 외에는 주장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조선정부의 명령도 본래 이러한 것입니까?

이중하 : 우리 정부가 저를 보낼 때, 홍토수가 옛 경계인 것만을 알았으므로 홍단수나 서두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진영 : 옛 경계란 것이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이중하 : 우리나라 朝野의 기록과 지도 모두가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쪽 지도와 기록을 귀하께서 반드시 믿을 수는 없다고 하니, 청조의 지도로 증거를 삼는 것입니다.

진영 :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서로 조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중하 :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일)

(1) 진영의 조회

본 국처는 윤4월 13일 귀 부사와 함께 장파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강을 浮橋에서부터 측량하기 시작하여, 長山嶺을 지나 홍토수와 석을수가 합류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계산해보면 강의 길이는 80리 반이었습니다. 뒤이어 합류처 위쪽의 두 물줄기를 각기 자세히 측량하여, 홍토수에는 두 갈래의 상류가 있음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圓池에서 발원하는 것으로, 이것은 합류처에서 구부러지면서 서북으로 올라가는데, 圓池까지의 거리는 27리 230보였고, 다른 하나는 홍토수의 상류 수원이 합류하는 곳에서 서남으로 올라가는데 평평한 비탈에서 물길이 다하는 곳까지 11리 340보였습니다. 모두 董棚의 물줄기와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홍토수의 두 수원은 모두 경계비나 돌더미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고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석을수를 보면 조선에서는 島浪水라고 부릅니다. 이 강은 백산에서 발원하는데, 본 국처와 귀 부사가 측량위원 등과 함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 三波 第一泡에서 18리쯤 떨어져 있는 석을수 상류의 물줄기 입구와 양쪽에서 석을수로 흘러드는 작은 물길을 조사하였습니다. 짧은 물줄기를 제외하면, 홍토수·석을수의 합류처에서 서남으로 올라가다 다시 서쪽으로 향해 석을수의 물 흐름이 마르는 곳에 이르는데, 계산하면 41리 215보였습니다. 또한 물이 마르는 곳에서 다른 물줄기 하나가 연결되는데, 서남쪽으로 올라가며, 길이가 12리, 넓이가 2~3장, 깊이가 5~6척 등이었습니다. 이 물줄기는 또한 黃花松甸과 연결됩니다. 이곳은 서쪽으로 약 5리 정도 뻗어 있는데, 다시 하나의 물줄기가 여기에 이어집니다. 서북쪽으로 22리 길이며, 소백산 서면 제1봉의 동쪽 기슭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이 물줄기의 넓이는 4~5장에서 2~3장 등이고, 깊이는 1~2장 등입니다. 물줄기의 양쪽은 모두 沙石으로 이루어진 절벽입니

다. 장파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조사한 석을수 원류는 이와 같으며, 소백산에서 물길을 따라 내려오면서 조사한 석을수의 상황도 이와 같습니다. 또한 소백산 서쪽에서도 물길이 압록강으로 흘러드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아울러 함께 공문으로 통보하는 바입니다. (5월 1일)

(2) 이중하의 답변

귀 조회를 받았습니다. 석을수 상류의 물이 마르는 곳은 황화송전이라고 하였는데, 조선에는 본래 이러한 지명이 없어 산등성이인지 물줄기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측 수행원 池가 귀 측량위원 劉에게 질문하니 유는 산등성이를 통틀어서 부르는 이름이라 하였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날)

(3) 진영의 조회

방금 귀 조회에서 황화송전의 의미에 대해 다시 질문하셨는데, 황화송전은 결코 언덕을 통틀어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나무가 모두 黃花松樹인데, 언덕도 아니고 산도 아니며, 마치 평탄한 비탈 같은 곳으로,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흙이 물에 젖어 있어 지나가다 보면 불시에 진흙에 발이 빠지기도 해서, 이곳을 황화송전이라고 부릅니다. 조사에 따르면 석을수 상류의 물이 마르는 곳은 물줄기(도랑)를 따라 올라가 보면 보기에 경사가 낮은 언덕과 같으며, 소백산에서 물길을 따라 내려오면서 지세를 살펴보면 또한 평평한 비탈 같기도 합니다. 그곳의 상황은 바로 비탈에 해당되고 또한 黃松이 있기에 황화송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틀어 부르는 이름이 생긴 것입니다. 이상. (같은 날)

(4) 이중하의 답변

귀측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백산의 상황은 대부분 이와 같으므로 만약 통틀어 부르는 이름을 취한다면 깊이 따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 (같은 날)

* 길림과원 진영은 산과 강의 원근·거리를 가지고 조회를 보냈는데, 이중하는 따로 물길과 물길(육로) 노정의 실제 거리를 가지고 답변하였다.⁵⁸⁾

(5) 이중하의 조회

홍단하는 무산부에서 백 리 떨어진 곳에서 홍단합류처와 만나며(물길로 가서 장파로 돌아오면 柳洞에 이르기까지 60리이고, 물길을 따라 곧바로 올라가면 유동까지 48리), 柳洞에서 姜刀水에 이르고(물길로 가면 45리, 물길을 따르면 50리), 강도수에서 발원지에 이릅니다(물길로 가면 10리, 물길을 따르면 10리). 따라서 무산부로부터 계산하면 물길로 215리, 물길로 213리입니다. 홍단하의 발원지는 위·아래 두 군데가 있고, 그 거리는 백 걸음 정도가 되지 않는데, 지금 이것을 남·북의 발원으로 구분하겠습니다. 남쪽 발원에 길이가 1리 반짜리 물길을 더하는 것은 본래의 모양과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에 따라 기록하면 홍토산수의 발원지는 서너 군데가 되고, 加鷲峰의 발원지는 열 군데가 됩니다. 홍토산수의 물이 다하는 곳은 劉委員이 기록할 때 함께 눈으로 본 것이 모두 溝道였지 平崗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평한 비탈에서 물이 다한다고 묘사하는 것은 본래의 모양과 들어맞지 않습니다. 董棚의 하류를 가지고 논의하자면, 윤월 18일 중국 측의 方郎 총리와 조선 측의 池委員이 함께 가서 조사하고 돌아왔는데, 물이 다하는 곳에 비탈이 있었고, 귀측의 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23일 조선부사와 귀측 승판처가 다시 가서 이곳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비로 인해 물이 늘어나, 18일에 조사한 흐름은 몇 리를 더 가서야 물이 다하였으며, 사면이 평평하고 결코 비탈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생각건대 이곳에 비탈이 없다는 것은 귀측 승판처와 역관에게 물어보면 역시 목격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석을수의 물이 다하는 곳은 유·지 두 위원이 동시에 조사할 때 평평한 비탈이 소백산 동남쪽의 기슭에 옆으로 끼어 있다는 점을 붓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같이 기록한 것인데, 그 후 귀측에서 보낸 조회에서 갑자기 황화송전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이 네 글자의 지명은 우리 측에서는 알지 못하는 바이므로, 지 위원으로 하여금 문게 한 것입니다. 유 위원이 비탈을 통틀어서 부르는 이름이라고 하였기에 그대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오늘 귀측 조회에서 다시 곧바로 말하기를 물길과 비탈이

58) 이 부분은 양측이 담화나 공문을 주고받은 식으로 나열된 이 부건(附件)의 형식에서 벗어나 있는데, 내용으로 보아 뒷부분은 이중하의 조회라고 파악하여 처리하였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 확실히 분명해지는 바입니다. 석을수의 거리는 유·지 두 위원이 함께 기록한 것으로, 조사한 곳에서 물길이 시작되는 곳까지 55리 15보로, 장백산 정상에서 13리에 해당하는 곳이며, 비석에서 前峰을 지나 胭脂峰까지는 15리, 연지봉에서 小白山까지는 20리입니다. 압록강의 발원이 토문강 각 지류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만약 기재한다면 각 물줄기에 대해서 마땅히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오로지 홍토산수에 대해서만은 빼놓고 이야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홍토산수는 바로 『회전』·『여도』에 실려 있는 대로 분명히 대도문강인데, 오히려 홍단수나 석을수와 같은 작은 강보다 못한 것입니까? (11일)

(6) 진영의 답변

보내주신 내용은 잘 받아서 읽었습니다만, 총리아문의 앞·뒤 상주문에 결코 홍토산수가 대도문강이라고 분명히 지적한 적은 없습니다. 『회전』이나 『여도』 역시 홍토산수가 대도문강이라고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금 부사께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끝 부분에서 홍단수와 석을수가 작은 강이라고 하시는데 그 뜻은 홍토산수가 큰 강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강과 홍단수·석을수 가운데 어느 쪽이 과연 폭이 넓은 강인지 왜 생각해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은 보기에 부사께서 조회를 근거로 삼지 않으시고 오로지 억지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으니, 아마 반드시 欽差大臣의 조사·처리 결과를 기다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측량하고 있는 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면서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13일)

(7) 이중하의 답변

홍토산수는 조선에서 본래 豆滿江이라 불렀습니다. 지난번 경계를 조사할 때 귀 국처에서 처음으로 홍토산수라고 이름을 붙여 공문에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도와 기록 가운데 어찌 홍토산수라는 이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도와 기록에 실려 있지 않다는 것으로 반박하시니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길의 폭을 따지는 부분에 관해서는 적어도 홍단함류처에서 좌우로 두 강을 살펴보면 홍토산수가 홍단수보다 넓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석을수 함류처에서 보더라도 큰 물줄기와 작은 갈래는 못사람이 함께 눈으로 보았는데 어찌 다시 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요컨대

귀 국처의 의견은 아주 확고해서 도문강의 옛 경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고, 간절하게 논의를 요청해도 결국 제대로 회답하시는 일이 적으니, 우리로서는 이대로 돌아가 조정에 보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날)

4) 회령부로 돌아온 다음의 대화

이중하 : 장백산의 강에 대해서 이번에 모두 두루 조사한 다음에 돌아왔고, 경계에 대해서 논의한 지 이미 석 달째 됩니다. 귀측에서는 대도문강이 어느 강이라고 지정하시겠습니까?

진영 : 대도문강은 자세히 알 도리가 없으며, 지도가 완성되기를 기다려 다시 상의해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중하 : 『皇朝輿圖』로 살펴보면, 대도문강은 지정하기 어렵지 않은데, 귀측에서는 왜 끝까지 지도를 근거로 삼지 않으십니까?

진영 : 『황조여도』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중하 : 작년에 토문강을 가지고 변론할 때, 귀국처가 전후로 보낸 조회의 필담 가운데 반드시 『황조여도』를 첫 번째 확실한 근거로 삼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가 『여도』를 가지고 증명하려고 하면 매번 “『황조여도』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진영 : 전에 귀국과 海蘭河를 가지고 논쟁을 할 때 우리는 지도를 가지고 입증을 하였으나, 지금은 앞의 일과는 다르니,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중하 : 이렇다면 다시 더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측은 며칠 안에 돌아가겠습니다.

진영 : 지도가 완성된 다음 다시 논의합시다.

이중하 : 생각이 다르니 지도 역시 반드시 들어맞지 않을 것입니다. 하필 지도의 완성을 기다려야 합니까?

진영 : 지도가 만약 서로 들어맞지 않으면, 피차간에 조회한 다음 돌아가면 될 것입니다.

이중하 : 그렇다면 며칠 더 머무르겠습니다. (15일)

5) 경계를 논의해서 정한 다음의 조회

(1) 이중하의 조회

이번 도문강 경계 재감계는 발원지를 두루 살펴보고 한 달을 넘겨 자세하게 협상하였습니다. 무산부의 서쪽으로부터 흐름을 따라 장백산 속 장산령 서쪽의 홍토수·석을수 합류처까지 곳곳마다 자세히 고증하여 이미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결코 확정하지 못한 것이 바로 합류처 위쪽의 두 발원지입니다. 우리는 장백산에서 홍토산수에 이르는 지역으로 경계를 나누자고 하고, 귀 국처는 소백산에서 석을수에 이르는 지역에 경계를 세우고자 하여 누차 협의하였지만 결론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요컨대 경계는 이미 모두 측량을 끝냈고, 단지 이 두 줄기 작은 물줄기를 분별하는 일만 남았는데, 비록 깊은 산 속 몇 리의 거리에 관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대·소국 사이의 국경문제이니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귀측에서 측량한 거리에 따라 지도를 그린 다음 총리아문에 올려, 황상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 주시도록 상주하시기를 요청함으로써 경계를 정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일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공문을 갖추어 조회를 보내는 바입니다. (18일)

(2) 진영의 답변

귀 조회를 받았습니다. 홍토산수는 본 국처가 누차 귀 부사와 함께 자세하게 하나하나 물길이 시작되는 곳까지 조사해서, 董棚 전면의 동북으로 향하는 물길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비석·무더기와는 서로 연관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뒤이어 소백산 동쪽 기슭의 석을수라는 물줄기를 찾아냈는데, 그 물줄기의 각 부분은 옛 경계와 서로 잘 들어맞는 것입니다. 원래는 총리아문의 상주문에 따라 자세히 공동으로 조사한 다음에 경계지역을 정하고자 하였으나, 지금 부사께서 측량한 거리에 따라 지도를 그리고 총리아문에 올려 황제께서 최종 결론을 내려달라고 상주함으로써 경계를 나누기를 원하니, 본 국처는 응당 측량한 거리에 따라 상세한 지도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함께 직인을 찍은 다음 그대로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공문을 갖추어 답변하는 바입니다. (19일)

(45) 문서번호 : 1-3-2-08 (1297, 2410a)

사안 : 조선국왕이 보내온 자문 및 지도·책자 등을 돌려보냅니다(送還朝鮮國王咨文及圖冊等件).

날짜 : 光緒十三年十月二十五日(1887년 12월 9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禮部

十月二十五日，行禮部文稱。

本年十月十六日，接准貴部咨稱。

准北洋大臣咨送朝鮮國王咨文一角，圖·冊各一分到部。查閱該國王來咨，係因圖們江勘界一事。相應將原件，咨送總理各國事務衙門核辦。俟辦結後，仍將原咨等件，送回本部備案。

等因。前來。

查前案業由本衙門咨復吉林將軍妥查辦結覆奏，前經北洋大臣咨送該國王咨文一件，地圖一張，抄冊一本，與此次貴部咨送之件無異。合將原件咨文，圖冊，先行送還，俟吉林將軍辦結咨覆後，再行咨明貴部查照可也。

10월 25일, 예부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습니다.

올해 10월 16일, 귀 예부의 다음과 같은咨文을 받았습니다.

북양대신이 조선국왕의咨文 1통과 지도·책 각 1권을 보내왔습니다. 조선국왕이 보내온

참문을 검토해보았더니, 도문강의 勸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처리가 끝난 다음에는 原
참문 등의 문건을 돌려보내 本部에서 보관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의 사안은 길림장군에게 적절히 조사하고 마무리 지은 후 覆奏하라고 본 아문에서 참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일전에 북양대신이 참문으로 보내온 조선국왕의 참문 1건과 지도 1장,
抄錄冊 1권 등은 이번에 귀 예부에서 참문으로 보내온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땅히 原
참문과 지도·책을 먼저 돌려보내고, 길림장군이 일을 마무리 짓고 참문으로 회답해 오기를
기다려 다시 귀 예부로 참문을 보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 문서번호 : 1-3-2-09 (1403, 2554b-2555a)

사안 : 중국·조선의 분계 문제에서 茂山의 서쪽에 대해 응당 도문강 수원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경계를 확정해야 하오니, 빠른 시일 안에 검토하여 결정해주시시오. 아울러 조선국왕에게 통지하여, 시기를 정해서 관원을 파견하여 명확하게 감계를 시행하여 경계를 나눔으로써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中韓分界事, 茂山以西應將圖們江源查勘定界, 請早日核定, 並知照韓王, 定期派員明確勘分, 以清藤葛).

날짜 : 光緒十四年十二月二十八日(1889년 1월 29일)

발신 : 吉林將軍 長順

수신 : 總理衙門

十二月二十八日, 吉林將軍 長順, 函稱.

順七月履任時, 准前任 希贊臣⁵⁹⁾將軍移交歷年勘分吉韓界務圖卷, 指述要領. 據云.

茂山以東, 兩國均以圖們江界, 韓人已無異說. 惟茂山以西, 應將圖們江源勘, 明確定界, 現因紅土·石乙兩水, 斷斷逾年, 訖無定論. 然就源流形勢·圖籍·碑文·里數考之, 均應以石乙水之源爲的, 若該國所指紅土山水, 牽強附會, 實不足憑. 六月已將各節臚請總署裁酌, 應俟奉到復函遵辦.

云云.

伏查此案耽懸最久, 應早日勘定完結, 以清葛藤. 前希贊臣將軍所陳各節, 是否可行, 抑或另有酌奪, 伏乞指示. 並請知照韓王定期, 以便來年委員遵照辦理.

再, 前委三岔口招墾局員 曲作寅往, 查韓俄通商, 據呈復, 韓俄通商, 的是實有, 其事條約, 俄署隱匿, 碍難抄錄. 圖們江一事, 諒不至於虛合, 並附聞. 專肅. 祇請鈞安. 諸

12월 28일에 길림장군 長順이 총리아문에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7월에 부임했을 때 전임 장군 希元이 여러 해 동안 길림·조선의 경계문제를 조사한 지도와 요점을 정리한 것을 넘겨받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무산 동쪽은 양국이 모두 도문강을 경계로 삼는다는 것에 조선인들도 이의가 없지만, 무산 서쪽에 대해서는 도문강의 수원을 조사하여 명확하게 경계를 정해야 하는데, 지금 (양측이) 홍토수와 석을수를 고집하며 세월을 보내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류의 형세와 지도 및 서적, 碑文, 里數 등으로 살펴보건대 모두 응당 석을수를 수원으로 삼는 것이 정확한 것이며, 조선에서 지목하는 홍토산수 같은 것은 건강부회로, 실제 근거로 삼기에 부족합니다. 6월에 이미 각 내용에 대하여 총리아문에서 결정해달라고 연락을 하였으니, 답신이 오기를 기다려 따라서 처리하면 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생각건대 이 사안은 오랫동안 지연되었으므로 응당 신속히 조사하여 마무리 지어 갈등을 씻어야 할 것입니다. 전임 장군 희원이 말한 각 사안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는지, 아니면 따로 결정해 주실 것인지 삼가 지시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아울러 조선국왕에게 알리고 시기를 정하여 내년에 관원을 파견하여 이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전에 三岔口 招墾局員인 曲作寅을 파견하여 조선과 러시아의 통상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하였는데, 지금 보고를 해온 것에 의하면, 조선과 러시아의 통상은 확실히 사실이며, 그 사안과 조약은 러시아 측에서 숨기고 있어서 베낄 수는 없다고 합니다. 도문강을 둘러싼 이 조선과 러시아의 사안은 정말로 헛된 조약은 아닌 것 같아, 아울러 응당 함께 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모두 편안하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59) 贊臣은 광서 9(1883)년부터 광서 14년까지 길림장군이었던 希元의 字이다.

중국과 조선의 변경 방어와 경계문제(中韓邊防界務)

조선 백성의 월경 개간(韓民越墾)



조선 백성의 월경 개간과 쇠환 (韓民越墾與刷還)

(47) 문서번호 : 1-4-1-01(587, 972a-974b)

사안 : 조선국왕이 유민들을 쇠환해달라고 간청한 것을 대신 전달하면서 상주하였고, (이에 대해 받은)諭旨를 삼가 초록하여 알립니다(轉奏朝鮮國王懇將流民刷還摺, 恭錄諭旨知照).

첨부문서 : 1. 「조선국왕의 原 咨文(朝鮮國王原咨)」 : 길림의 변경 지대를 차지하여 경작한 조선의 빈민들을 돌려 보내달라고 咨文으로 요청합니다(咨請遣回佔種吉林邊地之朝鮮貧民).

2. 「예부의 주접(禮部奏摺)」 : 조선국왕이 월간 조선 백성을 쇠환해달라고 咨文으로 요청한 것을 대신 전달하여 상주합니다(轉奏朝鮮國王咨請刷還越墾韓民).

날짜 : 光緒八年八月二十七日(1882년 10월 8일)

발신 : 禮部

수신 : 總理衙門

八月二十七日, 禮部文稱.

主客司案呈。

所有本部具奏朝鮮國齋咨官金在信⁶⁰)到咨文轉奏一摺。於光八年八月二十六日具奏，本日軍機處發出，奉上諭。

禮部奏，據朝鮮國王咨文轉奏一摺。朝鮮貧民墾吉林邊地，前有旨照銘安吳大所請，查明戶籍，分歸琿春·敦化縣管轄。據該國王咨稱。

習俗既殊，風土不一。若因該民人等占種，便隸版圖，萬一滋事，深為可慮。懇恩准，將流民刷還本國，交付本地方官弁，歸籍辦理。

等語。

該國之民，令其仍回本國，原屬正辦。著銘安吳大體察情形，細心籌劃，該流民人數多，應會商該國，妥收回。該處地方如何經理，一並詳議具奏。

欽此。相應恭錄諭旨，抄錄該國王原文，及本部原奏，知照總理各國事務衙門可也。

照錄粘單

(1)「朝鮮國王，為咨請刷還種吉林之朝鮮貧民事」

照得本年三月初八日，承准部咨，節該⁶¹)

[禮部]主客司案呈：

光緒八年二月初六日，准軍機大臣字寄。

奉上諭。

銘安·吳大澂奏，朝鮮貧民占吉林邊地，遵旨妥議復陳一摺。吉林，朝鮮向以土門江為界，該國民人越界墾種。前據部議奏。

該民人等既(種)中國之地，即為中國之民。除照該將軍等所請，准其領照納租外，必令我版圖，遵我政教，并酌立年限易我冠服。目前姑照雲貴苗人，暫從各便。

等語。

茲據銘安等遵旨詳細妥議，請照該部所議辦理。朝鮮民人越界墾地，本應懲辦，歷奉成憲，禁令甚嚴。惟現在該民人等，開墾有年，人數衆多。朝廷務從寬大，不究既往，著准其領照納租，并由銘安·吳大澂派員履勘，查明戶籍，分歸琿春·敦化縣管轄。所有地方詞訟，及命盜案件，均照吉林一律辦理。該將軍等務當察情形，將應辦事宜，妥籌經理，毋致滋生弊端。并督飭該地方官，隨時妥爲撫綏，該民人得以安業，用副一視同仁至意。餘均依議。行該部，即咨照該國王知悉，嗣后仍當嚴申禁令，再有私行越界情事，定當照例懲辦不貸。將此諭知禮部，并諭令銘安·吳大澂知之。

欽此。遵旨寄信前來。

相應知照朝鮮國王，敬謹遵照可也。

等因。

已于五月初八日復咨遵照，計已垂察。竊惟敝邦于天朝，中外一家，實同內服，而大小兩界，原有天限。土門江分吉林·咸鏡·平安地。三百年來，疆域寧謐，并無他端項。因敝邦撫綏失宜，致遐陬愚氓，冒禁踰犯，私自墾種。幸蒙天朝字小綏遠，不予懲責，俾令內附，敝邦群情以愧以感。第惟習俗既殊，風土不并，該民即系本邦生長。因占種一事，便隸版圖，万一有不循政教滋事，兩邊深爲可虞。且敝邦北俄東日，俱爲連境，設有他處邊民，越界冒占，如土門之事，而伊國皆援天朝爲例，雖事大·交隣體勢迥別，而從違之際，抵牾易見。廢邦是慮，輒追陳事。概違司譯院副司直 金在信，齎咨馳報，煩乞貴(禮)部，備將此由轉達天階，許令吉林將軍并將琿春·敦化地方，所有朝鮮流民，刷還本國，交付本地方官弁，(歸)籍辦理。吉林邊(地)已經朝鮮民墾者，自由吉林地方疆吏收租。嗣仍嚴明申禁，永杜后弊，庶敝邦邊民不復更越疆界，皇靈肅而侯度虔，區區韋甚。爲此合行移知，請照驗轉奏施行。

(2) 「禮部謹奏，爲 據咨轉奏 事」

禮部尚書臣恩承等，跪奏爲 據咨轉奏 事。

光緒八年八月二十三日，准朝鮮國王特遣齋咨官金在信，齋到文一件。臣等公同查閱，系因去年吉林將軍 銘安等奏，土門江北岸朝鮮貧民越墾，欽奉諭旨，由銘安·吳大澂查明戶籍，分歸琿春·敦化縣管轄。該國王以，

習俗既殊，風土不并，該民既系本邦生長，若因占種[一事]，便隸版圖，萬一滋事，深為可慮。吁懇天恩，准將朝鮮流民刷還本國，交付本地方官弁，歸籍辦理。吉林邊地，已經朝鮮民墾種者，自由吉林地方疆吏收租，咨請臣部轉奏。

等情。

謹鈔錄原咨，恭呈御覽，伏候命下臣部，遵奉施行。為此謹奏請旨。

8월 27일, 예부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주객사가 올린 기안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부에서 조선의 자문 전달관 金在信이 가져온 자문을 받아 대신 주를 올렸었습니다. 광서 8년 8월 26일에 주를 올렸는데, 오늘 근거처를 통해 내려온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

다. 예부에서 조선국왕이 보내온 자문을 받아 대신 올린 주를 받았다. 조선 빈민이 길림 변지를 차지하여 경작하고 있는데, 전에 유지를 내려 銘安과 吳大澂이 요청한 바대로 호적을 조사하고, 琿春 및 敦化縣에 나누어 귀속시켜 관할하라고 했다. 이에 해당 국왕이 보내온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문을 보내왔다.

습속이 다르고 풍토가 같지 않으니, (황무지를) 차지하여 경작했다고 해서 중국의 행정 구역으로 편입시킨다면 만에 하나 말썽을 일으킬 경우 심히 우려가 됩니다. 삼가 황상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조선 유민을 본국에서 거두어들이게 하여 조선의 지방 문무 관원에게 넘겨준 다음 원적지로 돌려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조선 백성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본래 올바른 처리방법일 것이다. 명안과 오대징은 상황을 잘 살펴 마음을 다해 처리하도록 하라. 조선 유민의 수가 매우 많으니, 응당 조선과

60) 사실은 김재신(金載信)이나 중국사료에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다.

61) 절해(節該)는 청조 측 문서에는 잘 쓰이지 않지만 조선 측의 공문에 자주 보이는 용어이다. 요컨대, 즉, 곧 등의 뜻으로 다시 말해 공문을 인용하거나 생략할 때 쓰인다.

상의하여 적절하게 그곳으로 거두어들이게 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울러 상세하게 의논하여 상주하라.

이상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다. 이에 마땅히 유지를 옳게 적고, 해당 국왕이 보내온 원 자문 및 본부에서 올린 원주를 베껴 총리아문에 통보합니다.

첨부문서 초록 :

(1) 「조선국왕의 原 咨文」

조선국왕이 길림 지역을 차지하여 경작하는 조선 빈민을 귀환시켜 줄 것을 자문을 보내어 청합니다. 올해 3월 8일 예부의 자문을 받았는데 요컨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광서 8년 2월 6일 군기대신의 다음과 같은 字寄를 받았습니다.

(군기처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다.

銘安과 吳大澂이 조선 빈민이 길림 변지를 차지하여 경작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유지를 받들어 적절하게 논의하여 다시 상주하면서 “길림과 조선은 종래 토문강을 경계로 하였는데, 조선 백성은 경계를 넘어 개간하고 경작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전에 예부에서 의논하여 상주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백성은 이미 중국의 땅을 경작하고 있으니, 바로 중국의 백성입니다. 길림장군 등의 요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소작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 외에도, 반드시 중국의 판도에 예속시켜 중국의 정교를 따르게 해야 하며, 또한 기한을 세워 모자나 의복을 중국식으로 바꿔 입게 하되, 잠시 雲南省·貴州省의 苗族에게 한 것처럼 잠시 각자의 편의에 따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銘安 등이 유지를 받들어 상세하고 적절하게 논의한 바를 다시 보고하면서 예부에서 의논한 대로 처리하게 해달라고 奏請하였다. 조선 백성이 경계를 넘어 토지를 개간하는 것은 본래 마땅히 징벌해야 하는 것으로서, 역대로 받아들여온 기존 법령에 의한 금지령은 매우 삼엄하였다. 그러나 현재 조선 백성이 개간을 한 지 오래되었으며, 그 수도 매우 많다. 조정에서는 가능한 한 힘써 관대하게 처리하고자

기왕의 일은 추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증명서를 발급받고 소작료를 납부하는 것을 허용한다. 아울러 銘安과 吳大澂은 인원을 파견하여 호적 조사를 완결시키고, 琿春과 敦化縣으로 나누어 귀속시켜 관할하며, 모든 지방의 소송과 살인·강도 등 안건은 吉林 事例에 따라 일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吉林將軍 등은 힘써 상황을 살피고 응당 처리해야 하는 일들을 적절하게 대책을 마련하여 관리함으로써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관을 감독하여 수시로 백성을 안무함으로써 그들이 생업에 안주할 수 있게 하여, 모든 백성을 차별 없이 한결같이 대우하는 지극한 뜻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의논한 바에 따라 처리하라. 예부에서는 즉각 조선국왕에게 자문을 보내 앞으로는 다시 예전처럼 엄격히 금지령을 시행하고, 만약 다시 백성이 몰래 경계를 넘는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도록 하라. 이 上諭를 예부 및 銘安·吳大澂에게 내려보내 알리도록 하라.

이상의 내용을 軍機處에서 (저희 예부에) 寄信上諭로 보내왔으므로, 응당 조선국왕에게 통보해야 할 것입니다. 삼가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5월 8일에 다시 자문을 보내 그에 따른다는 뜻을 전했으므로 아마 이미 살펴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각건대, 조선과 중국의 관계는 마치 한집이나 마찬가지로 서로 중국의 內地나 다름이 없으며, 중국과 조선 두 나라의 경계는 또한 원래 정해진 자연적인 경계가 있었습니다. 토문강은 길림과 함경, 평안의 지역에 나누어 속해 있습니다. 3백 년 동안 두 나라의 국경은 평안하여 전혀 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 제대로 끌어안고 어루만져 주지 못해 변방의 우매한 백성이 금령을 어기고 경계를 넘어가, 몰래 농지를 개간하고 경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작은 나라를 길러주시고 먼 나라를 안정시켜주시는 은혜를 입어, 백성이 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으니 조선의 모든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감격을 하였습니다.

다만 양국은 습속이 다르고 풍토가 같지 않을뿐더러, 그 백성은 조선에서 나고 자랐으므로, (황무지를) 차지하여 경작했다고 해서 중국의 행정 구역으로 편입시킨다면 만에 하나 말썽을 일으킬 경우 심히 우려가 됩니다. 또한 조선은 북으로는 러시아, 동쪽으로는 일본과 모두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만약 그곳에도 변민들이 토문의 사례처럼 경계를 넘어가 토지를 차지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고, 그 나라들이 중국 사례를 원용한다면, 비록 事大(중국과 조선)

·交隣(러시아와 일본)은 그 성격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따르거나 어기는 가운데 적지 않은 장해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조선은 이 점을 우려하여 되새기면서 아뢰는 바입니다. 그래서 司譯院의 副司直 金在信을 속히 보내 자문을 전달함으로써 이 내용을 폐하게 상주해달라고 예부에 요청합니다. (아울러 황상께서) 길림장군에게 혼춘·돈화 지방의 모든 조선 유민을 본국으로 쇠환시켜 본국의 지방 문·무관에게 넘김으로써 본적지로 돌려보내고, 길림 변지에서 조선 백성이 이미 개간하여 경작한 것은 당연히 길림의 지방관이 소작료를 거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후에는 계속해서 엄격하게 금지령을 적용하여 영원히 훗날의 폐해를 막게 되면, 조선 변민 역시 다시는 강계를 넘어가지 않을 것이므로, 황상의 마음을 편안히 해드리고 諸侯의 法度を 경건히 바로잡기 위해 오직 한마음으로 따르겠습니다. 이 때문에 자문을 보내니, 이에 따라 대신 상주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예부의 주집(禮部奏摺)」

예부상서인 신 恩承 등이 삼가 주를 올립니다. (조선국왕의) 咨文을 받아 이를 대신 上奏하는 바입니다. 광서 8년 8월 23일 조선국왕이 특별히 파견한 자문 전달관(齎咨官) 金在信이 자문을 전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열어보니, 작년에 吉林將軍 銘安 등이 토문강 북안에서 조선 빈민이 월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상주를 올려 이에 대해 銘安과 吳大澂이 호적을 조사하고 그들을 琿春과 敦化縣의 관할로 귀속시키라는 상유를 받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조선 국왕은 다음과 같이 요청해 왔습니다.

습속이 다르고 풍토가 같지 않을 뿐더러, 해당 백성은 조선에서 나고 자랐으므로, (황무지를) 차지하여 경작했다고 해서 중국의 행정 구역으로 편입시킨다면 만에 하나 말썽을 일으킬 경우 심히 우려가 됩니다. 삼가 황상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조선 유민을 본국에서 거두어들이게 하여 조선의 지방 문무 관원에게 넘겨준 다음 원적지로 돌려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아울러 길림 변지에서 이미 조선인이 개간한 것은 길림 지방의 지방관이 소작료를 거두게 할 수 있도록 예부에 자문을 보내니 대신 상주해주시시오.

삼가 원래의 자문을 초록하여 공손히 올려보내니, 살펴보고 지시를 내려 주시면 그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삼가 주를 올려 諭旨를 청하는 바입니다.

(48) 문서번호 : 1-4-1-02 (679, 1106b-1107a)

사안 : 조선국왕의 원 자문을 전달하면서 상주한 주접에 대해서 이미 유지를 받았습니다(朝鮮國王原文轉奏一摺, 已奉諭旨).

첨부문서 : 1. 「조선국왕의 咨文을 전달하면서 대신 상주하는 주접의 원고(轉奏朝鮮國王咨文摺稿)」 : 「(朝·淸水陸)通商章程」을 받게 된 것, 그리고 토문강 밖 유민 쇠퇴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申謝奉到通商章程及准刷還土門江外流民).

날짜 : 光緒八年十二月二十八日(1883년 2월 5일)

발신 : 禮部

수신 : 總理衙門

十二月二十八日, 禮部文稱.

主客司案呈.

所有本部具奏, 抄錄朝鮮國王原文轉奏一摺. 於光緒八年十二月二十五日具奏, 本日軍機處發出.

奉旨.

知道了.

欽此.

相應抄錄該國王原文及本部原奏, 知照總理衙門可也.

粘朝鮮原文[詳見十二月二十四日, 朝鮮國王文].

(1) 照錄原奏

禮部謹奏，爲 據咨轉奏 事。

本月二十二日，准盛京禮部送到朝鮮國王咨文二件。臣等公同閱看，一係爲奉到通商章程，一係爲土門江外流民，准其刷還本國，該國王恭伸謝悃，咨請臣部轉奏，等情。謹抄錄原咨，恭呈御覽。爲此，謹具奏聞。

12월 28일, 예부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主客淸吏司에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본 예부에서는 조선국왕의 원 자문을 초록하여 전달하면서 주접을 상주하였습니다. 광서 8년 12월 25일에 상주하였는데, 오늘 군기처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알았다.

따라서 마땅히 조선국왕의 원문과 본 예부의 원 상주문을 초록하여 총리아문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조선의 원문을 첨부합니다[12월 24일 조선국왕의 자문을 참조].

(1) 조선국왕의 咨文을 전달하면서 대신 상주한 주접의 초록

예부에서 (조선국왕의) 咨文을 받고 (이를 대신) 전달하면서 상주합니다.

이번 달 22일, 盛京禮部에서 보내온 조선국왕의 咨文 2건을 받았습니다. 신들이 함께 열람해보니, 하나는 通商章程을 받은 것에 대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토문강 밖의 유민들을 본국으로 쇄환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조선국왕이 감사를 표하면서 예부에서 (사의를 대신) 전달하여 상주해달라고 咨文으로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삼가 原 咨文을 초록하여 살펴보시도록 올립니다. 이에 삼가 주접을 갖추어 보고를 올리는 바입니다.

(49) 문서번호 : 1-4-1-03 (981, 1765a-1768a)

사안 : 월경한 조선의 빈민 류운근 등이 본국에서 연이어 기근이 들어 도저히 살 수 없어 가족을 이끌고 귀의하고자 하니, 땅을 나누어 주고 안치시킴으로써 러시아인에게 수용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간청하는 바입니다(朝鮮越界貧民柳雲根等, 以本國連年饑饉, 民不堪命携家來歸, 懇請撥地安插, 以防爲俄人收用).

첨부문서 : 1. 「조선 빈민 류운근 등의 탄원서(朝鮮貧民柳雲根等原呈)」 : 조선의 빈민 류운근 등 146명이 중국 백성으로 귀의하여 땅을 나누어 받아 경작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청구하는 바입니다(朝鮮貧民柳雲根與一百四十六名, 請求歸爲中國之民, 撥地墾種以保生命).

날짜 : 光緒十一年三月二十九日(1885년 5월 13일)

발신 : 吉林將軍 希元

수신 : 總理衙門



三月二十九日, 吉林將軍希元文稱.

本年三月二十一日, 准幫辦吉林邊務事宜·琿春副都統依克唐阿咨稱.

因朝鮮貧民柳雲根等百餘名, 携家逃越土們江鍾城對岸之處, 該民具呈愿, 爲上國之民, 懇撥地安插, 以全生命. 等情.

由招墾局委員賈元桂, 面呈請示前來. 本幫辦諭.

以屬國之民, 猶我民也. 背本國而投大國, 於理不順, 可善遣之. 旋又據呈到本衙門, 該民呈詞懇切, 聲稱.

該國因與外國通商之故，官與民心異，科斂加增，民不堪命，流離四散者多矣。民等仰上國如父母，甘心歸附，有來路無歸路。

等語。近日來者益多，聚流離失所千餘貧民於江干，論遣不去，日久無所安，非死即亂，可憫可慮。合將原呈抄連文尾，咨請示覆。

等因。飛報前來。

朝鮮貧民百餘名携家來此，願受一廛，察其情詞懇切，自係因其本國凶年饑饉，民不聊生。是以携家而來，甘心歸附。夫朝鮮之民，猶中國之民也。今流離失所，遠到來歸，無以安之，勢將轉乎溝壑，情尤可憫。不惟有失懷柔之道，且恐其顛沛無歸，或轉俄人收用，更屬可慮。應設法安，定其心志，以免資敵。除飛咨密覆幫辦依，妥為安插，以擴充墾務，用示撫恤外，相應照抄朝鮮貧民原呈二紙，粘連文尾。由五百里飛咨密報。為此咨報總理各國事務衙門，請煩照施行。

照錄原呈

(1)

具呈人柳雲根，為 懇恩照 事。

身等本以小國貧民，飽聞大國愛民恩澤，而多率人口，乞飯村間，不遠千里而來，奠居於土們江西邊。則以東為小國鍾城之地，以西則大國之地也。以作農之意，構成草幕。無奈鍾城之民稱以渠之作農處，爭田之際，身等不受其田。故呈作農可也，剃頭民亦可也，則伏乞仁天大人，時垂恤窮之政，即許田地，使之作農生命之地，千萬企仰企仰仁天大人處分。

(2)

具呈人柳雲根，為 懇恩照 事。

身徒等素以貧窮之民，伏聞大國之地廣年豐，願為 大國之民，搬移於小國鍾城土們江西大國之地，造家為計，墾田為業。而鍾城之民稱以渠地，不給造家之基址，亦不墾田

之陳荒. 一百餘戶移來之民, 進退維谷, 饑寒刺骨, 將來未免溝壑之鏡. 土們江以東小國鍾城之地, 以鍾城之民, 豈可定生於大國之地. 況又春事時急, 而無一畝入種之田, 則豈可免餓之死乎. 敢聚首仰於明政之下, 伏乞俯察情勢, 許給廣田, 量地割給, 以保釜魚之民, 作農生命之志, 千萬伏望仁天大人, 別置常規之平, 特許穡穀之田, 人人作農, 安堵萬世, 感蒙德矣.

原呈人

柳雲根 柳成茂 方權錫 林君彥 林奉三 李憲國 韓知叔 劉允奉 玄丙會 車丙龍
 吳澤軒 李致俊 車德俊 吳仕範 李景老 李恩光 李允文 金應協 李千金 李希奎
 李憲敦 吳鍾月 李明憲 李鳳瑞 李萬周 金億孫 李永實 李斗星 金允謙 尹奉三
 金鍾訓 李成烈 韓龍雲 金鍾俊 金丙哲 李能求 林萬興 李漢秀 李貞求 李公
 黃致範 李君璧 李光天 朴順兼 金仁彥 李明甫 黃致善 李憲珠 金明德 嚴益德
 金順貞 崔丙律 洪明彥 金元建 金鶴有 文中恪 姜世永 朴明宏 金昌澤 李丙律
 金士宏 金希周 金宗信 金萬根 朴東俊 李學律 嚴益甫 姜鶴京 金炳哲 車亨八
 趙利南 李君一 金秀贊 金丙仁 李明甫 李奎元 黃和京 金龍心 梁秀元 金亨采
 李成世 金仕宏 金斗學 洪範九 崔奉嚴 朴在豐 韓德甫 李錫奎 姜弼成 李丙根
 姜鶴曾 金亨淡 韓宗恪 安貞訓 金成律 張成有 李丙吉 李彥植 嚴光永 金恩俊
 朴錫恩 張起彥 李仁協 安光成 金宗玉 李秀元 金錫成 鄭世永 金德行 韓利賢
 方奉萬 鄭佑順 韓萬默 李學律 金丙斗 李仲協 金萬業 方仁行 韓宗默 金希彥
 李雲信 黃德九 嚴益烈 蔡明吾 韓致京 林成億 姜天奎 蔡用碩 朴和汝 蔡東行
 金順元 李昌律 金基昌 蔡用根 嚴奎永 朴萬海 韓用雲 金世岳 蘆和瑞 蔡元國
 張成彥 李和用 朴宗賢 姜世浩 蔡信鶴 金炳順. 以上共計 一百四十六名.

3월 29일 길림장군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올해 3월 21일 훈춘부도통 依克唐阿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조선 빈민 류운근 등 백여 명이 가족을 이끌고 토문강의 鐘城 건너편 지역으로 건너왔는데, 이 백성은 탄원서를 올려 중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면서 토지를 내주어 정착시킴으로써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招墾局 委員 賈元桂가 직접 보고하면서 지시를 요청하였습니다. 本 幫辦은 속국의 백성이라도 우리 백성과 같으니, 조선을 등지고 중국에 몸을 던지는 것은 도리상 옳지 못하니 잘 타일러 돌려보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탄원서가 본 아문에 도착했는데, 이 백성의 요청은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기를 조선은 외국과 통상을 하게 되었지만, 관리와 백성의 마음이 달라 세금의 징수가 더욱 늘어나면서 백성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지는 자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백성은 중국을 부모처럼 우러러보고 있고 기꺼이 歸附하려고 하며, 올 길은 있지만 돌아갈 길은 없다고 합니다. 조사해보니 근래 (중국 쪽으로 넘어) 오는 사람이 더욱 늘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천여 명의 빈민이 강변에 모여 돌아가도록 지시해도 떠나지 않고 있으며, 시간이 오래 경과해도 이들을 정착시키지 못한다면, 죽거나 아니면 변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니 정말로 가련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합니다. 이에 마땅히 탄원서 원문을 베껴 이 공문의 말미에 첨부하여 자문을 보내니 지시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훈춘부도통의) 급보를 받았습니다. 조선 빈민 백여 명이 가족을 이끌고 이곳에 와 집 한 채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상황과 말이 아주 간절하며, 당연히 조선에 흉년 때문에 기근이 발생하여 백성이 삶을 꾸리기 쉽지 않은 때문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가족을 이끌고 와 기꺼이 귀부하려는 것입니다. 무릇 조선 백성은 중국 백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미 몸을 기댈 곳이 없어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먼 곳에서 찾아와 귀부하려고 하는데 만약 그들을 안착시키지 못한다면 그들은 장차 죽음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니, 정말 가련한 처지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비단 그들을 회유하는 방법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곤경에 빠져 돌아갈 수 없을 경우 혹시라도 러시아인에게 수용이 된다면 더욱 우려할 만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응당 신속하게 방법을 마련하여 정착시켜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힘으로써 적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幫辦 依克唐阿에게 신속하게 비밀리에 자문으로 답장을 보내 그들을 적절하게 정착시키도록 함으로써 墾務를 확충하고 아울러 보살피 주는 뜻을 보이게 하였으며, 그리고 조선 빈민이 올린 탄원서 두 장을 베껴 말미에 첨부하고, (하루) 5백 리 속도⁶²⁾로

62) 청조에서는 약 1,785개소의 역참(驛站)을 설치하고, 경사에는 황화역(皇華驛)을 두었는데, 이곳을 통해 신속하게 전국으로 공문을 전달할 수 있었다. 군기처의 공문에 「신속한 전달(馬上飛遞)」이란 표시가

긴급히 자문을 보내 비밀리에 보고를 올립니다. 이 때문에 총리아문에 자문을 보내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참고하시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록 : 탄원서 원문」

(1)

류운근 등이 은택을 베풀어 돌봐주시길 간청합니다. 저희들은 본래 조선의 빈민으로 평소 중국에서 백성을 사랑하여 은택을 베풀어 주신다는 소문을 실컷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마을 사이에서 걸식을 하면서 천 리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찾아와서 土門江西邊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즉 동쪽은 조선의 鍾城 땅이고 서쪽은 바로 중국 땅입니다. 농사를 지을 작정으로 초가집을 지으려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종성 사람들이 자신들이 농사짓는 곳이라고 땅을 다투는 바람에 저희들은 그 토지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원서를 올려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머리를 깎고 중국의 백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엎드려 비오니 어진 하늘과 같은 대인께서 때마침 궁핍한 백성을 무휼하는 정치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농사지을 땅을 허락해 주시어, 이것으로 농사를 지어 생명을 보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부디 어진 하늘과 같은 대인의 처분을 바라고, 또 바라는 바입니다.

(2)

류운근 등이 은택을 베풀어 돌봐 주시길 간청합니다. 저희들은 본디 빈궁한 백성으로, 엎드려 들건대 중국은 땅이 넓고 해마다 풍년이 든다고 하니, 중국의 백성이 되고자 하여, 조선 종성의 토문강 서쪽인 중국 땅으로 옮겨와 집을 짓고, 토지를 개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성의 백성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칭하면서 집을 지을 터를 줄 수 없고, 개간할 수 있는 오래된 황무지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로 옮겨온 1백 여 호의 백성은 진퇴양난에 빠져 추위와 배고픔이 뺏속까지 찌르고 있으니 장차 죽음의 위협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토문강 동쪽이야말로 조선 종성의 땅으로 종성의 백성이 어찌 중국 땅에서 정착하여 생활한다는 말입니까? 하물며 또한 봄 농사가 시급한데, 파종할 수 있는 한 치의 땅도 없으니 어찌

있으면 하루에 3백 리를 가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400~600리를 갈 수도 있었고, 가장 급한 경우에는 8백 리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굶어 죽는 것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감히 머리를 모아 대인 앞에 엎드려 우러러 하소연하고자 하오니, 상황을 굶어살피보시어 저희에게 비어 있는 땅을 지급해주십시오. 땅을 측량하고 떼어 주셔서 찢어지게 가난한 저희 백성이 농사짓고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뜻을 보호해주십시오. 부디 엎드려 바라건대 어진 하늘과 같은 대인께서 공평한 정상 법규를 잠시 제쳐 두시고, 특별히 저희들에게 곡식을 심을 토지를 허락해 주시어 농사를 짓고 안착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 베풀어 주신 은덕에 크게 감읍할 것입니다.

단원자 명단

류운근 류성무 방권석 임군연 임봉삼 이현국 한지숙 유윤봉 현병희 차병용 오택헌 이치준 차덕준 오사범 이경노 이은광 이윤문 김용협 이천금 이희규 이현돈 오종월 이명헌 이봉서 이만주 김억손 이영실 이두성 김윤겸 윤봉삼 김종훈 이성렬 한용운 김종준 김병철 이능구 임만홍 이한수 이정구 이공익 황치범 이군벽 이광천 박순겸 김인언 이명보 황치선 이헌주 김명덕 엄익덕 김순정 최병률 홍명언 김원건 김학유 문중각 강세영 박명굉 김창택 이병률 김사굉 김희주 김종신 김만근 박동준 이학률 엄익보 강학경 김병철 차형팔 조리남 이군일 김수찬 김병인 이명보 이규원 황화경 김용심 양수원 김형채 이성세 김사굉 김두학 홍범구 최봉업 박재풍 한덕보 이석규 강필성 이병근 강학증 김형담 한종각 안정훈 김성률 장성유 이병길 이언식 엄광영 김은준 박석은 장기언 이인협 안광성 김종옥 이수원 김석성 정세영 김덕행 한리현 방봉만 정우순 한만목 이학률 김병두 이신협 김만업 방인행 한종묵 김희언 이운신 황덕구 엄익렬 채명오 한치경 임성익 강천규 채용석 박화여 채동행 김순원 이창률 김기창 채용근 엄규영 박만해 한용운 김세악 노화서 채원국 장성언 이화용 박종현 강세호 채신학 김병순. 이상 모두 146명.

(50) 문서번호 : 1-4-1-04 (1020, 1879a-1882b)

사안 : 조선 북쪽 변경과 길림성 접경지대에 있는 越壘 조선인들이 중국인의 학대를 받는 일이 있다고 하니, 방법을 마련하여 조사·금지시킴으로써 후환을 막을 것을 요청함
니다(朝鮮北境與吉省接壤處, 聞有越壘韓民受華民凌虐情事, 請說法查禁, 以杜後患).

첨부문서 : 1. 「조선 함경북도의 趙秉稷이 조선의 外部衙門에 보낸 서신(朝鮮咸鏡北道趙秉稷致其外部函)」

2. 「함경도에서 吉林招壘局에 보낸 조회(咸鏡道致吉林招壘局照會)」

날짜 : 光緒十一年六月初八日(1885년 7월 19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六月初八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六月初五日, 據委辦朝鮮商務分省補用道陳樹棠稟稱.

竊職道昨晤朝鮮外部督辦金允植面稱.

該國北境與俄吉林接壤, 時有華人往來, 驅逐人民燒燬農房, 沿江上下一帶 蕭然空虛, 民不聊生. 疊接咸鏡北道節度使趙秉稷函開, 先後據鍾城茂山會寧等府縣稟報畧同, 生靈溝壑, 慘不可言, 應請我國設法諭禁.

等云.

職道查朝鮮咸鏡北道, 實與吉林相接壤. 該處亦設有官長, 疆域攸分, 斷不至縱容凌虐如斯之甚. 金督辦所述是否傳之過甚, 未及詳查. 惟細譯其抄來節度使趙稷所報, 並照會招壘局員德玉各文, 似朝民以邊地太促, 越疆開墾, 以致滋生釁端. 但藩屬之

民必當體恤撫字，不可使其流離失所，致啓怨嗟。且該處地逼俄疆，狡焉思逞之徒，覬覦其間，乘鷓蚌相持，以收其漁人之利，不可不防。用特具稟憲台，設法查禁，以杜後患，幸甚幸甚。

等情。

本大臣據此。查所稟吉林邊界華人驅逐朝鮮人民，並燒燬農幕，沿江一帶皆不聊生，如果朝民越界墾種，自應彼此會查妥議遣撤，未便任意凌虐殘害。昨朝鮮國王遣吏曹參判南廷哲來津，亦議及此事。除咨吉林將軍迅即查明確情，設法禁止妥辦，以杜後患外，相應咨會貴衙，請煩查照。

照錄鈔單

(1) 「謹將咸鏡道致外部函稿錄呈憲鑒」

計開：

去月念後，見鍾城所報，則華人燒燬我民農幕云，方欲啓聞，而事係邊政，不可不一番詳察，然後啓聞，故發遣親裨矣。今初六接見茂山府假將所報，則華兵建旗帶仗，往來江邊，燒燬農幕，驅逐人民，沿江一帶蕭然空虛云，鍾城縣遣足回告與路邑報辭相合。從此以後，許多生靈將至填壑之境，此將奈何。琿春是近日新設之營也，間島是幾年荒廢之地也。壤地雖沃，而居民絕無。彼之所欲，非但土地，實在於人民，又在納於租稅。我民之深入築室者甚多，而且深入者或薙髮矣，或入籍矣，皆入與圈套中。滋生釁端，亦由此輩，雖欲自我刷還，彼必不肯送回。惟家在此而田在彼者，偏被其害也。蓋此民越江結幕，春耕秋歸，不變服，不入籍，故彼疾之已甚。邊民無田地所賴者，越江起墾而已。當此方農之節，顛連失業，聞甚愁慘。向日答照會以定界前不可禁耕之意，往復未幾，遽先如是作鬧，極爲驚駭。方欲更問之際，琿春照會來，審其詞意，非徒不聽，又多要挾，故據理答覆。而年前敦化州縣趙敦誠，因督辦軍務大臣吳，飭諭前巡使而有“不許凌虐驅逐”之句語，⁽⁶³⁾ 我今以此六字爲把柄。又不能允聽派員。定界爲一時之急，

而鍾城·會寧·茂山·穩城四邑倅，彼既不願前往，此外又無可送之員。且於歲初以定界事啓聞，特派員一款，請於廟堂稟處，至今未蒙處分。然已啓請，則有難擅便，今又具由馳啓，惟俟超飭而行之。然與琿春人會辦，則雖直必枉。惟有咨請禮部，自北京另派委員，然後可以從理勘辦矣。諒之如何？使人將發之際，又接會寧府與屯下鎮所報，則華人來往江邊，焚燬農幕，鞭逐人民，而無邑不然，無處不然。沿江上下幾百里間播種各穀幾千石，當歎年民失業，何以聊生？琿春統帶帥只管軍務而已，屯事是招墾局主之。至賈元桂是否委員，而承辦德玉爲其派使也。若週旋於北京，則今此賈德兩人之計，似可容易阻格矣。未知盛意如何，以此事前後往復，非止一再。而都統初無一字相問，惟承辦行之。今稱以奉軍憲飭諭，而措辭下字，全無顧忌。雖溫辭答覆，然事終虧順，瞻聆駭異。自今以後，以鍾城縣官審定承辦代行照會似合事宜。而昨冬華人之來辦茂山事時，亦以此爲妥云。承辦雖是初設之職，然近日之模仿華制者多矣，尚無拒碍。今稟旨然後可以遵行。

(2) 「謹將咸鏡道趙秉稷致招墾局照會稿 錄呈憲鑒」

計開：

爲 照 覆 事。

本月初五日接准貴照會。節該。

土們江是琿春地體生就之處，各自昔相傳，年年查考，至今豈能強爲遷就。現將會勘，固勿庸以口詞相競。苟以邊地太促，民無所贍，自應據情籲墾，豈得縱愚氓而違禁，信屬僚之詭辭，賴得疆土乎？藩屬之民，固在所撫恤。惟不情不理者，卽本國之民 在所必懲 豈應藩屬之民 而姑爲曲寬乎。廢失農業，是其自取。

等因。前來。

疆界之從某至某，年年往復，迄未了結。今无庸文字贅陳。惟去年冬接准貴照會稱。

鍾會茂三城府使，爲敦化縣所稟之員所辦不能公允。

等因。

本使業將由此稟報政府，請另派委員，以便會勘。現未奉回諭，尚爾延宕。此事在敝邦尤係重要，非欲強爲遷就，致煩文字也。晚近鍾城茂山等地，貴衙門兵役建旗帶仗，上下往來，燒毀農幕，驅逐人民，沿江一帶，蕭然空虛。見聞所及，慘不忍言。前在光緒九年敦化知縣趙 奉至貴(督辦軍務大臣吳·鎮守吉林將軍銘)札飭內有“不許凌虐驅逐”六字，敝邦之民，尚令莊誦，敬如金石。不圖今日遽有此舉，況定界所以安民也！今若先禁其民，則安用更查其界乎？本使來守此土，纔經半載，邊荒事務，未及周察，惟以安民爲盡職。若以一民不得其所，則非但得罪於敝邦，亦將得罪於天朝。前後文字，敷盡肺腑，何嘗縱民違禁，圖賴疆土乎？來文內一二句語，殊涉過情矣。吉林朝鮮界限之分，自有奉旨立碑處，容俟派員會查，自可分勘。望乞貴承辦覆稟貴軍憲，亟撤兵役，飭諭民人安業資生，幸甚。

6월 8일, 북양대신 이홍장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6월 5일, 委辦朝鮮商務分省補用道 陳樹棠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에 朝鮮 外部督辦 金允植을 만났는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조선국 北境과 러시아·吉林 경계 지역에 때때로 중국인들이 왕래하면서 조선 백성을 몰아내고 農房을 태워 없애 강 연안의 위·아래 지역 일대가 황량하고 텅 비어 있고 백성이 안심하고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누차 咸鏡北道 節度使 趙秉稷의 서신을 받았는데, 鍾城·茂山·會寧 등지에서 잇따라 보고한 것에 따르면 각 지역의 상황이 대략 비슷하여, 조선 백성이 곤경에 처해 있으며 그 참혹함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면서 마땅히 淸에서 방법을 마련하고 지시를 내려 금지해 줄 것을 청합니다.

조선 함경북도는 실로 吉林과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도 또한 官吏가 있고 영토가 구분되어 있으니 결코 마음대로 학대하는 것이 이 정도로 심하지는

63) 이 부분의 원문은 인용하면서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어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다. 지시를 ‘받았다’는 글자가 빠진 것이다. 바로 뒤의 문서에 같은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받았다(奉)’는 글자가 들어 있어 의미가 제대로 전달된다.

않을 것입니다. 金允植 督辦이 말한 바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과장되지는 않았는지, 아직 상세하게 조사해보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節度使 趙秉稷의 보고를 초록하여 보내온 것과 아울러 招墾局員 德玉에게 照會한 문서를 자세하게 풀어 읽어보면, 조선 백성이 변경 지역에 너무 가까이 있어 경계를 넘어와 개간하였기 때문에 말썽이 생기기엔 이른 것 같습니다. 다만 藩屬 백성은 반드시 마땅히 체휼하고 撫養해야 하지, 그 사람들이 의탁할 곳 없이 집을 잃고 떠돌면서 원한을 품게 해서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이 러시아와 접해 있어, 교활하고 불순한 무리들이 그 사이에서 도요새와 조개의 싸움을 틈탄 어부의 이익을 노리고 있으니 이를 미리 막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특별히 보고를 갖추어 대신께 보고하오니, 방법을 마련하여 조사·금지시켜 후환을 막는다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본 대신이 조사해보건대, 길림 변경에서 중국인들이 조선 인민을 몰아내고 農幕을 불태워 없애 강 연안 일대 모두 (조선 백성이) 도저히 편히 살 수 없다고 하는데, 만일 조선 백성이 국경을 넘어 개간한 것이라면 마땅히 피차 함께 조사하고 적절히 논의하여 철수시켜야 하지 마음대로 凌虐하고 피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 조선국왕이 파견한 吏曹參判 南廷哲이 天津에 왔을 때에도 또한 이 일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吉林將軍에게 咨文을 보내어 즉시 신속하게 확실한 상황을 조사하고, 방법을 마련하고 금지시키고 적절하게 처리하여 後患을 막도록 하는 것 외에 응당 귀 아문에도 자문을 보내어 조회하니 번거롭더라도 검토해 주십시오.

첨부문서 초록 :

(1) 「조선 함경북도의 趙秉稷이 조선의 外部衙門에 보낸 서신」

삼가 咸鏡道에서 外部에 보낸 문서를 초록하여 올리니 살펴봐 주십시오.

첨부내용 :

지난달 20일 이후 鍾城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중국인이 우리 백성의 農幕을 불태워 없앴다고 하여 바야흐로 狀啓를 올려 보고하고자 하였으나, 사안이 변경 사무와 관계된 것이라 일단

자세하게 살피지 않고서는 보고할 수 없어 가까운裨將을 파견하였습니다. 6일 현재, 茂山府假將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중국병사들이 깃발을 세우고 무기를 휴대한 채 강변을 왕래하면서 農幕을 태우고 백성을 쫓아내어 강 연안 일대가 황량하고 텅 비어 있다고 하는데, 이는 鍾城縣에 파견하여 다녀왔던裨將이 돌아와 보고한 것과 아울러 路邑에서 보고한 내용과 서로 합치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후 허다한 백성이 장차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터이니 이를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琿春은 근래 새롭게 설치된 鎭營이고, 間島는 오랫동안 황폐했던 곳입니다. 비록 토양이 비옥하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는 비단 땅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백성에게 있고 또한 그들이 租稅를 납부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백성으로 (그 지역에) 깊이 들어가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매우 많고, 또 깊이 들어가 사는 사람 가운데에는 이미 薙髮을 하였거나, 혹은 入籍한 경우도 있는데, 이들 모두 중국 측의 의도에 말려들었습니다. 말썽이 생기게 되었던 것도 또한 이 무리들 때문인데, 비록 우리 스스로 그들을 刷還시키려 해도 중국 측에서는 반드시 기꺼이 回送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집은 여기 조선에 있으나 田土가 그 쪽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유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대개 이 백성은 강을 건너 農幕을 짓고, 봄에는 농사를 짓고 가을에는 돌아오는 사람들로 變服도 하지 않고 入籍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은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邊民으로 의탁할 田地가 없는 사람들은 강을 건너 開墾을 했던 것뿐입니다. 지금 바야흐로 한창 농사철인데, 모든 것을 잃고 곤경에 처해 있으니 듣기에 정말 그 사정이 참담합니다. 예전 照會에 답장을 하면서 국경을 확정하기 이전까지는 경작을 금지시킬 수 없다는 뜻을 표명하였는데, (조회를) 주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작스레 이와 같은 소란이 생겨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다시 조회를 보내 묻고자 할 때쯤, 琿春에서 照會가 왔는데, 그 말 뜻을 주의하여 살펴보니 (이전에 보냈던 조회에서 언급했던) 말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대부분 협박의 뜻만 담고 있어, 이치에 따라 반박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 敦化縣 知縣 趙敦誠은 督辦軍務大臣 吳大澂이 前 巡使에게 내린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학대하고 쫓아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不許凌虐驅逐)”는 구절이 있었으므로, 저희는 이 여섯 글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원 파견 요청을 허락하여 들어드릴 수도 없습니다. 定界가 지금의 급무이기는 하지만 鍾城, 會寧, 茂山, 穩城의 四邑의 邑卒들은 이미 더 이상 가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하면 또한 보낼

수 있는 인원도 없습니다. 또한 연초에 定界와 관련된 일을 狀啓로 보고하고, 특별히 인원을 파견하는 일은 조정에 보고를 올려 처리해주실 것을 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處分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狀啓를 올려 청하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금 다시 驛傳을 통해 狀啓를 갖추어 올리는 것입니다. 오로지 신속한 지시를 내려 주시기를 기다려 시행에 옮길 따름입니다.

그런데 琿春人과 함께 처리하려면 비록 사리가 곤은 일이라도 반드시 왜곡될 것입니다. 오로지 禮部에 자문을 보내 요청하여, 北京에서 따로 委員을 파견한 다음에야 情理에 따라 勸界를 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양해를 구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使人이 막 출발하려고 할 때, 다시 會寧府와 兪下鎭의 보고를 받았는데, 중국인들이 강변을 왕래하며 농막을 불태워 없애고, 백성을 채찍질하여 쫓아내는 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읍이 없고 그렇게 하지 않는 지방이 없다고 합니다. 강의 위·아래 연안의 수백 리에는 각종 곡식 수천 석을 播種하였는데, 흉년이 든 데다 백성이 본업을 잃게 되었으니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琿春의 統帶帥, 즉 혼춘부도통은 단지 군사 업무를 관장할 뿐이고, 屯田사무는 招墾局에서 주관합니다. 賈元桂가 委員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承辦 德玉은 그가 파견하여 부리는 사람입니다. 만일 北京에 (별도의 인원을 파견하도록) 주선할 수 있다면, 현재 賈元桂와 德玉의 이와 같은 계획은 아마 쉽게 가로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품은 감정의 뜻이 어떠한지 알 수는 없으나, 이 일 전후로 (조회를) 주고받은 것이 단지 한두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都統은 처음부터 한 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오로지 承辦에게만 일을 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都統의 지시를 받았다고 칭하면서 단어를 고르거나 문장을 쓰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비록 온화한 말로 답장을 보낸다고 해도 일은 결국 어그러질 것이니, 다른 사람이 이 일을 보고 들으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앞으로는 鍾城縣의 관리가 承辦이 대신 보낸 照會를 검토하여 대응방식을 정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 중국인이 茂山의 사무를 처리하러 왔을 때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承辦은 비록 지금 막 창설된 職掌이지만, 근래에는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 많이 있으니, 아직은 거절하거나 방해가 되는 바는 없을 것입니다. 이 일은 교지를 받은 다음에야 따라서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함경도에서 吉林招墾局에 보낸 조회(咸鏡道致吉林招墾局照會)」

삼가 咸鏡道 趙秉稷이 招墾局에 조회한 문서를 초록하여 올리니 살펴봐 주십시오.

첨부내용 :

답장 조회를 보냅니다. 이번 달 5일, 貴局에서 보낸 다음과 같은 조회를 받았습니다.

土們江은 琿春의 地勢가 만들어지는 곳으로, 곳곳마다 옛날부터 대대로 전해 내려와 연도 별로 그것을 고증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어찌 능히 강제로 (당신들의 뜻대로) 끼워 맞출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함께 공동감계를 하게 되었는데, 절대로 말싸움으로 경쟁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변경 지역에 너무 가까이 있어 백성이 먹고살 바가 없다면, 응당 그 사정에 따라 개간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되지, 어찌 우매한 백성을 풀어서 禁畝를 위반하게 하고, 屬僚의 畵面을 믿어 생떼를 써서 영토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藩屬 백성은 본디 우리가 撫恤해야 하는 바입니다. 다만 情理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면 곧 중국 백성도 반드시 처벌해야 하거늘, 어찌 藩屬의 백성이라고 해서 잠시라도 너그럽게 용서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것은 모두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양국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매년 조회를 주고받았으나 아직 결말을 짓지 못하였으니, 지금 다시 더 이상 문자로 번거롭게 진술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작년 겨울 貴局의 다음과 같은 조회를 받은 바 있습니다.

鍾城·會寧·茂山 세 곳의 府使가 敦化縣에서 보고하여 파견한 인원에 대해 처리한 바는 공정하지 못합니다.

본 절도사는 이미 이와 같은 사정을 정부에 보고하고 따로 위원을 파견하여 공동감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아직 답장 지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여전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 일은 敵邦에 특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지, 억지로 우리 뜻을 따르게 하려고 번거롭게 문자를 보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래 鍾城·茂山 등지에서 귀 아문의 병사들이 깃발을 세우고 무기를 휴대하여, 위·아래로 왕래하면서 農畝를 불태워 없애고 백성을 몰아내어, 강 연안 일대가 황량하고 텅 비게 되었습니다. 見聞이 미치는데, 그 참혹함이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전 광서 9년에, 敦化縣 知縣인 趙敦誠은 貴 督辦軍務大臣 吳大澂과 鎮守吉林將軍 銘安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안에는 “학대하고 쫓아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不許凌虐驅逐)”라는 여섯 글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敵邦의 백성은 그 여섯 글자를 여전히 엄숙하게 암송하면서 마치 金石처럼 敬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오늘날 갑자기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경계를 정하는 일은 원래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만약 우선 그 백성을 (거주하지 못하게) 금한다면 어찌 다시 그 경계를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본 절도사가 이 땅을 守衛한 것이 이제 겨우 반년이 지났을 뿐입니다. 변경 사무에 대해서는 아직 周密하게 살피지 못하였으나, 오로지 백성을 편안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만약 한 명의 백성이라도 그 머무를 바를 얻지 못한다면, 敵邦에 죄를 짓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天朝에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앞두고 보냈던 조회는 모두 속마음을 진술한 것인데, 어찌 백성을 풀어놓아 禁命을 위반하게 하고, 생떼를 써서 영토를 얻으려고 한다고 하십니까? 저희에게 온 조회문 가운데 한두 구절은 조금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친 것 같습니다. 길림과 조선 경계를 구분하는 일은 실로 유지를 받들어 비석을 세운 곳이 있으니, 인원을 파견하여 함께 조사하기를 기다린 다음, 자연히 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貴 承辦께서 혼춘부도통에게 다시 보고하여 시급히 병사를 철수하시고, 백성으로 하여금 편안히 생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시해 해주신다면 참으로 다행이겠습니다.

(51) 문서번호 : 1-4-1-05 (1024, 1884b-1885a)

사안 : 중국인이 조선 백성을 괴롭히는 일을 조사하여 금지하고, 만일 조선 백성의 越境墾種으로 일어난 것이라면 함께 조사하고 적절히 협의하여 철수시킬 것을 자문으로 요청합니다(咨請查禁華人凌虐朝鮮民人, 倘朝民越界墾種而起, 會查妥議遣撤).

날짜 : 光緒十一年六月十四日(1885년 7월 25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吉林將軍 銘安

六月十四日 行吉林將軍銘安文稱.

光緒十一年六月初八日, 准北洋大臣咨.

據委辦朝鮮商務陳道樹稟.

朝鮮外部金允植面稱.

該國北境與吉林接壤, 時有華人往來, 驅逐人民, 燒毀農房, 沿江上下一帶空虛, 民不聊生. 疊接咸鏡北道節度使趙秉稷函開, 先後據鍾城·茂山·會寧等府縣稟報畧同, 應請我國設法諭禁.

繹趙秉稷所報並照會招墾局員各文, 似係朝民越疆開墾致釁. 但藩民必當體恤, 且該處地逼俄疆, 不可不設法查禁, 以杜後患.

等情. 據此.

查朝民越界墾種, 應彼此會查妥議遣撤, 未便凌虐. 昨朝鮮官吏曹參判等來津亦議及此事. 除咨吉林將軍迅查妥辦外, 應請查照轉咨施行, 並送鈔摺等件.

前來. 相應照錄原摺轉咨貴將軍, 迅速查明所稱華人驅逐朝民, 燒燬農房等情, 究因何事, 如以朝民越墾, 亦應行知該國商同辦理, 豈可遽使藩屬之民, 流離失所, 致有違言.

望即將辦理情形，咨覆本衙門可也。

6월 14일, 吉林將軍 銘安에게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냈습니다.

광서 11년 6월 8일, 北洋大臣의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委辦朝鮮商務 陳樹棠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조선의 外部督辦 金允植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조선국 北境과 吉林이 서로 인접해 있어 때때로 중국인들이 왕래하며 人民을 몰아내고 農房을 불태워 없애 강의 위·아래 연안 일대가 텅 비게 되어 백성이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누차 咸鏡北道 節度使 趙秉稷이 보낸 서신에 따르면 鍾城·茂山·會寧 등지에서 차례로 보낸 보고도 이와 대략 같으니, 응당 淸國에서 방법을 마련하고 지시를 내려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趙秉稷이 보고한 것과 아울러 招墾局 人員에게 照會한 문서를 상세하게 풀어 읽어보니, 조선인이 강역을 넘어 개간하였기 때문에 말썽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만 藩民은 마땅히 체휼해야 하며, 또한 해당 지역이 러시아 강역과 가까이 있으므로 방법을 마련하여 금지함으로써 後患을 막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사해보건대, 조선 백성의 越界墾種과 관련된 일은 응당 공동으로 조사하고 적절히 협의하여 그들을 철수시켜야 하지, 제멋대로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조선의 吏曹參判 등이 天津에 와서도 또한 이 일을 언급하였습니다. 吉林將軍께 자문을 보내어 신속하게 조사하고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는 것 외에도, 응당 이상의 내용에 따라 (총리아문에서) 자문을 전달하여 시행토록 해주시기를 요청하면서, 아울러 奏摺 초록 등을 보내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북양대신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응당 원 주점을 초록하여 귀 장군에게 자문으로 전달하니, 중국인이 조선 백성을 몰아내고 농막을 불태웠다고 하는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 조선 백성의 월간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역시 응당 조선에 통보하여 공동으로 논의하여 처리해야 하지, 어찌 조급하게 번속의 백성이 살 곳을 잃게 만들어 불만을 터트리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라건대 즉시 처리 상황을 본 아문에 자문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52) 문서번호 : 1-4-1-06 (1093, 1970a)

사안 : 東邊道 奎訓이 조선 義州府에 照會를 보내 通化縣의 압록강 연안 일대에 숨어든 조선 백성을 기한 내에 불러들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東邊道奎訓照會朝鮮義州府, 限期招回潛居通化沿江一帶朝鮮人民).

날짜 : 光緒十一年十一月十七日(1885년 12월 22일)

발신 : 軍機處

수신 : 總理衙門

十一月十七日, 軍機處交出慶裕抄片稱.

再, 本年十月初六日, 據東邊道奎訓詳稱.

轉據候補從九品王仁恕, 懷仁縣巡檢朱樹勳, 查明通化縣沿江一帶滋生·宏生·榮生三保有朝鮮民人五百三十戶, 計男女大小二千八十名口, 久經在此潛居, 不知始自何年. 現擬照會朝鮮義州府尹, 轉飭各該節制使, 予限一年, 陸續設法招回. 當經(奴才)批飭照辦, 惟不得稍事操切, 致生事端.

等因在案.

查朝鮮人民越界潛居, 實屬有違定制. 惟該國既係屬邦, 不得稍從寬典, 以示國朝懷柔之至意. 謹附片陳明, 伏乞聖鑒. 謹奏.

光緒十一年十一月十七日, 軍機大臣奉旨.

知道了. 著即飭屬妥爲辦理, 不得稍事操切, 致失懷柔屬藩之意. 欽此.

11월 17일, 軍機處에서 慶裕의 다음과 附片을 초록하여 보내왔습니다.

또한, 올해 10월 6일 東邊道 奎訓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候補從九品 王仁恕와 懷仁縣 巡檢 朱樹勳이 다음과 같이 보고한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通化縣 부근 압록강 연안 일대의 滋生·宏生·榮生の 三保에 조선 백성 530戶, 男女老少 인구 모두 2,080명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오래전부터 여기에 숨어들어와 살아 언제부터 거주하기 시작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현재 조선의 義州 府尹에게 조회를 보내 각 해당 節制使에게 지시를 전달하여, 1년을 기한으로 하여 계속해서 방법을 마련하여 조선 백성을 다시 불러들이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다만 조금이라도 서둘러 일을 처리함으로써 말썽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생각건대, 조선 백성이 疆界를 넘어 숨어들어와 살게 된 것은 실로 定制에 어긋납니다. 다만 조선은 屬邦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금 관대한 방식으로 처리하여 國朝에서 懷柔하려는 지극한 뜻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삼가 附片으로 아뢰니, 황상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옹드려 바랍니다. 이에 주를 올립니다.

광서 11년 11월 17일, 군기대신이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다.

알았다. 즉시 소속 관리에게 지시를 내려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라. 조금이라도 성급하게 처리하여 屬藩을 회유하려는 뜻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상.

(53) 문서번호 : 1-4-1-07 (1129, 2069a)

사안 : 조선의 安邊府使 李重夏가 조선 백성의 越墾 관련 등록 장부(印冊)를 서신과 함께 보내온 것을 초록하여 올립니다(鈔呈朝鮮安邊府使李重夏函送朝鮮民人越墾印冊).⁶⁴⁾

날짜 : 光緒十二年三月初六日(1886년 4월 9일)

발신 : 吉林將軍 希元

수신 : 總理衙門

三月初六日 吉林將軍希元文[詳見密檔].

草目 : 朝鮮安邊府使李重夏函送朝民越墾印冊, 抄函呈閱由.

3월 6일, 吉林將軍 希元이 보낸 문서[자세한 내용은 密檔에 보인다].

내용 요약 : 조선 安邊府使 李重夏가 조선 백성의 越墾관련 등록 장부(印冊)를 서신을 통해 보내왔으므로, 서신을 초록하여 올려보냈음.

64) 등록 장부(印冊. 즉 지방관의 직인이 찍힌 등록 장부를 가리킨다)는 발견되지 않으나, 이 서신은 楊昭全·孫玉梅, 『中朝邊界沿革及界務交涉史料彙編』(吉林文史出版社, 1994), 1187쪽 및 李澍田 主編, 『琿瑯副都統衙門檔案史料選』(吉林文史出版社, 1991) 中冊, 337쪽에 실려 있다.

간민 호적 편입과 개간지 측량 (墾民編籍與丈量墾地)

(54) 문서번호 : 1-4-2-01 (1356, 2491b-2492b)

사안 : 조선 會寧, 鍾城의 各 府使들이 누차 差役을 보내 越境하여 황무지를 개간한 조선 백성에게 재물을 강제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이미 조선국왕에게 자문을 보내어 嚴禁하도록 지시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朝鮮會寧, 鍾城各府使屢派差越境, 勒收墾荒韓民錢財, 已咨該國王轉飭嚴禁).

날짜 : 光緒十四年六月十七日(1888년 7월 25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六月十七日, 北洋大臣 李鴻章文稱.

光緒十四年六月十三日, 准吉林將軍希·吉林副都統恩咨開.

據委辦屯墾事宜·兼轄朝鮮通商稅務·花翎同知銜方令朗稟稱.

竊於四月初七日, 據代理通商局 奚知事鳳輝稟稱.

墾民紛紛赴局喊稱.

鍾城府差役，冒稱官示，派取錢文，追呼日處，以致男婦有不能安處之勢。

等情。據此。

無業貧民越吉墾荒，以圖衣食，似此無端冒勒墾民，何以相安。當即照會朝鮮會寧府。

確查差役勒索，是否奉示。

等情在案。

旋於二十日准會府照會，內開。

越墾之民，流離失業，雖極矜憫，前發給粟，特許代錢責納。嗣後此等控喊，幸勿聽理，均歸國地方官審辦。

等情。准此。

查朝鮮沿江地方，民有餘力，地無餘利，以故無業可耕者，越吉墾荒，藉謀衣食。我憲台保赤情殷，又復示以懷柔，聽其各安農業。卑職仰承憲意，俯體墾民，屢諭軍民毋許絲毫騷擾，尤必妥安置，冀其帖服樂從。顧所以休養斯民，實即維持大局，保護屏藩之意。韓員昧焉不察，如鍾城府飭差，越境派索，經卑職照請禁，又據會寧府來照等情。夫以韓民之流亡轉徙，韓員不為之憐憫，設法撫綏。及該民越吉墾荒，猶難必室家之飽暖，豈能容官吏之誅求。韓員乃又越境勒收。相彼墾民，念故土之莫歸，愴客鄉之滋累，進退狼狽，情胡以堪？且吉省墾民，在此尤恤其貧而分文不取。韓員越境魚肉，實屬有干例禁。至墾民因差索不堪，赴局稟訴。卑職照請查禁，似亦分所宜然。況越墾之區，華韓雜處，凡遇交涉事宜，卑職無不准情以平曲直。該墾民亦尚為之甘服，而無怨咨。茲查會寧府來照等詞，其強飾已往追呼之迹，預伏將來無厭之求，固已昭然若揭。似此情形，此方培補墾民之元氣，彼乃渙散墾民之心思，此方惠保墾民之身家，彼乃剝取墾民之財利。是直逼我墾民相率趨赴於俄，不誠猶風之偃草，水之就下也哉！民為邦本，本固邦寧。韓員不知大體，何竟如斯。誠如前奉北洋大臣鈞示，見小貪利，韓人之錮疾，良可悲也。卑職再四思維，擬以在吉墾民，嗣後韓員不准其給示越境派錢擾害，庶可以固結人心而維持大局。若徑據情照會，竊恐韓員未知省悟，而轉起猜嫌。除據情稟請北洋大臣鑒核，

可否咨請朝鮮國王，轉飭沿江各府使一體遵照外，理合稟請核奪祇遵。
等情。據此。韓民越境墾荒，該府使不設法撫綏，仍復剝取財利，殊屬不知大體。除
稟批示外，此合咨貴大臣，請煩查核咨行朝鮮國王，轉飭沿江各府使，一體遵照禁止
施行。

等因。到本閣爵大臣。准此。

除咨朝鮮國王查明情形，轉飭沿江各府使，一體遵照禁止派索見覆外，相應咨明貴衙
門，煩請查照。

6월 17일 북양대신 이홍장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광서 14년 6월 13일 길림장군 希元·吉林副都統 恩澤이 보낸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方郎이 올린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4월 7일 通商局을 대신 맡고 있는 知事 奚鳳輝가 올린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선) 개간민이 앞다투어 통상국으로 와서 말하기를, 鐘城府의 差役이 감히 관청의
고시를 내세우면서 돈을 부과하여 매일매일 돌아다니며 독촉하니, 남자든 여자든
편안히 지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방랑이) 생각건대 땅 없는 빈민들이 길림으로 넘어와 황무지를 개간하여 생계를 도모
하고 있는데, 이렇게 멋대로 월간민을 억지로 수탈한다면 어찌 편하게 지낼 수 있겠습
니까? 그래서 곧바로 조선의 會寧府로 조회를 보내,

차역들이 억지로 수탈하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달라.

고 하였습니다. 곧이어 20일 회녕부의 다음과 같은 답장 조회를 받았습니다.

월간민들은 땅을 잃고 떠도는 사람들이라 비록 매우 가련하기는 하지만, 이전에
창고를 열어 곡식을 지급한 적이 있으므로 특별히 대신 돈으로 반납하는 것을 독촉
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월간 백성이 그렇게 소란을 부려 호소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소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들어주실 필요 없으며, 모두
귀국 지방관이 알아서 처리해주십시오.

생각건대, 조선의 두만강 주변 지방에서는 백성에게는 남는 힘이 있지만 땅에는 남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땅은 없지만 경작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길림으로 넘어와 황무지를 개간하여, 그것으로 생계를 꺾고 있습니다. 저희 (상사) 대인께서는 어린아이를 보살피는 넓은 마음으로 이들을 품어 안도록 지시하셔서, 그들이 각자 농업에 안주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대인의 의사를 받들어 개간민을 돌보면서 누차 軍民들에게 조금도 소란을 피우지 말도록 지시하고, 더욱 적절하게 안치함으로써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백성을 休養하는 것은 바로 大局을 유지하고 藩屏을 보호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조선 관원은 어리석어 이런 점을 살피지 못하여, 이를테면 종성부에서는 차역에게 명하여 국경을 넘어가 억지 수탈을 하게 했고, 제가 조회를 보내 조사해서 금지하도록 요청하였더니, 앞서와 같은 회녕부의 조회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선 백성이 떠돌며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데, 조선 관원은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 방법을 마련하여 안치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백성이 길림으로 넘어가 황무지를 개간하기에 이르렀다면, 그 가족이 배부르고 따뜻하기는 분명히 어려울 터인데, 어찌 관리들의 가렴주구를 용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조선 관원은 다시 국경을 넘어가 강제 징수를 하려는 것입니다. 저 개간민들을 보면 고향에 돌아갈 수 없음을 알면서 객지에서 온갖 서러움을 당해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곤란한 처지에 있으니, 이런 상황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들은 이미 길림의 개간민이 되었고, 이곳에서는 그 가난함을 불쌍히 여겨 한푼의 세금도 거두지 않고 있는데, 조선 관원이 국경을 넘어와 억지로 돈을 내라 하고 있으니 이것은 실로 법령을 어긴 일입니다. 개간민이 수탈을 감당하지 못해 통상국으로 와서 호소하게 되자, 제가 조회를 보내 조사해서 금지해달라고 한 것은 직분상 당연한 일로 생각됩니다. 하물며 개간민이 월간한 지역은 중국인과 조선인이 뒤섞여 거주하는 곳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면 저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여 시비를 공정하게 가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 개간민 역시 기꺼이 받아들이고 아무런 원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녕부에서 보내온 조회의 내용을 보니, 과거에 돈을 강요하던 행적은 억지로 뒤덮어 버리면서도, 앞으로도 여전히 악착같이 수탈할 것이라는 속셈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쪽에서 개간민의 원기를 보충해 주면 저쪽에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놓고, 이쪽에서 개간민의 몸과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보호해주면 저쪽에서는 개간민의 재물을 억지로 수탈해갈 것이 뻔합니다. 이렇게 되면

마치 바람이 불면 풀이 드러눕고,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이 개간민을 억지로 꺾박하여 러시아로 떠 지어 도망가게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근본이 튼튼하면 나라가 편안합니다. 조선 관원이 大體를 모르는 것이 어찌 이와 같은 지경이란 말입니까? 실로 이전에 북양대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것을 보고 이익을 탐하는 것이 조선인의 고질이니, 진실로 슬픈 일입니다.

재삼 생각해보건대 길림 개간민에 대해서는 이후로 조선 관원이 지시 공문을 발급하여 국경을 넘어와 돈을 뜯어내고 소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심을 단결시키고大局을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조회를 보낸다면 아마도 조선 관원은 그 뜻을 몰라 반성하지 못하고 도리어 의심만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국왕에게 자문을 보내어 강변의 각 부사들에게 모두 따르도록 지시하게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지 이러한 상황에 기초하여 북양대신께 보고를 해서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하고, 아울러 장군과 부도통께도 보고하여 검토해주시는 다음 내려 주시는 지시를 따르고자 합니다.

(길림장군과 부도통이) 살펴보건대 조선 백성이 국경을 넘어와 황무지를 개간하고 있는데 해당 부사는 방법을 마련하여 그들을 안치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그 재물을 수탈하고 있으니, 정말로 大體를 모르는 바입니다. 보고에 대해 결재를 하여 지시함과 동시에 이에 귀 북양대신께 응당 자문을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검토해보시고, 조선국왕에게 자문을 보내 두만강변의 각 부사들에게 이러한 요청을 따라서 (조선 관원의 수탈을) 금지시키라고 지시하라는 요청을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요청을 받았으므로 북양대신은) 조선국왕에게 자문을 보내 상황을 조사하고 강변의 각 부사들에게 요청에 따라 모두 개간민에 대한 수탈을 금지하라는 지시를 전달하고, 아울러 이러한 상황에 대한 답변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응당 귀 총리아문에도 자문을 보내 알려드리니, 번거롭더라도 참고해주십시오.

(55) 문서번호 : 1-4-2-02 (1487, 2707a)

사안 : 조선 유민의 越壑 및 溫貴 海口의 통상에 관한 내용을 서신으로 상의했습니다(函商朝鮮流民越壑及溫貴海口通商).⁶⁵⁾

날짜 : 光緒十六年正月初六日(1890년 1월 26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北洋大臣 李鴻章

正月初六日, 發北洋大臣李鴻章信[詳見密啓].

草目 : 函商朝鮮流民越壑及溫貴海口通商由.

1월 6일, 북양대신 이홍장에게 보내는 서신[자세한 내용은 密檔에 보인다].

내용 요약 : 朝鮮 流民의 越壑 및 溫貴 海口의 通商에 관하여 서한을 보내어 상의함.

65) 이에 대한 이홍장의 답장은 기존 『李文忠公全集』 판본에는 「譯署函稿」 권20에 「論韓民越壑溫貴通商」이란 제목으로 실려 있다. 國家淸史委員會 編, 『李鴻章全集』(39권, 中華書局, 2007)에는 권35 『信函』 7, 8~9쪽에 실려 있다.

(56) 문서번호 : 1-4-2-03 (1520, 2756b)

사안 : 월간 조선민의 保甲 편입과 세금 부과 및 溫貴 海口의 棧房 설립에 관해 논의하여
주점을 상주하고, 諭旨를 초록하여 통보합니다.(議奏越壑韓民編甲升科並溫貴海口設
立棧房摺錄旨知照)

날짜 : 光緒十六年二月二十七日(1890년 3월 17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北洋大臣 李鴻章

二月二十七日, 行北洋大臣李鴻章文稱.

光緒十六年二月十八日, 本衙門議奏吉林將軍長順奏, 朝鮮越壑流民, 斷難刷還, 請編
甲升科, 並溫貴海口設立棧房等因一摺, 本日奉硃批.⁶⁶⁾

依議.

欽此.

相應恭錄諭旨, 抄錄原奏, 知照貴大臣欽遵可也.

2월 27일, 北洋大臣 李鴻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광서 16년 2월 18일 본 아문에서는 吉林將軍 長順이 조선 越壑流民은 결코 刷還시키기 어려우
므로 保甲에 편입시켜 과세하고, 아울러 溫貴 海口에 棧房을 세울 것을 간청하는 주점에 대하
여 논의한 다음 상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음과 같이 황상의 硃批를 받았습니다.

66) 주비(硃批)는 황제의 친필로 쓰였음을 보여주는 붉은색 먹으로 쓰인 주비유지(硃批諭旨)나 관부에서
붉은색 먹으로 내리는 결제지시(批示)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물론 전자를 가리킨다.

논의한 대로 처리하라.

따라서 마땅히 諭旨를 공손히 기록하고, 原奏를 초록하여 귀 대신에게 알리오니 삼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57) 문서번호 : 1-4-2-04 (1542, 2789a-b)

사안 : 조선 백성이 薙髮 때문에 분쟁을 일으켜 사람들을 모아 서로 다투었는데, 이미 진압하여 안정시켰습니다(韓民因薙髮起畔, 糾衆互毆, 已彈壓安靜).

날짜 : 光緒十六年五月二十五日(1890년 7월 11일)

발신 : 吉林將軍 長順

수신 : 總理衙門

五月二十五日, 吉林將軍 長順, 文稱.

案據署吉朝商務和龍總局, 鹽運使銜, 甘肅候補知府 葉守聯甲稟稱 :

鍾城座首吳仁之璧者(?), 因禁止韓民過江越壑一事, 乃向鍾城越壑各戶撒籤, 赴咸鏡北道衙門, 及駐紮朝鮮袁升道世凱處控告, 係三月十三日起程. 該道因此事先與卑局商妥, 然後辦理, 未收其呈, 該座首遂往袁升道處呈控. 又會寧對岸沿邊越窩韓民, 當未出示開丈之前, 有三十餘戶呈單, 自請薙髮, 迨前往該處勘丈, 已經一月之久, 復約定於二十一日, 一齊薙髮. 而通水坪頭牌二十餘戶, 則已先期薙髮, 該處牌頭帶領薙髮壑民一十二人, 前來請驗. 當令各回安業, 聽候給照爲憑. 先是砂松背牌頭曹起眞·申啓明, 亦已傳到, 面稱: “該溝韓民均願剃頭.” 因見通水坪韓民薙髮, 未先通知, 是以糾衆在途毆打, 當經彈壓.

各等情.

正在核辦間, 又據該守電稟,

該處韓民已安靜.

等語. 除飭該守等詳慎辦理外, 相應咨呈貴衙門, 謹請察核施行.

5월 25일 길림장군 장순이 보낸 다음과 같은 문서를 받았습니다.

길림·조선상무 화룡육총국의 업무를 임시로 관리하면서 鹽運使 직함을 가지고 있는 甘肅候補知府 葉聯甲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성의 座首 吳仁之에 의하면 조선 백성이 강을 넘어 월간하는 것을 금지한 문제에 대해서 종성의 월간한 각 가구에게 추첨을 시켜 사람을 뽑은 다음, 함경북도 아문과 조선(의 경성)에 주둔하고 있는 원세개 도대의 처소에 찾아가 고발을 하고자 하며 3월 13일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원세개 도대는 사전에 이 일을 먼저 저희와 상의한 다음 처리하기로 하였습니 다. 그런데 (함경북도 아문에서) 탄원서를 받아주지 않아, 해당 종성의 좌수는 마침내 원세개 도대에게 찾아가기로 한 모양입니다. 또한 회녕부 맞은편의 강 주변지역으로 건너와 거주하는 조선 백성은 아직 토지측량을 시작한다고 공고하기도 전인데, 30여 가구가 명단을 갖추어 糶鬻을 자청하였으며, 그곳에 가서 토지측량을 시작한 지가 이미 한 달이 넘었으므로 다시 21일에 일제히 치발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通水坪의 頭牌 20여 명이 미리 기일보다 앞서 치발을 하였고, 당지의 牌頭가 치발한 墾民 열두 명을 데리고 와서 점검을 요청하였으므로, 각기 돌아가서 생업에 안주하면서 증명서가 발급되기를 기다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砂松背의 胥두 曹起眞·申啓明을 불러왔더니, 역시 제 앞에서 “해당 지역의 조선 백성이 모두 치발을 원하고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통수평의 조선 백성이 치발을 하게 될 때 미리 알리지 않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리를 모아 길에서 이들을 구타하는 소동을 벌였던 바, 이를 진압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검토하여 처리를 하려던 중, 다시 엽련갑이 다음과 같이 전보로 보고해 왔습니다. 해당 지역의 조선 백성은 이미 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엽련갑으로 하여금 신중하게 처리를 지시하였지만, 또한 응당 이것을 귀 아문에 자문으로 알려드려 할 것입니다. 삼가 번거롭더라도 검토해 보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58) 문서번호 : 1-4-2-05 (1543, 2790a-b)

사안 : 조선 관원이 마음대로 백성이 월간하도록 풀어놓고, 세금을 탈루한 조선 상인들을
비호하므로, 이미 咸鏡道에 照會하여 질책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韓官縱民越壘,
徇庇漏稅韓商, 已照會咸鏡道轉行申斥).

날짜 : 光緒十六年五月二十五日(1890년 7월 11일)

발신 : 吉林將軍 長順

수신 : 總理衙門

五月二十五日, 吉林將軍 長順文稱.

據署吉朝商務局·甘肅候補知府葉聯甲稟稱.

竊卑府於本月十三日, 曾將派往鍾城, 探回情形稟聞, 計已仰邀鈞鑒. 頃接稽查處一
帶丈委員 塔爾幹, 書識 梁瀚函稱.

於本月初四日奉諭.

飭令沿江一帶, 先行勘丈.

於初五日, 由成珠洞等處, 直丈至哈喇. 蓋鍾城界止連前已丈有一千二百垧之
譜.⁶⁷⁾ 初十日, 復奉諭示.

飭通事 王永會, 過江密探韓民動靜.

是日命該通事, 前赴會寧, 密探詳細. 十二日一 據該通事回稱.

正入會寧城內, 忽見韓民群集, 僉云陳稅官私囑韓民, “大國巡查雖嚴, 只能禁
止白天, 何能防守黑夜? 爾等民不防夤夜過江耕種, 安然無事.” 並云: “陳稅官
不幾日, 抵總局, 詢及督理, 既命北岸韓民行薙髮, 試問一人給地多少, 竟將韓

民收華民.”謂中國有牢籠之意. 并又云及薙髮一節, 似覺不易, 未識將來如何. 丈地憑票, 萬不能遽發. 其中南北兩岸韓民, 詭詐百出.

各等情.

伏查會北岸越窩韓民, 早經呈單, 情願薙髮, 搬回甚屬寥寥. 該城府使已死三月有餘, 主事者係書記稅官. 自陳洪九於前月下旬委署該城稅官後, 不惟縱令南岸韓民過江偷墾, 北岸韓民, 被其暗中把持, 疑惑不定, 未敢遽行薙髮, 而且查出韓商偷漏寔據, 竟敢違抗, 人稅俱不交, 去文又不回覆, 殊屬可惡. 此人在鍾城, 會寧充當稅官多年, 素有刁名. 卑府愚見, 擬將此次查出情節, 暨副帥發來曉諭韓民薙髮歸化告示抄稿, 照會咸鏡北道, 請其申飭. 是否可行, 稟請示遵.

等情. 到本督辦將軍. 據此.

查韓官縱民越墾, 循庇漏稅韓商, 抗不交出, 去文又不回覆, 其情殊覺可惡. 自不妨照會該國咸鏡道, 轉行申飭. 其餘傳聞之辭, 尚無實據, 防之在我, 無須先與之辨, 致令有所藉口. 除批示外, 相應咨呈貴衙門, 請核施行.

5월 25일, 吉林將軍 長順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길림·조선상무국의 업무를 임시로 대리하는 감숙성후보지부 엽련갑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달 13일에 일찍이 종성에 파견하여 탐문한 상황을 보고로 올린 바 있는데, 이미 살펴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전 稽查處 일대의 淸丈委員 塔爾幹과 書識 梁瀚이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이번 4일 “두만강 일대 지역부터 우선 토지 측량을 실시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들어 5일에 바로 成珠洞 등지에서 시작하여 哈喇까지 측량을 하였습니다. 대개 종성과의 경계 지역은 이전에 측량한 것까지 합치면 모두 1,200垧 정도 됩니다. 그리고 10일에

67) 상(垧, 垧, 垧)은 동북 지역에서 사용하는 토지면적 단위로 약 15무(畝)를 가리킨다. 무(畝)는 청대의 경우 1보(步=5尺)×240보의 면적을 가리킨다.

다시 “通事 王永會를 강 건너로 보내 비밀리에 조선 백성의 동정을 파악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바로 해당 통사로 하여금 회녕에 가서 상세하게 몰래 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12일에 해당 통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신을 받았습니다.

회녕 성내로 들어가자마자 조선 백성이 모여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말하기를, 陳(洪九) 稅官이 “중국의 순찰이 비록 엄하다고는 하지만, 단지 낮에만 금지할 뿐일 터이니, 어찌 캄캄한 밤을 밤에 지킬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만약 지키지 않는 깊은 밤에 강을 건너가 경작을 한다면, 안심할 수 있고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고 백성에게 사적으로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르기를, “진(홍구) 세관이 며칠 후 충국에 가서 이미 두만강 북안의 조선 백성에게 모두 치발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니, 한 사람당 토지를 얼마나 나눠주며 조선 백성을 중국 백성으로 거두게 되는 것이냐고 督理에게 물어볼 것이다”고 하면서 중국이 우리를 구슬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치발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장차 어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토지를 측량하여 증명서류를 나눠주는 일은 결코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두만강 남북 양안의 조선 백성 사이에서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보고를 받았습니다.) 생각건대 회녕 북안에 넘어와 살고 있는 조선 백성은 일찍이 명단을 올려 치발을 자원하였으며, 강을 건너 돌아가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會寧府使는 사망한 지 이미 3개월 남짓 되었으므로 일을 맡고 있는 자는 書記 稅官입니다. 이 陳洪九가 지난달 하순 會寧稅官으로 위임된 다음 두만강 남쪽의 조선 백성에게 강을 건너가 몰래 개간하도록 종용하고 있어, 두만강 북안의 조선 백성은 그에 의해 몰래 조종을 당하면서 의혹을 확실하게 풀지 못해 감히 일거에 薙髮을 거행하고자 하지 않을뿐더러, 조선 상인이 몰래 세금을 脫漏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조사하여 찾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항거하며 사람과 세금 모두를 내놓지 않으며, 문서를 보내도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으니, 이는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이 사람은 종성과 회녕에서 세관을 담당한 지 몇 년째로 평소에도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조사한 상황과 조선 백성에게 치발을 하여 귀화하라고 알린 혼춘부도통의 告示文 초고를 함경북도에 조회하여 그것을 알리도록 요청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방안을 시행해도 좋을지에 대해 보고를 올리니, 청컨대 지시를 내려 주시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조선 관리가 백성을 중용하여 월간을 시키고 세금을 탈루한 조선 상인을 비호하면서 항거하여 세금과 사람을 내놓는 것을 거부하고, 공문을 보내도 답장하지 않는 것은 매우 가증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선 함경도에 조희를 보내어 다시 지시를 하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전해 들은 말들은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이쪽에서 대비하고 있으면 되지, 미리 말을 꺼내어 그것을 빌미로 삼게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답장 지시를 내리는 것 외에도 응당 귀 아문에 자문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번거롭더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 문서번호 : 1-4-2-06 (1544, 2791a-2792b)

사안 : 러시아의 界務官(廓米薩爾)⁶⁸이 寧古塔 소속 三岔口 등 지역의 越壘 조선민에게 중국
의 旗人이나 일반 백성의 경우처럼 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俄廓米
薩爾照請, 將寧屬邊界三岔口等處越壘韓民, 依旗民例, 發給票照).

첨부문서 : 「寧古塔 副都統이 받은 界務官의 조회(寧古塔副都統收廓米薩爾照會)」

날짜 : 光緒十六年五月二十八日(1890년 7월 14일)

발신 : 吉林將軍

수신 : 總理衙門

五月二十八日, 吉林將軍 長順文稱 :

邊務承辦處案呈.

案照前准寧古塔副都統咨.

據俄官廓米薩爾照會, 內稱.

本俄國與朝鮮所定交易和約, 朝鮮人應往俄國邊界謀生交易買賣等事務, 須由原
定處請領票照, 方准兩國邊界越行. 查中國所屬邊界三岔口等處住之高麗人甚多,
或中國所屬, 或朝鮮國所屬, 希即照覆. 如將該高麗人算中國所屬, 均飭作華民之
樣. 仍應酌量嚴飭地方官, 將中國所屬高麗, 務必貴處所定票照, 與旗民人等, 懇
爲一樣.

68) 원문은 커미샤르(廓米薩爾)로 되어 있는데 아마 commissar(소련 시절에는 공산당의 통제위원이나 인민
위원을 뜻했다)의 음역(音譯)인 것 같다. 중국 측 자료에서는 계무관(界務官)으로 번역되고 있어 이에
따랐다. 영어로는 community service officer으로도 번역된다.

等情。

飭據卡官查明。

三岔口邊界內有墾地，高麗男婦子女，共六十六戶，計男一百七十九名，婦女一百三十四名，共三百一十三名。內有薙髮四十五名。

等情。咨請核示前來。

本將軍查朝鮮與俄通商，係在朝俄接連之地。今細譯該廓米薩爾照會，直欲以朝俄兩國之和約，施我中國之邊界，未免有心牽混。且朝鮮係中國藩服，其民人與中國所屬民人無異。所有越墾越寓之人，應如何辦理，我中國自有權衡，毋庸該廓米薩爾過問。至中國與俄國邊界事務，載在條約，此後廓米薩爾於中俄邊界各事，自宜按照條約辦理，以敦和誼。應由該副都統妥擬照會駁結，免貽後患。至此項越墾越寓朝民，至六十餘戶之多，該官事前未能杜絕，事後又循隱不報，殊堪痛恨。或悉數驅逐，恐致流離失所，深堪憫惻。自應倣照琿春現辦越墾朝民奏定薙髮升科章程，以仰副朝廷字小之意。令該未薙髮者，行飭回該國。除咨覆該副都統照辦理外，相應錄俄官照會，覆呈貴衙門，謹請核施行。

抄錄粘單：「大俄國烏蘇境廓米薩爾照會大清國寧古塔副都統」

爲 照 會 事。

本一千八百八十八年，本俄國與朝鮮國彼此所定交易和約，想是貴副都統亦知道矣。照此和約，朝鮮國所屬人等，應往本俄國所屬邊界謀生，以致交易買賣等事務，須由原定處請領票照，方准兩國邊界越行矣。查中國所屬邊界三岔口等處住之高麗人等甚多矣。爲此照會貴副都統，將三岔口等處住之高麗人等，或中國所屬，抑或朝鮮國所屬(人等)，希給廓米薩爾照覆。如將該高麗算爲中國所屬，將那高麗人頭髮均飭作爲華民之樣，本處高麗，由朝鮮國所致高麗，易便分晰矣。查前琿春地方副都統，現授黑龍江將軍依克唐阿，“將琿春所屬地方高麗以那樣”等語。茲願貴琿春副都統恩亦如此那樣矣。仍應酌量嚴飭所屬地方官等，將中國所屬高麗，務必貴處所定票照，與旗民人等⁽⁶⁹⁾ 懇爲一樣

飭領. 爲此照會.

5월 28일 길림장군 장순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서를 받았습니다.

변무승판처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전에 寧古塔副都統의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界務官의 다음과 같은 조회를 받았습니다.

본국과 조선에서 정한 무역조약에서는, 조선인이 러시아 변계에 가서 생계를 도모하고자 교역과 매매 등의 일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원래 정착한 곳에서 증명서를 신청해서 수령한 다음에야 비로소 양국 변계를 넘나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니 중국 소속 변계인 三岔口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이 매우 많은데, 이들이 중국 소속인지 아니면 조선 소속인지, 답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조선인(高麗人)이 중국 소속이라면, 모두 중국인 모양으로 (머리 모양을) 바꾸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응당 적절하게 지방관에게 지시를 내려 중국 소속 조선인들도 旗人이나 일반 백성과 마찬가지로 힘써 귀처에서 정한 것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초소 관리에게 조사·확인을 지시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보고해 왔습니다.

삼차구 변계 내에 토지를 개간한 조선인 남녀노소는 모두 66가구입니다. 남자는 179명이고, 여자는 134명으로, 총 313명인데, 그 가운데 薙髮을 한 사람은 45명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다음 지시를 내려 주시기를 요청하는 자문이 본 길림장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본 장군이 살펴보니 조선과 러시아의 통상은 조선과 러시아의 접경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 계무관의 조회를 자세히 살펴보니 조선과 러시아 양국의 조약을 우리 중국의 변계에 적용시키고자 하고 있으므로, 고의로 끌어다 혼동시키고자 하는 혐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선은 중국의 藩服이니, 그 백성은 중국 소속의 백성이나 다를 바

69) 보통 기(旗)는 팔기에 소속된 기민(旗民)을 가리키며, 민인(民人)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 일반 한인(漢人) 백성을 가리킨다. 따라서 여기서 기민인(旗民人)이라고 하는 것은 청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없습니다. 경계를 넘어가 개간하거나 거주하는 모든 백성에 대해 응당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는 우리 중국이 당연히 스스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바, 러시아 계무관이 개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변경 사무는 조약에 실려 있는 바, 앞으로 러시아 계무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변경 관계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응당 조약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和誼를 돈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응당 해당 부도통이 이러한 의견을 적절히 조회로 보내 반박하도록 함으로써 후환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를 넘어가 개간하거나 거주하는 조선인이 60여 가구나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변경 초소의 관리가 사전에 두절하지 못하였고, 사후에도 숨기고 보고하지 않았으니 특별히 통탄할 만한 잘못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만약 모두 (월간한 조선 백성을) 쫓아낸다면 떠돌아다니며 정착할 곳을 잃게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몹시 측은합니다. 응당 琿春에서 현재 월간 조선 백성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전에 상주하여 재가를 받은 바 있는 치발과 세금부과에 관한 章程을 모방함으로써 작은 나라를 어여뻐 여기는 조정의 德意에 부합해야 할 것이며, 아직 薙髮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선으로 되돌려보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寧古塔副都統에게 답장함으로써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 외에도, 또한 응당 러시아 변경관의 조회를 옮겨 적어 귀 총리아문에 자문으로 올려보내니, 번거롭더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 「대러시아 우수리 지역 계무관이 (대청국의 영고탑부도통에게 보내는) 조회」

大清國 寧古塔副都統에게 조회를 보냅니다. 1888년 본국과 조선이 체결한 무역조약에 대해서는 귀 부도통 역시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조약에 따르면 조선국 소속 백성이 본국 소속 변경에 와서 생계를 도모하고자 교역과 매매 등의 일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원래의 거주지에서 증명서를 신청하여 수령한 다음에야 비로소 양국 변경을 넘나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보면 중국 소속 변경인 三岔口 등지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고려인)이 매우 많습니다. 이에 귀부 도통에게 조회를 보내니, 삼차구 등지에 거주하는 조선인 등이 중국 소속인지, 아니면 조선 소속인지에 대하여 계무관에게 답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조선인들이 중국 소속이라면, 그들의 머리 모양을 모두 중국인과 같은 모양으로 바꾸게 함으로써, 본래 조선에 거주하다가 조선에서 온 조선인들과 쉽사리 분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에 琿春 지역 副都統이었고 현재 黑龍江將軍의 관직을 받은 依克唐阿는 혼춘 소속 지방 조선인들에게 모두 머리모양을 중국인처럼 바꾸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컨대 귀 혼춘부도통 恩(澤)도 마찬가지로 (조선인들에게 모두 머리모양을) 중국인처럼 바꾸게 하라고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휘하의 지방관들에게 적절하게 엄한 지시를 내려 중국 소속의 조선인들도 일반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같은 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조희를 보내는 바입니다.



(60) 문서번호 : 1-4-2-07 (1550, 2807b)

사안 : 三岔口 邊界의 조선 백성이 만일 러시아 영토로 가서 생계를 도모하고자 할 때는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증명서를 발급해주십시오(三岔口邊界韓民如往俄界謀生, 可照華民一律發給照票).

날짜 : 光緒十六年七月初一日(1890년 8월 16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吉林將軍 長順

七月初一日, 行吉林將軍長文稱.

光緒十六年五月二十八日, 接准來文內稱.

據俄官廓米薩爾照稱.

朝鮮人往俄國邊界謀生, 須領票照. 中國邊界三岔口等處所住高麗人甚多, 或中國所屬, 或朝鮮國所屬, 希即照覆, 如將該高麗人算爲中國所屬, 均飭作爲華民之樣, 所定票照與旗民人等懇爲一樣.

等情.

查三岔口邊界內有墾地高麗六十六戶. 茲或悉數驅逐, 恐致流離失所, 應俟照琿春現辦越墾朝民奏定薙髮升科章程, 令該未薙髮之朝民一律薙髮, 服我政教, 仍飭安分耕種, 勿得擅行越遍俄界, 滋生事端. 其不願薙髮者, 即行飭回該國.

等因. 前來.

查俄官欲詢明在中國境內所住之朝民, 是否作爲華民, 似尚無他意. 貴處擬照琿春辦法, 飭令三岔口邊境內墾地之朝民一律薙髮. 此後如過俄界, 應給照票, 自可照華民一律辦理. 但琿春越墾朝民薙髮升科, 係屬奏明辦理. 貴處(下缺).

7월 1일, 吉林將軍에게 다음과 같은 문서를 발송하였다.

광서 16년 5월 28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러시아 계무관이 다음과 같은 조회를 보내왔습니다.

조선인이 러시아 변계에 가서 생계를 도모하고자 교역과 매매 등의 일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원래 정착한 곳에서 증명서를 신청해서 수령한 다음에야 비로소 양국 변계를 넘나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니 중국 소속 변계인 三岔口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이 매우 많은데, 이들이 중국 소속인지 아니면 조선 소속인지, 답장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조선인이 중국 소속이라면, 모두 중국인 모양으로 (머리 모양을) 바꾸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응당 적절하게 지방관에게 지시를 내려 중국 소속 조선인들도 旗人이나 일반 백성과 마찬가지로 힘써 귀처에서 정한 것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건대, 三岔口 邊界 내의 개간지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은 66호입니다. 현재 만일 (이들을) 남김 없이 모두 쫓아낸다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될까 두려우니, 응당 琿春에서 현재 越壘 조선 백성을 처리하는 「奏定薙髮升科章程」에 비추어 薙髮을 하지 않은 조선 백성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薙髮을 하여 우리의 政教에 복종하게 하고, 또한 안심하고 거주 하며 농사를 짓되, 마음대로 러시아 영토로 넘어가 말썽을 일으키지 않도록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 薙髮을 원하지 않는 자는 즉시 조선으로 돌아가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생각건대, 러시아 관원이 중국 경내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 백성을 중국인으로 간주해야 하는 지 여부를 문의했던 것에는 별다른 뜻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귀처에서 琿春의 처리 방법에 비추어 三岔口 邊界 내의 개간지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들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薙髮하도록 지시하십시오. 이후 만일 러시아 영토로 넘어가야 하는 경우에 응당 증명서를 발급하되, 당연히 실로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琿春의 越壘 조선 백성의 薙髮과 升科⁷⁰⁾는 (황상께) 상주하여 확인을 받은 다음 처리한 것입니다. 귀처에서도(이하 결락)[아마 이와 같은 처리 방식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70) 개간된 토지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가리킨다.

(61) 문서번호 : 1-4-2-08 (1554, 2812a-b)

사안 : 三岔口 邊界 조선 백성이 薙髮하여 중국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러시아에 갈 때는 또한 일률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것이라는 내용의 답장 조희를 이미 러시아 관원에 게 보냈습니다(三岔口邊界韓民薙髮作爲華民赴俄亦一律給照已照覆俄官).

날짜 : 光緒十六年七月十四日(1890년 8월 29일)

발신 : 吉林將軍 長順

수신 : 總理衙門

七月十四日 吉林將軍長順文稱.

邊務承辦處案呈.

本年六月二十六日, 准甯古塔副都統咨開.

於本年六月十九日, 准將軍衙門咨開.

邊務承辦處案呈.

於五月二十三日准貴副都統咨開.

前據俄官照稱.

本俄國與朝鮮所定交易合約, 朝鮮人應往俄國邊界謀生交易買賣等事務, 須由原定處請領票照, 方准兩國邊界越行. 查中國所屬邊界三岔口等處住之高麗人甚多, 或中國所屬, 或朝鮮國所屬, 希給照覆. 如將該高麗人算爲中國所屬, 均飭作爲華民之樣. 仍應酌量嚴飭地方官, 將中國所屬高麗, 務必貴處所定票照與旗民人等懇爲一樣.

等情. 前來.

查琿春與朝鮮僅止一江之隔，三岔口居住之韓民距塔窩遠，其現居之戶均令薙髮，安分耕種，其不願薙髮者，即令飭回本國。除札飭卡官遵照外，並擬清漢照會先行咨請更正，俟示覆到日。再遞俄官廓米薩爾查照，合將所擬照會抄粘文尾，呈請咨報查核示覆遵辦。

等因。准此。

當查所擬照會尚屬妥協。茲畧改數語，似較周密。相應咨覆貴副都統，請煩查照辦理，仍將照會日期報查可也。

等因。前來。

遵即按照示准所擬照會一併附入封筒，於六月二十一日咨送琿春副都統衙門轉遞俄官廓米薩爾查照去訖，合將遞行俄照日期相應備文咨報將軍衙門查核。

等因。准此。

相應抄粘照會咨呈，爲此咨呈貴衙門，謹請查核施行。

7월 14일, 吉林將軍 長順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邊務承辦處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 문서를 올렸습니다.

올해 6월 26일, 寧古塔副都統이 보낸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니다.

올해 6월 19일, 將軍衙門에서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내왔습니다.

邊務承辦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안 문서를 올렸습니다.

5월 23일, 貴 副都統이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전에 러시아 관원이 다음과 같은 조회를 보내왔습니다.

본국과 조선에서 정한 무역조약에서는, 조선인이 러시아 변계에 가서 생계를 도모하고자 교역과 매매 등의 일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원래 정착한 곳에서 증명서를 신청해서 수령한 다음에야 비로소 양국 변계를 넘나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니 중국소속 변계인 三岔口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이 매우 많은데, 이들이 중국 소속인지 아니면 조선 소속인지, 답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조선인(高麗人)이 중국 소속이라면, 모두 중국인 모양으로 (머리 모양을) 바꾸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응당 적절하게 지방관에게 지시를 내려 중국 소속 조선인들도 旗人이나 일반 백성과 마찬가지로 힘써 귀처에서 정한 것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고탑부도통이) 생각건대, 琿春과 朝鮮은 단지 강 하나 만큼만 떨어져 있고, 三岔口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은 甯古塔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戶들에게 모두 薙髮을 하고 편안히 농사를 짓도록 하였고, 薙髮을 원하지 않는 자들은 즉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변경 초소의 관리에게 지시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조회를 보내기에 앞서 자문을 보내니, 청컨대 更正해야 할 부분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계무관이 보낸 조회를 검토하고 답장 조회의 초안을 마련하여 문서 말미에 첨부하여 자문으로 보고하오니, 검토하여 지시를 내려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길림장군이 생각건대) 마련된 초안 조회를 검토해보니 그래도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대략 몇 가지 단어만 바꾼다면 더욱 周密해질 듯합니다. 따라서 貴 副都統에 답장의 자문을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검토하여 처리하시길 바라고, 아울러 조회를 보내는 시일을 보고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고탑부도통은) 지시에 따라 즉시 초안을 마련한 조회를 모두 봉투에 넣고 6월 21일 혼춘부도통 아문에 자문으로 보내어 러시아 계무관에게 전달하여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응당 러시아에 조회를 건네준 날짜를 문서를 갖추어 장군 아문에 자문으로 보고하여, 장군 아문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길림장군은) 응당 이상의 조회와 자문을 초록하여 부록으로 붙인 다음, 귀 총리아문에 자문으로 보고해야 할 것이니, 총리아문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문서번호 : 1-4-2-09 (1557, 2816a-2818a)

사안 : 원세개가 중국 호적에 편입된 越壑 조선 백성을 여전히 조선 호적에 예속시켜 달라는 조선국왕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袁世凱已拒, 韓王欲將編入華籍越壑韓民, 仍隸韓籍之請).

첨부문서 : 1. 「조선 外部督辦 閔種默이 袁世凱에게 보낸 서신(袁世凱收韓外署督辦閔種默函)」

2. 「袁世凱가 閔種默에게 보낸 답장(袁世凱覆函)」

날짜 : 光緒十六年七月二十六日(1890년 9월 10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七月二十六日, 北洋大臣 李鴻章文稱.

據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道員袁世凱稟稱.

竊於本月初九日, 接准韓外署督辦 閔種默函請轉電.

請將吉林邊界越壑韓民編籍一案, 姑請停止.

等情.

業經擇要, 據情電稟. 旋奉憲台均覆電開.

吉邊越壑韓民, 早經奏准編籍, 可由汝查案函覆知照.

等語.

職道遵奉歷年檔案, 具函覆駁. 去後.

嗣據閔種默來談 :

王意欲奏懇天恩，仍准將韓民歸韓籍，暫借吉界安插。其地丁徵課，及法律政令，均由吉邊地方官約束，而衣冠蓄髮，仍存其舊。

等語。

職道答以，

收回之限，已逾多年，薙髮變服之令，已行數月，恐不及追。不如妙選邊官，善撫循安集，則以後韓民自不至更思越境，防其將來，庶幾其可也。種默惟以不能自專為辭，云云。謹將職道與韓外署來覆兩函，錄繕摺呈查核。

等情。到本閣爵大臣。據此。

除批，“稟摺閱悉。吉林邊界越墾韓民，該國欲令仍隸韓籍，仍為韓官越徵租稅起見，礙難允准。編籍之案，早經奏定，薙髮易服之令，行之數月，未便遽議更改。該國不願韓民改籍，何如不令韓民出境。該道答閔種默謂，‘惟有妙選邊官，撫循安集，韓民不致更思越境’自是代籌善策。候分咨總理衙門·吉林將軍查照。”等因。印發分咨外，相應咨明貴衙門，請煩查照。

照錄清摺

謹將[職道]與韓外署來覆兩函，照繕清摺，恭呈鑒核

計開：

(1) 「韓外署來函」

[謹將職道與韓外署來覆兩函，照繕清摺，恭呈鑒核。計開：韓外署來函]

逕啓者。頃奉國王殿下教。

昨據北道按撫使 南廷順啓稱。

近月間中國邊界官 葉知府，勒限在華界韓民，薙髮變服，編爲華民，並抄呈葉知府告示，“定限兩旬，一律遵辦。”

各語。本國民越寄華界，尚未奉有明旨，及禮部咨文，編入華籍。而該邊官何以竟勒限，令韓民薙髮變服，殊深疑訝。且越寄韓民，計有數萬，一時迫令治髮變服，尤慮激生事端，極爲懸念。本應具咨文，咨詢禮部，恐往返須時，即往商袁總理，轉電北洋，吉林各處，姑停現今，俟咨商禮部，明白妥定，再爲施行，方合事體。等諭。特此奉聞，請即電請停止，俟咨商妥定爲幸。敬頌勛祺。

閱種默 頓

七月初九日

(2) 「(職道)覆函」

逕覆者。

照得本月初九日，接准貴督辦函開。

云云。俟咨商妥定爲幸。

等因。准此，

即於初十日，據轉電稟北洋大臣李，鑒核施行。旋於本月十二日，奉到電覆諭開。

吉邊越墾韓民，早經奏准編籍，可即查案函覆知照。

等因。奉此，此案自光緒七年，經前任吉林將軍 銘(安)，督辦邊防事宜 吳(大澂)，奏准將沿江一帶越墾朝鮮流民，查明戶籍，分歸琿春，及敦化縣管轄。八年經貴國王咨請刷還，十一月初二日，奉上諭。

寬限一年，將該流民收回安插。

欽此。

十一年經貴國王咨，由禮部奏請，派員會勘圖們江界，當由總理衙門遵旨議奏，復請飭下吉林將軍，查明界址，派妥委員，會同韓派官員，確證指明，俾免懷疑爭執。並分別

飭將流民收回安插，其難於遷徙者，奏明酌量隸入版圖，各安生業。七月二十日，奉旨。
依議。

欽此。

由北洋大臣恭錄，咨覆貴國王查照，並由本總理照送前督辦 金[允植]查照各在案。事
經九年，貴政府仍事延宕，所有流民終未刷還，以是十六年二月間，總理衙門復奉文，
吉林將軍 長奏稱“越墾流民，斷難刷還”各節，議請“編甲升科。”奉旨。

依議。

欽此。

至吉林商局 葉守現辦各務，實由奉旨遵行。貴政府擬請停止，其勢自有所不能也。謹
遵飭援案函復，希查照轉稟。此頌升祺。不一。

七月十四日

7월 26일 북양대신 이홍장의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도대 원세개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달 9일 조선 外署督辦 閔鍾默의 서한을 받았는데, 길림 변계 지역의 월간 조선민을 호적에 편입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대신 전보를 쳐서 잠시 정지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내용의 요점을 추려서 전보로 보고를 올린 바 있는데, 이어 대인[이홍장]께서 전보로 다음과 같이 답장하면서 지시하였습니다.

길림 변계의 월간 조선민에 대해서는 일찍이 호적에 편입시킬 것을 상주하여 재가를 받은 바 있으니 즉시 기존 안건을 찾아 서신으로 답장해주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역대 안건을 검토하여 서한으로 반박하는 답신을 보냈는데, 그 후 閔鍾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왕의 뜻은 황상의 은혜를 간청하는 상주를 통해 조선민을 조선적(韓籍)으로 귀속시키되, 잠시 길림 변계 지역을 빌려 (이들을) 안치하려는 것입니다. 토지세와 인두세의 징수 및 법률·정령은 모두 길림 변계의 (중국) 지방관이 관할하되, 머리 모양과 옷차림

은 옛 방식(즉 조선 방식) 그대로 뇌달라는 것뿐입니다.

이에 대해 저(원세개)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거두어들이기로 한 기한이 이미 몇 년이나 지났고, 머리 모양과 옷차림을 바꾸라는 명령이 시행된 지 이미 수개월 지났으니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로지 (조선의) 지방관을 제대로 선발하여 이들을 잘 안무하고 안정시켜 이후 조선 백성이 스스로 다시 월경할 생각을 하지 않게 함으로써 장래를 방지하는 것이 아마 훨씬 더 나은 방법일 것입니다.

閔鍾默은 오로지 “제 맘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삼가 저와 조선의 外藩 사이에 오고 간 두 통의 서한을 선록하여 올려보내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이홍장은) 다음과 같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보고서와 주접을 모두 읽어보니, 길림 변경의 월간 조선민에 대하여 조선에서는 조선적으로 예측시키고자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조선 관리가 두만강을 넘어와 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런 것 같으니 허용하기는 곤란하다. 호적 편입에 대한 안건은 일찍이 상주하여 정해진 것이고, 머리 모양과 옷차림을 바꾸라는 명령은 이미 행해진 지 수개월이라 갑자기 논의하여 다시 고치기 곤란하다. 조선에서 조선 백성이 호적을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조선 백성이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 될 것이 아닌가? 원세개가 閔鍾默에게 답하여 이르기를 “오로지 지방관을 제대로 선발하여 이들을 잘 안무하고 안정시켜 이후 조선 백성이 스스로 다시 월경할 생각을 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최선의 대안이다. 총리아문과 길림장군에 나누어 자문을 보내어 참고하게 하는 것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직인을 찍은 다음 나누어 자문을 보내는 것 외에도 응당 귀 아문에도 자문으로 알려져 할 것이니, 번거롭더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분서 :

본 도대(원세개)와 조선 외서독판이 주고받은 서신을 그대로 베낀 다음 삼가 올려서 검토를 받고자 합니다.

첨부내용 :

(1) 「조선 外部督辦 閔種默이 袁世凱에게 보낸 서신」

삼가 알립니다.

얼마 전에 국왕 전하의 다음과 같은 구두 지시를 받았습니다.

어제 함경북도 안무사 南廷順이 다음과 같은 보고를 올렸다.

최근 한 달 사이 중국의 변경 지방관 葉聯甲 知府가 중국 경내에 있는 조선 백성에게 기한을 설정하여 머리 모양과 옷차림을 바꾸게 하고 중국 호적으로 편입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울러 葉 지부가 “20일을 기한으로 정하니, 일률적으로 따라 처리하라”고 고시한 내용을 베껴 올립니다.

조선 백성이 중국 경내로 넘어가 기거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중국 호적으로 편입시킨다는 상유나 예부의 자문을 받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그 지방관은 어찌 강제로 머리 모양과 옷차림을 바꾸도록 조선 백성에게 요구하는지 매우 의아하다. 또한 넘어가 기거하고 있는 조선 백성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한꺼번에 머리 모양과 옷차림을 바꾸도록 강요한다면, 특히 말썽이 생기도록 자극하지 않을까 몹시 걱정스럽다. 응당 자문을 갖추어 예부에 문의해야 하겠지만, 오고 가는데 시간이 걸릴까 걱정되니, 즉시 가서 원세개 총리와 상의하여 북양대신과 길림장군에게 각기 전보를 대신 보내도록 요청하라. 그래서 잠시 현재의 일처리를 중단하고, (조선에서) 예부에 자문을 보내어 상의한 다음 분명하고 적절하게 결정하기를 기다려 다시 시행하는 것이 바야흐로 이치에 맞을 것이다.

이러한 특별 지시를 받았으므로 즉시 전보를 보내 정지 요청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문을 보내어 상의함으로써 적절히 결정되는 것을 기다릴 수 있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삼가 귀 총리의 행운을 빕니다.

민중묵이 인사드립니다.

7월 9일

(2) 「원세개의 답장 서신」

바로 답장을 보냅니다.

이번 달 9일 귀 독관의 다음과 같은 서신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보내어 상의함으로써 적절히 결정되는 것을 기다릴 수 있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이에 10일에 북양대신께 검토해 달라고 전보로 보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달 12에 다음과 같은 지시 전보를 받았습니다.

길림 변경의 월간 조선 백성에 대해서는 일찍이 호적에 편입시킬 것을 상주하여 재가를 받은 바 있으니, 즉시 기존 안건을 찾아 서신으로 답장해주면 될 것이다.

이 사안은 광서 7년 전임 길림장군 銘安과 독관변방사무 吳大澂이 두만강 주변 일대의 월간 조선 유민에 대해 호적을 조사하고 혼춘과 돈화현에 나누어 귀속시켜 관할하겠다고 상주하여 재가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서 8년에 귀 국왕이 그들을 거두어들이게 해달라고 자문으로 요청하였으므로, 11월 2일에 1년으로 기한을 늘려 그 유민들을 거두어 안치시키도록 하라는 상유가 내려졌습니다. 광서 11년에는 다시 귀 국왕이 예부에 자문을 보내 인원을 파견하여 도문강에 대한 공동감계 문제를 대신 상주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총리아문은 상유를 받들어 의논한 다음 길림장군에게 지시하여 경계를 분명히 조사하고, 적절한 인원을 파견하여 조선에서 파견한 관원과 함께 확실히 증명·지적하여 의심을 품고 다투는 일을 피했으면 한다고 주청한 바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시를 내려 유민을 거두어들이어 안치시키도록 하거나, 또는 옮겨가기 어려운 사람들은 헤아려 중국의 행정 구역으로 편입시킴으로써 각자 생업에 안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7월 20일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다.

논의한 대로 하라.

이에 곧 북양대신이 상유를 삼가 옮겨 적어 귀 국왕에게 자문으로 답장함으로써 참고하여 따르도록 하였고, 본 총리(원세개)는 이에 따라 이전의 독관 金允植에게 공문을 보내어 참고하게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9년이나 지났음에도 귀 정부에서는 여전히 일을 지연시킨 채 모든 유민을 끝내 거두어들이지 않았으며, 광서 16년 2월 총리아문에서 다시 “월간 유민들은 단연코 거두어가게 하기 어렵다”고 올린 길림장군의 상주를 (내려받아) 논의한 결과 “이들을 중국의 행정 구역으로 편입시키고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라고 상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다.

논의한 대로 하라.

따라서 吉林商務局의 局官 葉이 현재 처리하고 있는 업무는 실로 황상의 유지를 받들어 시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귀 정부에서 정지시켜 줄 것을 청하였으나, 당연히 정지시킬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삼가 상부 지시에 따라 기존 안건을 다시 인용하여 답장을 보내니, 바라건대 참고하시고 대신 전달하여 보고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귀하의 행운을 빕니다. 이만 줄입니다.

7월 14일



(63) 문서번호 : 1-4-2-10 (1808, 3175b-3176b)

사안 : 吉林에서 和龍峪 總局을 철폐하여 撫墾局으로 바꾸고 當地에서 경비를 마련하게 하고, 山海關에서 吉林으로 송금해야 했던 朝鮮 商務 관련 경비의 송금을 즉시 정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吉省請將和龍峪總局裁改爲撫墾局, 就地籌款, 山海關應撥吉林朝鮮商務經費, 卽行停解).

날짜 : 光緒十九年四月二十一日(1893년 6월 5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四月二十一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四月十五日 准吉林將軍長順咨開.

案照吉林和龍峪等處通商總分局卡, 前因收稅甚少, 流弊滋多. 業經暫停徵稅, 一面將擬裁局卡各節函商辦理. 嗣准貴大臣函復, 囑由本將軍主稿具奏. 茲查稅既停徵, 而此項局費曠日持久, 未免虛糜. 現擬將西步江分局, 先霽峪分卡概行裁撤, 其和龍峪總局酌留督理一員, 司事一名, 書識一名, 通事一名, 聽差二名, 專辦吉林朝鮮交涉, 兼撫越墾韓民. 所有薪工以及心紅紙張等項, 由本將軍就地籌款, 援照吉林邊防各局處章程覈給. 並擬將通商局名改爲撫墾二字, 以期顧名思義. 所有出使項下卽應停解. 現在覆計山海關按結在出使項下撥解經費, 自一百結至一百二十九結起, 共解到銀七萬一千三百六十三兩. 照章支發, 僅敷發至光緒十八年十一月. 至今該局卡薪工等項, 已發至十九年正月止, 尚餘銀五千五百餘兩, 係由歷年撙節所致. 此項覈減章程已於光緒十五年咨明, 由是年九月十五日減起. 嗣因該局卡辦理越墾事務, 借用

員役，並督理委員等時出查勘，所有薪工車價，一時難以驟減。故改至十五年年底，始行減半覈發，仍視事務之繁簡，隨時添撤。嗣於十七年奏請展限時，即定每結減去千兩，而從前減贖銀兩，尚無確數可查，未及奏明。令通盤勾稽，實止餘銀五千五百餘兩。應請將此項餘並歷年所收稅款五千五十餘兩，撥還前借邊防項下一萬兩之款。所餘無幾，應請仍歸局費動用，毋庸繳還。除另備會銜摺稿，咨送覈定具奏外，相應備文咨請查照見覆施行。

等因。准此。

本閣爵大臣查和龍峪等處總分稅局，既經分別裁撤改章。其山海關每結所解吉朝商務經費銀兩，應自一百三十結起即行停撥。除咨覆吉林將軍查覈辦理，並繕摺會奏分行(江山)海關道(查遵)照外，相咨應咨明貴衙門，請煩查照。

4월 21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4월 15일, 吉林將軍 長順이 보낸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문을 받았습니다.

吉林 和龍峪 등 지역의 通商總局과 分局과 分卡에는 이전에 징수한 세금이 매우 적고 流弊가 많이 발생하여, 이미 세금 징수를 잠시 정지시켰고, 한편으로는 分局을 철폐하는 문제를 서신을 통해 상의하여 처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귀 대신이 보낸 답장을 받았는데, (거기에서는) 길림장군이 奏摺 초고를 마련하여 상주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지금 조사해보니, 이미 세금 징수가 정지되었는데 이 항목의 分局 經費를 가지고 시일을 질질 끈다면 헛된 낭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현재 西步江分局, 先靄峪分卡은 모두 철폐하고, 和龍峪總局에는 督理 1명, 司事 1명, 書識 1명, 通事 1명, 聽差 2명을 남겨두어, 吉林과 조선의 교섭을 전담하고, 아울러 越壘한 조선 백성을 按撫시키도록 하고자 합니다. 모든 봉록 및 문서비용 등 雜費 항목은 본 장군이 當地에서 자금을 마련하여 처리하되 「吉林邊防各局處章程」을 원용하여 검토·지급할 것입니다. 아울러 通商局을 撫壘局으로 바꾸어 명실상부하게 하고자 합니다. (山海關에서 보내오는) 出使 항목하의 모든 비용은 즉시 송금을 정지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山海關에서 회계 시기에 맞추어 出使 항목하에서 뽑아 송금한 경비를 다시

계산해 보니, 100기부터 129기까지 모두 은 71,363兩을 보내왔습니다. 章程에 따라 다만 광서 18년 11월까지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해당 分局·分卡의 봉록(薪工) 등의 비용은 이미 19년 1월까지만 지급하였는데도, 여전히 은 5,500여 량이 남아 있는데 이는 지난 여러 해 동안 절약해서 만든 결과입니다. 이 항목의 비용을 검토하여 삭감하도록 한 章程은 이미 광서 15년에 咨文을 보내 확인하였으며, 그 해 9월 15일부터 줄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뒤이어 해당 局·卡에서 越壑 사무를 처리하느라 인원을 빌려 쓰고, 아울러 督理委員 등이 때때로 나가 답사에 나서고 하였기 때문에 모든 봉록과 출장비용을 한꺼번에 잡자기 줄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5년 연말부터 절반으로 줄여 검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되, 또한 事務의 많고 적음에 따라 수시로 늘리거나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17년에 기한의 연장을 奏請할 때, 곧 매 시기마다 1,000량씩 줄이기로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종전에 줄이거나 늘린 銀兩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할 수 있는 확실한 숫자가 없어 상주를 올려 보고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모두 조사해보니 실제로 다만 은 5,500여 량이 남아 있습니다. 응당 이 여분의 자금 항목과 여러 해 동안 징수한 세금 5,050여 량을 가지고 이전에 邊防 항목으로 빌린 10,000여 량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청하는 바입니다. (상환한 다음) 얼마 되지 않는 남은 경비는 응당 해당 局·卡의 비용으로 옮겨 쓸 수 있도록 하여 다시 반납할 필요가 없게 해주십시오. 별도로 공동명의로 작성된 奏摺 초고를 갖추어 咨文으로 보내어 검토한 다음 주점을 갖추도록 하는 것 이외에, 문서를 갖추어 자문으로 보내니 검토해 보시고 답장을 보내 주십시오.

본 대신이 검토해 보건대, 和龍峪 등지의 總·分稅局은 이미 각기 裁撤하거나 章程을 개정하였습니다. 山海關에서 매 기마다 보내는 吉·朝商務經費는 응당 130번째 시기부터 즉시 지급을 정지해야 할 것입니다. 길림장군에게 자문으로 답장을 보내 검토하고 처리하게 하고, 아울러 공동명의로 奏摺를 갖추고 山海關道에게도 보내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 응당 귀 아문에도 자문을 보내어 알리니 번거롭더라도 검토해 주십시오.

(64) 문서번호 : 1-4-2-11 (1810, 3178b-3180b)

사안 : 吉林에서 和龍峪에 있는 朝鮮通商局卡을 철폐하고 경비의 송금을 중단하되, 잠시 局員을 남기고 이름을 撫墾局으로 바꿔 交涉 사무와 越墾 조선 백성을 撫恤하고자 합니다(吉林擬裁和龍峪朝鮮通商局卡停解經費暫留局員改爲撫墾局專辦交涉及撫輯越墾韓民事宜).

날짜 : 光緒十九年四月二十五日(1893년 6월 9일)

발신 : 軍機處(에서 내보낸 李鴻章의 주접 초록)

수신 : 總理衙門

四月二十五日, 軍機處交出李鴻章等抄摺稱.

爲 吉林擬裁和龍峪等處朝鮮通商局卡, 停解應領經費, 暫行酌留局員辦理交涉與撫越墾韓民, 恭摺陳仰祈聖鑒事.

竊查吉林與朝鮮互市貿易, 經(臣)李鴻章會同前將軍希元, 議定通商條款, 勘明朝鮮會寧府對岸和龍峪設立總局, 慶源府對西步江, 爲琿春所屬, 毗連俄界, 設爲分局. 又鍾城對光霽峪設爲分卡, 於光緒十一年派員前往督理商務. 由希元於邊防項下借撥銀一萬兩, 交該委員承領, 建造局房·船隻, 定期開市. 俟收有稅課, 無論多寡, 先行提還借款. 所需經費援照朝鮮商務委員成案, 以是年七月起, 暫由山海關按結在洋稅應解出使經費項下, 滙撥銀三千兩, 就款覈實, 撙節支發. 先後由(臣)李鴻章會同前將軍希元具奏聲明.

俟試辦三年後, 彙覈所收進出口稅項, 能否足敷局卡用度, 再察酌情形會商奏辦. 等因.

嗣戶部以該局卡一年稅款收數，不敷一月之用，應否令該省將薪水等項覈實刪減，咨由總理衙門轉咨。經(臣)李鴻章與希元商定，於十四年七月起，每結刪減銀八百兩，會同(臣)長順奏請展限三年，仍由山海關按照刪減數目，每結解交銀二千二百兩，撙節動用。嗣因限滿，稅收仍未暢旺，而辦理韓民越壑甫經竣事，一切彈壓撫綏，正關緊要，復經(臣)等會商，自十七年七月起，將每結減去一千兩，按照一千二百兩撥解，奏請再行展限三年。俟限滿，如果稅項足敷支銷，再請停止各在案。(臣)等覈查和龍峪等處分設局卡，本欲羈縻屬藩，稽查匪類，不僅為區區稅款，計非原議。將來局費須待稅款開支，是稅務之衰旺，實關局勢之久暫。計自光緒十一年十一月二十收稅之日起，至十八年六月初五停繳之日止，連開計六年零九箇月，共收稅款銀五千五十餘兩，每年收數不及千金，而用款已撥解七萬餘兩。雖經歷此遞減，現在一年支款，尚逾稅款數倍，國家經費有常，豈容此虛設之局卡，坐耗鉅帑？且近來查稅巡役，及護局兵勇，藉稅勒索私罰者不一而足，屢經局員懲辦，而玩法如故。凡事積久弊生。矧中外言語不通，尤易欺詐，怨不在大，其漸宜防，不亟事變通，揆諸設局本意，未免刺謬。是以(臣)等於上年六月間彼此函商，將各局卡稅課暫行停徵，俾免擾累，一面暫留局卡撫輯墾民。蓋越壑韓民自光緒十五年經(臣)長順奏准入籍為民之後，現在薙髮易服，編申升科，遵我政教，一切詞均由局員為之審理，稅已停徵，而局未遽撤，職是之故。令復再三察酌，此項局費曠日持久，更覺虛糜，擬請將西步江分局，光霽峪分卡概行裁撤，其和龍峪總局酌留督理一員，司事一員，書識一名，通事一名，聽差二名，專辦吉林·朝鮮交涉事務與撫越壑韓民。如蒙俞允，所有薪工以，及心紅紙張等項，由(臣)長順龍地籌款，援照吉林邊防各局處章程覈給，咨部查照，並擬將通商局名改為撫壑二字，以期名實相符。所有出使項下經費，即應停解。總之，該處地曠民貧，華韓雜處，設局通商款項，既無所出，設局撫民體制，或有未符，將來能否於附近地方設官分治與徵商稅，再由(臣)長順體察情形，另行奏請聖主裁奪。現在覆計山海關按結在出使項下撥解經費，自一百結起，至一百二十九結止，共銀七萬一千三百六十三兩，照章支發至光緒十八年十一月止。今該局卡薪工等項，已發至十九年正月止，尚餘銀五千八百餘兩，係由歷年撙節所致。於是(臣)等於光緒十五年底，查知該處稅收仍無起色，飭令該總分局卡刪減員役一半，視事務之繁

簡，隨時添撤，以符原奏擲節動用之語。嗣於十七年奏請展限時，遂定每結減去千兩，而以前減贖銀兩尚無確數可查，未及奏明，令通盤勾稽，實餘銀五千五百餘兩，應請將項餘銀並歷年所收稅款五千五十銀兩，撥還前借邊防項下一萬之款。所餘無幾，應請仍歸局費動用，毋庸繳還。所尤歷年用款，均係擲節動支，兼有盈餘，應請免其造冊報銷。至沿江越墾地畝，已於十七年丈竣，當年升科。現因局員呈送圖冊多有舛錯，經(臣)長順往返駁查，未繪造齊備，容俟催飭更正後，再行奏明辦理。除分咨總理各國事務衙門及戶部查照外，所有請旨裁改通商局卡，暫留局員辦理交涉兼撫墾民緣由，理合恭摺具陳，伏乞皇上聖鑒訓示。

再，此摺係由(臣)長順主稿，因在請假期內，商由(臣)李鴻章繕發，合併陳明。謹奏。

光緒十九年四月二十五日，奉硃批。

該衙門知道。

欽此。

4월 25일, 군기처에서 이홍장이 올린 주접의 抄錄를 보내왔습니다.

吉林 和龍峪 등 지역의 조선通商局卡을 철폐하고, 응당 수령해야 하는 경비의 송금을 중단하며, 잠시 局卡의 인원들을 사정을 고려하여 남겨두어 (조선과의) 교섭 사무를 처리하고 越墾 조선 백성을 撫恤하는 것에 대해 삼가 주접을 갖추어 아뢰니 황상께서 살펴봐 주십시오. 신이 생각건대, 吉林과 조선의 무역에 대해서는 이미 이홍장이 전임 (길림)장군 希元과 함께 通商에 관한 조약을 議定하였고, 조사를 한 결과 조선 會寧府 건너편의 和龍峪에 通商總局을 설립하고, 慶源府 건너편의 西步江은 琿春 소속으로 러시아의 국경과 연결하여 分局을 설립하기로 하고, 또한 鍾城 건너편의 光霽峪에는 分卡을 설치하기로 하여, 광서 11년 인원을 파견하여 商務를 감독·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希元이 邊防 항목하의 비용에서 은 1만 량을 빌려주어 해당 委員들이 수령하여 局房, 船隻을 건조하고 시기를 정하여 開市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징수되기를 기다렸다가 多寡를 막론하고 이것으로 우선 借款을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필요한 모든 경비는 朝鮮商務委員의 기존 사안에 비추어 그 해 7월부터 잠시 山海關에서 매기마다 洋稅 가운데 응당 지급해야 할 出使 경비 항목하에서 은 3,000량씩을 모아 보내기로 하여, 이 항목의 자금을 검토하여 절약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신 이홍장과 전 길림장군 希元이 주접을 갖추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

3년을 試辦해 본 이후에 들어온 수출·입세 항목 전체를 검토하여, 局卡의 용도로 충분한지 아닌지를 검토한 다음 다시 상황을 살펴 함께 논의하여 상주를 올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이어 戶部에서 해당 局卡에서 1년 동안 거둔 세금 액수가 1개월의 비용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면 길림으로 하여금 봉록 등의 항목을 검토하여 삭감하게 할지의 여부를 총리아문을 통해 자문으로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신 이홍장과 希元은 광서 14년 7월부터 매기마다 은 800량을 줄여서 지급하기로 논의하여 정하였고, (아울러) 신 長順과 더불어 그 기한을 3년 연장해줄 것을 奏請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山海關에서는 여전히 삭감한 액수에 비추어 매기마다 은 2,200량을 지급하여 이를 절약하여 옮겨 쓰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3년 기한이 만료되었으나 징수된 세금이 여전히 많지 않고, 조선 백성의 越壑 문제 처리가 마침 바로 완료된 상태여서, 조선 백성을 통제하고 按撫하는 일이 바로 緊要한 업무였으므로, 재차 臣 등이 함께 논의하여 광서 17년 7월부터 매기마다 1,000량을 줄인 1,200량을 뽑아서 지급하되, 기한을 재차 3년 연장해 달라고 奏請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다 되었을 때를 기다려 만일 여전히 세금을 거두는 것이 지출에 충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 지급을 중지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신 등이 다시 검토해 보건대, 和龍峪 등지에 局卡을 나누어 설립한 것은, 본디 屬藩을 회유하고 못된 무리들을 색출하고자 함이었지 단지 보잘것없는 세금을 거두기 위한 것은 아니었으며, (이는 또한) 원래 논의했던 바도 아닙니다. 장래 局卡의 비용은 반드시 징수한 세금에서 지출해야 하므로, 稅務의 興衰는 바로 局卡이 오래 존속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관계되는 바입니다. 헤아려보면 광서 11년 11월 20일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18년 6월 5일에 세금 징수를 정지하였는데, 6년 9개월 동안의 내역을 연이어 계산해보면 세금은 모두 5,050여 량을 징수하여 매년 징수한 액수가 1,000량에 미치지 못하는데, 사용한 경비는 이미 70,000여 량을 지급하였습니다. 비록 누차 체감하기는 하였으나, 현재 1년 동안 지출하는 경비가 여전히 징수한 세금의 몇 배를 넘어서니, 국가의 經費에 常例가 있는데 어찌 이렇게 헛되이 세운 局卡을 용인하여 앉아서 막대한 자금을 소모할 수 있습니까?

또한 근래 查稅巡役(징세를 위한 순시아역)과 護局兵勇(局的 경호 병력)을 조사해보니, 세금을 빌미로 재물을 강탈하고 사사로이 벌금을 매기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어서 누차 局卡 인원들을 처벌하였으나, 법을 농락하는 것이 여전히 이전과 동일합니다. 모든 일은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는데, 하물며 中外의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더욱 속임수가 용이합니다. 비록 원망이 큰 것은 아니지만, 마땅히 그것이 점차 늘어나는 것은 미리 막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시급히 변통하지 않는다면, 局卡을 세운 本意를 헤아려 볼 때, 일을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신 등은 작년 6월에 서로 서신을 통해 상의하여, 各 局卡의 세금 징수를 잠시 정지시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막고자 하였고, 한편으로는 잠시 局卡을 남겨두어 墾民을 慰撫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개 越壘 조선 백성은 광서 15년부터 이미 신 長順이 (이들을) 호적에 편입시키는 것을 奏請하여 재가를 받은 다음, 현재 薙髮을 하고 복식을 바꾸고, 保甲에 편입되어 세금을 납부하면서 우리의 政教를 준수하고 있으며, 모든 訟詞는 局員이 이를 審理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징수가 정지되었음에도 局卡을 철거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금 다시 재삼 헤아려보건대, 이 局卡 경비는 헛되이 시일을 보내면 더욱 낭비라고 느껴져, 西步江分局과 光霽峪分卡을 모두 철거하도록 요청하고자 합니다. 和龍峪總局에는 잠시 督理 1員, 司事 1員, 書識 1名, 通事 2명, 聽差 2명을 남겨두어 吉林과 조선의 교섭 및 越壘 조선 백성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재가를 받는다면 모든 봉록 및 문서비용 등 雜費 항목은 본 장군이 當地에서 자금을 마련하여 처리하되 「吉林邊防各局處章程」을 원용하여 검토·지급할 것입니다. 아울러 通商局을 撫壘局으로 바꾸어 명실상부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出使 항목 아래 지급되던 모든 經費는 즉시 지급 중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해당 지역은 땅이 넓되 백성이 빈곤하고 중국인과 조선인이 뒤섞여 있어 局卡을 세워도 通商명목의 세금으로 거둘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撫壘局을 세워 백성을 按撫하는 것도 혹시 體制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장래 부근 지역에 관청을 세워 나누어 다스리고 商稅를 징수하는 일의 여부는 신 長順이 재차 상황을 살펴보고, 별도로 상주하여 황상의 결정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山海關에서 회계 시기에 맞추어 出使 항목하에서 뽑아 송금한 경비를 다시 계산해 보니, 100기부터 129기까지 모두 은 71,363兩을 보내왔습니다. 章程에 따라 다만 광서 18년 11월까지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해당 分局·分卡의 봉록(薪工) 등의 비용은 이미 19년 1월까지만 지급하였는데도, 여전히 은 5,500여 량이 남아 있는데 이는 지난 여러 해 동안 절약해서 만든

결과입니다. 이 항목의 비용을 검토하여 삭감하도록 한 章程은 이미 광서 15년에 咨文을 보내 확인하였으며, 그 해 9월 15일부터 줄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뒤이어 해당 局·卡에서 越壘 사무를 처리하느라 인원을 빌려 쓰고, 아울러 督理委員 등이 때때로 나가 답사에 나서고 하였기 때문에 모든 봉록과 출장 비용을 한꺼번에 갑자기 줄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5년 연말부터 절반으로 줄여 검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되, 또한 事務의 많고 적음에 따라 수시로 늘리거나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17년에 기한의 연장을 奏請할 때, 곧 매 시기마다 1,000량씩 줄이기로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종전에 줄이거나 늘린 銀兩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할 수 있는 확실한 숫자가 없어 상주를 올려 보고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모두 조사해보니 실제로 다만 은 5,500여 량이 남아 있습니다. 응당 이 여분의 자금 항목과 여러 해 동안 징수한 세금 5,050여 량을 가지고 이전에 邊防 항목으로 빌린 10,000여 량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청하는 바입니다. (상환한 다음) 얼마 되지 않는 남은 경비는 응당 해당 局·卡의 비용으로 옮겨 쓸 수 있도록 하여 다시 반납할 필요가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만강 연안의 越壘 토지는 이미 17년에 토지 조사가 완료되었고, 그 해 세금 징수 대상에 올렸습니다. 현재 局員들이 지도와 책을 올려보냈으나 많은 부분에서 착오가 있어, 이미 신 長順이 반박하여 다시 작성하도록 되돌려 보내 아직 지도와 책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만간 재측한 대로 수정이 이루어진 다음 다시 상주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아문과 戶部에 나누어 자문을 보내어 검토하고 처리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 通商 局卡을 철폐하거나 撫壘局으로 개설하되 잠시 局員을 남겨두어 교섭 사무를 처리하고 壘民을 按撫하는 문제에 대해 삼가 주점을 갖추어 아뢰오니, 황상께서 살펴보고 訓示를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주점은 臣 長順이 초안을 잡았으나, 휴가를 청한 시기에 해당되어, 상의한 결과 李鴻章이 갖추어 올리는 것이라는 점을 아울러 밝힙니다. 삼가 주를 올립니다.

광서 19년 4월 25일, 다음과 같은 硃批를 받았다.

해당 아문에게 알리도록 하라.

이상.

(65) 문서번호 : 1-4-2-12 (1811, 3181a)

사안 : 吉林에서 和龍峪 朝鮮 通商局卡을 철폐하고 經費 지급을 중단하며, 잠시 위원을 남겨 두어 교섭 사무와 조선 백성 按撫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주청한 주접 초고를 자문으로 보냅니다(咨送吉林擬裁和龍峪朝鮮通商局卡停解經費, 暫留委員辦理交涉, 撫民摺稿).

날짜 : 光緒十九年四月二十七日(1893년 6월 11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四月二十七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照得本閣爵大臣, 於光緒十九年四月二十二日, 會同吉林將軍長順, 在天津行館具奏, 吉林擬裁和龍峪等處朝鮮通商局卡, 停解應領經費, 暫行酌留局員辦理交涉, 兼撫越懇韓民一摺. 相應鈔摺咨送貴衙門, 請煩查照.

照錄抄摺[詳見四月二十五日軍機處交出李鴻章鈔摺].

4월 27일, 북양대신 이홍장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본 대신은 광서 19년 4월 22일, 길림장군 長順과 공동 명의로 함께 (북양대신의 근무지인 天津의 行館에서 吉林 和龍峪 등지의 조선 通商局卡에서 수령하는 경비의 지급을 중단하되, 잠시 局員을 남겨두어 (조선과의) 교섭 사무를 처리하고 아울러 越墾한 조선 백성을 撫恤하도록 하겠다는 주접을 갖추어 상주하였습니다. 응당 이를 초록하여 귀 아문에 자문으로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참고해 주십시오.

李鴻章의 奏摺 초록[상세한 것은 4월 25일 軍機處에서 내보낸 李鴻章의 주접 초록에 보인다].



(66) 문서번호 : 1-4-2-13 (1815, 3184a-3185a)

사안 : 鍾城府 雲谷社의 백성 金丙軒 등이 중국인 비적에게 약탈을 당하고 목숨을 잃어 吉林 將軍에게 그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하는 자문을 보낸 것에 대해 자문으로 알립니다(咨報鍾城府雲谷社民金丙軒等被華匪搶掠害命, 已咨吉林將軍分飭緝辦情形).

날짜 : 光緒十九年五月二十一日(1893년 7월 4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五月二十一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正任浙江溫處道袁世凱詳稱.

竊照本年四月二十二日, 准韓外署督辦南廷哲照開.

照得現據會寧監理金牒稱內開.

茲據鍾城府使金報稱.

本府雲谷社民金鐘會爲業客店, 今月初四日初更鍾會出他. 其從兄鍾哲, 與接界穩城人金炳軒, 生店寒暄, 猝有華人四名各持銃鎗急入店內, 問金鐘會去處, 故答云出外. 該華人等結縛鍾哲, 無數滾打, 同坐金炳軒要圖生命, 急出柴門. 又有三名華人在外放鎗, 三丸穿體牌, 繼又揮刃, 額□頰腕無不砍傷. 其翌因爲致命. 云云.

等情.

嗣有會寧民許珪, 許鎮兩人, 由甲山回路, 到茂山西嶺, 被華匪等兇刃一時並斃等案. 伏查華匪之遍行搶掠, 各處同然, 人影疎稀, 商路廢絕. 此若不別行禁戰,

邊圉無清安之日，民生無蘇醒之秋。茲以枚寔牒報，特將此由照商袁總理，轉飭吉林管下各地方，設法嚴禁，以杜滋蔓之弊。

等語。前來。據此。

查吉林地界賊匪熾盛一事，業經照會貴總理轉詳飭緝，旋准照覆各在案。此次賊匪一向猖獗，圖財害命之案，層見迭出。若不設法捕獲，殫殄無遺，嗣後吉、朝交界商民之害，將無旣極。相應據情照會，請煩查照轉詳北洋大臣，轉知吉林將軍，另飭各知縣務期弋獲，以弭盜風而重命案。望切見覆施行。

等因。准此。

當即擇要電請鑒核轉飭，旋奉電諭內開。

庚電轉詢琿春恩副都統，項據電覆，韓民金炳軒被賊拒殺一案，三月十二日據報到琿。隨飭前路馬隊哨官陳道祥，帶隊赴鍾城府屬馬牌地方，拏獲常起坤等四名，連日飭審。該犯供認不諱，餘則狡不承認，刻下尚在審究，擬即正法。至許珪許鎮一案，未據韓官呈報，無憑緝究。茲飭邊務承辦處照請咸鏡北道查覆飭緝云。

等因。奉此。

除照覆韓外署查照轉飭外，理合詳情查核，轉咨吉林將軍查照分飭嚴緝懲辦，寔爲公便。

等情。到本閣爵大臣。據此。

除分咨外，相應咨明貴衙門，請煩查照施行。

5월 21일, 북양대신 이홍장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正任浙江溫處道 원세개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올해 4월 22일, 조선 外部督辦 南廷哲의 다음과 같은 조희를 받았습니다.

지금 會寧府監理 金이 다음과 같이 보고해 왔습니다.

지금 鍾城府使 金이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本府 雲谷社의 백성 金鐘會는 여관을 업으로 삼고 있는데, 이번 달 4일 初更에

金鐘會는 출타하였습니다. 그 從兄인 金鍾哲과 (本府와) 경계를 맞닿고 있는 穩城 사람 金炳軒이 여관을 지키면서 인사말을 나누고 있었는데, 돌연 중국인 4명이 각각 총을 지니고 급작스레 여관에 들어와 金鐘會의 출처를 물어 외출하였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중국인들은 金鍾哲을 결박하고 무수히 구타하였으며, 함께 있던 金炳軒은 생명을 도모하고자 급히 옆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밖에 있던 중국인이 3명이 총을 쏘아 3발이 넓적다리를 관통하였고, 계속하여 칼을 휘둘러 이마, □, 뺨, 손목 등에 베인 상처가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뒤이어 會寧 사람 許珪, 許鑣 두 명이 甲山에서 돌아오는 길에 茂山 西嶺에 이르러, 중국인 匪賊 등의 칼에 맞아 한꺼번에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서 생각건대, 중국인 비적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약탈하는 것은 각 지역에서 동일하며, (그 때문에) 인적이 드물고 장삿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만약 별도로 이를 막지 않는다면, 변경 지역에는 조용하고 편안한 날이 없을 것이고, 민생은 회복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하나 사실대로 보고(牒文)를 올리니, 특별히 이를 원세개 총리에게 조회를 보내어 상의하고, 袁總理가 吉林 관할 각 지방에 방법을 마련하여 엄금하도록 전달하여 비적이 만연하는 폐해가 사라지도록 해 주십시오.

조사해 보건대, 吉林 변경 지역의 匪賊이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귀 총리에게 조회를 보내, 대신 보고를 올려 이들의 체포를 요청하도록 하였는데, 곧바로 그에 대한 답장 조회를 받았습니다. 이번처럼 줄곧 匪賊들이 창궐하여 재물을 약탈하고 인명을 해치는 일은 누차 거듭하여 일어났던 일입니다. 만일 방법을 강구하여 포획하고 남김없이 소멸시키지 않는다면, 이후 吉林과 조선 접경 지역의 상인·백성에게 무궁한 피해를 끼칠 것입니다. 마땅히 실정에 따라 조회하니, 번거롭더라도 검토하고 이를 북양대신께 전달하여 다시 吉甯장군에게 알리도록 해 주셔서, 따로 각 知縣에게 힘써 그들을 포획하도록 지시하여 盜風을 잠재우고 人命 사건 처리를 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박하게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았으므로 즉시 조회의 개요를 가려 전보로 보내 북양대신이 검토하고 요청을 吉甯장군에게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곧 다음과 같은 북양대신의 전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번 전보에 대해 琿春의 恩副都統에게 물었더니 곧바로 답장이 왔다. 조선 백성 金炳軒이 匪賊에게 피살된 사건은 3월 12일 관련 보고가 琿春에 올라와, 곧바로 前路馬隊哨官 陳道祥에게 부대를 이끌고 鍾城府 소속 馬牌 地方으로 가도록 지시하였는데, 거기에서 常起坤 등 4명을 잡아 연일 심문하였고, 해당 범인의 자백에는 숨김이 없었으나 나머지는 교활하게도 범 죄를 자백하지 않아 아직도 여전히 심문하고 있으며, 곧바로 법에 의해 처리할 것이라는 것이다. 許珪, 許鎭 사건은 아직 조선 측 관리의 보고가 없어 체포하여 심문할 근거가 없어, 현재 邊務承辦處에 咸鏡北道에 조회를 보내어 답변을 받으면 체포에 나서도록 지시하였다고 한다.

조선의 外署에 답변 조회를 보내어 지시를 전달하게 하는 것 외에도, 마땅히 상세한 정황을 조사·검토하여 吉林將軍에게 자문을 전달하여 그에 따라 체포·처벌하도록 별도로 지시하게 하는 것이 실로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본 각작대신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응당 나누어 자문을 보내는 것 이외에도, 귀 아문에도 자문을 보내어 알리려 하니, 번거롭더라도 검토하여 주십시오.



(67) 문서번호 : 1-4-2-14 (1817, 3186b-3187a)

사안 : 吉林 和龍峪 등지의 局卡 경비는 반드시 장부를 만들어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강 연안 조선 백성이 개간한 토지는 이미 측량이 완료되었으므로 응당 지도와 장부책
을 갖추어 戶部에 보고하고 세금 징수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吉林和龍峪等處局卡經
費, 仍須造冊奏銷. 至沿江韓民越墾地畝, 既經丈竣, 應即造具圖冊, 報部升科).

날짜 : 光緒十九年五月二十三日(1893년 7월 6일)

발신 : 戶部

수신 : 總理衙門

五月二十三日, 戶部文稱.

山東司案呈.

軍機處交出北洋大臣李等奏, 吉林裁去和龍峪等處通商局卡, 停解經費, 酌留局員辦理
交涉事務兼撫越墾韓民, 所需薪水由吉省就地籌款開支等因一摺, 光緒十九年四月二
十五日, 奉硃批,

該衙門知道.

欽此. 欽遵交出到部.

相應恭錄硃批, 飛咨吉林將軍, 北洋大臣遵照. 惟查原奏內稱.

自光緒十一年十一月二十日收稅之日起, 至十八年六月初五日停征之日止, 共收稅
銀五千五百餘兩. 又由山海關撥解經費, 自一百結起至一百二十九結止, 共收銀七萬
一千三百六十三兩, 令該局卡薪工發至十九年正月止, 尚餘銀五千八百餘兩, 並歷年
所收稅款五千五十餘兩, 撥還前借邊防項下一萬之款. 所餘無幾, 應請仍歸局費動

用, 毋庸繳還. 所有歷年用款均係撙節動支, 應請免其造冊報銷.
 等語.
 本部查前項撥解經費, 征存稅款均係關稅正課, 所請免其造銷之處, 碍難准行. 應令即
 將各年收支款項迅即造冊, 專案奏銷, 以重度支. 仍將酌留局員開支薪工心紅章程, 先
 行咨部備核. 至沿江越壑地畝, 既經丈峻, 應令迅即造具圖冊, 報部升科, 毋再遲延.
 暨知照總理各國事務衙門可也.

5월 23일, 戶部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山東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 문서를 올렸습니다.

군기처에서 北洋大臣 李鴻章 등이 ‘吉林에서 和龍峪 등 지역의 通商局卡을 철거하고 경비의
 송금을 정지하며, 局員들을 남겨두어 交涉 사무 및 越壑 조선 백성을 慰撫하도록 하며, 필요한
 봉록은 吉林 당지에서 마련하여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올린 주접을 보내왔습니다. 이
 상주는 광서 19년 4월 25일, 다음과 같은 硃批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 알리도록 하라.

이러한 내용이 호부에 전달되었으므로, 응당 硃批를 초록하여 신속하게 吉林將軍과 北洋大臣
 에게 자문으로 보내 그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원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습니다.

광서 11년 11월 20일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18년 6월 5일에 세금 징수를 정지하였는데,
 6년 9개월 동안의 내역을 연이어 계산해보면 세금은 모두 5,050 여량을 징수하였습니다.
 …… 현재 山海關에서 회계 시기에 맞추어 出使 항목하에서 뽑아 송금한 경비를 다시
 계산해 보니, 100기부터 129기까지 모두 은 71,363兩을 보내 왔습니다. 章程에 따라 다만
 광서 18년 11월까지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해당 分局·分卡의 봉록(薪工) 등의 비용은
 이미 19년 1월까지만 지급하였는데도, 여전히 은 5,500여량이 남아 있는데 …… 이것을
 가지고 이전에 邊防 항목으로 빌린 10,000여량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청하는 바입니
 다. (상환한 다음) 얼마 되지 않는 남은 경비는 응당 해당 局·卡의 비용으로 옮겨 쓸

수 있도록 하여 다시 반납할 필요가 없게 해주십시오.

戶部에서 검토해보니 이전에 송금한 지급한 경비와 남아 있는 세금은 모두 關稅 正課로 장부를 작성하여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게 해달라는 요청은 결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응당 즉시 매년의 수입·지출 상황에 관해 신속하게 장부를 만들고, 단일 사안으로 회계 처리를 하여 국가재정을 중시해야 합니다. 또한 局員을 남기고 봉록 등을 지출하는 것과 관련된 章程을 우선 戶部에 자문으로 알려 검토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조선 백성이 강 연안을 넘어 개간한 토지의 측량이 이미 완성되었으니 응당 신속하게 지도와 장부를 갖추어 戶部에 보고하고 세금 대상으로 삼도록 해야 하며 결코 다시는 지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항을 總理各國事務衙門에도 통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8) 문서번호 : 1-4-2-15 (1881, 3300b)

사안 : 吉林將軍이 조선 백성이 월경하여 개간한 토지를 거두어들이겠다고 한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논의한 주접의 초고를 자문으로 보내 정해진 시기에 상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咨送會議吉林將軍收還韓民越墾地畝摺稿, 以便定期具奏).

날짜 : 光緒二十年四月初二日(1894년 5월 8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戶部

四月初二日, 行戶部片稱.

本年三月二十三日, 接准片稱.

議覆吉林將軍長順等奏, 琿春圖們江北岸收還朝鮮越墾地畝, 派員清丈, 並將墾民立社編甲, 照則升科一摺, 應由貴衙門主稿, 會同本部議奏.

等因. 前來.

相應將奏稿一件片送貴部會議, 俟議妥後, 卽希開列堂銜, 並將原稿送還本衙門, 以便定期具奏可也.

4월 2일, 戶部に 다음과 같은 내용의 片文을 보냈습니다.

올해 3월 23일, 다음과 같은 호부의 片文을 받았습니다.

吉林將軍 長順 등이 琿春과 圖們江 北岸의 조선인들이 越墾한 토지를 거두어들이고 인원을 파견하여 측량을 시행하며, 아울러 越墾한 사람들을 모아 社를 세우고 保甲에 편입시키고

稅則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주접을 올렸는데, 응당 귀 아문에서 (답변 주접) 초고를 마련하고 본 호부와 함께 논의하여 상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접 초고 1건을 귀 부에 片文으로 보내 공동으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적절히 논의한 다음에는 戶部 堂官의 官銜을 열거하여 본 아문에 原稿를 돌려보내 주시면 정해진 시기에 상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69) 문서번호 : 1-4-2-16 (1892, 3310b)

사안 : 조선 백성이 越墾한 토지를 거두어들여 측량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 공동 명의로 상주한 주점에 대해 유지를 받았으므로 이를 초록하여 알리는 바입니다(會奏收還韓民越墾地畝清丈升科摺, 錄所奉諭旨知照).

날짜 : 光緒二十年四月二十九日(1894년 6월 2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吏部

四月二十九日, 行吏部文稱.

光緒二十年四月二十四日, 本衙門會奏議覆吉林將軍奏收還韓民越墾地畝, 清丈升科, 應准照辦一摺. 本日奉硃批.

准其酌保數員, 毋許冒濫, 餘依議.

欽此.

相應恭錄諭旨, 抄錄原奏, 咨行貴部欽遵辦理可也.

同日行戶部·吉林將軍·北洋大臣.

4월 29일, 吏部に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습니다.

광서 20년 4월 24일, 본 아문에서는 吉林將軍이 올린, 조선 백성이 越墾한 토지를 거두어들여 측량하고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하는 주점에 대해 마땅히 (요청해 온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논의하여 공동으로 상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다음과 같은 硃批를 받았습니다.

몇 명의 인원을 적당하게 남기도록 하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함부로 임용해서는 안 된다. 나머지는 논의한 대로 하라.

응당 삼가 유지와 원래 올렸던 주접을 초록하여 귀 吏部에 자문으로 보내니,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날 戶部, 吉林將軍, 北洋大臣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자문을) 보냈다.



(70) 문서번호 : 1-4-2-17 (2544, 4011b-4025a)

사안 : 越壘 조선 백성을 安插하고 토지를 측량하는데 진력한 인원들을 보증하여 추천합니다(保學安插越壘韓民並清丈越壘地畝出力人員).

첨부문서 : 1. 「琿春 越壘 조선 백성을 安插하고 토지측량에 힘쓴 각 인원들에 대한 포상을 요청합니다(辦理安插琿春越壘韓民並清丈出力請獎各員).」

2. 「琿春 越壘 조선 백성을 安插하고 토지측량 사무를 처리하는데 진력하여 포상을 요청한 文武 각 관원의 三代 履歷(辦理安插琿春越壘韓民並清丈出力請獎文武職各員三代履歷)」

날짜 : 光緒二十年十二月三十日(1895년 1월 25일)

발신 : 吉林將軍 恩澤

수신 : 總理衙門

十二月三十日, 吉林將軍恩澤文稱.

光緒二十年十二月十三日, 本衙門恭摺具奏.

爲 遵旨酌保安插越壘韓民清丈出力各員懇恩給獎, 恭摺仰祈聖鑒事.

竊於光緒二十年三月初二日, 將軍長會同(奴才)具奏, 清丈琿春圖門江北岸收還朝鮮流民越壘地畝, 業已一律完竣, 入籍升科, 在事出力各員應否酌保數員, 請旨遵行一摺. 是月十九日, 奉硃批.

該衙門議奏, 單併發.

欽此.

嗣准總理衙門來咨.

光緒二十年四月二十四日，會同戶部覆奏，本日奉硃批。

准其酌保數員，毋許冒濫，餘依議。

欽此。欽遵咨行前來。

伏查朝鮮流民越窩琿春，亦已十有餘年，戶過數千，丁逾二萬，均未入籍。地無定主，弱肉強食，深恐釀成釁端，貽患將來。又該國屢議刷還，卒不果行。(奴才)與長咨函疊商，仰體朝廷覆育藩封，代謀安集，正以綏其疆土，非欲利其人民。始於光緒十六年三月，迄於光緒十七年七月竣事。收撫墾民二萬有奇，丈報熟地一萬五千餘晌，建設四堡三十九社，一律入籍，永泯客主之嫌。派出各員司，均能仰副我皇上字小之德，不激不隨，因應措施，卒使牟利阻撓之朝鮮官吏，智竭術窮，無計可施，而墾民藉以歸化，永安樂土。較之山東遷移歷城等州縣濱河災民，其艱阻情形有過之無不及者。督理吉林·朝鮮商務委員兼辦墾越事·知府用補用同知留吉試用知縣王昌熾，辦事實心，措置咸宜，實屬尤為出力。擬請免補知縣，以同知仍留吉林補用，並請歸知府班，賞加三品銜。同知銜分省補用知縣·會辦越墾事務程國鈞，始終其事，倍著立勤，擬請免補本班，以同知分省補用。其餘九員，均屬異常出力，凜遵諭旨，擇尤分別酌保，不敢稍涉冒濫。謹繕清單，恭呈御覽，仰懇天恩。俯准援照山東遷移災民成案，照擬給獎，出自逾格鴻慈。至適中之地，應否設官分治，由(奴才)體查情形，審宜奏明辦理。除將各員履歷咨部外，所有遵保安插越墾韓民清丈出力人員緣由，理合恭摺具奏，伏乞皇上聖鑒訓示。謹奏。

等因。

除俟奉到硃批，再行恭錄呈報外，合先照錄原摺並該員三代出身履歷造具清冊一本，呈報總理衙門鑒核施行。

照錄粘單

謹將辦理安插琿春越墾韓民並清丈出力請獎各員，敬繕清單，恭呈御覽。

計開：

歸知縣班選缺後以直隸州知州儘先補用，藍翎補用筆帖式培源，五品頂戴知縣用筆帖式炳宣，以上二員，均請免補本班，以知縣不論雙單月，歸部遇缺儘先選用。分省試用縣丞鄭維周，擬請免補本班，以知縣仍分發省分歸候補班，儘先補用。吉林管檔堂主事凌雲，擬請開缺，以直隸州知州歸候補班前補用。吉林滿洲正紅旗補用佐領·先換頂戴防禦塔爾幹，擬請俟候補佐領後以協領儘先補用。五品頂戴府經歷銜唐書勳·五品頂戴府經歷銜何樹漢，以上二員擬請以府經歷不論雙單月，歸部遇缺儘先即選。五品頂戴縣丞高甫麟，擬請以縣丞不論雙單月歸部遇缺儘先即選。五品頂戴俊秀葉含芬，擬請以巡檢歸部，不論雙單月遇缺儘先即選。

照錄履歷冊

謹將辦理安插琿春越墾韓民，並清丈出力請獎文武職各員，三代出身履歷，造具清冊，呈報鑒核。須至冊者。

計開：

王昌熾，現年三十九年，湖北武昌府江夏縣人。由文章於光緒六年投效新疆軍營。九年因歷辦邊防善後在事尤為出力案內，蒙烏魯木齊都統恭奏保，經部議准以巡檢歸部儘先選用。十月初八日，奉旨。

依議。

欽此。

十年收還伊犁，歷年剿辦竄匪在事出力案內，蒙幫辦新疆軍務大臣伊犁將軍金奏保，十一年三月十五日，軍機大臣奉旨。

歸部儘先選用巡檢王昌熾，著免選本班，以府經歷歸部，不論雙單月遇缺儘先即選。

並賞加六品銜。

欽此。

光緒八九兩年，兩次隨同勘分新疆中南界務在事出力案內，十二年蒙新疆分界大臣長奏保。於七月二十四日准吏部咨覆內開。

七月十八日奉上諭。

候選⁷¹)府經歷王昌熾，著免選本班，以知縣歸部，不論雙單月遇缺僅先前即選。

並賞加同知銜。

欽此。

先於光緒九年十二月內，稟准離營，並無未完經手事件。隨同陞任吉林副都統·烏魯木齊領隊大臣恩，赴吉·蒙(吉林將軍希，吉林副都統恩)札委吉林將軍文案委員差使。十三年因協同練軍擊獲盜匪七名，蒙(吉林將軍希·吉林副都統恩)奏保，俟選缺後以同知用。十四年三月，准吏部咨開。

十三年十二月十九日，奉旨。

依議。

欽此。

十四年九月，蒙吉林(將軍長·副都統恩)奏請留營差遣。十二月准吏部咨開。

十一月二十三日，覆奏奉旨。

依議。

欽此。

十五年六月初十日，蒙幫辦吉林邊務琿春副都統恩，札委邊務文案處會辦。九月復蒙札委兼琿春行營發審差使。十六年十一月二十九日，蒙督辦吉林邊務將軍長，札委署理吉林·朝鮮商務總局兼辦越墾事宜。於十八年三月初十日，交卸局務。旋於閏六月十五日，蒙督辦吉林邊務將軍長·札委稽查琿春天寶山銀礦委員。是年九月，蒙(督幫)辦吉林邊務(將軍長·琿春副都統恩)，於五載邊防案內，在事出力奏請俟補同知後，以知府不論雙單月遇缺儘先前即選。十九年五月十六日，准總理海軍事務衙門會同吏部核議覆奏，經吏部改俟選知縣離任，歸同知班補缺後，以知府遇缺僅先前即補。十九年五月初七日

具奏，本日奉旨。

依議。

欽此。

先於十九年二月二十一日，蒙幫辦吉林邊務琿春副都統恩，委兼琿春行營發審。十九年十月十九日，蒙督辦吉林邊務將軍長，奏知府同知銜補用同知候選知縣王昌熾，辦事勤能，請以知縣留吉補用。本年十一月二十四日，奉硃批。

著照所請，吏部知道。

欽此。均奉行知在案。

現供今職。須至履歷者。

計開：三代 曾祖父(照)，祖父(世定)，父(能亨)

程國鈞，現年四十八歲，安徽徽州府歙縣人。由俊秀於同治七年在京銅局報捐。閏四月十四日，奉戶部執照，程國鈞准作監生加捐未入流，不論雙單月指項典史分發福建試用。八年五月，蒙前福建巡撫部院周，札委協解甘餉赴陝西軍需局交納。九年正月，蒙前督辦西征糧台侍講學士袁，委赴甘肅開辦秦州甘捐糧捐局務。十三年正月交卸，奉解捐輸冊報。旋陝銷差，附甘捐二十四次案內報捐。十二月十六日，奉戶部執照，典史程國鈞准作府經歷歸部選用，當蒙前督辦西征糧台內閣部堂袁，委解湖北江漢關協餉甘肅安西州正白旗漢軍都統金大營交納，留營差遣，隨同克復烏魯木齊各城出口。蒙前幫辦新疆軍務伊犁將軍金，彙案奏保。光緒四年二月初四日，奉上諭。

候選府經歷程國鈞，著免選本班，以知縣不論雙單月分省遇缺前先補用，並賞加同知銜，該部知道。

欽此。

八年關外肅清，具稟請假省親。蒙幫辦新疆軍務伊犁將軍金，批准離營，均奉行知執照在案。十四年十一月，投放琿春。十五年三月，蒙幫辦吉林邊務陞任黑龍江將軍依咨，蒙督辦吉林邊務將軍長，委補靖邊前路隨同辦事委員。九月蒙幫辦吉林邊務琿春副都

統恩，札委行營發審，並委清查黑項子韓民越墾各事。十六年六月奉督辦吉林邊務將軍長，會同幫辦吉林邊務琿春副都統恩，札委會辦和龍峪韓民越墾事宜，遵將前路委員行營發審各差交卸。於七月赴越墾任差。

十七年六月，越墾完竣，商局署理王令昌熾齋送圖冊晉省。蒙幫辦吉林邊務琿春副都統恩，檄委代理吉朝通商總局關防。於八月初一日交卸。九月旋琿銷差。蒙幫辦吉林邊務琿春副都統恩，委充行營文案處額外會辦，兼理發審。十八年三月，調補行營營務處會辦，仍兼發審現供今差。須至履歷者。

計開：三代 曾祖父(北祚)，祖父(其蔭)，父(元焜)

培源，現年三十五歲，京城鑲黃旗滿洲富康佐領下，係荊州駐防鑲黃旗滿洲寶崑佐領下人。於光緒八年投效伊犁軍營。十年十二月十五日，蒙幫辦新疆軍務大臣伊犁將軍金，於收還伊犁歷年剿辦竄匪在事出力案內，奏保以六品藍翎。光緒十一年二月初一日，軍機大臣奉旨。

著照所請獎勵。

欽此。

是年告假回旗應試。蒙湖北學院高，取進文生員。於光緒十三年投效吉林邊防，蒙幫辦吉林邊務事宜·琿春副都統依，札委行營文案處隨同辦事委員差使。十五年終，蒙賞給五品頂戴。十六年遵新海防例，在戶部報捐補用筆帖式。十一月補捐貢生。前於黑龍江整隊搜山焚毀巢穢除孽黨在事出力案內，蒙鎮守黑龍江將軍依，於是年八月十四日，奏保補缺後以知縣選用。十二月初八日，經吏部議准具奏，本日奉旨。

依議。

欽此。

十一月，蒙幫辦吉林邊務，琿春副都統恩，札委行營文案處會辦差使。十七年二月，復蒙幫辦吉林邊務·琿春副都統恩，札委兼辦和龍峪越墾清丈事務。十八年九月，蒙(督辦吉林邊務將軍長·幫辦吉林邊務琿春副都統恩)，於五載邊防案內在事出力，奏保請俟補知

縣後，以直隸州知州儘先補用。十九年五月十六日，准總理海軍事務衙門會同吏部核議覆奏，經吏部議改俟補筆帖式缺離任歸知縣班選缺後，以直隸州知州儘先補用。十九年五月初七日具奏，本日奉旨。

依議。

欽此。

均奉行知執照各在案。現供今職，須至履歷者。

計開：三代 曾祖父(富昌)，祖父(玉芳)，父(興陞)

炳宣，現年三十七歲，京城鑲白旗滿洲瑞林佐領下，荊州駐防鑲白旗滿洲聯陞佐領下人。於光緒六年歲試，(蒙)湖北學院臧，取進文生。以幼習繙譯，呈請改應繙譯鄉試。蒙前荊州將軍景，援案咨部。七年四月初八日，准禮部咨覆。

查文生炳宣請改應繙譯鄉試之處，核與奏定章程相符，准其改應繙譯。

等因在案。

十五年六月，投效吉林。蒙幫辦吉林邊務琿春副都統恩，札委邊務文案處差遣委員差使。是年十二月，蒙(幫辦吉林邊務將軍長·幫辦吉林邊務琿春副都統恩)賞給五品頂戴。十七年二月，蒙幫辦吉林邊務事宜·琿春副都統恩，札委和龍峪越壑清丈委員。四月在直隸捐局遵新海防例報捐補用筆帖式，已領執照在案。十八年九月，蒙(幫辦吉林邊務將軍長·幫辦吉林邊務琿春副都統恩)於五載邊防案內事出力奏保。經總理海軍事務衙門會同吏部覈准，選缺後以知縣不論雙單月遇缺儘先前即選。十九年五月初七日具奏，本日奉旨。

依議。

欽此。均奉行知執照在案。須至履歷者。

計開：三代 曾祖父(志善)，祖父(添貴)，父(松成)

鄭維周，現年四十歲，浙江杭州府錢塘縣人。由俊秀於光緒十七年正月在天津賑捐局報捐監生加縣丞職銜，是年四月領照。先於十五年投效吉林邊防，蒙幫辦吉林邊務琿春副都統恩，委派行營文案處隨同辦事委員。十七年，蒙派專辦越墾文案事件。九月，復蒙(督幫)辦吉林邊務(將軍長·琿春副都統恩)於五載邊務案內有事出力奏保。十九年五月十六日，准總理海軍事務衙門會同吏部覆奏，經吏部覆准以縣丞不論雙單月遇缺儘先即選。十九年五月初七日具奏，本日奉旨。

依議。

欽此。是年七月，遵海防新例，在山東捐局第二十六次請獎案內，補交三班報捐，分發省分試用。九月領照，均奉行知執照各在案。現供今差。須至履歷者。

計開：三代 曾祖父(奎)，祖父(煥)，父(錫祺)

吉林將軍衙門印務處管檔堂主事凌雲，現年五十八歲，係吉林烏槍營漢軍鑲黃旗勝安佐領下人。由監生在戶司貼寫委筆帖式。於同治五年十二月間，揀放銀庫筆帖式之缺，給咨送部。六年四月初十日，由吏部帶領引見，經欽派王大臣驗放。十一日覆奏，奉旨。

補授。

欽此。

十三年間揀放，與拉林倉官玉山擬陪，給咨送部。七月初六日，由吏部帶領引見，奉旨。

記名。

欽此。

是年十月初十日，補授吉林倉官。自接任起連閏扣至光緒四年九月初十日，四年任滿，照例咨部，仍回銀庫筆帖式原任候陞。五年五月二十日，奉准吏部咨覆。

照例入於小京官冊內，俟有在京各項小京官缺出，歸於雙月推陞。當因前途壅滯，無力候選，情願援例候陞本處文職。

等因。

據情咨報。旋准吏部咨覆，

以本處遇有主事總站官缺出，酌量陞用。

光緒九年十二月初十日，與管檔堂主事慶和，擬陪由吏部帶領引見一次。十三年間，因剿辦吉林積年各路馬賊案內出力，經前吉林將軍希，彙案保奏。十三年十二月十九日，奉旨。

著以本省主事遇缺儘先即補。

欽此。

十六年三月二十六日，吏部帶領引見。奉旨。

著照例用。

欽此。

十九年十一月十七日，奏補吉林將軍衙門印務處管檔堂主事之缺，旋准吏部遵旨覈議，覈與輪用班次相符，應准其補授。於光緒二十年正月十四日覆奏，奉旨。

依議。

欽此。

須至履歷者。

計開：三代 曾祖父(李成玉)，祖父(李英)，父(李永山)

吉林滿洲正紅旗補用佐領，先換頂戴防禦塔爾幹，年四十八歲，陳滿洲食俸餉，當差三十二年，在兵司邊務承辦處充當披甲貼寫七年，領催額委筆帖式委章京十二年，署理赫爾蘇站筆帖式三年，驍騎校十年，防禦四年。於同治五年間，跟隨辦理吉林軍務將軍富，出吉林所屬等處，剿賊兵一次，打仗六次，殺賊三名，捉生二名。於八年搜捕餘匪在事出力，經辦理吉林軍務將軍富，奏明賞給七品頂戴。於光緒二年間，與驍騎校春德擬陪引見，奉旨。

記名。

欽此。

於八年間補授本旗驍騎校。於十二年間，在邊務承辦處辦理交涉事件出力，經欽命將軍

侯希，獎勵賞換五品頂戴。於十七年十一月間，揀放琿春鑲藍旗防禦，擬正由旗帶領引見，奉旨。

准以塔爾幹揀放。

欽此。

於十八年由琿春轉回吉林滿洲正紅旗防禦之缺。是年九月間，因辦理邊務兵，勞績昭著，已屆五年限滿，在事出力，蒙(督幫)辦吉林邊務事宜(將軍長·琿春副都統恩)保奏，奉硃批。

該衙門議奏。

欽此。

於十九年五月初七日，經總理衙門海軍事務衙門會同吏兵部覆奏，奉旨。

塔爾幹准以佐領補用，先換頂戴。

欽此。

於十三年正月十五日，恭逢恩詔加一級。十五年二月初三日，恭逢恩詔加一級。是年三月十六日，恭逢恩詔加一級。十六年三月二十二日，恭逢恩詔加一級。此加四級，因陞防禦照例改爲紀錄四次。二十年八月十六日，恭逢恩詔加一級。任內並無降革罰俸案件。現在實有加一級紀錄四次。

計開：三代 曾祖父(忠全保)，祖父(和成保)，父(巴隆阿)

何樹漢，現年三十三歲，湖北漢陽府漢陽縣人。由俊秀於光緒十四年投效奉天練軍行營文案，充差出力，蒙欽差大臣辦理東三省練兵事宜定，賞給六品頂戴。十五年護送軍餉赴吉，以邊防在事出力，蒙督辦吉林邊務將軍長，賞換五品頂戴。十六年在琿春電報局代辦山東賑捐，遵例報捐監生加府經歷銜。十七年十月初二日，承領執照在案。旋蒙督理吉林·朝鮮通商總局兼辦越壑事宜葉稟，奉幫辦吉林邊務琿春副都統恩，檄委辦理越壑文案差使。十七年越壑事竣，復蒙幫辦吉林邊務琿春副都統恩，札委邊務行營文案差遣委員。現供今差，須至履歷者。

計開：三代 曾祖父(應龍)，祖父(開玉)，父(希遜)

唐書勳，現年三十二歲，山東登州府甯海州人。由文章於光緒十四年投效吉林靖邊右路統領營務處文案差使，蒙靖邊右路統領保，稟請賞給七品頂戴。十六年三月，蒙督理吉林·朝鮮商務總局兼越墾事宜葉，委派墾務文案司事，兼管清丈牌票等事。十七年十月，在代辦山東賑捐，琿春電報局遵例報捐監生加府經歷職銜。是年十月初二日，奉領監職兩照。十八年，蒙督理和龍峪兼撫墾民事宜田稟請(督幫)辦吉林邊務事宜(將軍長·琿春副都統恩)賞換五品頂戴，仍以內獎存記，均奉行知執照各在案。現供今差，須至履歷者。

計開：三代 曾祖父(永冀)，祖父(化初)，父(字鈞)

高甫麟，現年四十五歲，湖北武昌府江夏縣人。由文章於光緒十五年投效琿春。蒙幫辦吉林邊務琿春副都統恩，奏派黑頂子清丈越墾各差出力，蒙(督幫)辦吉林邊務事宜(將軍長，琿春副都統恩)賞換六品頂戴。十六年，蒙督理吉林，朝鮮商務總局兼辦越墾事宜葉，稟奉(督幫)辦吉林邊務事宜(將軍長，琿春副都統恩)准委通商總局越墾委員兼管越墾文案卷宗。是年十月，在代辦山東賑捐，琿春電報局遵例報捐監生並加縣丞職銜。十七年十月初二日，承領監職兩照。是年十一月十一日，復委通商總局稅務司事。旋奉署理吉林，朝鮮商務總局兼越墾事宜王，稟派專辦越墾冊籍委員，仍兼文案卷宗，均奉行知執照各在案。現供今職。須至履歷者。

計開：三代 曾祖父(國珍)，祖父(本謨)，父(益恒)

葉含芳，現年五十三歲，湖北武昌府大冶縣人。由俊秀於光緒十四年投效吉林，充當吉勝營字識。十五年，蒙幫辦吉林邊務琿春副都統恩，委派黑頂子屯墾營辦事官，並清丈黑頂子越墾地畝差使。十六年，蒙督理吉林·朝鮮通商總局兼越墾事宜葉，委派通商總

局局事. 十月, 復蒙稟委越壑核算委員. 十七年, 越壑事竣旋琿, 蒙幫辦吉林邊務琿春副都統恩, 札委文案處辦事官. 現供今差. 須至履歷者.

計開：三代 曾祖父(胃張), 祖父(林桂), 父(方盛)

12월 30일, 吉林將軍 恩澤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내왔다.

광서 20년 12월 13일, 본 아문에서는 유지를 받들어 越壑 조선 백성을 安插하고 토지측량에 진력한 각 관원들을 추천하여 恩典과 褒賞을 간청하는 사안에 대해 삼가 주접을 갖추니, 황제께서 살펴봐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주접을 삼가 공손히 갖추어 올렸습니다.

광서 20년 3월 2일, 琿春과 圖門江 北岸의 조선 유민들이 개간한 토지를 거두어들여 측량하는 일이 이미 일률적으로 완료되어, 將軍 長順과 함께 (조선 백성을) 호적에 편입시키고 세금을 부과하는 사무를 처리하는데 진력한 각 관원들 중에서 몇 사람을 적당하게 추천해도 되는지, 유지를 청하여 그에 따르겠다는 주접을 갖추어 올렸습니다. 이번 달 19일, 다음과 같은 硃批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서 논의하여 상주하고, 명단을 함께 발송하라.

뒤이어 총리아문에서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내왔습니다.

광서 24년 4월 24일, 戶部와 함께 覆奏하였고, 오늘 다음과 같은 硃批를 받았습니다.

몇 사람의 인원을 적절하게 추천하도록 하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함부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 나머지는 논의한 대로 하라.

이상과 같은 총리아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조선 유민들이 (국경을) 넘어 琿春에 와서 살게 된 것은 또한 이미 10여 년이 되었고, 戶數는 수천, 人丁은 2만을 넘었는데, 모두 아직 중국의 호적에 편입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땅 주인이 정해지지 않아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침탈하니, 큰 말썽이 생겨나 장래에 우환을 남길까 심히 두렵습니다. 또한 조선에서는 누차 (그들을) 刷還할 것을 논의하였으나 결국에는 실행하지

71) 후선(候選)은 청후선용(聽候選用)으로 이부에 신고한 다음 자격순서에 따라 대기하면서 임용을 기다리는 청대의 관리 임용방식을 가리킨다.

못하였습니다. 신과 (吉林將軍) 長(順)은 자문과 서신을 통해 누차 상의하여 조정의 藩封을 撫養하려는 뜻을 우리러 體現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安集시키고자 도모했던 것은, 바로 그 疆土를 안정시키려 한 것이었지 그 人民을 얻는 것을 이롭다고 생각해서는 아니었습니다. 광서 16년 3월에 시작하여 광서 17년 7월에 관련 사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거두어들여 撫養하게 된 墾民이 2만 남짓이었고, 토지를 측량하여 그 결과 개간지(熟地) 15,000여 晌이 보고되었으며, 4堡 39社를 세우고 일률적으로 入籍시켜 영원히 주인과 손님 사이의 불만을 없앴습니다. 파견된 각 인원은 모두 우리러 황상의 작은 나라를 어여삐 여기는 덕에 능히 부합하여, 과격하거나 멋대로 다루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마침내 이익만을 꾀하여 이를 방해하려는 조선 관리들은 지혜가 다하고 술책이 궁하여 아무런 대책도 베풀 수 없었으며, 墾民들은 歸化를 통해 영원히 그 땅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山東省의 歷城 等 州縣의 黃河 주변 水災民을 移住시킨 사안과 비교하면, 그 힘든 상황은 지나치면 지나쳤지 미치지 않는 경우는 없었을 것입니다. 吉林朝鮮商務를 督理하는 委員이자 墾越事務를 兼辦하는 知府用補用同知이자 留吉試用知縣인 王昌熾는 일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취한 조치가 모두 적절하여 실로 특별히 진력했다고 할 만합니다. 청컨대, 그를 知縣으로 補用하는 것을 면제해 주고 (그보다 한 등급 위인) 同知로서 여전히 吉林에 남겨두어 補用하도록 하고, 아울러 知府班에 귀속시키고 포상으로 三品銜을 더해주시기를 간청하고자 합니다. 同知銜分省補用知縣이자 越墾事務를 會辦하는 程國鈞은 시종 그 업무에 대해 남보다 배나 노력하였으니 本班에 따른 補用을 면제해 주고 同知로서 省에 파견되어 補用되도록 해 주십시오. 나머지 9명은 모두 특별히 진력한 자들로, 삼가 유지를 받들어 특별히 우수한 인원을 가려 뽑아 추천하였으며 감히 조금도 함부로 자격 없는 사람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삼가 명단(淸單)을 갖추어 보실 수 있도록 올리면서 황상의 은혜를 간청합니다. 아울러 山東 災民을 이주시켰던 방식을 원용하여 그에 따라 포상을 내리신다면 格外의 넓은신 자애로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지역에 관청을 세워 나누어 다스려야 할지 여부는 제가 상황을 살피고 검토하여 上奏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인원의 履歷에 대해서는 吏部에 자문을 보내었고, 유지에 따라 越墾 조선 백성을 安插하고 토지측량에 진력한 인원들을 추천하는 사유에 대해서 마땅히 삼가 주점을 갖추어 올리는 바이오니 황상께서 살펴보고 훈시를 내려 주시길 엿드려 바라옵니다. 삼가 주를 올립니다.

(이상과 같은 주접을 올려 황상의) 硃批를 받은 다음, 재차 삼가 초록하여 보고를 올리는 것 외에도, 마땅히 먼저 원 주접의 초록과 더불어 해당 관원의 三代 出身履歷에 대해서 명단(淸冊) 1권을 만들어 총리아문에 올려 보고하니, 검토해 주십시오.

첨부문서 초록 :

琿春의 越壘 조선 백성을 安插하는 사무를 처리하고 아울러 토지측량에 진력하여 恩典과 褒賞을 간청하는 각 인원들의 명단을 삼가 갖추어 올리오니 살펴봐 주십시오.

첨부내용 :

知縣班 選缺로 귀속된 다음 直隸州 知州儘先補用이 된 藍翎補用筆帖式⁷²⁾ 培源과 五品頂戴知縣用筆帖式 炳宣, 이상의 2명은 모두 本班에 따른 補用을 면제하고, 知縣으로 홀수·짝수 달을 불문하고 吏部에서 자리가 나면 가장 먼저 選用하는 대상으로 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分省試用縣丞 鄭維周은 本班에 따른 보충을 면제하고 知縣으로 여전히 省에 파견하여 候補班에 귀속시켜 자리가 나면 가장 먼저 選用하는 대상으로 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吉林管檔堂主事 凌雲은 그 직무에서 면제시키고 直隸州 知州로서 候補班에 귀속시켜 먼저 選用하는 대상으로 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吉林滿洲正紅旗補用佐領이자 先換頂戴防禦인 塔爾幹은 候補左領을 기다린 다음 가장 먼저 協領⁷³⁾으로 補用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五品頂戴府經歷銜 唐書勳과 五品頂戴府經歷銜 何樹漢 이상 2명은 府經歷⁷⁴⁾으로 홀수·짝수 달을 불문하고 吏部에서 자리가 나면 가장 먼저 선용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五品頂戴縣丞 高甫麟은 縣丞으로 홀수·짝수 달을 불문하고 이부에서 자리가 나면 가장 먼저 補用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五品頂戴俊秀 葉含芬은 巡檢으로 吏部에 귀속시켰다가 홀수·짝수 달을 불문하고 자리가 나면 가장 먼저 補用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72) 청대 각 아문에 배치된 하급 문관으로, 만주어로 문서를 처리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73) 청대 주방괄기의 무직 관원으로 종3품의 직위이다.

74) 정8품으로 府의 經歷司를 맡는 관직.

履歷冊 초록

삼가 琿春의 越壘 조선 백성을 安插시키는 사무를 처리하고 아울러 토지측량에 진력하여 포상을 간청하는 文武 각 관원들의 三代 出身과 履歷에 대해 명단을 갖추어 보고하오니 살펴봐 주십시오.

첨부내용 :

王昌熾는 올해 39세로 湖北 武昌府 江夏縣 사람입니다. 童生(文章)으로 광서 6년 新疆 軍營에 투신하였습니다. 광서 9년 여러 해 동안 邊防의 사후처리 업무에 특별히 진력한 인원을 포상하는 사안에서 烏魯木齊都統 恭이 상주하여 추천하였습니다. 吏部의 논의를 거쳐 巡檢으로 吏部에 귀속시켰다가 가장 먼저 選用하기로 하였습니다. 10월 8일,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논의한 대로 하라.

10년, 伊犁를 수복할 때에 여러 해 동안 숨어 있는 도적 떼를 토벌하면서 진력한 인원을 포상하는 사안에서 幫辦新疆軍務大臣 伊犁將軍 金이 상주하여 추천하였습니다. 11년 3월 15일, 軍機大臣이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歸部儘先選用巡檢 王昌熾는 本班에 따른 선발을 면제하고, 府經歷으로 吏部에 귀속시켜 홀수·짝수 달을 불문하고 자리가 생기면 우선 선용하도록 하라. 아울러 상으로 六品銜을 추가하라.

광서 8~9년, 2년 동안 2회에 걸쳐 新疆 중남부의 경계를 함께 답사하는 업무에 진력한 인원을 포상하는 사안에서 12년 蒙新疆分界大臣 長이 상주하여 추천하였습니다. 7월 24일 吏部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장 자문을 보냈습니다.

7월 18일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候選府經歷 王昌熾는 本班에 따른 선발을 면제하고, 知縣으로 吏部에 귀속시켜 홀수·짝수 달을 불문하고 자리가 생기면 우선 선용하도록 하라. 아울러 상으로 同知銜을 부가하라.

앞서 광서 9년 12월에 보고를 올려 軍營을 떠나는 것을 허락받았으며, 결코 담당할 사무 처리를 완료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陞任吉林副都統으로 烏魯木齊領隊大臣 恩을 수행하여 함께 吉林으로 향하였고, 吉林將軍 希와 吉林副都統 恩의 지시를 받아 吉林將軍 文案委員의

差使에 충당되었습니다. 13년 練軍과 함께 도적 때 7명을 체포하여, 吉林將軍 希와 吉林副都統 恩이 상주하여 추천하여 자리가 생기면 同知로 임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14년 3월, 吏部에서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13년 12월 19일,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논의한 대로 시행하라.

14년 9월, 吉林將軍 長과 副都統 恩이 軍營에 남겨두어 업무에 파견할 것을 주청하였습니다.

12월 吏部로부터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11월 23일 覆奏하여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논의한 대로 시행하라.

15년 6월 10일, 幫辦吉林邊務琿春副都統 恩의 지시를 받아 邊務文案處會辦에 충당되었습니다.

9월 재차 지시를 받아 琿春行營의 發審 업무를 겸하게 되었습니다. 16년 11월 29일, 督辦吉林邊務將軍 長의 지시를 받아 署理吉林·朝鮮商務總局兼辦越墾事宜에 충당되었습니다.

18년 3월 10일, 吉林·朝鮮商務總局의 사무를 인계하였습니다. 뒤이어 閏6월 15일, 督辦吉林邊務將軍 長의 지시를 받아 稽查琿春天寶山銀礦委員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올해 9월, 督幫辦吉林邊務將軍 長과 琿春副都統 恩이 5년간의 邊防 관련 인원을 포상하는 사안에서 업무에 진력했다는 이유로 同知에 補用된 이후 知府로서 홀수·짝수 달을 불문하고 자리가 생기면 가장 우선적으로 선용할 것을 주청하였습니다. 19년 5월 16일, 總理海軍事務衙門과 吏部가 함께 검토하고 논의하여 答변 상주를 올렸는데, 吏部에서 知縣으로 선발하여 離任하기를 기다렸다가 同知班에 귀속시켜 보충한 이후에 知府의 자리가 생기면 우선 보용하기로 바뀌었습니다. 19년 5월 7일, 상주하여 그날로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논의한 대로 하라.

앞서 19년 2월 21일, 幫辦吉林邊務琿春副都統 恩의 지시를 받아 琿春行營의 發審 사무를 겸하여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19년 10월 19일 督辦吉林邊務將軍 長이 상주하여 知府同知銜을 지닌 補用同知·候選知縣 王昌熾가 일 처리에 근면하고 재간이 있으므로 知縣으로서 吉林에 남겨두어 補用하게 해달라고 주청하였습니다. 올해 11월 24일, 다음과 같은 硃批를 받았습니다.

요청한 바에 따르고, 吏部에 알리도록 하라.

(이상과 같은 내용을) 모두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내용 : 三代의 내역은 曾祖父(照), 祖父(世定), 父(能亨)입니다.

程國鈞은 올해 48세로 安徽 徽州府 歙縣 사람입니다. 俊秀⁷⁵⁾로서 同治 7년 京師銅局에 捐納을 하였고, 閏4월 14일 戶部에서 증명서를 받았는데, 程國鈞은 監生⁷⁶⁾으로 捐未入流를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어 홀수·짝수 달을 불문하고 指項典史로서 福建에 보내 試用하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8년 5월, 前福建巡撫 周의 지시를 받고 甘肅으로 兵餉을 운송하는 업무를 맡아 陝西軍需局에 가서 납부하였습니다. 9년 정월, 前督辦西征糧台·侍講學士 袁의 명을 받아 甘肅으로 가서 秦州甘捐糧捐局을 개설하는 사무를 처리하였습니다. 13년 정월, 인수인계를 하고, 捐輸冊報를 운송하였습니다. 곧 陝西로 돌아가 임무를 완결하고, 더불어 甘肅捐納二十四次에 다시 捐納을 추가하였습니다. 12월 16일, 戶部の 증명서를 받았는데 典史 程國鈞을 府經歷으로 하고 吏部에 귀속시켰다가 선용한다는 것이 허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前督辦西征糧台 內閣部堂 袁의 명을 받아 湖北 江漢關에서 보내는 協餉을 甘肅安西州 正白旗漢軍都統 金에게 운송하는 임무를 맡아, 大營에 軍餉을 인도한 다음, 軍營에 남아 업무를 맡고, (都統을) 수행하여 烏魯木齊의 各城 出口를 탈환하였습니다. 前幫辦新疆軍務 伊犁將軍 金이 관련 사안을 모아 상후하면서 추천을 하였는데, 光緒 4년 2월 4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유를 받았습니다.

候選府經歷 程國鈞은 本班에 따른 선발을 면제해 주고 知縣으로 홀수·짝수 달을 불문하고 省에 파견하여 자리가 생기면 우선 임용하며, 상으로 同知銜을 부가하라. 해당 부서에 알리라.

8년 關外가 평온해지자 부모를 뵈러 가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幫辦新疆軍務 伊犁將軍 金이 軍營을 벗어나는 것을 재가하였으며, 이상의 모든 사항들에 관해 통보를 받았고 증명서도 모두 남아 있습니다. 14년 11월, 琿春에 투신하였습니다. 15년 3월, 幫辦吉林邊務 陞任黑龍江將軍 依의 자문에 따라 督辦吉林邊務將軍 長이 靖邊前路隨同辦事委員으로 보충하였습니다. 9월, 幫辦吉林邊務 琿春副都統 恩의 지시를 받아 行營發審 업무에 충당되었고, 아울러 黑項子の 조선 백성의 越壘과 관련된 사무를 명백하게 조사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16년 6월, 督辦吉林邊務將軍 長과 幫辦吉林邊務 琿春副都統 恩이 함께 지시를 내려 和龍峪韓民越壘事宜 會辦에 충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前路委員과 行營發審 등 각 업무는 후임자에게 인계하

75) 학위(출신)가 없는 한족 관리를 가리킨다.

76) 국가감에서 학업을 닦는 모든 학생을 가리킨다.

였습니다. 7월에 부임하여 越壘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17년 6월, 越壘 관련 사무가 완료되자 商局署理 王昌熾가 지도와 관련 장부를 휴대하여 省城으로 향하였고, 幫辦吉林邊務琿春副都統 恩이 저로 하여금 吉·朝通商總局의 關防을 대신 맡도록 하였습니다. 8월 1일 이 업무를 다시 인계하고, 9월 琿春으로 돌아와 임무를 완결하였습니다. 幫辦吉林邊務琿春副都統 恩이 行營文案處의 額外會辦으로 충원하고 아울러 發審을 겸하도록 하였습니다. 18년 3월, 行營營務處 會辦으로 자리를 옮기고 또한 여전히 發審을 겸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첨부내용 : 三代의 내역은 曾祖父(北祚), 祖父(其蔭), 父(元焜)입니다.

培源은 올해 35세로, 京城鑲黃旗滿洲富康佐領下의 荊州駐防鑲黃旗滿洲寶崑佐領下 사람입니다. 광서 8년 伊犁 軍營에 투신하였습니다. 10년 12월 15일, 幫辦新疆軍務大臣 伊犁將軍 金이 伊犁를 탈환하고 여러 해 동안 숨어 있는 도적 때를 토벌하는데 진력한 인원을 포상하는 사안에서 상주하여 六品藍翎을 내려 주도록 추천하였습니다. 광서 11년 2월 1일, 군기대신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지를 받았습니다.

요청한 바에 따라 포상하도록 하라.

그 해에 (소속) 旗로 돌아가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휴가를 청하였습니다. 湖北學政 高에 의해 文生員으로 뽑혔습니다. 광서 13년 吉林邊防에 투신하였고, 幫辦吉林邊務事宜 琿春副都統 依의 지시로 行營文案處隨同辦事委員의 업무에 충당되었습니다. 15년 연말에 포상으로 五品頂戴가 주어졌습니다. 16년 新海防例에 의거하여 戶部에 捐納하고 筆帖式으로 補用되었습니다. 11월, 捐納을 통해 貢生⁷⁷⁾에 補授되었습니다. 이전에 黑龍江 부대에서 산야를 수색하며 비적의 잔당을 토벌하는 사무에 진력한 인원을 포상하는 사안에서 그 해 8월 14일, 鎮守黑龍江將軍 依가 상주하여 자리가 생기면 이후 知縣으로 선용하도록 추천하였습니다. 12월 8일, 吏部가 논의하여 허가하고 상주하였는데, 그 날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논의한 대로 하라.

11월 幫辦吉林邊務 琿春副都統 恩의 지시를 받아 行營文案處會辦 임무에 충당되었습니다.

77) 시험을 거쳐 경사의 국가감에서 독서를 하게 된 生員을 가리킨다. 生員은 童試를 거쳐 府州縣學에서 학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가장 낮은 학위(功名)의 소유자이다.

17년 2월, 재차 幫辦吉林邊務 琿春副都統 恩의 지시를 받아 和龍峪 등에 越壘 토지의 측량 사무를 겸하여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18년 9월, 督辦吉林邊務將軍 長과 幫辦吉林邊務 琿春副都統 恩이 5년간의 邊防 사무에서 진력하였으므로 상주하여 知縣으로 補用한 다음 直隸州 知州로서 가장 앞서 補用하도록 추천하였습니다. 19년 5월 16일, 總理海軍事務衙門과 吏部가 함께 검토하고 논의하여 覆奏하였고, 吏部에서 논의하여 筆帖式 직무에 補用하였다가 離任하기를 기다려 知縣班에 귀속시켜 자리를 기다리다가 이후 直隸州 知州로서 우선 補用하기로 바꾸었습니다. 19년 5월 7일 이부에서 상주를 하였고, 그 날로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논의한 대로 시행하라.

이러한 지시를 받고 발급받은 증명서는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내용 : 三代의 내역은 曾祖父(富昌), 祖父(玉芳), 父(興陞)입니다.

炳宣은 올해 37세로, 京城鑲白旗滿洲瑞林佐領下의 荊州駐防鑲白旗滿洲聯陞佐領下 사람입니다. 광서 6년 歲試를 치르고 湖北學政 臧에 의해 童生⁷⁸⁾으로 뽑혔습니다. 어릴 때 繙譯을 공부하였기 때문에 청원서를 올려 繙譯鄉試에 응시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前荊州將軍 景이 기존 사례를 인용하여 禮部에 자문을 보냈는데, 7년 4월 8일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장 자문을 보냈습니다.

童生 炳宣이 繙譯鄉試에 응시하도록 바꿔줄 것을 요청하였던 부분은 奏定章程과 서로 부합하므로 繙譯에 응시하도록 바꾸는 것을 허가합니다.

15년 6월, 吉林에 투신하였습니다. 幫辦吉林邊務 琿春副都統 恩이 지시를 내려 邊務文案處差遣 委員에 應당하여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해 12월, 幫辦吉林邊務將軍 長과 幫辦吉林邊務 琿春副都統 恩에 의해 五品頂戴의 상을 지급받았습니다. 17년 2월, 幫辦吉林邊務事宜琿春副都統 恩이 지시를 내려 和龍峪越壘清丈委員으로 應당하였습니다. 4월에는 新海防例에 따라 直隸捐局에 捐納하여 筆帖式으로 보충되었으며, 이미 증명서를 수령하였습니다. 18년 9월, 幫辦吉林邊務將軍 長과 幫辦吉林邊務 琿春副都統 恩이 5년간의 邊防 사무 처리에서 진력한 인원을

78) 생원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의 학생을 말한다. 동생은 시험을 거쳐 합격한 다음에야 府州縣學에 다니는 생원이 될 수 있다.

포상하기 위해 상주하여 추천하였습니다. 總理海軍事務衙門과 吏部에서 함께 검토하여 選缺 이후 知縣으로 홀수·짝수 달을 불문하고 자리가 생기면 가장 우선 선용하도록 허용을 받았습니다. 19년 5월 7일, 상주가 이루어져 그날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논의한 대로 하라.

이상과 같은 통지를 받았고 발급한 증명서가 모두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내용 : 三代의 내역은 曾祖父(志善), 祖父(添貴), 父(松成)입니다.

鄭維周는 올해 40세로, 浙江 杭州府 錢塘縣 사람입니다. 俊秀로 광서 17년 정월 天津 賑捐局에서 捐納으로 監生과 縣丞의 職銜을 더하여 얻었고, 올해 4월 증명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앞서 광서 15년, 吉林邊防에 투신하였고, 幫辦吉林邊務琿春副都統 恩의 지시를 받아 行營文案處隨同辦事委員으로 충당되었습니다. 17년, 명을 받아 越壘 문서 처리를 전담하였습니다. 9월, 5년 간의 邊界業務 처리에 진력한 인원을 포상하는 사안에서 재차 督幫辦吉林邊務將軍 長과 혼춘부도통 恩이 상주하여 추천하였습니다. 19년 5월 16일, 總理海軍事務衙門이 吏部와 함께 覆奏하여, 吏部에서 縣丞으로 홀수·짝수 달을 불문하고 자리가 생기면 가장 우선하여 선용하기로 재가를 받았습니다. 19년 5월 7일, 상주하여 그 날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논의한 대로 시행하라.

그 해 7월, 海防新例에 따라 山東捐局的 第二十六次請獎 당시 補交三班을 연납하여 省에 파견되어 試用되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9월 증명서를 수령하였으며, 지금까지 모든 통보를 받았고 증명서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내용 : 三代의 내역은 曾祖父(奎), 祖父(煥), 父(錫祺)입니다.

吉林將軍衙門印務處의 管檔堂主事 凌雲은 올해 58세로, 吉林烏槍營 漢軍鑲黃旗勝安佐領下 사람입니다. 監生으로 戶司貼寫에 筆帖式으로 충당되었습니다. 同治 5년 12월, 銀庫 筆帖式의 자리에 발탁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吏部로 자문이 보내졌습니다. 6년 4월 10일, 吏部에서 통솔하여 황상께 引見하였고, 欽派王大臣의 覈閱를 통과하였습니다. 11일 覆奏하여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補授하라.

13년에 拉林倉官玉山의 副官으로 선발되어 吏部에 자문이 보내졌습니다. 7월 6일 吏部에서 통솔하여 引見하였고,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이름을 기록하라(記名).

이 해 10월 10일, 吉林倉官에 補授되었습니다. 임무를 맡은 이후 윤달까지 포함하여 光서 4년 9월 10일까지 4년 임기가 만료되어 前例에 따라 吏部에 자문이 보내져, 銀庫筆帖式 원임으로 돌아가 승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5년 5월 20일, 吏部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장 자문을 보내왔습니다.

예에 따라 小京官冊에 편입시켜 두었다가, 京師에 각종 小京官 자리가 생길 때를 기다렸다가, 짝수 달에 귀속시켜 승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응당 자리가 많이 밀려 있어 선발을 기다릴 수 없다면, 前例를 원용하여 순서가 되면 本處의 文職으로의 승진하는 것을 자원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정에 근거하여 자문으로 보고하였더니, 이후 吏部가 다음과 같은 답장 자문을 보냈습니다.

本處에 主事總站官 자리가 났으니, 살펴서 승진시켜 임용하십시오.

光서 9년 2월 10일, 管檔堂主事 慶和의 副官으로 吏部가 통솔하여 1차례 引見을 하였습니다. 13년 도안 오랫동안 吉林에서 各路의 馬賊을 토벌하는데 진력한 인원을 포상하는 사안에서 前吉林將軍 希加 종합적인 보고를 하면서 상주하여 추천하였습니다. 13년 12월 9일,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本省主事로서 자리가 나면 가장 먼저 補用하도록 하라.

16년 3월 26일, 吏部에서 통솔하여 引見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前例에 비추어 임용하라.

19년 11월 17일, 吉林將軍衙門 印務處管檔堂主事 자리에 補授하겠다고 상주가 이루어졌고, 곧이어 吏部에서 유지를 받들어 재차 논의하여 검토한 결과와 輪用班次가 서로 부합하여 補授를 허가받게 되었습니다. 光서 20년 정월 14일 覆奏하여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논의한 대로 시행하라.

이상입니다.

첨부내용 : 三代의 내역은 曾祖父(李成玉), 祖父(李英), 父(李永山)입니다.

吉林滿洲正紅旗 補用佐領으로 先換頂戴防禦인 塔爾幹은 올해 48세인 陳滿洲⁷⁹⁾로 俸餉을 받으면서 32년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兵司邊務承辦處에 膺當되어 披甲貼寫로 7년, 領催額委筆帖式 委章京으로 12년, 署理赫爾蘇站筆帖式으로 3년, 驍騎校로 10년, 防禦로 4년을 일하였습니다. 同治 5년 무렵 辦理吉林軍務將軍 富를 수행하여 吉林 소속지역에서 賊兵을 1차례 토벌하였고, 6차례의 전투를 거쳤으며, 匪賊 3명을 죽이고 2명을 사로잡았습니다. 8년, 잔여 비적을 수색하고 체포하는데 진력한 인원을 포상하는 사안에서 辦理吉林軍務將軍 富에 의해 七品頂戴를 수여하자고 奏請되었습니다. 광서 2년에는 驍騎校 春德의 副官으로 함께 引見을 하였고,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이름을 기록하라.

8년에, 本期驍騎校에 補授되었습니다. 12년에는 邊務承辦處에서 交涉事件을 처리하는데 진력한 인원을 포상하는 사안에서 欽命將軍侯 希에 의해 五品頂戴로 바뀌 장려하는 것이 주청되었습니다. 17년 11월, 琿春鑲藍旗 防禦로 발탁되자 鑲藍旗에서 통솔하여 引見하였고,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塔爾幹의 選用을 재가한다.

18년, 琿春에서 吉林滿洲正紅旗의 防禦 자리로 옮겼습니다. 올해 9월, 邊務와 군대 훈련 업무 처리에 공로가 뚜렷하였고, 이미 5년의 임기도 만료되었는데 사무를 처리하는데 진력했으므로 督幫辦吉林邊務事宜將軍 長과 勳훈부도통 恩이 상주하여 추천하였고, 다음과 같은 주비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서 논의하여 상주하라.

19년 5월 7일, 總理衙門·海軍事務衙門과 吏部·兵部가 함께 覆奏하였고,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塔爾幹을 佐領으로 補用하되, 먼저 頂戴를 바꾸어 주는 것을 재가한다.

13년 정월 15일, 加一級의 恩詔를 삼가 받았습니다. 15년 2월 3일, 加一級의 恩詔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 해 3월 16일, 또다시 加一級의 恩詔를 받았습니다. 16년 3월 22일, 다시 加一級

79) 아마 여진족(女真族)의 직계 후손으로 구성된 만주족(滿洲族)을 가리키는 것 같다.

의 恩詔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4급이 더해졌고 防禦로 승진하였기 때문에 전례에 따라 (加四級이) 紀錄 4차로 바뀌었습니다. 20년 8월 16일, 加一級의 恩詔를 받았습니다. 임기 내에 결코 降職·革職·罰俸 등의 사안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加一級에 紀錄 4차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첨부내용 : 三代의 내역은 曾祖父(忠全保), 祖父(和成保), 父(巴隆阿)입니다.

何樹漢은 올해 33세로, 湖北 漢陽府 漢陽縣 사람입니다. 俊秀로 광서 14년 奉天練軍行營 文案에 투신하였고, 충당된 업무에 진력하여 欽差大臣辦理東三省練兵事宜 定의 추천으로 六品頂戴를 받았습니다. 15년, 軍餉을 吉林으로 護送했고, 邊防 관련 사무에 진력하여 督辦吉林邊務將軍 長의 추천으로 五品頂戴로 바뀌었습니다. 16년, 琿春電報局에서 山東의 재해 구제를 위한 捐納(賑捐)을 대신 처리할 때, 例에 따라 捐納하고 監生에 府經歷 직함을 더해 받았습니다. 17년 10월 2일, 證明서를 받아 수령하였습니다. 곧 이후 督理吉林·朝鮮通商總局兼辦越壘事宜 葉이 보고하여 幫辦吉林邊務琿春副都統 恩의 지시로 越壘 관련 문서처리 업무에 충당되었습니다. 17년, 越壘 사무가 종료되자 재차 幫辦吉林邊務 琿春副都統 恩의 지시를 받아 邊務行營文案差遣委員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내용 : 三代의 내역은 曾祖父(應龍), 祖父(開玉), 父(希遜)입니다.

唐書勳은 올해 32세로, 山東 登州府 甯海州 사람입니다. 童生으로 광서 14년 吉林靖邊右路統領의 營務處文案 업무에 투신하였고, 靖邊右路統領 保의 보고로 七品頂戴를 포상으로 내려 줄 것을 요청되었습니다. 16년 3월, 督理吉林·朝鮮商務總局兼越壘事宜 葉의 명을 받아 壘務文案 司事로 충당되었고, 아울러 토지측량 지시공문 등의 사무를 관장하였습니다. 17년 10월, 琿春電報局에서 山東의 재해 구제를 위한 捐納을 대신 처리할 때에, 前例에 따라 捐納을 하여 監生에 府經歷의 銜을 더하여 얻었습니다. 올해 10월 2일, 監生과 (府經歷) 직무에 대한 두 가지 證明서를 수령하였습니다. 18년, 督理和龍峪兼撫壘民事宜 田에 의해 督幫辦吉林邊務事宜 將軍 長과 혼춘부도통 恩에게 五品頂戴를 내려 주도록 보고를 올려 요청하였고, 또한 내부적으로 포상 사실을 기록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통보와 證明서는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내용 : 三代의 내역은 曾祖父(永冀), 祖父(化初), 父(字鈞)입니다.

高甫麟은 올해 45세로, 湖北 武昌府 江夏縣 사람입니다. 童生으로 광서 15년 琿春에 투신하였습니다. 幫辦吉林邊務琿春副都統 恩에 의해 黑頂子에서 越壘 토지측량 사무를 처리하도록 奏派되었는데 업무에 진력하여 督幫辦吉林邊務事宜將軍 長과 혼춘부도통 恩에 의해 포상으로 六品頂戴로 바뀌었습니다. 16년, 督理吉林·朝鮮商務總局兼辦越壘事宜 葉이 보고를 올려 督幫辦吉林邊務事宜將軍 長과 혼춘부도통 恩이 通商總局越壘委員으로 충당하고 越壘관련 문서를 함께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해 10월, 琿春電報局에서 山東의 재해 구제를 위한 捐納을 대신 처리할 때에, 前例에 따라 捐納하여 監生에 縣丞의 職銜을 더하여 얻었습니다. 17년 10월 2일, 監生과 (府經歷) 직무에 대한 두 가지 증명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그 해 11월 11일, 또한 通商總局稅務司事로 충당되었습니다. 곧 이후 署理吉林·朝鮮商務總局兼越壘事宜 王이稟을 올려 專辦越壘冊籍委員으로 충당되었고, 여전히 문서 관리를 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모든 통보를 받았고 수령한 증명서는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내용 : 三代의 내역은 曾祖父(國珍), 祖父(本謨), 父(益恒)입니다.

葉含芳은 올해 53세로 湖北 武昌府 大治縣 사람입니다. 俊秀로 광서 14년 吉林에 투신하여 吉勝營字識에 충당되었습니다. 15년, 幫辦吉林邊務琿春副都統 恩의 명을 받아 黑頂子 屯壘營의 辦事官으로 파견되었고, 아울러 黑頂子 越壘 토지측량의 差使도 수행하였습니다. 16년, 督理吉林·朝鮮通商總局兼越壘事宜 葉의 명을 받아 通商總局局事로 파견되었습니다. 10월, 또한 재차 명을 받아 越壘核算委員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7년, 越壘 사무가 종료되자 琿春으로 되돌아왔고, 幫辦吉林邊務琿春副都統 恩의 지시를 받아 文案處辦事官에 충당되었습니다. 현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내용 : 三代의 내역은 曾祖父(青張), 祖父(林桂), 父(方盛)입니다.

(71) 문서번호 : 1-4-2-18 (2558, 4035a-4037b)

사안 : 越壘 조선인 安插과 토지측량에 힘쓴 각 관원들에 대해 吉林將軍이 추천 상주를 한 안건은 이미 吏部에 처리하도록 咨文을 보냈습니다(吉林將軍奏保安插越壘韓民並清丈出力各員一案, 已移吏部辦理).

- 첨부문서 : 1. 「琿春의 越壘 조선인들 安插을 처리하고 토지측량에 힘쓴 각 관원들에 대한 포상을 요청하였습니다(辦理安插琿春越壘韓民並清丈出力請獎各員)」 : 생략(바로 앞 문서번호의 내용과 동일).
2. 「越壘 조선인 安插과 토지측량에 힘쓴 관원들을 포상해달라고 간청한 吉林將軍의 주집 초록(鈔錄吉林將軍奏請恩獎安插越壘韓民清丈出力人員)」 : 생략(바로 앞 문서번호의 내용과 동일).

날짜 : 光緒二十一年正月十六日(1895년 2월 10일)

발신 : 戶部

수신 : 總理衙門

正月十六日, 戶部片稱.

內閣抄出, 署吉林將軍恩奏酌保安插越壘韓民清丈出力各員懇恩給獎等因一摺. 光緒二十一年正月初三日, 奉硃批.

該部議奏, 單併發.

欽此, 欽遵到部.

查此件應由吏部辦理, 相應抄錄原奏清單, 恭錄硃批, 片行吏部查照, 並片呈總理各國事務衙門可也.

照錄抄摺 : 생략(바로 앞 문서번호의 내용과 동일).

정월 16일 호부에서 다음과 같은 片文을 보내왔습니다.

내각에서 서리 吉林將軍 恩澤이 越壘 조선인 安插과 토지측량에 힘쓴 각 관원들을 적절히 추천해 포상을 간청하는 내용의 奏摺를 초록해 보내왔습니다. 광서 21년 정월 초3일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硃批를 받았습니다.

해당 부에서 논의해 상주하되, 명단도 함께 발송하라.

이 사안은 응당 이부에서 처리해야 하니 마땅히 원 상주문과 명단을 초록하고 硃批 역시 초록하여 이부에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片文으로 보내는 한편, 총리아문에도 片文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奏摺 초록 : 생략(바로 앞 문서번호의 내용과 동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72) 문서번호 : 1-4-2-19 (2581, 4071b)

사안 : 조선인의 越墾 토지를 거둬들여 측량하는 일에 힘쓴 관원들에 대해 吉林將軍이 올린 내용을 논의하여 상주한 주접과, 아울러 그에 따라 받은 諭旨와 추천된 관원의 직함·성명을 초록해 보내줌으로써 답장 상주를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請鈔錄前議奏吉林將軍收還清丈韓民越墾地畝在事出力人員一摺, 所奉諭旨及保舉各員立案銜名, 以便覆奏).

날짜 : 光緒二十一年正月二十四日(1895년 2월 18일)

발신 : 兵部

수신 : 總理衙門

正月二十四日, 兵戶片稱.

內閣抄出署理吉林將軍恩澤奏, 將軍長順會同奴才具奏清丈琿春圖們江北岸收還朝鮮流民越墾地畝, 業已一律完竣, 入籍升科, 在事出力各員應否酌保數員, 請旨遵行一摺. 光緒二十年三月十九日, 奉硃批.

該衙門議奏, 單併發.

欽此.

嗣准總理各國事務衙門來咨.

四月二十四日會同戶部覆奏, 日奉硃批.

准其酌保數員, 毋許冒濫, 餘依議.

欽此, 欽遵咨行前來.

伏查在事各員, 均屬異常出力, 凜遵諭旨擇尤酌保, 繕單恭呈御覽.

等因.

光緒二十一年正月初三日，奉硃批。

該部議奏，單併發。

欽此，欽遵到部。

相應片查貴衙門查明前來奉准其酌保數員諭旨，並將武(職)立案銜名，⁸⁰⁾ 一併抄錄聲覆過部，以便辦理覆奏可也。

정월 24일 병부에서 다음과 같은 片文을 보내왔습니다.

內閣에서 署理吉林將軍 恩澤이 장군 長順과 함께 조선 유민이 越巒한 琿春 圖們江 北岸의 토지를 측량하는 일을 이미 완료하여 조선 유민을 入籍시키고 세금을 부과하는 일에 힘을 쓴 각 관원에 대해 몇 명을 적당히 추천할 수 있는지 유지를 요청하면서 그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올린 주접을 초록하여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해 광서 20년 3월 19일 다음과 같은 硃批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서 논의해 상주하되, 명단도 함께 발송하라.

뒤이어 총리아문에서 다음과 같은 咨文을 보내왔습니다.

4월 24일 戶部와 함께 답장 상주를 했는데, 그 날로 다음과 같은 硃批를 받았습니다.

몇 사람의 인원을 적절하게 추천하도록 하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함부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 나머지는 논의한 대로 하라.

일에 참여한 각 관원들은 모두 각별히 힘을 썼으니 삼가 유지에 따라 특히 적절하게 추천하여 명단을 갖추어 황상께서 살펴보시도록 공손히 올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광서 21년 정월 초3일 다음과 같은 硃批를 받았습니다.

해당 부에서 논의해 상주하되 명단도 함께 보내라.

(이러한 내용이 본 병부에 전달되었으므로) 마땅히 귀 아문에서 전에 받은 관원 몇 명에 대해 적절한 추천을 허락한 유지와 추천을 받은 무직 관원의 직함과 성명을 아울러 초록하여 병부에 답장으로 보내주시면, 그에 따라 답장 상주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80) 본문의 내용이 제목과는 약간 다른데, 아마 ‘직(職)’자가 빠지는 원문의 오류가 있는 것 같다.

(73) 문서번호 : 1-4-2-20 (2601, 4120a-b)

사안 : 길림에서 越壘 조선인 安插에 힘쓴 각 관원들에 대한 포상을 주청하여 받은 유지와 추천 관원들의 이력 목록을 片文으로 회신합니다(片覆吉省奏請保獎安插越壘韓民出力各員所奉諭旨及原保獎各員履歷清單).

날짜 : 光緒二十一年二月初五日(1895년 3월 1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兵部

二月初五日, 行兵部片稱.

本年正月二十四日. 接准片稱.

署吉林將軍恩澤等會奏, 清丈琿春圖們江北岸收還韓民越壘地畝在事各員遵旨擇尤酌保繕單呈覽一摺. 光緒二十一年正月初三日, 奉硃批.

該部議奏, 單併發.

欽此, 欽遵到部.

請查明前奉准其酌保數員諭旨, 並將武職立案銜名鈔錄聲覆, 以便辦奏.

等因.

本衙門查此案工年准軍機處抄交吉林將軍長順等奏摺. 光緒二十年三月十九日奉硃批.

該衙門議奏.

欽此.

當經會同戶部於光緒二十年四月二十四日具奏, 本日奉硃批.

准其酌保數員, 毋許冒濫, 餘依議.

欽此.

旋於四月二十九日咨行吉林在案. 是年十二月三十日, 續准署吉林將軍文開.

十二月十三日, 具奏遵保安插越墾韓民出力各員一摺, 又附奏請保毓昇一片, 先行抄稿咨呈, 俟奉硃批, 再爲知照.

等因.

並繕送履歷清冊前來. 茲准貴部片查前因, 相應恭錄二十年四月二十四日所奉諭旨, 並將原保武職履歷摘抄清單, 片覆貴部查核辦理可也.

2월 초5일 兵部로 다음과 같은 片文을 보냈습니다.

올해 정월 24일 다음과 같은 片文을 받았습니다.

署理吉林將軍 恩澤이 장군 長順과 함께 조선 유민이 越墾한 琿春 圖們江 北岸의 토지를 측량하는 일을 이미 완료하여 조선 유민을 入籍시키고 세금을 부과하는 일에 힘을 쓴 각 관원에 대해 몇 명을 적당히 추천할 수 있는지 유지를 요청하면서 그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올린 주점에 대해 광서 21년 1월 3일 다음과 같은 硃批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서 논의해 상주하되, 명단도 함께 발송하라.

이러한 내용이 본 兵部에 전달되었으므로, 마땅히 귀 아문에서 전에 받은 적절한 추천을 허락한 유지와 추천을 받은 무직 관원의 직함·성명을 아울러 초록하여 답장으로 보내주시면, 그에 따라 상주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片文을 받고) 총리아문에서는 조사해보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군기처에서 초록해 내보낸 길림장군 長順의 주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서 20년 3월 19일 다음과 같은 硃批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서 논의하여 상주하라.

이에 따라 戶部와 함께 광서 24년 4월 24일 상주를 올렸고, 그 날로 다음과 같은 硃批를 받았습니다.

몇 사람의 인원을 적절하게 추천하도록 하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함부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 나머지는 논의한 대로 하라.
이에 따라 곧 4월 29일 吉林에 咨文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해 12월 30일 이어서 署理 吉林將軍의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12월 13일, 越巒 조선인을 安插하는데 힘쓴 각 관원들의 추천을 상주하였고, 또한 附片으로 毓昇의 추천을 주청하였는데, 먼저 주접을 초록하여 자문으로 보내되, 硃批를 기다렸다가 다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천 관원의) 이력 명단도 작성하여 보내왔습니다. 지금 귀 병부에서 片文으로 앞서와 같은 요청을 해왔으므로, 마땅히 光緒 20년 4월 20일 받은 유지와 원래 추천을 받은 무직 관원의 이력 명단 초록을 片文을 통해 답장으로 보내니, 귀 병부에서 검토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74) 문서번호 : 1-4-2-21 (2620, 4143b)

사안 : 雲騎尉 毓昇을 候補佐領에서 防禦로 바뀌 補用해 달라고 한 附片과 그에 관한 유지를
초록하여 알립니다(雲騎尉毓昇補用佐領改以防禦補用奏片, 錄旨知照).

날짜 : 光緒二十一年二月十二日(1895년 3월 8일)

발신 : 署理吉林將軍 恩澤

수신 : 總理衙門

二月十二日, 署吉林將軍恩澤文稱.

光緒二十年十二月十三日, 本衙門附片具奏爲雲騎尉毓昇補用佐領改爲以防禦補用, 仍俟補防禦後以佐領儘先補用等因一片, 當經照抄原片呈報在案. 茲於本年正月二十日, 奉到硃批.

兵部議奏.

欽此, 欽遵前來.

相應恭錄硃批, 呈報總理各國事務衙門鑒核施行.

2월 12일 署理吉林將軍 恩澤이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내왔습니다.

광서 20년 12월 13일 본 아문에서는 毓昇을 候補佐領에서 防禦로 바뀌 補用하되, 防禦로 補用되기를 기다리면서 佐領으로서 가장 먼저 補用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한 上奏文의 附片을 이미 초록하여 보고로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올해 정월 20일 다음과 같은 硃批를 받았습니다.

병부에서 논의해 상주하라.

이에 마땅히 硃批를 공손히 기록하여 총리아문에서 검토하시도록 보고를 올리는 바입니다.

(75) 문서번호 : 1-4-2-22 (2621, 4144a)

사안 : 越壘 조선인들을 安插한 각 관원을 적당히 추천한 주점에 대해 받은 硃批를 삼가
초록하여 알려드립니다(酌保安插越壘韓民出力各員摺, 恭錄奉到硃批知照).

날짜 : 光緒二十一年二月十二日(1895년 3월 8일)

발신 : 署理吉林將軍 恩澤

수신 : 總理衙門

二月十二日, 吉林將軍恩澤文稱.

光緒二十年十二月十三日, 本衙門恭摺具奏爲遵旨酌保安插越壘韓民清丈出力各員懇
恩給獎等因一摺, 當經照抄原摺呈報在案. 茲於本年正月二十日, 奉到硃批.

該部議奏, 單併發.

欽此, 欽遵前來.

相應恭錄硃批, 呈報總理各國事務衙門鑒核施行.

2월 12일 吉林將軍 恩澤이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내왔습니다.

광서 20년 12월 13일 본 아문에서는 越壘 조선인들을 安插하고 토지측량에 힘쓴 각 관원들을
적당히 추천하여 포상을 간청하는 내용의 奏摺를 올렸었고, 이미 원 주점을 초록하여 보고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올해 정월 20일 (다음과 같은) 硃批를 받았습니다.

해당 部에서 논의해 상주하되, 명단도 함께 보내라.

이에 마땅히 硃批를 삼가 초록하여, 총리아문에서 검토하시도록 보고를 올리는 바입니다.

(76) 문서번호 : 1-4-2-23 (3009, 4493b-4500b)

사안 : 琿春에서 越壑 토지측량에 힘쓴 관원에 대해 (주접을 올렸다가 반박을 받아) 고쳐 포상을 요청하면서 다시 올린 주접의 원고를 삼가 기록해 보내드립니다(錄送覆奏琿春清丈越壑出力人員更正請獎摺稿).

첨부문서 : 「琿春에서 토지측량에 힘쓴 관원의 포상을 요청하면서 다시 고쳐 작성한 王昌熾 등의 이력(更正琿春清丈出力人員請獎王昌熾等履歷)」.

날짜 : 光緒二十一年九月初三日(1895년 10월 20일)

발신 : 署理吉林將軍 恩澤

수신 : 總理衙門

九月初三日, 署吉林將軍恩澤文稱.

光緒二十一年八月十四日, 本衙門恭摺具奏.

爲琿春清丈越壑人員, 遵駁更正, 另繕清單, 懇恩給獎, 恭摺仰祈聖鑒事.

竊奴才於光緒二十年十二月十三日, 遵(旨酌)保安插韓民清丈出力各員一摺, 奉硃批.

該部議奏, 單併發.

欽此.

現准部咨.

請獎各員, 覈與成案不符, 奏奉諭旨, 駁令查照尋常勞績, 另行更正.

等因. 咨行前來.

奴才伏查原保之知府用補用同知·留吉試用知縣王昌熾, 現已在部遵例捐過知府本班, 引見到省. 惟其勞績在前, 應請俟補知府後, 以道員歸候補班儘先即補. 其同知銜分

省補用知縣程國鈞，單開之主事凌雲，筆帖式培源·炳宣·縣丞鄭維周五員，已於剿辦謀叛教匪案內在事出力，奏懇恩施在案。所有此次請獎單內，應先扣除。其餘各員，遵照尋常勞績章程，另繕清單，恭呈御覽，合無仰懇天恩，俯准照擬給予獎勵，以昭激勸。所有遵駁更正請獎緣由，理合恭摺具奏，伏乞皇上聖鑒，勅部覈覆施行。謹奏。等因。

除俟奉到硃批再行恭錄呈報外，合先照抄原摺，並該員等三代出身履歷，造具清冊一本，呈報總理各國事務衙門，謹請鑒核施行。

照錄粘單：

謹將辦理琿春清丈越墾請獎出力遵駁更正文武各員，三代出身履歷，造具清冊，呈報鑒核。須至冊者。

計開。

王昌熾現年四十歲，湖北武昌府江夏縣人，由文章於光緒六年投效新疆軍營。九年，因歷辦邊防善後在事尤為出力案內，蒙烏魯木齊都統恭奏保，經部議准，以巡檢歸部儘先選用。十月初八日，奉旨。

依議。

欽此。

十年，收還伊犁，歷年剿辦竄匪在事出力案內，蒙幫辦新疆軍務大臣伊犁將軍金奏保。十一年三月十五日，軍機大臣奉旨。

歸部儘先選用巡檢王昌熾，著免選本班，以府經歷歸部，不論雙單月遇缺儘先即選，並賞加六品銜。

欽此。

光緒八九年，兩次隨同勘分新疆中南界務。在事出力案內，十二年蒙新疆分界大臣長奏保。於七月二十四日准吏部咨覆內開。

七月十八日奉上諭。

候選府經歷王昌熾，著免選本班，以知縣歸部，不論雙單月遇缺儘先前即選，並賞加同知銜。

欽此。

先於光緒九年十二月，稟准離營，並無未完經手事件。隨同陞任吉林副都統烏魯木齊領隊大臣恩赴吉，蒙吉林(將軍希 副都統恩)札委吉林練軍文案委員差使。十三年因協同練軍拿盜匪七名，蒙吉林(將軍希 副都統恩)奏保，俟選缺後以同知用。十四年三月，准吏部咨開。

十三年十二月十九日，奉旨。

依議。

欽此。

十四年九月，復蒙吉林(將軍長 副都統恩)奏請留營差遣。十二月准吏部咨開。

十一月二十三日覆奏，奉旨。

依議。

欽此。

十五年六月初十日，蒙幫辦吉林邊務琿春副都統恩札委邊務文案處會辦。九月，復蒙札委兼琿春行營發審差使。十六年十一月二十九日，蒙督辦吉林邊務將軍長札委督理吉林·朝鮮商務總局兼辦越壑事宜。於十八年三月初十日交卸局務。旋於閏六月十五日，蒙督辦吉林邊務將軍長札委稽查琿春天寶山銀礦委員。是年九月，蒙(督辦吉林邊務將軍長 幫辦吉林邊務琿春副都統恩)於五載邊防案內 在事出力，奏請俟補同知後，以知府不論雙單月遇儘先前即選。十九年五月十六日，准總理海軍事務衙門會同吏部核議覆奏。

經吏部改俟選知縣離任歸同知班補缺後，以知府遇缺儘先前即補。十九年五月初七日具奏，本日奉旨。

依議。

欽此。

先於十九年二月二十一日，蒙幫辦吉林邊務琿春副都統恩委兼琿春行營發審差使。十九年十月十九日督辦吉林邊務將軍長奏，知府用同知銜補用同知候選知縣王昌熾，辦事勤能，請以知縣留吉補用。本年十一月二十四日，奉硃批。

著照所請，吏部知道。

欽此。

經吏部核准，飭令補交班次及分發銀兩，准留吉林補用等因。光緒二十年十月，蒙督辦邊務將軍長札委寶吉局提調。光緒二十一年正月十三日，蒙署理督辦吉林邊務將軍黑龍江將軍恩札委總理邊防糧餉事宜。復派領邊餉，藉便引見。今遵例捐補繳知縣三班分發銀兩，加捐免補知縣同知各本班。離任以知府仍留吉林，歸候補班遇缺儘先即補，並捐免保舉。光緒二十一年三月十二日，經吏部帶領引見，奉旨。

王昌熾著照例發往。

欽此。

本月二十一日領照，四月二十八日到省。五月在津捐局報捐花翎，已領執照在案，須至履歷者。

計開：三代，曾祖照，祖世定，父能亨。

吉林滿洲正紅旗補用佐領先換頂戴防禦塔爾幹，年四十九歲，陳滿洲食俸餉。當差三十三年，在兵司邊務承辦處充當披甲貼寫七年，領催額委筆帖式委章京十二年，署理赫爾蘇站筆帖式三年，驍騎校十年，防禦四年。於同治五年間跟隨辦理吉林軍務將軍富，出吉林所屬，剿賊兵一次，打仗六次，殺賊三名，捉生二名。於八年搜捕餘匪，在事出力，經辦理吉林軍務將軍富奏明，賞給七品頂戴。於光緒二年間與驍騎校春德擬陪引見，奉旨。

記名。

欽此。

十八年間，補授本旗驍騎校。於十二年間，在邊務承辦處辦理中外交涉事件出力，經欽

命將軍侯希獎勵，賞換五品頂戴。於十七年十一月間，揀放琿春廂藍旗防禦，擬正由旗帶領引見，奉旨。

准以塔爾幹揀放。

欽此。

於十八年由琿春轉回吉林滿洲正紅旗防禦之缺。是年九月間，因辦理邊務練兵，勞績昭著，已屆五年限滿，在事出力，蒙(督幫)辦吉林邊務事宜(將軍長 琿春副都統恩)等保奏，奉硃批。

該衙門議奏。

欽此。

於十九年五月初七日，經總理海軍事務衙門會同吏兵部覆奏，奉旨。

塔爾幹准以佐領補用，先換頂戴。

欽此。

於十三年正月十五日，恭逢恩詔，加一級。十五年二月初三日，恭逢恩詔，加一級。是年三月十六日，恭逢恩詔，加一級。十六年三月二十二日，恭逢恩詔，加一級。此加四級，因陞防禦，照例改爲紀錄四次。二十年八月十六日，恭逢恩詔加一級。任內並無降革罰俸案件，現在實有加一級紀錄四次。

計開：三代，曾祖忠全保，祖和成保，父巴隆阿。

何樹漢，現年三十四歲，湖北漢陽府漢陽縣人。由俊秀於光緒十四年投效奉天練軍行營文案，充當差出力，蒙欽差大臣辦理東三省練兵事宜定賞給六品頂戴。十五年護送軍餉赴吉，以邊防在事出力，蒙督辦吉林邊務將軍長，賞換六品頂戴。十六年，在琿春電報局代辦山東賑捐遵例報捐監生加府經歷銜。十七年十月初二日，承領執照在案。旋蒙督理吉林·朝鮮通商總局兼辦越壑事宜葉，稟奉幫辦吉林邊務琿春副都統恩，檄委辦理越壑文案差使。十七年越壑事竣，復蒙幫辦吉林邊務琿春副都統恩，札委邊務行營文案差遣委員，現供今差，須至履歷者。

計開：三代，曾祖應龍，祖開玉，父希遜。

唐書勳，現年三十三歲，山東登州府寧海州人。由文章於光緒十四年投效吉林靖邊右路統領營務處文案差使，蒙靖邊右路統領保稟請，賞給七品頂戴。十六年三月，蒙督理吉林·朝鮮商務總局兼越墾事宜葉委派墾務文案司事，兼管清丈牌票等事。十七年十月，在代辦山東賑捐琿春電報局遵例報捐監生加府經歷職銜。是年十月初二日，承領監職兩照。十八年，蒙督理和龍峪兼撫墾民事宜田，稟請(督幫)辦吉林邊務(將軍長·琿春副都統恩)，賞換五品頂戴。仍以內獎存記，均奉知行執照各在案。現供今差，須至履歷者。

計開：三代，曾祖永冀，祖化初，父字鈞。

高甫麟，現年四十六歲，湖北武昌府江夏縣人。由文章於光緒十五年投效琿春，蒙幫辦吉林邊務琿春副都統恩委派黑頂子清丈越墾各差出力，蒙(督幫)辦吉林邊務(將軍長·琿春副都統恩)賞換六品頂戴。十六年，蒙督理吉林·朝鮮商務總局兼辦越墾事宜葉，稟奉(督幫)辦吉林邊務(將軍長·琿春副都統恩)准委通商總局越墾委員兼管越墾文案卷宗。是年十月，在代辦山東賑捐琿春電報局遵例報捐監生並加縣丞職銜。十七年十二月初二日，承領監職兩照。是年十一月十一日，復委通商總局稅務司事。旋奉署理吉林·朝鮮商務總局兼越墾事宜王稟派專辦越墾冊籍委員，仍兼文案卷宗，均奉行知執照各在案。現供今職，須至履歷者。

計開：三代，曾祖國珍，祖本謨，父益恒。

葉含芳，現年五十四歲，湖北武昌府大冶縣人。由俊秀於光緒十四年投效吉林，充當吉勝營字識。十五年，蒙幫辦吉林邊務琿春副都統恩委派黑頂子屯墾營辦事宜，並清丈黑頂子越墾地畝差使。十六年，蒙督理吉林·朝鮮通商總局兼越墾事宜葉委派通商總局司事。十月，復蒙稟委越墾核算委員。十七年，越墾事竣旋琿，蒙幫辦吉林邊務琿春副都

統恩札委文案處辦事官。現供今差，須至履歷者。

計開：三代，曾祖胄張，祖林桂，父方盛。

9월 초3일 署理吉林將軍 恩澤이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내왔다.

광서 21년 8월 14일 본 아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점을 갖춘 바 있습니다.

琿春에서 越壘 토지를 측량한 인원들에 대해 (포상을 주청하였다가 吏部 등의) 반박을 받아 수정한 다음 명단을 따로 갖추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장려해주실 것을 간청하면서, 삼가 주점을 갖추어 올리니 황상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奴才는 光緒 20년 12월 13일 유지에 따라 越壘 조선인을 安插하고 토지측량에 힘쓴 각 관원들의 추천을 상주했고, 다음과 같은 硃批를 받았습니다.

해당 부에서 논의해 상주하되, 명단도 함께 발송하라.

지금 해당 부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포상을 요청한 각 관원을 검토해보니 전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상주해 유지를 받았으니, (일부 관원의 명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관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공적은 검토하여 따로 정정하도록 반박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자문을 받았으므로) 奴才가 엿드려 조사해 보건대, 원래 추천했던 知府用補用同知로서 吉林에 남아 試用知縣을 맡은 王昌熾의 경우 이미 吏部에서 前例에 따라 연납한 知府本班으로서 황상을引見한 다음 길림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로는 그보다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마땅히 知府로 補用된 다음을 기다려 道員으로서 候補班에 귀속시켜 우선적으로 補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同知銜의 分省候補知縣 程國鈞, 명단 내에 나열된 主事 凌震, 筆帖式 培源과 炳宣, 縣丞 鄭維周 등 5명의 관원은 이미 모반한 教匪를 토벌하는 사안에서 힘을 쓴 공로로 포상을 주청하여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포상 요청 명단 가운데 이들 관원들은 응당 먼저 배제하고, 나머지 관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공적을 규정한 章程에 따라 다시 따로 명단을 엮어 황상께서 살펴보시도록 올려 보내는 바이니, 이를 굽어보시고 그에 기초하여 포상해 주시는 天恩을 우러러 바라보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이부의 반박에 기초하여 다시 고쳐 포상을 요청하는 경위를

마땅히 주접을 갖추어 아뢰는 바이니, 황상께서 살펴보시고 이부에 검토하도록 지시를 내려 주시기를 엿드려 바라는 바입니다. 이에 삼가 주를 올립니다.
(이상과 같은 주접을 올렸는데) 硃批를 받든 후 삼가 초록하여 알리는 것 외에도, 마땅히 원 주접과 해당 관원 등의 3대 출신 이력을 명단으로 작성하여 우선 총리아문에 보고를 올리면서 삼가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분서 초록 : 「琿春에서 토지측량에 힘쓴 관원의 포상을 요청하면서 다시 고쳐 작성한 王昌熾 등의 이력」.

琿春의 越壘 토지측량 처리에 힘써 포상을 주청했다가 이부의 반박에 따라 다시 고쳐 수정한 文武 각 관원의 3대 출신 이력을 명단으로 작성하여, 올리니 검토해 주십시오.

첨부내용 :

王昌熾는 올해 40세로 湖北 武昌府 江夏縣 사람입니다. 童生(文章)으로 광서 6년 新疆 軍營에 투신하였습니다. 광서 9년 여러 해 동안 邊防의 사후 처리 업무에 특별히 진력한 인원을 포상하는 사안에서 烏魯木齊都統 恭이 상주하여 추천하였습니다. 吏部의 논의를 거쳐 巡檢으로 吏部に 귀속시켰다가 가장 먼저 選用하기로 하였습니다. 10월 8일,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논의한 대로 하라.

10년, 伊犁를 수복할 때에 여러 해 동안 숨어 있는 도적 떼를 토벌하면서 진력한 인원을 포상하는 사안에서 幫辦新疆軍務大臣 伊犁將軍 金이 상주하여 추천하였습니다. 11년 3월 15일, 軍機大臣이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歸部儘先選用巡檢 王昌熾는 本班에 따른 선발을 면제하고, 府經歷으로 吏部に 귀속시켜 홀수·짝수 달을 불문하고 자리가 생기면 우선 선용하도록 하라. 아울러 상으로 六品銜을 추가하라.

광서 8·9년, 2년 동안 2회에 걸쳐 新疆 중남부의 경계를 함께 답사하는 업무에 진력한 인원을 포상하는 사안에서 12년 蒙新疆分界大臣 長이 상주하여 추천하였습니다. 7월 24일 吏部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장 자문을 보냈습니다.

7월 18일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候選府經歷 王昌熾는 本班에 따른 선발을 면제하고, 知縣으로 吏部에 귀속시켜 홀수· 짝수 달을 불문하고 자리가 생기면 우선 선용하도록 하라. 아울러 상으로 同知銜을 부가하라.

앞서 광서 9년 12월에 보고를 올려 軍營을 떠나는 것을 허락받았으며, 결코 담당한 사무 처리를 완료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陞任吉林副都統으로 烏魯木齊領隊大臣 恩을 수행하여 함께 吉林으로 향하였고, 吉林將軍 希와 吉林副都統 恩의 지시를 받아 吉林將軍 文案委員의 差使에 充當되었습니다. 13년 練軍과 함께 도착 때 7명을 체포하여, 吉林將軍 希와 吉林副都統 恩이 상주하여 추천하여 자리가 생기면 同知로 임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14년 3월, 吏部에서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13년 12월 19일,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논의한 대로 시행하라.

14년 9월, 吉林將軍 長과 副都統 恩이 軍營에 남겨두어 업무에 파견할 것을 주청하였습니다.

12월 吏部로부터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11월 23일 覆奏하여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논의한 대로 시행하라.

15년 6월 10일, 幫辦吉林邊務 琿春副都統 恩의 지시를 받아 邊務文案處會辦에 充當되었습니다. 9월 재차 지시를 받아 琿春行營의 發審 업무를 겸하게 되었습니다. 16년 11월 29일, 督辦吉林邊務將軍 長의 지시를 받아 署理吉林·朝鮮商務總局兼辦越壘事宜에 充當되었습니다.

18년 3월 10일, 吉林·朝鮮商務總局的 사무를 인계하였습니다. 뒤이어 閏6월 15일, 督辦吉林邊務將軍 長의 지시를 받아 稽查琿春天寶山銀礦委員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올해 9월, 幫辦吉林邊務將軍 長과 勳勳부도통 恩이 5년간의 邊防 관련 인원을 포상하는 사안에서 업무에 진력했다는 이유로 同知에 補用된 이후 知府로서 홀수· 짝수 달을 불문하고 자리가 생기면 가장 우선적으로 선용할 것을 주청하였습니다. 19년 5월 16일, 總理海軍事務衙門과 吏部가 함께 검토하고 논의하여 答변 상주를 올렸는데, 吏部에서 知縣으로 선발하여 離任하기를 기다렸다가 同知班에 귀속시켜 보충한 이후에 知府의 자리가 생기면 우선 보용하기로 바뀌었습니다.

19년 5월 7일, 상주하여 그날로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논의한 대로 하라.

앞서 19년 2월 21일, 幫辦吉林邊務琿春副都統 恩의 지시를 받아 琿春行營의 發審사무를 겸하여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19년 10월 19일 督辦吉林邊務將軍 長이 상주하여 知府同知銜을 지닌 補用同知·候選知縣 王昌熾가 일 처리에 근면하고 재간이 있으므로 知縣으로서吉林에 남겨두어 補用하게 해달라고 주청하였습니다. 올해 11월 24일, 다음과 같은 硃批를 받았습니다.

요청한 바에 따르고, 吏部에 알리도록 하라.

(이상과 같은 내용을) 모두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내용 : 三代의 내역은 曾祖父(照), 祖父(世定), 父(能亨)입니다.

吉林滿洲正紅旗 補用佐領으로 先換頂戴防禦인 塔爾幹은 올해 48세인 陳滿洲로 俸餉을 받으면서 32년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兵司邊務承辦處에 應當되어 披甲貼寫로 7년, 領催額委筆帖式委 章京으로 12년, 署理赫爾蘇站筆帖式으로 3년, 驍騎校로 10년, 防禦로 4년을 일하였습니다. 同治 5년 무렵 辦理吉林軍務將軍 富를 수행하여 吉林 소속지역에서 賊兵을 1차례 토벌하였고, 6차례의 전투를 거쳤으며, 匪賊 3명을 죽이고 2명을 사로잡았습니다. 8년, 잔여 비적을 수색하고 체포하는데 진력한 인원을 포상하는 사안에서 辦理吉林軍務將軍 富에 의해 七品頂戴를 수여하자고 奏請되었습니다. 광서 2년에는 驍騎校 春德의 副官으로 함께 引見을 하였고,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이름을 기록하라.

8년에, 本期驍騎校에 補授되었습니다. 12년에는 邊務承辦處에서 交涉事件을 처리하는데 진력한 인원을 포상하는 사안에서 欽命將軍侯 希에 의해 五品頂戴로 바뀌 장려하는 것이 주청되었습니다. 17년 11월, 琿春鑲藍旗 防禦로 발탁되자 鑲藍旗에서 통솔하여 引見하였고,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塔爾幹의 選用을 재가한다.

18년, 琿春에서 吉林滿洲正紅旗의 防禦 자리로 옮겼습니다. 올해 9월, 邊務와 군대 훈련 업무 처리에 공로가 뚜렷하였고, 이미 5년의 임기도 만료되었는데 사무를 처리하는데 진력했으므로 督幫辦吉林邊務事宜將軍 長과 勳勳부도통 恩이 상주하여 추천하였고, 다음과 같은 주비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서 논의하여 상주하라.

19년 5월 7일, 總理衙門·海軍事務衙門과 吏部·兵部가 함께 覆奏하였고,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塔爾幹을 佐領으로 補用하되, 먼저 頂戴를 바꾸어 주는 것을 재가한다.

13년 정월 15일, 加一級의 恩詔를 삼가 받았습니다. 15년 2월 3일, 加一級의 恩詔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 해 3월 16일, 또다시 加一級의 恩詔를 받았습니다. 16년 3월 22일, 다시 加一級의 恩詔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4급이 더해졌고 防禦로 승진하였기 때문에 전례에 따라 (加四級이) 紀錄 4차로 바뀌었습니다. 20년 8월 16일, 加一級의 恩詔를 받았습니다. 임기 내에 결코 降職·革職·罰俸 등의 사안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加一級에 紀錄 4차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첨부내용 : 三代의 내역은 曾祖父(忠全保), 祖父(和成保), 父(巴隆阿)입니다.

何樹漢은 올해 33세로, 湖北 漢陽府 漢陽縣 사람입니다. 俊秀로 광서 14년 奉天練軍行營 文案에 투신하였고, 충당된 업무에 진력하여 欽差大臣辦理東三省練兵事宜 定の 추천으로 六品頂戴를 받았습니다. 15년, 軍餉을 吉林으로 護送했고, 邊防 관련 사무에 진력하여 督辦吉林邊務將軍 長의 추천으로 五品頂戴로 바뀌었습니다. 16년, 琿春電報局에서 山東의 재해 구제를 위한 捐納(賑捐)을 대신 처리할 때, 예에 따라 捐納하고 監生에 府經歷 직함을 더해 받았습니다. 17년, 10월 2일, 증명서를 받아 수령하였습니다. 곧 이후 督理吉林·朝鮮通商總局兼辦越壘事宜 葉이 보고하여 幫辦吉林邊務琿春副都統 恩의 지시로 越壘 관련 문서처리 업무에 충당되었습니다. 17년, 越壘 사무가 종료되자 재차 幫辦吉林邊務琿春副都統 恩의 지시를 받아 邊務行營文案差遣委員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내용 : 三代의 내역은 曾祖父(應龍), 祖父(開玉), 父(希遜)입니다.

唐書勳은 올해 32세로, 山東 登州府 甯海州 사람입니다. 童生으로 광서 14년 吉林靖邊右路統領의 營務處文案 업무에 투신하였고, 靖邊右路統領 保의 보고로 七品頂戴를 포상으로 내려 줄 것을 요청되었습니다. 16년 3월, 督理吉林·朝鮮商務總局兼辦越壘事宜 葉의 명을 받아 壘務文案

司事로 충당되었고, 아울러 토지측량 牌票 등의 사무를 관장하였습니다. 17년 10월, 琿春電報局에서 山東의 재해 구제를 위한 捐納을 대신 처리할 때에, 前例에 따라 捐納을 하여 監生에 府經歷의 銜을 더하여 얻었습니다. 올해 10월 2일, 監生과 (府經歷) 직무에 대한 두 가지 증명서를 수령하였습니다. 18년, 督理和龍峪兼撫墾民事宜 田에 의해 督幫辦吉林邊務事宜將軍長과 혼춘부도통 恩에게 五品頂戴를 내려 주도록 보고를 올려 요청하였고, 또한 내부적으로 포상 사실을 기록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통보와 증명서는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내용 : 三代의 내역은 曾祖父(永冀), 祖父(化初), 父(字鈞)입니다.

高甫麟은 올해 45세로, 湖北 武昌府 江夏縣 사람입니다. 童生으로 광서 15년 琿春에 투신하였습니다. 幫辦吉林邊務 琿春副都統 恩에 의해 黑頂子에서 越墾 토지측량 사무를 처리하도록 奏派되었는데 업무에 진력하여 督幫辦吉林邊務事宜將軍 長과 혼춘부도통 恩에 의해 포상으로 六品頂戴로 바뀌었습니다. 16년, 督理吉林·朝鮮商務總局兼辦越墾事宜 葉이 보고를 올려 督幫辦吉林邊務事宜將軍 長과 혼춘부도통 恩이 通商總局越墾委員으로 충당하고 越墾관련 문서를 함께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해 10월, 琿春電報局에서 山東의 재해 구제를 위한 捐納을 대신 처리할 때에, 前例에 따라 捐納하여 監生에 縣丞의 職銜을 더하여 얻었습니다. 17년 10월 2일, 監生과 (府經歷) 직무에 대한 두 가지 증명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그 해 11월 11일, 또한 通商總局稅務司事로 충당되었습니다. 곧 이후 署理吉林·朝鮮商務總局兼越墾事宜 王이 稟을 올려 專辦越墾冊籍委員으로 충당되었고, 여전히 문서 관리를 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모든 통보를 받았고 수령한 증명서는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내용 : 三代의 내역은 曾祖父(國珍), 祖父(本謨), 父(益恒)입니다.

葉舍芳은 올해 53세로 湖北 武昌府 大治縣 사람입니다. 俊秀로 광서 14년 吉林에 투신하여 吉勝營字識에 충당되었습니다. 15년, 幫辦吉林邊務琿春副都統 恩의 명을 받아 黑頂子 屯墾營의 辦事官으로 파견되었고, 아울러 黑頂子 越墾 토지측량의 差使도 수행하였습니다. 16년,

督理吉林·朝鮮通商總局兼越壘事宜 葉의 명을 받아 通商總局 司事로 파견되었습니다. 10월, 또한 재차 명을 받아 越壘核算委員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7년, 越壘 사무가 종료되자 琿春으로 되돌아왔고, 幫辦吉林邊務琿春副都統 恩의 지시를 받아 文案處 辦事官에 충당되었습니다. 현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내용 : 三代의 내역은 曾祖父(曹張), 祖父(林桂), 父(方盛)입니다.



(77) 문서번호 : 1-4-2-24 (3041, 4533a-4534b)

사안 : 雲騎尉 毓昇을 防禦로서 補用하되 防禦에 補用되기를 기다린 다음 여전히 佐領으로 補用할 것을 추천하는 주접을 초록하여 알립니다(奏保雲騎尉毓昇以防禦補用, 仍俟補防禦後, 以佐領補用鈔摺知照).

첨부문서 : 雲騎尉 毓昇의 이력.

날짜 : 光緒二十一年九月二十九日(1895년 11월 15일)

발신 : 署理吉林將軍 恩澤

수신 : 總理衙門

九月二十九日, 署吉林將軍恩澤文稱.

光緒二十一年九月十五日, 本衙門附片具奏.

再, 雲騎尉毓昇前因辦理交涉事務出力, 保以防禦補用. 續於吉林荒務告竣案內, 經前將軍希元奏保, 奉旨, 准俟補防禦後, 以佐領補用, 奉部核准在案. 嗣准部咨, 辦理交涉並非南北洋專辦洋務勞績, 將所保防禦撤銷. 復於隨辦琿春越墾地畝, 在事出力, 經奴才奏保, 請將該員核准之補用佐領, 改以防禦補用, 仍俟補防禦後, 以佐領儘先補用. 旋准兵部咨.

以所保儘先班次, 與部章不合, 再該員以佐領改防禦, 行令另案辦理, 仍俟更正到部, 再行核辦.

等因.

於光緒二十一年四月十一日具奏, 奉旨.

依議

欽此，咨行前來。

奴才查該員毓昇，前擬改補官階，既於例章不合，自應遵駁更正，而此次隨辦越壑事務，不無微勞足錄。合無仰懇天恩，俯准將雲騎尉毓昇以防禦補用，仍俟補防禦後，以佐領補用，以示鼓勵，而資激勸。是否有當，理合附片具奏，伏乞聖鑒訓示。謹奏。等因。

除俟奉到硃批，再行恭錄呈報外，合先照抄原片，並該員三代出身履歷，造具清冊一本，呈報總理各國事務衙門，謹請鑒核施行。

照錄清冊：

謹將辦理琿春越壑事務出力請獎武職員弁三代出身履歷造具清冊，呈報鑒核。須至冊者。

計開：

吉林滿洲正黃旗岳林佐領下，補防禦後以佐領補用雲騎尉毓昇，年三十七歲，陳滿洲當差二十年，原係閒散，⁸¹⁾因伊父披甲藍翎石成，⁸²⁾在盱眙縣打仗陣亡，准部咨議給雲騎尉世職，由閒散於同治二年十二月十八日，由部旗僅名具奏，奉旨。

承襲雲騎尉世職。

欽此。

年已及歲，於光緒二年三月二十五日，由該旗帶領補行引見，奉旨。

著毓昇回原處當差。

欽此。

光緒十四年，因荒務告竣案內在事出力，經吉林將軍希保奏，奉旨。

准俟補防禦後，以佐領補用。

欽此。

於光緒十五年，奉部核准咨覆在案。於同治七年七月十一日，恭逢恩詔，加一級。十二年正月二十六日，恭逢恩詔，加一級。光緒元年正月二十日，恭逢恩詔，加一級。十三年正月十五日，恭逢恩詔，加一級。二十年八月十六日，恭逢恩詔，加一級。任內並無降級留任罰奉案件，現在實有加五級。

計開：三代，曾祖依凌額，祖富連，父石成。

9월 29일 서리 吉林將軍 恩澤이 글에서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내왔다.

광서 21년 9월 15일 본 아문에서는 (주접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附片을) 상주하였습니다.

또한, 雲騎尉 毓昇이 전에 교섭사무 처리에 힘썼기에 防禦로 보용할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뒤이어 吉林의 荒務 처리를 완료한 사안에서 前 將軍 希元의 추천으로 防禦에 補用하기를 기다린 다음 佐領으로 補用하는 것을 허락하는 유지를 받았으며, 兵部의 검토를 거쳐 비준이 된 바 있습니다. 뒤이어 다시 兵部에서 그가 다른 교섭 처리라는 것이 결코 南·北洋(大臣)이 전담하는 洋務에서의 업적이 아니므로, 防禦로 추천한 것을 취소한다는 자문을 보내왔습니다. 다시 琿春의 越壘 토지를 처리하는 업무에서 힘을 썼기에 奴才의 추천 상주를 통해 해당 관원에게 승인된 佐領補用을 防禦補用으로 바꾸되, 防禦로 補用된 다음 佐領에 가장 먼저 補用시켜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뒤이어 다음과 같은 병부의 咨文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임용되는 순위(班次)로 추천한 것은 兵部의 장정과 들어맞지 않으니, 다시 해당 관원을 佐領에서 防禦로 바꾸고, 다른 사안으로 처리하도록 알리니, 그렇게 수정해서 병부로 서류를 다시 보내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광서 21년 4월 11일에는 상주하여,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논의한 대로 하라.

이상과 같은 자문이 전달되었습니다. 奴才는 해당 관원 毓昇에 대해 전에 관직 등급을

81) 아무런 관직도 받지 못한 청대의 만주족 사람을 가리킨다.

82) 피갑(披甲)은 청대 팔기병(八旗兵)의 별칭이다.

올려서 補用하자고 추천한 것이 이미 종전의 章程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마땅히 반박에 따라 수정을 해야 하겠지만, 이번에 越壘 사무를 보조하여 처리한 점은 기록할 만한 조그만 공로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雲騎尉 毓昇을 防禦로 보용하되, 防禦에 보용되기를 기다린 다음 佐領에 補用함으로써 격려의 뜻을 보여주고 사기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굽어살피셔서 허락해 주시도록 요청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간청이 타당한지 아닌지 마땅히 附片을 갖추어 상주하오니, 살펴보고 훈시를 내려 주시기를 엿드려 바라옵니다. 이에 삼가 주를 올립니다.

(이상과 같은 주점을 올렸습니다) 硃批를 받기를 기다려 다시 삼가 초록하여 보고를 올리겠지만, 일단 우선 먼저 원 附片과 해당 관원의 3대 출신 이력을 명단 1권으로 작성하여 총리아문 에 보고를 올리면서, 삼가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명단 초록 :

琿春의 越壘 사무를 처리하는 데 힘썼기에 포상을 요청하는 武職 관원의 3대 출신 이력을 명단으로 작성하여 올리는 바이니 검토해 주십시오.

첨부내용 :

吉林滿洲의 正黃旗 岳林佐領 아래서 防禦로 補用된 이후 佐領으로 補用될 雲騎尉 毓昇은 나이 37세의 陳滿洲로 20년 동안 복무를 하였는데, 원래는 아무런 관직도 없는 閒散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披甲(팔기병사) 藍翎 石成이 盱眙縣에서 싸우다 전사했기에 雲騎尉의 世職을 논의하여 세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兵部의 咨文을 받았습니다. 閒散으로서 同治 2년 12월 18일 部旗에서 명의를 갖춰⁸³⁾ 상주하여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雲騎尉의 世職을 세습시켜라.

또한 적당한 나이가 되었으므로 광서 2년 3월 25일 소속 旗의 인솔로 (황상을) 인견하고,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毓昇을 원래 장소로 돌려보내 근무하게 하라.

광서 14년 荒務가 완료된 안건과 관련해 일에 최선을 다했기에 吉林將軍 希(元)의 추천 상주를

83) 정확한 해석이 곤란한 부분이다.

거쳐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防禦에 보용시키는 것을 기다린 다음, (가장 우선하여) 佐領에 補用시키는 것을 허락한다.
광서 15년 병부가 검토하여 승인한 답장 자문을 받았습니다. 同治 7년 7월 11일 삼가 恩詔를
받아 1급이 추가되었습니다. (同治) 12년 정월 26일 삼가 恩詔를 받아 1급이 추가되었습니다.
광서 元年 정월 20일 1급이 추가되었습니다. (광서) 13년 정월 15일 1급이 추가되었습니다.
(광서) 20년 8월 16일 1급이 추가되었습니다. 임기 중 품급 강등 이후의 유임·봉급 압류와
같은 일은 전혀 없었으며, 현재는 5급이 더해져 있습니다.

첨부내용 : 3대의 (명단은 다음과 같으니), 증조부는 依凌額, 조부는 富連, 아버지는 石成입니다.



(78) 문서번호 : 1-4-2-25 (3054, 4541b)

시안 : 琿春의 越壘 토지를 측량한 인원에 대한 포상을 반박에 따라 수정해서 다시 간청하는 상주문과 그에 대한 유지를 초록해 보냅니다(錄送具奏琿春清丈越壘人員遵駁更正懇恩給獎一摺所奉諭旨).

날짜 : 光緒二十一年十月初六日(1895년 11월 22일)

발신 : 吉林將軍 長順

수신 : 總理衙門

十月初六日, 吉林將長順文稱.

案查光緒二十一年八月十四日, 前署將軍恭摺具奏爲琿春清丈越壘人員遵駁更正另繕清單懇恩給獎等因一摺, 當經照抄原抄呈報在案. 茲於九月二十日, 奉到硃批. 該部議奏, 單併發.

欽此, 欽遵前來.

相應恭錄硃批, 呈報總理各國事務衙門鑒核施行.

10월 초6일 吉林將軍 長順이 글에서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내왔다.

광서 21년 8월 14일 전 署理吉林將軍이 삼가 奏摺를 갖추어, 琿春에서 越壘 토지를 측량한 인원들에 대한 포상을 반박에 따라 수정하여 다시 따로 명단을 작성하여 포상을 간청한 적이 있고, 그에 따라 이 상주문의 초록을 베껴 보고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9월 20일 다음과 같은 硃批를 받았습니다.

해당 부에서 논의하여 상주하되, 명단도 함께 발송하라.

이에 따라 마땅히 硃批를 초록하여 총리아문에 보고를 올리니 검토해 주십시오.

(79) 문서번호 : 1-4-2-26 (3126, 4683b)

사안 : 雲騎尉 毓昇이 越壘 사무 처리에서 진력하였으므로 防禦로 補用시켜 달라고 주청한 사안에 대해 유지를 받았으므로 알려드립니다(前奏雲騎尉毓昇因越壘案內出力請以防禦補用一案, 奉旨知照).

날짜 : 光緒二十一年十二月十二日(1896년 1월 26일)

발신 : 吉林將軍 長順

수신 : 總理衙門

十二月十二日, 吉林將軍長順文稱.

案查光緒二十一年九月十五日, 前署將軍附片具奏爲雲騎尉毓昇, 前因越壘案內出力, 請以防禦補用, 仍俟補缺後, 以佐領補用, 以示鼓勵等因一片, 當經照抄原片呈報在案. 茲於十月二十二日, 奉到硃批.

該部議奏.

欽此, 欽遵前來.

相應恭錄硃批, 呈報總理各國事務衙門鑒核施行.

12월 12일 吉林將軍 長順이 글에서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내왔다.

광서 21년 9월 15일 전 署理吉林將軍이 雲騎尉 毓昇이 일전에 越壘 안건에 진력하였으므로 防禦로서 補用하되, 補用되기를 기다린 다음 다시 佐領으로 補用하여 격려해줄 것을 요청하는 附片 上奏를 하였으며, 이미 원 附片을 초록하여 보고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10월 22일 다음과 같은 硃批를 받았습니다.

해당 부에서 논의해 상주하라.

이에 따라 마땅히 삼가 硃批를 초록하여, 총리아문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보고를 올리는 바입니다.



관청을 두어 다스리는 문제(設官撫治)

(80) 문서번호 : 1-4-3-01 (1878, 3295a-3299a)

사안 : 圖們江 北岸에 최근 入籍한 越墾 朝鮮인을 安撫하고자 임시로 局을 설치할 것을 요청합니다(請暫行設局撫輯圖們江北岸新近入籍越墾韓民).

첨부문서 : 「조선인의 越墾 土地를 측량해 얻은 면적(晌)과 편성한 社·甲 및 租稅 數目(韓民 越墾地畝淸丈晌數分社編甲並戶口租賦數目)」.

날짜 : 光緒二十年三月十九日(1894년 4월 24일)

발신 : 軍機處

수신 : 總理衙門

三月十九日 軍機處交出 長順, 恩澤鈔摺稱.

跪奏, 爲 琿春圖們江北岸收還朝鮮流民越墾地畝, 派員淸丈, 將墾民立社編甲, 照則升科, 暫行設局撫墾緣由, 恭摺具陳, 仰祈聖鑒 事.

竊查光緒十五年間, 奴才等以琿春境內朝鮮越墾流民, 該國屢因分界遷延, 終不刷還, 擬請於無關勘界地方, 派員淸丈, 遵奉前旨, 飭令入籍爲氓, 以重邊防. 等因. 奏奉硃

批。

該衙門議奏。

欽此。

旋承准總理衙門議覆。

吉林，朝鮮界務，前經兩次會勘，所未能定者，特茂山以上直接三汲泡二百餘里之圖們江發源處耳。至茂山以下，圖們江巨流，天然界限。江南岸為該國咸鏡道屬之茂山，會寧，鍾城，穩城，慶源，慶興六府地方。江北岸為吉林之敦化縣，及琿春地方。該國勘界使亦無異說。韓民越墾多年，廬墓相望，一旦盡令刷還，此數千人失業無依，不特情實可矜，急切亦無辦法。若聽其以異籍之民，日久占住，主客不分，殊非久計。且近年該處墾民以韓官越界徵租，種種苛擾，赴吉林控訴。經北洋大臣李鴻章咨臣衙門有案。誠如原奏所云：“韓員剝削民生之苦，流民服我賦稅之輕。”是其心悅誠服，安土重遷，已可概見。現在江源界址難剋日劃，則無關勘辦處所，似宜及時撫綏，以慰流氓歸附之心。臣等與李鴻章往復函商，意見相同，擬請飭下該將軍，遴派賢員，將清丈升科各事宜，妥為經理，因俗施教，務令相安，毋任操切滋事。所有領照納租，歸各地方管轄。一切詳細章程，應由該將軍體察情形，奏明試辦。

等因。

於十六年二月十八日，具奏奉旨。

依議。

欽此。咨照前來。

當經奴才等札派督理吉林，朝鮮留吉補用知府葉聯甲，就近兼辦清丈越墾事務，添派分省補用知縣程國鈞，會同辦理。嗣葉聯甲因有差委調省，後派接辦商務之升用同知，候選知縣王昌熾兼理墾務。計自光緒十六年三月起，至十七年七月止，所有沿江一帶黑頂子等處，越墾地畝均已一律丈竣，發給印照。據前後各員會造圖冊稟送查核，並聲明該墾民等。於光緒十七年，按通省章程，每交納大小租銀，⁸⁴⁾ 共一錢九分八厘。⁸⁵⁾ 等情。奴才等飭，將大租解省，小租留支催徵書役經費。復因圖冊多有舛錯，駁斥更換，曾於上年，奴才長順，會同北洋大臣李鴻章奏裁和龍等處通商局摺內陳明，應俟此項圖冊繪造

齊備，再行奏報在案。據承辦各員，將圖冊更正呈送前來。奴才等詳加覆，收回越墾之地，統建四大堡，堡分有社，鎮遠堡建於黑頂子，分設八社。於韓之慶興府對峙，東逼於俄，最為要地。寧遠堡建於光霽峪，分設十三社，於韓之鍾城對峙。綏遠堡建於杉松背，分設十一社，與韓之會寧府對峙。安遠堡建於章母得基，分設七社，與韓之茂山府斜對。計四堡，三十九社，收撫墾民四千三百零八戶，男女丁口二萬零八百九十九人，統編一百二十四甲，較定四百一十五牌，丈報熟地一萬五千四百四十二垧⁸⁶⁾七畝六分，⁸⁷⁾歲徵大租銀二千七百七十九兩有奇。此新建沿江堡社大情形，收回戶口，地畝，租賦之數目也。先是委員葉聯甲，奉札查丈時出示曉諭，越墾越民薙髮編籍，據該國外署督辦閔種默函商駐韓道員袁世凱，轉請停止，經該道據理答覆，始無異詞。而墾民中之詐者，復聽韓官主使，相率阻梗，節經葉聯甲商同該國咸鏡北道南廷順，分別懲勸，庶得相安無事。蓋墾民本有二種，其一越墾，家屬均在北岸，寄居日久，廬墓相望，素殷歸附，一下薙髮之令，無不樂從，自行呈請每輪銀二錢，以助丈地經費。其一函雖係越墾，而實越寓。其家本在南岸，隻身過江偷種，或朝出暮歸，或春來秋去，半係該國官吏兵役種地之傭，有恃不恐，故多抗拒。大約墾越居其半，越寓亦居其半。越寓之民未嘗不思樂土，祇以家在本國，遂不免首鼠兩端。奴才等仍飭承辦各員，以薙髮不髮為去留。現在約計各堡韓民留者十之七，去者十之三。其已去韓民騰出熟地，凡與招墾地畝毗連者，撥給華民承領耕種，免致荒蕪。仍將戶口劃歸招墾案內造報。惟沿江千里，新附之民，如照原奏分歸琿春，敦化旗民，各署管轄，誠恐相距太遠，鞭長莫及。上年奴才長順，會同李鴻章奏裁通商局，仍請酌留員司書役，專辦交涉，兼撫墾民，職是之故。願設局撫墾，亦屬可暫而不可常，將來能否於適中地方，設官分治，再由奴才長順酌察情形，隨時奏明辦理。謹將各社名目，墾地垧數，戶口租賦，繕具清單，恭呈御覽。此次清丈墾地，雖止一萬五千餘垧，而該員司書役人等挨戶稽查，設法勸導，建堡立社，編甲繪圖，跋涉哈塘泥淖之中，備嘗雪虐風餐之苦。且事係藩屬交涉，措施惑當，實與尋常清丈荒地，勞績不同。所需經費，於墾民輸助之外，凡不敷工食，悉由該員司，自將薪水賠墊，不使鄉甲書役，稍滋擾累，尤潔己從公。合無仰懇天恩，准由奴才等擇保數人，以示鼓勵之處，出自聖主鴻恩，除將詳細圖冊咨呈總理衙門，分咨戶部，北洋大

臣查覈外，所有收還圖們江北岸韓民越墾地畝，派員清丈升科，設局撥墾緣由，謹合詞恭摺具奏，伏乞皇上聖鑒訓示。謹奏。

光緒二十年三月十九日，奉硃批：

該衙門議奏。單併發。

欽此。

照錄：清單

謹將收回琿春圖們江北岸韓民越墾地畝清丈均數，分社編甲，戶口租賦數目，繕具清單，恭呈御覽。

安遠堡屬：崇化 德化 上化 山溪 白金 白玉 七社。領地墾民七百四十二戶。丈報熟地四千零九十七均四畝四分。應徵大租銀七百三十七兩五錢三分九釐二毫。

綏遠堡屬：白雲 白日 白鶴 對川對山 對越 對揚 茂功 茂賞 茂德 茂官十一社。領地墾民八百三十六戶。丈報熟地四千零三十零均一畝五分，應徵大租銀七百二十五兩四錢二分七厘。

寧遠堡屬：開華 開文 開發 開運 開泰 光化 光德 光昭 光鳳 光宗 霽晴 霽霞 月朗十三社。領地墾民一千八百五十五。丈報熟地五千一百零均八畝。應徵大租銀九百十八兩一錢四分四厘。

鎮遠堡屬：翰誠 歸化 崇讓 興廉 義 敦仁 懷恩 敬信八社。領地墾民八百七十五戶。丈報熟地二千二百十四均三畝七分。應徵大租銀三百九十八兩五錢八分六厘六毫。

以上，共四堡三十九社，領地墾民四千三百零八戶，男女丁口二萬零八百九十九人，統編一百二十四甲，統計熟地一萬五千四百四十二畝七分六釐，歲徵大租銀二千七百七十九兩六錢九分六厘八毫，理合陳明。

光緒二十年三月十九日，奉硃批。

覽。

欽此。

3월 19일 군기처에서 長順과 恩澤의 주접을 보내왔습니다.

琿春 圖們江 北岸에서 조선 유민이 월간한 토지를 회수하기 위해 인원을 파견하여 토지를 측량하고, 아울러 개간민을 위해 社를 세우고 保甲으로 편성하였으며, 科則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잠시 局을 세워 개간민을 撫恤한 사정에 대해 삼가 주접을 갖추어 아뢰으로써 황상께서 살펴보시기를 엿드려 바랍니다. 광서 15년 무렵 저는 혼춘 경내 조선의 월간유민에 대해 조선에서 누차 경계를 나누는 일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구실로 끝내 그들을 거두어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勸界와 무관한 지역에 대해서 인원을 파견하여 토지를 측량하겠다고 주청하여, “그들을 호적에 편입시켜 중국의 백성으로 만들라고 지시함으로써 변경방어를 중시해야 할 것이다”고 한 이전의 상유를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硃批가 내려졌습니다.

해당 아문에서 의논하여 상주하라.

뒤이어 곧바로 총리아문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습니다.

길림과 조선의 경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에 두 차례 공동감계를 실시하였으나 즉각 결정하지 못하였던 부분은 단지 무산 위쪽의 三汲泡로 직접 이어지는 200여 리쯤 되는 도문강 발원지였습니다. 무산 이하로는 도문강이라는 거대한 강물이 천연의 경계를 이루어 강의

84) 여기서의 설명만으로 대조와 소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조(租)는 일반적으로 소작료를 가리키는데 관전(官田)일 경우 그 땅을 소작하면 그 소작료는 국가로 귀속된다고 보면 된다. 대조는 바로 뒤에 성으로 올려보낸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가(또는 성)의 수입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소조는 여기서는 지방당국의 수입으로 파악되는 것으로 보인다.

85) 전·분·리는 모두 은의 무게 단위로 역시 같은 무게단위인 1량의 1/10·1/100·1/1000에 해당된다.

86) 원문은 响(上)으로 되어 있으나 响(上)이 정확한 표현으로, 이것은 동북 지방에서 사용하던 토지면적 단위의 명칭이다.

87) 분(分)은 1/10무(畝)를 가리킨다.

남쪽은 조선 함경도 소속의 무산·회녕·종성·온성·경원·경흥 등 6부의 지방이고, 강의 북쪽은 길림성의 돈화현과 훈춘 지방입니다. 조선 감계사도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백성의 월간이 이미 오래되어 초가집과 묘지가 서로 마주 볼 정도이니, 하루아침에 모두 거두어들이게 한다면,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의지할 곳이 없어질 것이므로, 그 사정이 매우 가련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만약 다른 (나라의) 호적에 속하는 백성이 오랫동안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게 놔둔다면, 주인과 손님이 구분되지 않을 것이라 실로 장기적인 대책은 되지 못합니다. 또한 근년에 그곳 개간민이 누차 조선 관원이 국경을 넘어와 소작료를 징수하는 등 갖은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길림 당국에 호소하고 있다고 이홍장이 저희 아문에 자문으로 알려진 바도 있습니다. 진실로 원래의 주접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관리들의 수탈로 조선 백성의 삶이 고달프고, 유민들이 중국 측 부세의 가벼움에 대해 탄복한다.

는 상황은 조선 유민의 마음이 이미 아주 기쁜 마음으로 중국 쪽으로 기울어져, 현재 머무는 땅에 안주하면서 떠나려 하지 않음을 대강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두만강의 수원지와 경계 지역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명확하게 구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감계의 대상과 관계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응당 제때에 유민들을 안무하여 중국에 歸附하려는 그 마음을 위로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홍장과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상의한 결과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므로 길림장군에게 현명한 관원을 파견해서 토지를 측량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등의 시안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관습에 맞게 가르침을 베풀어 그들을 힘써 안치시키도록 하되, 결코 조급하게 일을 추진하여 말썽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내려 주시기를 청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월간 유민에게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소작료를 납부하게 하는 모든 업무는 각 지방관이 전부 관할하게 하며, 그에 관련된 상세한 장정은 길림장군이 몸소 상황을 살펴보고 방안을 마련해서 상주하여 재가를 받은 다음 시험 삼아 추진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이를 광서 16년 2월 18일에 상주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다.

논의한 대로 하라.

이러한 결과가 전달되어 왔으므로, 이미 臣 長順 등은 길림·조선상무를 잠시 관리하며 길림에 남아 일하던 補用知府 葉聯甲이 가까이 있으면서 월간토지의 측량 사무를 겸하여 다루도록

하고, 아울러 分省補用知縣 程國鈞을 추가로 파견하여 함께 돕도록 하였습니다. 뒤이어 엽련갑이 따로 임무를 맡아 길림 省城으로 차출되었으므로, 다시 상무를 이어 맡아 처리하던 升用同知인 候選知縣 王昌熾가 개간 사무를 겸하게 하였습니다. 광서 16년 3월부터 시작하여 광서 17년 7월까지 두만강 일대 전체 및 黑頂子 등지에서 개간된 토지는 이미 일률적으로 측량이 끝났고, 인쇄된 증명서(印照)를 발급해주었습니다. 각 위원이 앞뒤로 함께 제작한 지도와 장부를 보고하여 검토를 받았고, 아울러 그 개간민 등이 광서 17년 성 전체에 통용되는 장정에 따라 매 垧마다 大租나 小租로 銀 1錢 9分 8厘를 납부하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조는 성으로 올려보내고, 소조는 남겨서 지출하는 비용으로 삼아 정수를 독촉하는 書役의 경비로 삼게 하였습니다. 또한 지도와 장부에 어긋나거나 틀린 내용도 적지 않아, 다시 바꾸도록 지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찍이 지난해 신 장순이 북양대신 이홍장과 함께 和龍峪 등지의 通商局과 分局을 취소하는 문제에 대해 상주한 주접에서 아뢰면서 아울러 위의 지도와 장부가 제대로 완성이 되면, 다시 상주하여 알리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일을 맡은 각 관원이 지도와 장부를 수정하여 보내왔습니다. 신 등은 이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하였는데, 회수한 월간 토지에 대해서는 모두 네 군데의 大堡를 세우고, 보는 각기 社로 나뉘지게 했는데, 鎮遠堡는 黑頂子에 세워져 8사로 나뉘졌고, 조선의 경흥부와 대치합니다. 동쪽으로는 러시아와 인접해 있어, 가장 요지가 됩니다. 寧遠堡는 光霽峪에 세워져 13사로 나뉘졌는데, 조선의 중성부와 대치합니다. 綏遠堡는 衫松背에 세워져 11사로 나뉘졌으며, 조선의 회령부와 대치합니다. 安遠堡는 章母得基에 세워져 7사로 나뉘졌으며, 조선의 茂山府와 비스듬하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모두 4보 39사로 개간민 4,308호를 거두어들여 남녀 인구는 총계 20,899명인데, 전체를 124개 甲으로 편성하여 415牌를 정했습니다. 측량의 결과 얻은 경작이 가능한 개간지는 15,442垧 7畝 6分이고, 매년 大租銀(소작료)으로 은 2,779兩 남짓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새로 두만강 주변에 보·사를 세운 대강의 상황 및 회수하게 된 호구·토지·소작료의 내역입니다.

이에 앞서 위원 엽련갑은 지시를 받고 토지를 측량할 때, 월간 조선민에게 고시를 내어 치발과 호적 편입을 알려주었고, 바로 조선의 외서독판인 민종묵이 조선에 주재하는 도원 원세개에게 서신을 보내 상의하면서 이 작업의 정지를 대신 요청해달라고 하였으나, 원세개가 이치에 입각하여 답장을 보내자 처음에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간민 가운데 교활한 자가 다시 조선 관리의 사주를 받아 서로 이끌고 이 일을 가로막고자 하였으므로,

위원 엽련갑과 조선국 함경북도절도사 남정순이 함께 누차 각기 징벌하고 권장한 결과 비로소 서로 안정되어 아무런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생각건대, 개간민에는 원래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월간한 경우로 가족이 모두 북쪽 연안에 있으며, 옮겨와 산 지 오래되어 초가집과 무덤이 서로 마주 볼 정도라 평소 歸附의 의사가 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발령이 내려지자 즐겁게 따르지 않음이 없었고, 아울러 스스로 탄원서를 올려 매 壩마다 은 2전씩을 내서 토지측량 경비에 보태달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 비록 월간을 하고 있지만, 실로는 越寓여서, 그 가족이 모두 남쪽 연안에 있고 자신만 단신으로 강을 건너와 몰래 경작하는 사람으로,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돌아가든지 아니면 봄에 왔다가 가을에 돌아가든지 합니다. 그 절반은 조선 관리나 병역이 토지를 개간하는 데 부리는 품팔이 노동자여서 뒤에 믿는 것이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서 악착같이 저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략 월간한 사람이 절반이고, 월우한 사람이 절반 정도인데, 월우한 백성도 중국을 樂土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가족이 조선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저리 눈치를 보는 형편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 등은 여전히 일을 맡은 각 관원들에게 지시하여 치발을 했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떠나게 하느냐 아니면 머물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데, 현재 각 보에 있는 조선 백성의 수를 대략 계산해보면 머무르는 사람은 열 가운데 일곱이고, 떠나는 사람은 열 가운데 셋 정도입니다.

이미 떠난 조선 백성이 남겨놓은 개간지는 무릇 招墾한 토지와 맞붙어 있는 경우에는 중국 백성이 떠맡아 경작을 하게 함으로써 황무지가 되는 것을 막고, 그 호구는 초간 사업에 포함시켜 통계를 작성할 것입니다. 다만 두만강 주변지역이 1천 리에 걸쳐 있으므로, 새로 귀부한 백성은 원래의 주접에서 돈화현과 혼춘에 나누어 귀속시켜 해당 지방관이 관할을 맡게 하였지만 서로 떨어진 거리가 너무 멀어 실제 힘이 미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지난해 신 장순이 이흥장과 함께 통상국과 분국을 폐지하면서도 여전히 員司·書役 등을 적당하게 남겨두어 전적으로 교섭 사무를 처리하면서 아울러 개간민을 위무하게 하였던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국(局)을 세워 개간민을 위무하는 일 역시 잠시 뿐이지 항구적인 업무는 될 수 없으므로, 장래 적절한 지역에 관리를 두어 나누어 다스리는 문제는 다시 신 장순이 상황을 살펴 수시로 상주하여 지시를 받은 다음 처리하겠습니다. 삼가 각 사의 이름과 개간지의 면적, 호구와 소작료에 대하여 목록을 갖추어 올리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지측량의

결과는 비록 1만 5천여 垧에 머무르지만, 해당 원사와 서역 등은 집집마다 하나하나 조사를 하면서 방법을 강구하여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보와 사를 세우고, 갑으로 편성하고 지도를 그리는 과정에서 수많은 응덩이와 진창을 지나고, 눈바람 속에서 노숙하며 식사하는 온갖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업무가 藩屬國과의 교섭에 관련된 것이어서 조치가 잘못된 것인가 아닌가는 실로 보통 토지측량과는 전혀 들어가는 공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필요한 경비 역시 개간민의 도움을 받은 것 외에 모자라는 임금과 식량은 황무지 측량을 담당할 인원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봉급에서 끌어다 채움으로써 鄉甲이나 晝役들에게 조금이나마 피해가 가는 것을 막고자 하였으니 특히 스스로를 깨끗이 하면서 공무에 봉사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응당 황상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신 등이 몇몇 사람을 추천함으로써 권장의 뜻을 보일 수 있게 하는 일이 聖主의 큰 은혜로부터 나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상세한 지도와 장부는 총리아문과 북양대신에게 자문으로 올려 참고하게 하는 것 외에도, 도문강 북쪽 연안의 조선 개간민의 월간지를 회수하기 위해 인원을 파견하여 토지를 측량하고, 세금을 부과하였으며, 아울러 사무국을 설치하여 개간지를 발급한 사정에 대해 삼가 함께 말을 맞추어 주점을 갖추어 올리니, 황상께서 살펴보고 훈시를 내려 주십시오. 이에 삼가 주를 올립니다.

광서 20년 3월 19일, 다음과 같은 주비를 받았다.

해당 아문에서 논의하여 상주하라. 목록도 아울러 발송하라.

이상.

첨부 : 목록

혼춘 도문강 북안 조선민의 월간 토지 면적과 토지측량 면적, 사·갑으로의 편성 및 호구·소작료 액수에 대해 목록을 갖추어 올리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安遠堡 소속 : 승화 덕화 상화 산계 백김 백옥 7사. 토지를 지급받은 개간민 742가구. 개간경지 4,097垧 4畝 4分. 매년 징수할 大租銀 銀 737兩 5錢 3分 9釐 2豪.

綏遠堡 소속 : 백운 백일 백학 대천대산 대월 대양 무공 무상 무덕 무관 11사. 토지를 지급받은 개간민 836가구. 개간경지 4,030垧 1畝 5分, 매년 징수할 소작료 銀 725兩 4錢 2分 7釐.

寧遠堡 소속 : 개화 개문 개발 개운 개태 광화 광덕 광소 광봉 광중 제청 제하 월랑 13사.
토지를 지급받은 개간민 1,855가구. 개간경지 5,100垧 8畝. 매년 징수할 소작료 銀 918兩
1錢 4分 4釐.

鎮遠堡 소속 : 수성 귀화 승양 흥림 상의 돈인 회은 경신 8사. 토지를 지급받은 개간민 875가구.
개간경지 2,214垧 3畝 7分. 매년 징수할 소작료 銀 398兩 5錢 8分 6釐 6豪.

이상으로 모두 4보, 39사, 토지를 지급받은 개간민 4,308가구, 남녀인구 20,899명, 전체 편성
124갑, 개간경지 15,442垧 7畝 6分, 매년 소작료 銀 2,779兩 6錢 9分 6釐 8豪의 징수를 보고하
는 바입니다.

광서 20년 3월 19일, 다음과 같은 硃批를 받았다.

알았다.

이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81) 문서번호 : 1-4-3-02 (1879, 3299b)

사안 : 局을 임시로 설치하여 越墾하여 호적에 편입된 조선인을 安撫하자고 주청한 길림장군의 주접과 (이에 대한) 硃批를 공손히 기록하여 보내면서, (총리아문이) 초안을 작성하여 함께 처리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吉林將軍奏請暫設局撫輯越墾入籍韓民一摺, 恭錄硃批, 請主稿會同辦理).

날짜 : 光緒二十年三月二十三日(1894년 4월 28일)

발신 : 戶部

수신 : 總理衙門

三月二十三日, 戶部片稱.

山東司案呈.

軍機處交出吉林將軍長等奏, 琿春圖們江北岸收還朝鮮流民越墾地畝, 派員清丈照例升科, 暫行設局撫墾等因一摺. 光緒二十年三月十九日奉硃批.

該衙門議奏, 單併發.

欽此, 欽遵到部.

相應恭錄硃批, 片呈貴衙門主稿, 會同本部辦理可也.

3월 23일 호부에서 다음과 같은 片文을 보내왔습니다.

山東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琿春 圖們江 북안 조선 유민의 越墾 토지를 거두어들이고 관원을 파견해서 측량해 前例에

따라 과세하는 한편 局을 임시로 설치해 安撫하자는 長順 등의 주접을 軍機處에서 보내왔습니다. 광서 20년 3월 19일 다음과 같은 硃批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서 논의해 상주하되, 목록도 함께 보내라.

이에 마땅히 硃批를 공손히 기록해 片文으로 귀 아문에 보내니 초안을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호부와 함께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82) 문서번호 : 1-4-3-03 (3150, 4703b)

사안 : 조선 유민들을 잘 헤아려 安插시켜 분란을 일으키지 않게 해 주십시오(朝鮮流民量籌
安插勿令滋事).

날짜 : 光緒二十二年正月二十一日(1896년 3월 4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盛京將軍 依克唐阿

正月二十一日, 致盛京將軍依克唐阿電[詳見電報簿].

草目. 朝鮮流民量籌安插勿令滋事由.

5월 21일 盛京將軍 依克唐阿에게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냈다[상세한 건 電報簿에 보인다].

내용 요약 : 조선 유민들을 잘 헤아려 安插시켜 분란을 일으키지 않게 해 주십시오.

(83) 문서번호 : 1-4-3-04 (3159, 4713a-4714a)

사안 : 조선이 일본의 통제를 받고, 강제로 斷髮·改裝令이 실행되자, 조선인 대부분이 중국에 入籍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韓受制於日本, 強行薙髮改裝之令, 韓民多有請求入籍中國).

첨부문서 : 「중국과 조선의 변경 무역은 갑작스레 거절하기 곤란하며, 조선인들이 중국에 귀부하고자 하는 것을 응당 황상의 유지를 청한 다음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中韓邊界貿易, 未便遽予拒絕, 韓民欲歸附中國, 應請旨遵行)」.

날짜 : 光緒二十二年二月初四日(1896년 3월 17일)

발신 : 盛京將軍

수신 : 總理衙門

二月初四日, 盛京將軍文稱.

案據東邊道張錫鑾稟稱.

竊查東邊所屬之通化·懷仁·寬甸·安東等縣, 均與朝鮮接壤, 相距僅隔一江. 自光緒九年奏開邊禁, 聽兩界邊民隨時交易. 雖原定章程不准朝鮮商民流寓邊境, 無如沿江上下, 綿互路遙, 扁舟一葉, 隨處可通, 而該國貧氓, 潛自渡江, 越境謀食. 土民開墾荒地, 圖其工值較廉, 便於僱用, 以故來者日衆, 防不勝防. 光緒十九年爽前道慮及日後滋蔓難圖, 箝制匪易, 曾經稟請前督憲察核. 在職道前因風聞近時朝鮮政府受制日人, 有勒使薙髮改裝之令, 而該國臣民之夙懷忠憤者, 追念國恩, 不肯忘本, 咸欲移徙東邊, 共就樂土情事. 當飭安東縣嚴密查探. 茲據署該縣知縣高令稟稱.

遵卽飭派妥人, 扮作商賈, 前往朝鮮義州一帶, 詳細密訪. 實有薙頭之令, 而該處

士民，有因此遷避者他處者，亦有願附中國爲民，不願薙髮易服者。

並稱。

近日韓民之來該縣街市貿易者，人數倍多。又有該國翰林洪鐘宇，踵謁該令筆談許久。亦欲乞地而居，不願改古衣冠，情詞痛切，甚爲可憫。

等情。稟覆前來。

職道伏思朝鮮邊境，本與東邊一帶處處毗連，該國貧民昔年雖有潛踰邊界，負苦謀生。然彼時該國爲我朝藩服，且迫於饑寒，希圖餬口而來。今則兵燹之後，時異勢殊，情復不同。設若該國士民，因避薙髮之令，盈千累百，源源而來，容之則必貽後患，拒之恐滋生事端。思維再四，殊堪隱憂。其究應如何預爲設法辦理，以期有備無患，而免臨時掣肘之處。惟有仰懇憲台察核示遵，實爲公便。

等情。到本軍督部堂。據此。

除批示外，相應抄批備文，咨呈貴衙門，請煩查照，希卽核辦施行。

照錄粘單

批。據稟各情，俱見卓識。韓人與中國互市，事成既久，似不能一時拒絕，只好聽其貿販。其願爲我民之說，事關兩國交涉，應候咨明總理衙門，請旨遵行可也。此繳。

2월 초4일 盛京將軍이 글에서 다음과 같이 자문을 보내왔습니다.

東邊道 張錫鑾이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하였습니다.

東邊에 속한 通化·懷仁·寬甸·安東 등의 縣은 모두 조선과 맞닿아 있고 서로 (압록)강 하나만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광서 9년 邊禁을 열어달라고 상주한 이래로 양쪽 국경의 백성이 수시로 교역하게 하였습니다. 원래 정한 章程에서는 조선의 商民이 변경에 흘러들어와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지 않지만, 유감스럽게도 강의 상·하류를 따라 길이 길게 이어져 있고 작은 배 한 척으로도 곳곳이 통하고 있으니 조선 빈민이 몰래

강을 건너 국경을 넘어 생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비교적 짠 임금을 주기를 위하여 조선인이 고용하기에 편하므로 중국으로 건너오는 이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광서 19년에 전 도대 奭이 나중에 너무 늘어나면 다루기 어려워 통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 여기고 일찍이 전 총독에게 보고를 올려 검토를 요청했었습니다. 본 도대는 일전에 조선 정부가 근래 일본인들의 통제를 받게 된 와중에 머리를 자르고 의복을 바꾸도록 斷髮·改裝令이 내려지자 조선 臣民 가운데 일찍부터 충성심과 분노를 품은 사람들이 나라의 은혜를 추념하면서 근본을 잊지 못해 모두 東邊으로 옮겨 와 함께 안착하려 한다고 하다는 상황을 소문으로 들었기에 安東縣에 지시하여 엄밀히 조사해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지현 高壽이 다음과 같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지시에 따라 곧 적절한 인물을 파견해 상인으로 변장시켜 조선 義州 일대로 가게 해 몰래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머리를 자르도록 한 지시가 내려졌는데, 해당 지역의 사민들이 이 때문에 다른 곳으로 피하거나, 또는 중국에 귀부해서 중국 백성이 되더라도, 머리카락을 자르고 의복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근래 조선인 가운데 해당 안동현의 시장에 와서 무역을 하는 사람의 수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또 조선의 翰林 洪鍾宇가 직접 해당 縣令을 찾아 오랫동안 필담을 나누었습니다. 그 역시 땅을 받아 거주하기를 바라지만 옛 의관을 바꾸기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 말이 비통하고 간절하고 대단히 가련하였습니다.

본 도대가 엿드려 생각하건대, 조선 변경은 원래 東邊 일대와 곳곳에서 맞닿아 있는데, 비록 조선 빈민이 예전에 몰래 국경을 넘어와 고생하면서 생계를 도모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 조선은 우리 왕조의 藩服이었고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려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자 왔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兵亂 이후라 時勢가 다르고 상황 또한 같지 않습니다. 만약 조선 士民이 斷髮令을 피하고자 수천 수백의 사람이 끊임없이 몰려 올 경우, 그들을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후환을 남길 것이고, 그들을 거부한다면 분규를 일으킬까 우려됩니다. 재삼 생각해 보아도 특히 커다란 근심이 될 터이니, 어떻게든 미리 대처할 방법을 마련해 有備無患을 기약하고 나중에 가서 더욱 곤란해지는 것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대인께서 살펴보고 지침을 내려 주셔서 그에 따를 수 있다면 정말로 편할 것이라고 우러러 간청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지시를 내리는 한편, 마땅히 문서로 이 지시를 초록하여 귀 아문에 咨文으로 보내니, 번거롭겠지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초록 :

(1) 「중국과 조선의 변경 무역은 갑작스레 거절하기 곤란하며, 조선인들이 중국에 귀부하고자 하는 것을 응당 황상의 유지를 청한 다음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지시를 내린다. 각종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아보니 모두 훌륭한 見識을 보이고 있다. 조선인이 중국과 교역을 하게 된 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일시에 이를 거절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 다만 그대로 무역이나 장사를 방임해야 할 뿐이다. 우리 백성이 되길 원한다는 이야기는, 양국의 교섭과 관련되어 있으니 마땅히 총리아문에 咨文으로 알려, 유지를 주청하기를 기다려 그에 따라 시행하면 될 것이다. 이 문서는 다시 돌려보내도록 하라.



(84) 문서번호 : 1-4-3-05 (3192, 4750b-4751a)

사안 : 조선의 유민을 응당 적절하게 安撫하여 말썽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朝鮮流民, 宜妥爲撫綏, 免致生事).

날짜 : 光緒二十二年二月十六日(1896년 3월 29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盛京將軍

二月十六日行盛京將軍文稱.

光緒二十二年二月初四日, 接准咨稱.

東邊道所屬之通化·懷仁·寬甸·安東等縣, 均與朝鮮僅隔一江. 該國貧民昔年雖有潛踰邊界, 負苦謀生, 彼時該國爲我朝藩服, 且迫於饑寒, 希圖餬口而來. 今則兵燹之後, 時異勢殊, 情復不同. 該國士民因薙髮之令, 盈千累百, 源源而來, 容之則必貽後患, 拒之恐滋生事端. 究應如何預爲設法辦理, 以免臨時掣肘之處, 咨行核辦.

等因. 前來.

查此事先於正月十八日貴將軍電同前因, 業經電覆在案. 朝鮮人民越境流寓, 曾經奏明刷還有案. 特以無業小民, 潛自渡江謀食, 未能概與拒絕, 相沿日久, 遂至來者衆多. 現在朝鮮變亂未已, 情形與前不同, 自應酌照前案, 量爲變通. 該國如再有大衆流民, 闖入邊境, 應由地方官好言勸慰, 隨時遣歸. 其有過江已久, 或三五貧民越境貿易者, 自可暫令照舊居住, 說法安插, 免致生事, 仍編立戶口冊籍. 該管地方官隨時稽察, 俟事定之後, 酌量遷回, 以清界限, 而免釁端. 相應咨行貴將軍酌核辦理可也.

2월 16일 盛京將軍이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내왔습니다.

광서 22년 2월 초4일 (다음과 같이) 말하는 咨文을 받았습니다.

東邊에 속한 通化·懷仁·寬甸·安東 등의 縣은 모두 조선과 맞닿아 있고 서로 (압록)강 하나만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조선 변경은 원래 東邊 일대와 곳곳에서 맞닿아 있는데, 비록 조선 빈민이 예전에 몰래 국경을 넘어와 고생하면서 생계를 도모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 조선은 우리 왕조의 藩服이었고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려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자 왔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兵亂 이후라 時勢가 다르고 상황 또한 같지 않습니다. 만약 조선 土民이 斷髮令을 피하고자 수천 수백의 사람이 끊임없이 몰려 올 경우, 그들을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후환을 남길 것이고, 그들을 거부한다면 분규를 일으킬까 우려됩니다. 어떻게든 미리 대처할 방법을 마련해 나중에 가서 더욱 곤란해지는 것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자문으로 보내니 검토하고 처리해주시시오.

이 일은 조사해보니, 앞서 정월 18일 귀 장군께서 앞서와 동일한 내용을 전보를 보내와, 이미 전보로 답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선 백성이 국경을 넘어 와 거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찍이 조선에서 거두어들이도록 상주하여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토지가 없는 일반 농민이 몰래 강을 건너 생계를 도모하려 할 경우 일률적으로 막을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방치한 지 오래되어 결국에는 넘어오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조선의 변란이 아직 그치지 않아, 상황이 이전과는 다르니 마땅히 이전의 전례를 적당하게 참작하면서 헤아려 변통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에서 다시금 대량 유민이 발생하여 변경으로 몰려 오게 된다면, 마땅히 지방관이 좋은 말로 달래서 오는 즉시 돌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강을 건너 지가 오래됐고 간혹 삼삼오오 빈민이 월경해 무역을 하는 경우, 잠시 예전대로 거주하도록 하되, 그들을 安插시킬 방도를 마련해 말썽이 생기는 것을 막고 戶口冊을 만들어 등록시켜야 할 것입니다. 해당 관할 지방관은 수시로 살펴 일이 사태가 진정된 다음, 형편을 살펴 그들을 돌려보냄으로써 경계를 분명히 하고 말썽의 소지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귀 장군에게 咨文을 보내니, 검토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과 조선의 변경 방어와 경계문제(中韓邊防界務)

일본인이 동북 지방을 여행하기
위한 통행증을 신청한 문제
(日人請照遊歷東北)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85) 문서번호 : 1-5-0-01 (1292, 2383a)

사안 : 일본 육군 소장 永山武四郎이 러시아 국경으로부터 琿春에 와 머물다가 黑石道를
경유해 吉林으로 떠났습니다(日陸軍少將永山武四郎自俄境抵琿春, 由黑石道赴吉林).

날짜 : 光緒十三年十月十六日(1887년 11월 30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十月十六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前准貴衙門咨開.

日本陸軍少將永山武四郎, 前往中國查看農務, 擬由俄轄烏蘇利州尼古利斯科即雙
城子, 出於清俄國境綏芬河畔三岔口, 或由俄轄波西葉土港, 經清·俄·韓三國境邊出
於琿春. 旋經寧古塔·吉林·盛京, 山海關等處抵北京, 由天津歸國. 咨行轉飭妥爲保
護, 並將入境出境日期咨復.

等因.

當經本閣爵大臣咨行各地方官照辦在案. 茲准琿春副都統咨呈內開.

現於九月十四日, 該少將永山武四郎帶領通事人等, 由俄界馳抵琿春, 當即飭屬照
料. 在城居住二日, 於十七日啓程. 發給護照, 撥派防兵隨同前往護送, 由黑石道徑
赴吉省去訖. 除呈請咨明吉林將軍, 並行知前途經過地方官駐紮防軍妥爲保護外, 相
應呈請備文咨呈查照.

等因. 准此.

相應咨復貴衙門, 請煩查照.

10월 16일 북양대신 이홍장이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내왔습니다.

일전에 귀 아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咨文을 받았습니다.

일본 육군 소장 永山武四郎이 중국에 와서 農務를 시찰하려는데, 러시아령 우수리(烏蘇利) 州의 니콜리스크(尼古利斯科), 즉 雙城子를 경유해 淸과 러시아의 국경에 있는 綏芬河 일대 三岔口로부터 들어오거나, 혹은 러시아령 포시예트(波西葉土)港에서 淸·러시아·조선 삼국의 국경을 경유해 琿春으로부터 올 것 같습니다. 이후 寧古塔과 吉林·盛京·山海關 등지를 경유해 北京에 도착했다가 天津으로부터 귀국하려 합니다. 각지에咨文을 보내 그를 적절히 보호하도록 해주시는 한편, 入境과 出境 날짜는咨文으로 답장해 주십시오.

이미 본 대신이 각 지방관들에게 그대로 처리하도록咨文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에 琿春 副都統이 다음과 같이咨文으로 보고하였습니다.

9월 14일 해당 소장 永山武四郎이 통역 등을 대동하고 러시아 국경을 경유해 琿春에 당도했는데 바로 돌봐주도록 하였습니다. 城에 이틀 머무르다가 17일에 출발하였습니다. 통행증을 발급해 주었고, 수비병을 보내 대동시켜 호송하도록 했는데, 黑石道를 경유해 곧장(吉林省城인) 吉林으로 떠났습니다. 이에 吉林將軍에게咨文으로 알리고 경유하는 곳의 지방관들에게 알려 주둔 수비병들이 적절히 보호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마땅히 문서를 갖추어咨文을 올리니 참고해 주십시오.

이에 마땅히 귀 아문에咨文으로 답하니 번거롭더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 문서번호 : 1-5-0-02 (1295, 2386b-2387a)

사안 : 일본군 소장 永山武四郎이 이미吉林의 경계에 당도하였습니다(日陸軍少將永山武四郎已抵吉省境界).

날짜 : 光緒十三年十月十七日(1887년 12월 1일)

발신 : 吉林將軍

수신 : 總理衙門

十月十七日, 吉林將軍希元等文稱.

案查前於本年四月間, 接准貴衙門咨開.

光緒十三年三月二十五日, 准出使日本大臣徐咨開.

准日本外務省文稱.

屯田兵本部長陸軍少將山武四郎, 前往中國查看農務, 擬由俄轄烏蘇利州尼古利斯科即雙城子, 出於清俄國境綏芬河畔三岔口, 或由俄轄波西葉土港, 經清俄韓三國境邊出於琿春. 旋經寧古塔吉林盛京山海關等處抵北京, 由天津歸國.

等因.

請轉咨各省查照前來. 相應咨行貴將軍轉飭各該地方官, 俟該少將永山武四郎到時, 照約保護, 並將入境出境各日期咨復本衙門備查可也.

等因. 准此.

當由本衙門行令所屬各地方, 一俟洋人抵境, 照約保護, 並將出入境界日期隨時咨報, 以憑轉咨去後. 茲於光緒十三年九月二十二日, 准琿春副都統依克唐阿咨.

據駐守二道河卡官驍騎校富勒渾報稱.

九月十四日，有查看農務之少將永山武四郎，帶同隨弁三名，通事一名，由俄界巖杵河僱坐俄車兩輛入境越卡，派兵護送抵入琿春城，覓寓存住。於十七日坐車出城，經由赫西赫路往赴吉林省垣，當派官弁保護去訖。

等因。前來。

查日本少將永山武四郎現已抵入吉省境界，自應先行咨報。除俟出境再行咨報外，理合將洋人入境日期備文咨報。爲此合咨貴衙門，請煩查核施行。

10월 17일 吉林將軍 希元 등이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내왔습니다.

일전에 올해 4월 사이 귀 아문의 다음과 같은咨文을 받았었습니다.

광서 13년 3월 25일 일본 出使大臣 徐로부터 다음과 같은咨文을 받았었습니다.

日本外務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받았었습니다.

屯田兵 本部長 육군 소장 永山武四郎이 農務를 시찰하러 중국에 가는데, 러시아령 우수리州的 니콜리스크, 즉 雙城子를 경유해 淸과 러시아의 국경에 있는 綏芬河 일대 三岔口나, 혹은 러시아령 포시예트港에서 淸·러시아·조선 삼국의 국경을 거쳐 琿春으로 입국할 것 같습니다. 이후 寧古塔과 吉林·盛京·山海關 등지를 경유해 北京에 도착하였다가 天津으로부터 귀국하고자 합니다.

各 省에서 이에 따라 처리하도록咨文으로 전달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마땅히 귀 장군에게도咨文을 보내니 해당 지방관들로 하여금 해당 소장 永山武四郎이 도착했을 때 조약에 따라 보호해 주도록 하고, 入境과 出境 각 날짜를咨文으로 답장을 보내서 본 아문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본 아문에서 소속 각 지방에 지시하여 일단 외국인이 국경에 도착하면 조약에 따라 보호하고 출입국 날짜를 수시로 자문으로 보고함으로써 자문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광서 13년 9월 22일 혼춘부도통 依克唐阿의 다음과 같은咨文을 받았었습니다.

二道河 변경 초소 관원인 驍騎校 富勒渾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9월 14일 農務를 시찰하러 온 소장 永山武四郎이 수행 무관 3명과 통역 1명을 대동하고

러시아 국경의 巖杵河로부터 러시아 마차 2대를 고용하여 타고 국경으로 들어와 초소에 도착하였으므로, 병사를 보내 호송하고 琿春城에 도착해 머물 곳을 찾게 하였습니다. 그는 17일에 마차를 타고 城을 나섰는데, 바로 赫西赫路를 경유해 길림 省城으로 출발하였으므로, 바로 문·무관을 보내 보호하게 하였습니다.

살펴보니 일본 소장 永山武四郎이 지금 이미 吉林의 경계로 들어왔기에 마땅히 우선 咨文으로 보고 드려야 할 것입니다. 出境한 이후 다시 咨文을 보내는 것 외에도, 외국인의 入境 날짜에 대해 문서를 갖추 咨文으로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귀 아문에 咨文을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 문서번호 : 1-5-0-03 (1298, 2410b-2411a)

사안 : 일본 소장 永山武四郎가 이미 10월 초5일에 吉林에서 출발하여 奉天으로 향하였습니
다(日本少將永山武四郎, 已於十月初五日由吉起程赴奉).

날짜 : 光緒十三年十月二十六日(1887년 12월 10일)

발신 : 吉林將軍 希元

수신 : 總理衙門

十月二十六日, 吉林將軍希元等文稱.

案查前准貴衙門咨開.

光緒十三年三月二十五日, 准出使日本大臣徐咨開.

准日本外務省文稱.

屯田兵本部長陸軍少將永山武四郎, 前往中國查看農務, 擬由俄轄烏蘇利州尼古利斯科即雙城子, 出於清俄國境綏芬河畔三岔口, 或由俄轄波西葉土港, 經清俄韓三國境邊, 出於琿春. 旋經寧古塔吉林盛京山海關等處抵北京, 由天津歸國.

等因. 請轉咨各省查照前來.

相應咨行貴將軍轉飭各該地方官, 俟該少將永山武四郎到時, 照約保護, 並將入境出境各日期, 咨復本衙門備查.

等因. 准此.

當由本衙門咨札所屬各地方官, 一俟洋人抵境, 照約妥爲保護去後. 茲於本年九月二十二日, 准琿春副都統咨報.

日本少將永山武四郎，帶同隨弁三名，通事一名，由俄界巖杵河僱坐俄車兩輛。於十四日抵入琿春城，覓寓住宿。於十七日出城赴吉林省城，派弁保護去訖。

又於十月初五日，據總理吉林街道廳二品頂戴花翎協領吉陞阿報稱。

九月二十九日，日本少將永山武四郎帶同隨弁三名，通事一名，乘坐大車二輛，進城住北街永裕店。於十月初五日，由吉起程奔赴奉天去訖。

等情。據此。

除咨行盛京軍督部堂知照外，相應備文咨報貴衙門，請煩查核施行。

10월 26일 吉林將軍 希元 등이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내왔습니다.

일전에 귀 아문의 다음과 같은咨文을 받았었습니다.

광서 13년 3월 25일 일본 出使大臣 徐로부터 다음과 같은咨文을 받았습니니다.

日本外務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받았습니니다.

屯田兵 本部長 육군 소장 永山武四郎이 農務를 시찰하러 중국에 가는데, 러시아령 우수리州의 니콜리스크, 즉 雙城子를 경유해 淸과 러시아의 국경에 있는 綏芬河 일대 三岔口나, 혹은 러시아령 포시예트港에서 淸·러시아·조선 삼국의 국경을 거쳐 琿春으로 입국할 것 같습니다. 이후 寧古塔과 吉林·盛京·山海關 등지를 경유해 北京에 도착하였다가 天津으로부터 귀국하고자 합니다.

各 省에서 이에 따라 처리하도록咨文으로 전달해주시기를 요청하면서, 마땅히 귀 장군에게도咨文을 보내니 해당 지방관들로 하여금 해당 소장 永山武四郎이 도착했을 때 조약에 따라 보호해 주도록 하고, 入境과 出境 각 날짜를咨文으로 답장을 보내서 본 아문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본 아문에서 소속 각 지방에 지시하여 일단 외국인인 국경에 도착하면 조약에 따라 보호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광서 13년 9월 22일 혼춘부도통 依克唐阿의 다음과 같은咨文을 받았습니니다.

二道河 변경 초소 관원인 驍騎校 富勒渾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니다.

9월 14일 農務를 시찰하러 온 소장 永山武四郎이 수행 무관 3명과 통역 1명을 대동하고 러시아 국경의 巖杵河로부터 러시아 마차 2대를 고용하여 타고 국경으로 들어와 초소에 도착하였으므로, 병사를 보내 호송하고 琿春城에 도착해 머물 곳을 찾게 하였습니다. 그는 17일에 마차를 타고 城을 나섰는데, 바로 赫西赫路를 경유해 길림 省城으로 출발하였으므로, 바로 문·무관을 보내 보호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10월 5일 總理吉林街道廳의 二品頂戴花翎인 協領 吉陞阿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9월 29일 일본 소장 永山武四郎이 수행 무관 3명과 통역 1명을 대동하고 마차 2대를 타고 省城으로 들어와 北街 永裕店에 머물렀습니다. 10월 5일 吉林을 떠나 奉天으로 출발하였습니다.

盛京將軍에게 咨文을 보내 알리는 한편, 마땅히 문서를 갖추 귀 아문에 咨文으로 보고하니 번거롭겠지만 참고해 주십시오.



(88) 문서번호 : 1-5-0-04 (1300, 2413a-b)

사안 : 육군 소장 永山武四郎 등이 天津으로부터 上海에 가려고 하니 통행증 발급을 요청합니다(陸軍少將永山武四郎等由津赴滬請發給護照).

날짜 : 光緒十三年十一月初十日(1887년 12월 24일)

발신 : 日本公使 鹽田三郎

수신 : 總理衙門

十一月初十日, 日本國公使鹽田三郎函稱.

本國陸軍少將永山武四郎, 擬於本月二十八日, 帶同隨員荒城重雄, 椽內元吉, 小島恭次郎, 暨翻譯鈴木運吉出都, 由津取路直隸, 山東, 江蘇等省抵滬. 爲此函請貴王大臣發給護照, 以便沿途驗放可也. 崑此佈泐, 順頌日祉

11월 초4일 일본공사 鹽田三郎가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본국의 육군 소장 永山武四郎이 이번 달 28일 수행원 荒城重雄, 椽內元吉, 小島恭次郎 및 통역 鈴木運吉을 대동하고 수도를 벗어나 天津으로부터 直隸, 山東, 江蘇 등의 省을 거쳐 上海로 향하려고 합니다. 이에 旅券(통행증) 발급을 귀 王大臣에게 요청하여, 연도에서 검사를 받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신을 보냅니다. 날마다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89) 문서번호 : 1-5-0-05 (1301, 2414a)

사안 : 永山武四郎 등이 上海로 향하면서 소지하는 통행증에 順天府尹이 직인을 찍도록 지시를 내립니다(永山武四郎等赴滬護照, 札行順天府蓋印).

날짜 : 光緒十三年十一月十一日(1887년 12월 25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順天府尹

十一月十一日, 給順天府尹札稱.

光緒十三年十一月初十日, 准日本公使鹽田三郎函開.

本國陸軍少將永山武四郎, 帶同隨員荒城重雄, 椽內元吉, 小島恭次郎, 暨翻譯鈴木運吉出都, 由津取路直隸山東江蘇等省赴滬. 函請發給護照.

等因. 前來.

本衙門繕就護照一張, 應札行順天府蓋印訖, 仍交原弁帶回, 以便給發可也.

11월 11일 順天府尹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광서 13년 11월 10일 일본공사 鹽田三郎의 다음과 같은 서한을 받았습니다.

본국의 육군 소장 永山武四郎이 이번 달 28일 수행원 荒城重雄, 椽內元吉, 小島恭次郎 및 통역 鈴木運吉을 대동하고 수도를 벗어나 天津으로부터 直隸, 山東, 江蘇 등의 省을 거쳐 上海로 향하려고 합니다. 이에 통행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본 아문에서는 통행증 1장을 작성했으나, 마땅히 順天府에 지시하여 직인을 찍은 다음, (여권을 가지고 간) 원래의 무관에게 넘겨 그가 가지고 돌아와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90) 문서번호 : 1-5-0-06 (1302, 2414b)

사안 : 永山武四郎 등에게 上海로 가는 통행증을 발급합니다(發給永山武四郎等赴滬護照).

날짜 : 光緒十三年十一月十三日(1887년 12월 27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日本公使 鹽田三郎

十一月十三日, 致日本國公使鹽田三郎函稱.

接准函稱.

陸軍少將永山武四郎, 帶同隨員荒城重雄, 椽內元吉, 小島恭次郎, 暨翻譯鈴木運吉
出都, 由津取道直隸, 山東, 江蘇等省赴滬, 請發給護照.

等因. 前來.

本衙門業經繕就護照一紙, 交順天府蓋印訖, 相應函送貴大臣查收, 轉給該少將收執可
也.

11월 13일 일본공사 鹽田三郎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서한을 받았었습니다.

육군 소장 永山武四郎가 수행원 荒城重雄, 椽內元吉, 小島恭次郎 및 통역 鈴木運吉를 대동
하고 수도를 벗어나 天津으로부터 直隸, 山東, 江蘇 등의 省을 거쳐 上海에 가려고 합니다.
이에 통행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본 아문에서는 이미 통행증 1장을 작성해 順天府에 넘겨 직인을 찍게 하였으므로, 마땅히 서한으
로 귀 대신에게 보내니 확인하여 받아서 해당 소장에게 전해 휴대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91) 문서번호 : 1-5-0-07 (1303, 2415a)

사안 : 일본 소장 永山武四郎 등이 京師로부터 상해에 가려고 하니 보호하도록 요청합니다
(日本少將永山武四郎等, 由京赴滬請飭屬保護).

날짜 : 光緒十三年十一月十四日(1887년 12월 28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北洋大臣 李鴻章

十一月十四日, 行北洋大臣李鴻章文稱.

光緒十三年十一月初十日, 准日本公使鹽田三郎函開.

本國陸軍少將永武四郎, 帶同隨員荒城重雄, 椽內元吉, 小島恭次郎, 暨翻譯鈴木運吉出都, 由津取道直隸山東江蘇等省赴滬. 請發給護照, 沿途驗放.

等因. 前來.

除由本衙門繕就護照, 札行順天府蓋印發給收執外, 相應咨行貴大臣查照, 於該少將過境時, 飭屬照約保護, 並將入境出境各日期咨覆本衙門備查可也.

同日行山東巡撫張曜文同上.

同日行江蘇巡撫崧駿文同上.

11월 14일 북양대신 이홍장에게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냈습니다.

광서 13년 11월 초10일 일본공사 鹽田三郎의 다음과 같은 서한을 받았습니다.

본국 소장 永山武四郎이 수행원 荒城重雄, 椽內元吉, 小島恭次郎 및 통역 鈴木運吉를 대동하고 수도를 벗어나 天津으로부터 直隸, 山東, 江蘇 등의 省을 거쳐 上海에 가려고 합니다.

이에 연도에서 검사를 받고 통과하기 위한 통행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본 아문에서는 통행증을 작성하여 順天府에서 직인을 찍어 그들이 휴대하도록 발급을 지시한 한편, 마땅히 귀 대신에게 咨文을 보내 해당 소장이 경계를 지날 때 조약에 따라 보호하도록 하고, 入境과 出境 각 날짜를 咨文으로 본 아문에 통보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 山東 巡撫 張曜에게 위와 같은 자문을 보냈다.

같은 날 江蘇 巡撫 崧駿에게 위와 같은 자문을 보냈다.



(92) 문서번호 : 1-5-0-08 (1305, 2418b-2419a)

사안 : 일본 육군 소장 永山武四郎이 直隸 撫寧縣을 出·入境한 날짜를 咨文으로 알립니다
(咨報日本陸軍少將永山武四郎經直隸撫寧縣出入口日期).

날짜 : 光緒十三年十一月十五日(1887년 12월 29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十一月十五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前准貴衙門咨.

日本陸軍少將永山武四郎, 前往中國察看農務, 擬由俄轄烏蘇利州尼古利斯科即雙城子, 出於清俄國境綏芬河畔三岔口, 或由俄轄波西葉土港, 經清·俄·韓三國境邊出於琿春. 旋經寧古塔·吉林·盛京, 山海關等處抵北京, 由天津歸國. 咨行轉飭妥爲保護 並將入境出境日期咨覆.

等因.

當經本閣爵大臣咨行各地方官照辦, 業將琿春副都統咨呈日本少將永山武四郎等由俄抵琿春起程赴吉林各日期咨覆在案. 茲據直隸撫寧縣知縣恩廉稟稱.

奉文後當即隨時差探, 總未見由縣境經過. 迨十月二十九日, 准臨榆縣.

以日本陸軍少將永山武四郎帶領隨從四人, 於本月二十七日巳時進關, 住歇該縣西街德盛店. 於二十八日辰刻起程前進.

等因.

移知密護前來, 卑職當即遴派丁役前往迎探. 去後. 茲於二十九日據原役稟稱.

探得日本陸軍少將永山武四郎帶領隨從四人，於二十九日酉刻抵境，住歇卑縣東關萬成店。於三十日辰刻起程，取道盧龍縣前進。

除即飛移下站盧龍縣遵照密護外，所有入境出境日期，理合馳稟查核等情。據此。
相應咨覆貴衙門，請煩查照。

11월 15일 북양대신 이홍장이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내왔습니다.

일전에 귀 아문의 다음과 같은咨文을 받았었습니다.

일본 육군 소장 永山武四郎이 農務를 시찰하러 중국에 가는데, 러시아령 우수리州的 니콜리스크, 즉 雙城子를 경유해 淸과 러시아의 국경에 있는 綏芬河 일대 三岔口나, 혹은 러시아령 포시예트港에서 淸·러시아·조선 삼국의 국경을 거쳐 琿春으로 입국할 것 같습니다. 이후 寧古塔과 吉林·盛京·山海關 등지를 경유해 北京에 도착하였다가 天津으로부터 귀국하고자 합니다. 각지에 자문을 보내 적절히 보호하도록 해주시는 한편, 入境과 出境 날짜는咨文으로 답장해 주십시오.

이미 본 대신이 각 지방관들에게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咨文을 보냈고, 일본 소장 永山武四郎 등이 러시아로부터 琿春에 당도했다가 출발해 吉林에 당도한 날짜를 혼춘부도통이咨文으로 보고하자, 이를咨文으로 답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 直隸 撫寧縣 知縣 恩廉이 다음과 같이 보고해 왔습니다.

공문을 받은 다음 즉시 수시로 정탐 인원을 파견했지만, 縣의 경계를 통과하는 것을 도통 볼 수 없었습니다. 10월 29일에 이르러서야 臨榆縣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일본 육군 소장 永山武四郎가 수행원 4명을 대동하고 이번 달 27일 巳時에 入關하여 縣西街의 德盛店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永山武四郎 등을 비밀리에 보호하도록 공문을 보냈고, 저는 바로 丁役을 선발해 정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29일에 파견된 衙役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탐문해보니, 일본 육군 소장 永山武四郎은 수행원 4명을 데리고 29일 酉刻에 (縣) 경계에 당도해서 저희 縣의 東關 萬成店에 머물렀습니다. 30일 辰刻에 출발해서 盧龍縣

쪽의 길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공문을 驛站으로 보내 盧龍縣에서 비밀리에 보호하도록 하는 한편, 모두 出·入境
날짜를 신속하게 보고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마땅히 귀 아문에 咨文으로 답장을 보내는 바이니, 번거롭더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 문서번호 : 1-5-0-09 (1307, 2420a-b)

사안 : 일본 소장 永山武四郎이 直隸 玉田縣에 出·入境한 날짜를 咨文으로 알립니다(咨報日
少將永山武四郎行抵直隸玉田縣入境出境日期).

날짜 : 光緒十三年十一月二十日(1888년 1월 3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十一月二十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前准貴衙門咨.

日本陸軍少將永山武四郎前往中國察看農務, 擬由俄轄烏蘇利州尼古利斯科即雙城子, 出於清俄國境綏芬河畔三岔口, 或由俄轄波西葉土港, 經清·俄·韓三國境邊, 出於琿春. 旋經寧古塔·吉林·盛京·山海關等處抵北京, 由天津歸國. 咨行轉飭妥爲保護, 並將入境出境日期咨覆.

等因.

當經本閣爵大臣咨行各地方官照辦, 業將琿春副都統暨撫寧縣先後分報該陸軍少將入境出境日期咨覆在案. 茲據直隸玉田縣知縣張彭齡申稱.

奉文後遵即派役在於境內沿途查探. 茲於光緒十三年十一月初二日, 探得日本陸軍少將永山武四郎帶領隨從四人, 行抵卑縣東關住宿, 當經卑職照約妥爲保護. 於初三日送至薊州所屬之別山邦筠去訖. 所有永山武四入境出境日期, 擬合申報查核.

等情. 據此.

相應咨覆貴衙門, 請煩查照.

11월 20일 북양대신 이홍장이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내왔습니다.

일전에 귀 아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咨文을 받았습니다.

일본 육군 소장 永山武四郎이 중국에 와서 農務를 시찰하려는데, 러시아령 우수리州的 니콜리스크, 즉 雙城子를 경유해 淸과 러시아의 국경에 있는 綏芬河 일대 三岔口로부터 들어오거나, 혹은 러시아령 포시예트港에서 淸·러시아·조선 삼국의 국경을 경유해 琿春으로부터 올 것 같습니다. 이후 寧古塔과 吉林·盛京·山海關 등지를 경유해 北京에 도착했다가 天津으로부터 귀국하려 합니다. 각지에咨文을 보내 그를 적절히 보호하도록 해주시는 한편, 入境과 出境 날짜는咨文으로 답장해 주십시오.

이미 본 대신이 각 지방관들에게 그대로 처리하도록咨文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에 琿春副都統과 武寧縣 知縣이 앞뒤로 그 육군 소장의 출·입경 일기를 자문으로 답장을 해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直隸省의 玉田縣 知縣 張彭齡이 다음과 같이 보고해 왔습니다.

공문을 받은 후 즉시 衙役을 파견해 경내의 연도에서 정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광서 13년 11월 초2일에 탐문을 통해 일본 육군 소장 永山武四郎이 수행원 4명을 데리고 저희縣의 東關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아냈고, 저는 조약에 따라 그들을 적절히 보호하였습니다. 3일에는 薊州 소속의 別山(店鎮)과 邦筠(店鎮)으로 (정탐 인원을) 보냈습니다. 永山武四郎의 出·入境 날짜를 검토하실 수 있도록 보고하는 바입니다.

(이에) 마땅히 귀 아문에咨文으로 답신하니, 번거롭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 문서번호 : 1-5-0-10 (1372, 2516b-2517a)

사안 : 일본 육군 중위 萩野末吉가 경계를 지나니 적절히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日陸軍中尉萩野末吉過境, 希妥爲保護).

날짜 : 光緒十四年八月十二日(1888년 9월 17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北洋大臣 李鴻章

八月十二日, 行北洋大臣李鴻章文稱.

光緒十四年八月初八日, 接出使日本黎大臣函稱.

接日本外務大臣大隈來函內稱.

駐在俄國海參崴地方之陸軍中尉萩野末吉, 目前欲歸敝國, 命其順道出西比利亞及滿洲一帶地方. 該員如經過貴國境界之時, 應求貴國官員照約保護. 此事由我陸軍大臣通知, 屬爲轉託, 請告知貴政府.

等語.

查該員游俄, 想由琿春入吉林, 黑江龍至俄境, 折在庫倫, 張家口至天津, 應請行知各處, 照例保護.

等因. 前來.

本衙門查日本人萩野末吉, 雖未請領中國護照, 惟既據外務大臣函囑, 自應照約保護. 相應咨行貴都統將軍大臣, 飭令所屬查明, 俟其抵境時妥爲保護, 並將入境出境各日期咨復本衙門備查可也.

同日行黑龍江將軍恭鏜，察哈爾都統托倫布，庫倫辦事大臣安德，吉林將軍長順，以上文均同上.

8월 12일 북양대신 이홍장에게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냈습니다.

광서 14년 8월 초8일 일본 出使大臣 黎의 다음과 같은 서한을 받았습니다.

일본 외무대신 大隈가 보내온 다음과 같은 서신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海參崴)에 주재하고 있는 육군 중위 萩野末吉이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시베리아와 만주 일대를 거쳐 오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해당 관원이 귀국의 경계를 지날 때, 마땅히 조약에 따른 귀국 관원의 보호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일은 우리 육군대신이 통지하면서 귀 정부에 대신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관원이 러시아를 지나 琿春을 경유해 吉林·黑龍江으로 들어가 러시아 국경에 이른 뒤, 방향을 바꿔 庫倫·張家口를 거쳐 天津으로 가려고 하니 마땅히 각지에 알려 전례에 따라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일본인 萩野末吉의 경우 비록 중국 통행증의 수령을 아직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외무대신의 부탁을 받았으니 마땅히 조약에 따라 보호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마땅히 귀 都統·將軍·大臣에게 咨文을 보내 관할 지역에서 확인하고 경계를 지날 때는 적절히 보호하도록 하는 한편, 入·出境 날짜를 咨文으로 본 아문에 答장으로 보내주셔서 검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은 날 黑龍江將軍 恭鏜，察哈爾 都統 托倫布，庫倫辦事大臣 安德，吉林將軍 長順에게 모두 위와 같은 내용의 자문을 보냈다.

중국과 조선의 변경 방어와 경계문제(中韓邊防界務)

도문강 항행과 나루터 설치 (圖們江航行及設渡)



(95) 문서번호 : 1-6-0-01 (1432, 2596a)

사안 : 조선과 러시아가 土們江에서 배를 운행하면서 土字界碑⁸⁸⁾ 이상으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韓·俄在土們江行船, 勿令闖入土字界碑以上).

날짜 : 光緒十五年五月十九日(1889년 6월 17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吉林將軍 長順

五月十九日, 致吉林將軍長順函. 詳見密啓.

浮籤⁸⁹⁾ 韓·俄在土們江行船, 勿令闖入土字牌以上由.

5월 19일 吉林將軍 長順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다[상세한 것은 비밀 서한을 참조].

첨부내용 : 조선과 러시아가 土們江에서 배를 운행하면서 土字碑 이상으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88) 러시아와 청의 국경 지역에 세워진 비석 가운데 하나를 가리킨다.

89) 부첨(浮籤)은 아마 공문에 추가하여 붙이는 처리 의견을 첨가하는 쪽지 형태의 책갈피 문서를 가리키는 것 같다.

(96) 문서번호 : 1-6-0-02 (1433, 2596b)

사안 : 조선과 러시아에게 土們江 航行에 대한 조약과 관련, 원세개로 하여금 따지게 하였습
니다(韓·俄在土們江行船之約, 卽飭袁世凱詰問).

날짜 : 光緒十五年五月十九日(1889년 6월 17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北洋大臣 李鴻章

五月十九日, 致北洋大臣李鴻章函. 詳見密啓.

浮籤. 韓·俄在土們江行船之約, 卽飭袁世凱詰問由.

5월 19일, 북양대신 이홍장에게 보낸 서한을 보냈다[상세한 건 비밀 서한을 참조].

첨부내용 : 조선과 러시아에게 土們江 航行에 대한 조약과 관련, 원세개로 하여금 따지게 하였
습니다.

(97) 문서번호 : 1-6-0-03 (1467, 2667a-b)

사안 : 舢舨砲船 2척을 순찰을 위해 圖們江에 배치하고 조선인들이 사적으로 설치한 다리와 나루터를 철거해야 한다는 片奏를 올립니다(片奏於圖們江設砲船二艘巡邏並將韓人私設橋渡拆毀).

날짜 : 光緒十五年十月十九日(1889년 11월 11일)

발신 : 軍機處

수신 : 總理衙門

十月十九日, 軍機處交出吉林將軍長順片稱.

吉林·朝鮮以圖們江爲界. 此次查出沿江私設橋渡, 已飭督理和龍峪商務總局委員章鴻錫, 會同朝鮮邊界官概行撤毀. 仍照章在光霽峪分卡並西步江分局開市處所對岸設渡, 所有來往商民, 彼此驗照, 方准放行, 以杜漏稅及越壑之弊. 惟是沿江上下數百里, 巡查不易, 況俄人現復與朝鮮陸路通商, 則我之琿春一帶交涉事件, 勢必更增繁重. 奴才擬於圖們江設立舢舨砲船號, 上下梭巡, 於邊防不無少補. 其砲船一切, 悉按本年四月奏設松花江水師砲船章程辦理. 至冬令封江之後, 卽將船上弁勇並酌撥隊伍, 扼要巡緝, 俾臻嚴密. 奴才爲兼籌防務起見, 是否有當, 謹附片具陳, 伏乞聖鑒訓示, 謹奏.

光緒十五年十月十九日, 奉硃批.

該衙門知道.

欽此.

10월 19일 군기처에서 다음과 같은 吉林將軍 長順의 片奏를 보내왔습니다.

길림과 조선은 圖們江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을 따라 사적으로 설치된 다리와 나루터를 발견했는데, 이미 和龍峪商務總局을 관리하는 위원 章鴻錫으로 하여금 조선의 변경 관원과 함께 모두 철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정에 따라 光霽峪의 分所와 西步江 分局이 시장을 개설한 장소 맞은편에 다리를 설치하고, 모든 왕래 商民들은 피차간에 모두 증명서를 검사받은 다음에야 통행이 허가되어, 탈세와 越墾의 폐단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을 따라 상·하류 수백 리에 걸쳐 순찰이 쉽지 않은데다, 러시아인들이 이제 다시 조선과 육로로 통상하게 된다면, 琿春 일대 교섭 사무는 더욱 번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奴才는 圖們江에 舢板砲船을 배치하여 상·하류를 순찰하게 해 변경 방어에 적지 않은 보탬이라도 되게 하고자 합니다. 砲船 일체에 대해서는 모두 올해 4월 상주해 마련한 「松花江水師砲船章程」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되어 강이 얼어붙은 다음에는 즉시 포선의 병력 및 적절히 선발한 부대로 하여금 핵심 지역을 순찰하게 해서 변경 방어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奴才가 방어 업무를 아울러 다루고자 하는 견지에서, 이러한 의견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삼가 附片을 덧붙여 아뢰어 황상께서 살펴보시고 훈시를 내려 주시기를 엿드려 바랍니다. 이에 삼가 주를 올립니다.

광서 15년 10월 19일 다음과 같은 硃批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 알리라.

이상.

(98) 문서번호 : 1-6-0-04 (1470, 2672a-2674b)

사안 : 조선인들이 사적으로 운반한 목재를 압수하고, 사설 다리와 나루터를 봉쇄한 각 안건에 대해 길림과 조선의 商務委員이 주고받은 照會를 초록해 보고합니다(吉林·朝鮮商務委員扣留韓民私運木料及查禁私設橋渡各案, 錄呈往來照會).

- 첨부문서 : 1. 「변민 金德建이 사적으로 운반한 목재는 임의로 처리하기를 바라지만, 사설 다리와 나루터 문제의 경우 갑자기 봉쇄해서는 곤란합니다(邊民金德建私運木料, 祈從權處理, 私設橋渡事, 未便遽行查禁)」.
2. 「金德建이 사적으로 목재를 운반한 안건은 응당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사설 다리와 나루터를 봉쇄하는 문제의 경우 임의로 봉쇄를 늦추기는 곤란합니다(金德建私運木料案, 應依法辦理, 查禁私設橋渡事, 礙難從權緩禁)」.

날짜 : 光緒十五年十月二十四日(1889년 11월 16일)

발신 : 吉林將軍 長順

수신 : 總理衙門

十月二十四日 吉林將軍長順文稱.

邊務承辦處案呈.

案據署理吉·朝商務委員·同知銜直隸州用分省補用知縣章鴻錫稟稱.

竊卑局前次扣留朝民金德建等私運木料一案, 暨請查禁土門江上下私設橋渡各情形, 迭經抄錄往來照會, 呈請鑒核示遵各在案. 茲准朝鮮咸鏡北道安撫使南照覆內開, 詞漸狡強, 意存輕視. 若再示含容, 邊事必日覺糜爛, 不得不嚴整章規, 峻詞拒絕. 惟事關交涉, 未便輕忽, 所有卑局扣留朝民私運木料, 及查禁私設橋渡兩案往來照會各

情形，應請憲台分咨總署暨北洋大臣李查照。

等情。到本督辦將軍。據此。

查所覆朝鮮安撫使照會，詞意甚為嚴正，仍速催將沿江上下私設橋渡趕緊撤毀，毋任稽延。除稟批掛發外，相應照抄來往照會咨明，為此合呈貴衙門，請煩查核施行。

照錄粘單。

(1)

朝鮮國二品資憲大夫，行咸鏡北道按撫使兼兵馬水軍節度使南，為照覆事。

本月十三日，接准貴照會內開。

案查貴國邊民金德建等私運木料一案，敝督理前曾將同夥伐木之陳利益，金致正二名，護送貴屬會寧府使訊辦。去後。旋准照覆各節，並經先後稟請欽命督辦吉林將軍長示遵在案。茲於本月初九日接奉批迴內開。

查該局所扣之木料，姑無論其砍自何處，並私行載運情事，第私設橋渡，為商務章程所禁。茲該朝民竟敢私運木料，私造橋梁，既經該局扣留，應全數入官，充作公課。其沿江一帶橋梁私渡，亦嚴催該府使趕緊禁止，以杜漏稅並越壑之弊，仍惟拏金德建一併懲辦。繳。

等因。

同日復奉批開。

查此案前據該局呈報，並抄錄照會，業經批示在案。茲據稱該府使移覆各節，該犯等既經訊供不諱，應令該府使嚴懲開釋。但所扣木料，原係該犯私運私造橋梁之物，大千例禁。與所引瓦木，零星器具免稅章程毫不相涉，仰照前批，全數入官充課，以儆效尤。至沿江上下私設橋渡，該局員務當剋日會同該府使趕緊查禁，俾絕漏稅並越壑之弊，仍將辦理情形報查。切切。繳。

等因。奉此。

查事關交涉，自應按照條約，認真辦理，原不得稍事含容，致紊章規。除抄錄照會原案，移請查核外，相應照會。爲此照會貴按撫使，請煩查照，嚴飭會寧府使遵辦，並速見覆施行。

等因。准此。

竊查案內敝邦邊民金德建私運木料一事，有干章規，理合充公。再據貴抄會寧府使照本內開，所有該木始擬橋材，終待燃用，則該犯之經紀根果不同，原物之優劣適用判殊。此應係通商章程所明瓦木器具民間日用免徵條，一律照辦。至論充作公課，似合恭恕。私設橋渡，原係章禁，誰事膽敢？貴局照辦，允合事宜。固當照章按法，亟行禁懲。然敝邦沿江貧民，年來均被天朝柔遠之澤，繞越佔種，借地安插，朝耕暮獲，從權通涉。今若猝事查禁，貧民之冒死圖生者，勢無由依。其在同舟共濟之誼，理宜矜念。總之，此案另派熟悉邊情之員，和沿江各府使約日會同巡查商辦，將該橋船審各情形，隨勢存刪，推移經權之義。念厥貧窶，視同遠邇，俾蒙終始之惠，恐是公私俱便，恩威並行。希煩貴督理允將此情，須再行稟請貴吉林將軍憲酌裁。俟批旨批否如何。究竟妥辦，則於貧民再生之秋。如未蒙允施，敝按撫亦不得自主，勢將稟候敝政府鑒裁復旨辦理外，相應備文照覆，爲此照覆貴督理，請煩查照妥籌，亟俟見覆施行。須至照覆者。

(2) 附照覆咸鏡道文稿一件

(全銜) 爲照覆事。

本月十七日，案准貴照覆內開原文有案應免冗斂外，查金德建等私運建橋之木料七十六根，既非燃火之木，又與通商章程內載日用零星瓦木，器具大相懸殊。業經敝督理稟奉欽命督辦邊務吉林將軍長批示，扣留入官充課，碍難恭恕。至貴照覆內稱，“繞越佔種之民，借地安插，從權通涉”等語，係於何時與何人商辦有案？條章之設，未可視爲具文。敝督理祇知守法遵章，非分所爲，未便據情上陳。前此往返商辦不肯遽行申禁者，原所以上體朝廷柔遠之意，下睦鄰好兼盡和衷共濟之情。否則我疆我理，不難逕行查辦。貴按撫使統任邊事，尤當謹遵條約，以示率循，何得以無稽之言，援入公牘，首違

章致滋紛議？所有查禁橋渡現行應辦之事，仍宜遵章辦理。其於越墾農民，亦應設法收回，以清邊圉。若於條約之外，未經商稟奏准有案之件，冀圖從權通涉，擅行私辦，貴國或有推移經權之事，敝督理凜畏王章，斷難違約辦理。相應照覆，請煩貴按撫使查照辦理。

再，查禁橋渡一節，已由敝督理照會貴會寧府使，約期查禁，即請轉飭該府使遵照約章，速爲定期會查勿延，並速見覆施行。須至照覆者。

右照覆朝鮮國咸鏡北道按撫使南。

10월 24일 吉林將軍 長順이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내왔습니다.

邊務承辦處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署理吉·朝商務委員으로 同知銜을 지닌 直隸州用分省候補知縣 章鴻錫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局에서 지난번 조선인 金德建 등이 사적으로 운반한 목재를 압수한 안건과 土門江 상·하류 지역에 사적으로 설치한 다리와 나루터를 봉쇄시켜달라고 요청한 각 사안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照會를 누차 초록하여 보고하면서 검토하여 지시를 내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 咸鏡北道 安撫使 南의 照覆을 받았는데, 그 말이 점점 간사하고 억지가 늘어나, 우리의 조치를 경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다시 관대하게 포용한다면 변경의 사무는 틀림없이 날로 혼란스러워질 터이므로 부득불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준엄한 말로써 거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이 교섭과 관련된 것이라, 소홀히 처리할 수 없으므로 저희 局에서 조선인들이 사적으로 운송한 목재를 압수하고 사실 다리와 나루터를 봉쇄하는 두 사안과 관련하여 照會를 주고받은 상황에 대해, 마땅히 길림장군께서 총리아문과 북양대신께 각기 자문을 보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 按撫使에게 답변한 照會를 살펴보니, 단어의 함의가 대단히 엄정하고 강 상·하류를

따라 설치된 사설 다리와 나루터를 서둘러 철거하여 지체가 없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보고에 대해 지시를 내려보내는 것 외에도 응당 주고받은 照會를 초록해 咨文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귀 아문에 보고를 드리니 번거롭더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초록 :

(1) 「변민 金德建이 사적으로 운반한 목재는 임의로 처리하기를 바라지만, 사설 다리와 나루터 문제의 경우 갑자기 봉쇄해서는 곤란합니다」.

조선의 二品資憲大夫로 咸鏡北道按撫使兼兵馬水軍節度使 南이 답장조회를 보냅니다. 이번 달 13일 다음과 같은 귀하의 照會를 받았습니다.

귀국의 변민 金德建 등이 사적으로 목재를 운반한 시안에 대해서는 우리 쪽 관리자(督理)가 일전에 함께 별목에 참가한 陳利益과 金致正 2명을 귀국 소속 會寧府使에게 보내 심문·처리하도록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여러 차례 답장 조회를 받았고, 아울러 길림장군 長順께 여러 차례 보고하여 지시를 내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달 9일 다음과 같은 답장 지시를 받았습니다.

해당 局에서 압류한 목재문제를 따져보니, 어디서 별목한 것인지와 사적으로 적재하고 운반한 것인지 아닌지의 사정은 잠시 따지지 않겠지만, 사설 다리와 나루터는 商務章程이 금지한 바이다. 이에 해당 조선 백성이 사적으로 운반한 목재와 사설 교량은 이미 해당 局에서 압류했으니, 마땅히 전부 몰수하여 국고로 충당해야 한다. 강 연안 일대 교량과 사설 나루터 또한 해당 府使에게 엄히 독촉하여 서둘러 봉쇄하도록 하여 脫稅와 越壘의 폐단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金德建을 잡아들여 함께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 문서는 다시 돌려보내도록 하라.

같은 날 또한 다음과 같은 지시도 받았습니다.

이 안건은 전에 받은 해당 局의 보고와 초록한 照會를 받은 바 있고, 이미 지시를 내린 바 있었다. 지금 보고에 따르면, 해당 府使의 답변은 해당 범 죄자들이 이미 숨김없이 자백하였으므로 해당 府使가 엄하게 처벌한 뒤 석방하겠다는 것이지만, 압류한 목재는 원래 해당 범인이 사적으로 운반하여 사설 교량을 만들 때 사용한 물건으로 크게 범을

어긴 것이다. 또한 瓦器와 자질구레한 기구 등은 免稅章程과 조금도 관련이 없으니, 앞서 지시한 대로 전량 몰수하여 국고로 귀속시킴으로써 따라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뜻을 보여주어야 한다. 강의 상·하류를 따라 설치된 사설 교량과 나루터의 경우, 해당 局의 관원이 마땅히 기한을 정해 해당 府使와 함께 서둘러 봉쇄하여 탈세와 越壘의 폐단을 막고 아울러 처리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도록 하라. 이 문서는 다시 돌려보내도록 하라.

이 일이 교섭 사무와 관련되어 있어 마땅히 조약에 따라 착실히 처리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느그럽게 받아들여 장정을 문란케 해서 안 됩니다. 조회 원건을 초록하여 검토하도록 전달하는 한편, 응당 照會로 통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 按撫使에게 照會로 통보하니, 번거롭더라도 참고하시고, 會寧府使로 하여금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엄히 지시해 주시고, 아울러 신속하게 답장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이 사건에서 조선의 변민 金德建이 사적으로 목재를 운반한 일은 법을 어긴 것이고 응당 국고로 몰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초록한 會寧府使 照會에서 언급하신 목재가 처음에는 교량 재료로 삼으려다가 결국에는 땔감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인 만큼, 해당 범인의 영업 행위와는 전혀 달라, 원래 물건의 우열에 따라 장정의 적용이 크게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은 마땅히 通商章程에서 밝힌 瓦木·기구 등 민간 일상용품 등은 모두 징세를 면제한다는 조항에 따라 일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몰수하여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은 상당히 사정을 봐주신 관대한 처분 같습니다. 사설 다리와 나루터 설치한 원래 章程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니 누가 감히 대담하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귀하의 局에서 그대로 처리하는 것이 사리에 맞습니다. 당연히 章程과 법에 따라 서둘러 금지·처벌해야 합니다. 허나 우리나라의 강 연안 빈민들이 근년 모두 먼 곳의 藩屬 백성을 安撫하는 天朝의 혜택을 입어, 越壘해서 경작을 하고 땅을 빌려 安插되어, 아침에는 밭을 갈고 저녁에 거두니 임시로나마 변통하게 됐습니다. 지금 갑자기 조사해 금지시킬 경우, 빈민들 가운데 죽음을 무릅쓰고 생계를 도모하려는 자들은 의탁할 바가 없게 됩니다.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서로 돕는 우의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치상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이 안건은 따로 변경 사정에 익숙한 관원을 파견해 강 연안 각 府使들과 날짜를 약속해 함께 조사하고 협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다리와 나루터의 경우, 각 상황을 살펴 그에 따라 존폐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과 융통성 두 가지를 함께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빈곤한 백성을 염두에 두고, 멀고

가까운 이들을 모두 똑같이 대우하여 시종일관 혜택을 입도록 해주신다면, 아마公私 모든 면에서 편하고 은혜와 위엄이 함께 베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번거롭더라도 귀 督理께서 이러한 사정에 고려해주셔서 반드시 귀 吉林將軍 대인께 보고를 올려 적절히 결정해 주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림장군의 허락이나 불허의 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든 그것은 빈민들에게는 재생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허락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 조선의 안무사 역시 이 문제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 반드시 저희 정부에 보고를 올려 지시가 떨어지면 다시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 외에, 응당 문서를 갖추어 답장 조회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 督理에게 답장 조회를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검토하시고 적절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빠른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2) 「金德建이 사적으로 목재를 운반한 안건은 응당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사실 다리나 루터틀 금지시키는 문제의 경우 임시변통으로 봉쇄를 완화시키기는 곤란합니다.」

咸境道로 보낸 다음과 같은 답장 조회를 첨부합니다.

같은 직함으로 답장 조회를 보냅니다. 이번 달 17일 귀하의 답장 조회를 받았습니다. 그 원문은 이미 받은 조회가 있으므로 다시 쓸데없이 서술하지 않겠습니다. 金德建 등이 다리를 세우려고 사적으로 운반한 목재 76개는 뿔감용 목재가 아니며, 또 通商章程 안에 기재된 자질구레한 일용 瓦木·기구와도 현저히 다릅니다. 이미 본 督理는 吉林將軍 長順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압류하여 국고로 충당하였으므로 관대하게 봐주는 어렵습니다. 귀하의 답장 조회에서 越壑하여 농사짓는 백성이 땅을 빌려 安插되어 임시로나마 변통하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언제 누구와 논의하여 처리한 적이 있다는 말입니까? 장정의 설치는 결코 단순하게 문서만 갖춘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본 督理는 단지 법과 규정을 준수함을 알 뿐, 직책상 할 수 없는 일을 사정을 고려하여 위에 보고하기는 곤란합니다. 이전에 서로 협의를 주고받으면서 갑작스럽게 금지령을 실행하지 않았던 것은 원래 위로는 조정이 먼 곳의 藩屬 백성을 安撫하는 뜻을 체현하고 아래로는 이웃 나라와 화목하게 지내면서 서로 돕는 情理을 다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영역은 우리가 관리하니, 곧바로 조사해서 처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디다. 귀 按撫使는 변경의 사무를 통괄하고 있으니

마땅히 조약을 준수해 모범을 보여야 하지, 어찌 황당무계한 말을 공문에 집어넣어 스스로 나서서 章程을 어기고 논란을 야기하려 하십니까? 다리와 나루터를 조사해 금지시키는 것은 지금 마땅히 처리해야 할 일이지 응당 章程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越壘 농민의 경우도 마땅히 방법을 강구하여 거두어들임으로써 변경 지역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조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인 경우, 논의하여 보고를 올린 다음 길림장군이 상주하여 재가를 받은 안건이 아니라면, 임시적인 변통을 도모하면서 멋대로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것의 경우 귀국에서는 혹시 원칙과 융통성의 문제를 조절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본 督理로서는 王法을 삼가 두려워하는 만큼 단연코 조약을 어기면서 일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마땅히 답장 조회를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귀 按撫使께서 참조하여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리와 나루터를 조사해 봉쇄하는 문제는 이미 본 督理가 조선의 會寧府使에게 기한에 맞춰 봉쇄하자고 조회를 보냈으니, 해당 府使가 조약 규정에 따라 신속히 날짜를 잡아 지체 없이 공동조사를 해서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속하게 답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조선 咸鏡北道按撫使 南에게 답장 조회를 보냅니다.

(99) 문서번호 : 1-6-0-05 (1473, 2676b-2777a)

사안 : 圖們江에 조선인들이 설치한 다리와 나루터를 철거하고, 砲船을 두어 순찰을 하겠다고 길림장군이 附片으로 상주하였는데, 이에 대한 硃批와 원래의 附片을 초록하여 보내 알립니다(吉林將軍片奏, 拆毀圖們江韓人橋渡, 及設立砲船巡梭, 錄送硃批及原片知照).

첨부문서 : 「圖們江에 조선인들이 사적으로 설치한 다리와 나루터는 응당 철거해야 하며, 砲船 2척을 배치하여 상·하류를 순찰케 함으로써 국경을 엄중히 다루고자 합니다(圖們江韓人私設橋渡應行拆毀, 擬添設砲船二艘上下巡梭, 以嚴疆界)」. : 생략 (문서번호 97의 자료와 동일).

날짜 : 光緒十五年十一月十五日(1889년 12월 7일)

발신 : 戶部

수신 : 總理衙門



十一月十五日, 戶部文稱.

案呈軍機處交出吉林將軍長奏, 吉林·朝鮮圖們江私設橋渡, 已飭商務局員撤毀, 擬設立舢板砲船二號梭巡等因, 附片一件. 光緒十五年十月十九日奉硃批.

該衙門知道.

欽此欽遵到部.

相應抄錄附片, 恭錄硃批, 咨呈總理衙門可也.

照錄粘單.

長順片. (생략. 문서번호 97의 자료와 동일)

11월 15일 호부에서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내왔습니다.

길림과 조선의 圖們江에 사적으로 설치된 다리와 나무터는 이미 商務局 관원에게 지시하여 철거하게 하였으며, 舢板砲船 2척을 배치하여 순찰하겠다고 한 吉林將軍 長順의 附片 상주를 군기처에서 보내왔습니다. 광서 15년 10월 19일 다음과 같은 硃批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 알리라.

이에 마땅히 첨부한 片片을 초록하고 硃批를 삼가 베껴 咨文으로 총리아문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첨부 문건 초록 : 長順이 올린 附片(생략. 문서번호 97의 자료와 동일).



(100) 문서번호 : 1-6-0-06 (1486, 2706a-b)

사안 : 吉林에서 조선인 金德建의 사적인 목재 운반을 금지한 것과 두만강을 따라 설치된
사설 다리와 나루터를 철거한 두 사안에 대해서, 조선 정부가 이전의 章程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장 조회를 보냈습니다(吉省查禁韓民金德建私運木料及撤毀沿江私設
橋渡兩案, 朝鮮政府照覆遵向章辦理).

날짜 : 光緒十五年十二月二十六日(1890년 1월 16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十二月二十六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升用道補用知府袁世凱申稱.

竊照本年十一月十七日奉憲台札開.

十月二十五日准吉林將軍長咨開.

邊務承辦處案呈.

案據署理吉朝商務委員·同知銜直隸州用分省補用知縣章鴻錫稟稱.

竊卑局前次扣留朝民金德建等私運木料一案, 暨請查禁土們江上下私設橋渡
各情形, 迭經鈔錄往來照會, 呈請鑒核示遵各在案. 茲准朝鮮咸鏡北道按撫使
南照覆內開, 詞漸狡強, 意存輕視. 若再示含容, 邊事必日覺糜爛, 不得不嚴
整章規, 峻詞拒絕. 惟事關交涉, 未便輕忽, 所有卑局扣留朝民私運木料, 及
查禁私設橋渡兩案往來照會各情形, 應請憲台分咨總署暨北洋大臣李查照.

等情. 到本督辦將軍. 據此.

查所覆朝鮮安撫使照會，詞意甚爲嚴正，仍速催將沿江上下私設橋渡，趕緊撤毀，毋任稽延。除稟批掛發外，相應照抄來往照會，咨明查核施行。

等因。到本閣爵大臣。准此。

合行札飭，札到該升道，即便照知朝鮮政府飭遵。計粘鈔。

等因。奉此。

當即遵照鈔粘，照會朝鮮政府飭遵辦理。去後。旋於是月二十六日，准該政府照復內開。

查此等案事關邊界，只有遵照定章，不必致滋紛擾。該按撫使亦豈故欲違章，殊涉訝惑。當即遵飭該按撫使查辦明白，俾合章規，請煩查照。

等因。前來。准此。

理合申復查核。

等情。到本閣爵大臣。據此。

除咨吉林將軍查照外，相應咨明貴衙門，請煩查照。

12월 26일 북양대신 이홍장이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내왔습니다.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候補知府 원세개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삼가 살피건대, 올해 11월 17일 다음과 같은 大人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10월 25일 吉林將軍 長順이 다음과 같은 咨文을 보내왔다.

邊務承辦處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署理吉·朝商務委員으로 同知銜을 지닌 直隸州用分省候補知縣 章鴻錫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局에서 지난번 조선인 金德建 등이 사적으로 운반한 목재를 압수한 안건과 土門江 상·하류 지역에 사적으로 설치한 다리와 나루터를 봉쇄시켜달라고 요청한 각 사안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照會를 누차 초록하여 보고하면서 검토하여 지시를 내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 咸鏡北道 安撫使 南의

照覆을 받았는데, 그 말이 점점 간사하고 억지가 늘어나, 우리의 조치를 경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다시 관대하게 포용한다면 변경의 사무는 틀림없이 날로 혼란스러워질 터이므로 부득불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준엄한 말로써 거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이 교섭과 관련된 것이라, 소홀히 처리할 수 없으므로 저희 局에서 조선인들이 사적으로 운송한 목재를 압수하고 사설 다리와 나루터를 봉쇄하는 두 사안과 관련하여 照會를 주고받은 상황에 대해, 마땅히 길림장군께서 총리아문과 북양대신께 각기 자문을 보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 按撫使에게 답변한 照會를 살펴보니, 단어의 함의가 대단히 엄정하고 강 상·하류를 따라 설치된 사설 다리와 나루터를 서둘러 철거하여 지체가 없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보고에 대해 지시를 내려보내는 것 외에도 응당 주고받은 照會를 초록해 咨文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귀 아문에 보고를 드리니 번거롭더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자문을 받았으므로 본 각각대신 북양대신 이홍장은) 마땅히 해당 升用道 원세개에게 지시를 내리니, 지시를 받으면 바로 조선 정부에 알려 그에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함께 문서를 첨부한다.

(이러한 지시를 받았으므로 원세개는) 마땅히 바로 초록한 첨부문서에 따라 조선 정부에서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조회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이번 달 26일 조선 정부의 다음과 같은 답장 조회를 받았습니다.

이상의 사안들은 변경과 관련돼 있으므로 단지 정해진 章程에 따라야 할 뿐이지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按撫使 또한 어찌 일부러 章程을 어기려 하였는지, 특히 의심스럽습니다. 마땅히 해당 按撫使에게 명백히 조사하여 확인하도록 지시하여 장정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참고해주십시오.

이에 응당 검토해 주시도록 다시 보고를 올리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북양대신 이홍장은) 吉林將軍이 참고하도록 咨文으로 알리는 것 외에도, 응당 귀 총리아문에도 咨文으로 알려야 할 것이니, 번거롭더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 자료총서 41

국역 『清季中日韓關係史料』 2

초판 1쇄 인쇄 2013년 12월 20일

초판 1쇄 발행 2013년 12월 31일

역 김형중, 이원준, 김창수, 허주형, 조병식

펴낸이 김학준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 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e-mail book@nahf.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13

ISBN 978-89-6187-324-6 94910

978-89-6187-291-1 (세트)

-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 제어번호: CIP2013029218)
- * 책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